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4234-01

© 2022-24 | 2022. 3. |

농업분야 고용보험 적용방안 연구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



농림축산식품부

연구 담당

엄진영 | 연구위원, 제 1장~ 제7장 집필

임소영 | 연구위원, 제2장~5장 집필

김부영 | 전문연구원, 제 1장 집필, 농업법인 설문조사 분석

수탁연구보고 C2022-24

농업분야 고용보험 적용방안 연구

등 록 |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 2022. 3.

발 행 인 | 김홍상

발 행 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 쇄 처 | (주)프리비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농업분야 고용보험 적용방안 연구」 과제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2년 3월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책임자: 엄진영 (연구위원)
연구참여자: 임소영 (연구위원)
김부영 (전문연구원)

연구 목적

- 2020년 5월 대통령은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 기초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함. 현재 농업 부문에도 고용보험이 일부 적용되고 있으나 비법인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와 해당 사업장 운영 자영업자(경영주)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 이 연구에서는 농업 부문에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데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농업경영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통계 자료와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농업 부문의 고용보험 적용 시 예상되는 쟁점을 도출함. 이를 토대로 농업 분야의 특성과 당사자의 수용성 등을 검토하여 농업 취업자의 고용보험 적용 대상 및 적용 방안을 제시함.

연구 방법

- 문헌 조사, 통계자료 분석, 설문조사 및 현장 면담, 전문가 협의회 및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농업 부문의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설정하고 적용 방안을 제시함.

연구 결과

- 농업 부문의 취업자 수는 2010년 1,251천 명에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가 2018년 이후 다시 증가함.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를 구분하여 증감을 분석하면, 경제활동인구조사 농림어업 부문 취업자 수의 증가 및 감소 방향으로 비슷하게 움직이지만, 최근 2020년에는 이러한 경향이 바뀌어 임금근로자는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비임금근로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의 농업 부문 취업자 수 증가는 비임금근로자 증가가 견인한 것으로 판단됨. 농업 소분류 기준 작물재배업 취업자 수 변화는 농업부문 취업자 수 변화와 비슷한 추세로 나타나고, 축산업 취업자 수 변화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최근 2018년 이후 증가 추세로 나타남.
- 농업 부문 취업자가 증가한 2017년 이후의 비임금근로자의 주 연령대를 분석하면, 대부분 60대, 70세 이상으로 나타나, 고령화된 것을 알 수 있음. 특히 농업 부문 취업자의 대다수를 차지

하고 있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연령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고령화는 가족 내 노동력으로 영농활동을 수행하기 점차 어려운 상황임을 의미함. 즉, 가족 외부 노동력 필요성이 점차 높아짐. 농축산물 소득조사 자료집을 통해 세부 품목별로 단위당 생산에 필요한 연간 평균 노동시간과 고용노동력 비중을 분석하면, 고용노동력(임금근로자) 투입 비중은 대부분의 품목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농업부문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은 주로 농가와 농업법인임. 2010~2019년 기간 동안, 임금근로자 고용 평균 비율이 30% 이상인 품목은 채소·산나물, 과수, 약용·특용, 화초·관상품목임. 2010년 대비 2019년 품목별 농가 수의 연평균 변화율을 계산하면, 채소·산나물, 특용·버섯 품목을 제외하고 모든 품목에서 농가 수는 감소하였음. 큰 폭으로 감소한 농가는 기타품목(-8.9%), 화초·관상식물(-4.9%), 축산(-4.6%)으로 나타남. 그러나 2010년 대비 2019년, 임금근로자 고용 농가 비율은 채소·산나물, 특용·버섯, 화초·관상식물을 제외한 품목에서는 모두 증가하였음. 2010~2019년 기간에 농업법인 수는 연평균 12.1%씩 증가하여 2010년에 8,321개에서 2019년 2만 3,315개로 증가하였음.
- 농가에 고용되는 내국인 농작업 근로자들은 지역 내 지인 등을 통해 구인하거나, 인터넷, 신문 등의 광고를 통해 구인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이에 반해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작물재배 농가는 대부분 지역 내 농작업팀·사설인력소개소를 통해, 축산 농가는 제도권을 통한 고용이 높게 나타남. 그러나 지역 내 농작업팀과 사설인력사무소를 통한 내국인 고용 비율이 작물재배 농가에서 13.2%, 축산 농가에서 14.9%로 나타나, 지역 내 농작업팀 및 사설인력사무소 등을 통한 내국인 근로자 고용도 여전히 있음. 농업법인에서 고용하는 내·외국인 일용 근로자는 주로 인력사무소와 지역 내 농작업팀을 통해 고용되었고, 다음으로는 지인소개가 높은 비율로 나타남.
- 농가와 농업법인에 고용되는 근로자 중, 지인 등의 소개를 통해 고용하거나, 온·오프라인 광고를 통해 고용을 하는 경우는 해당 사업체에서 직접 고용하는 형태임. 이때 근로계약 관계 및 사용주는 해당 농가 및 농업법인이라고 할 수 있음. 농가와 법인에서 지역 내 등록/미등록 인력

소개소를 통해 근로자 알선·소개를 받아, 근로자를 고용하기도 함. 이때 근로계약 관계 및 사용주는 앞서 언급한 것과 동일하게 해당 농가 및 농업법인이며, 해당 사업체에서 직접 고용관계를 가짐. 이외에 농업 임금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산지유통인(업체), 주산지 전문작업단, 지역 내 등록/미등록 인력소개소에서 근로자를 고용한 후, 농가 및 농업법인과 도급·위탁 및 파견법상 불법 파견 형태로 임금근로자를 공급하는 형태임. 이때 농가 및 농업법인과 해당 임금근로자의 고용 관계는 간접고용 형태를 띠게 됨.

- 사업장 수가 증가함에 따라 농림업 분야의 고용보험 순수 피보험자 수 역시 증가하고 있음. 피보험자 수는 2010년 2만 6,079명에서 2020년 3만 1,800명으로 연평균 2.0%씩 증가함. 농림업의 연간 피보험자격 취득자와 상실자 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고 있음. 피보험자격 취득자 수는 2010년에 5만 268명이었으나 2020년도에는 2만 1,828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상실자 수도 5만 2,756명에서 2만 164명으로 감소하였음.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상실은 주로 사업장의 사정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과반이 넘지만 개인 사정 등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함으로써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농림업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자는 2010년에 1만 6,241명이었으나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2020년에는 4,718명에 불과함.
- 농림수산부문의 고용보험 적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입 사업장 수와 피보험자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농업부문 법인 수와 해당 법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수 등을 고려할 때, 여전히 일부 농업법인에서는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됨. 비법인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은 당연가입 대상,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의 사업장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및 근로복지공단 신청이 전제될 경우 임의가입이 가능함. 현행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사각지대는 (1) 당연가입 대상인 농업법인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2) 농가 등의 비법인에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중, 당연가입 대상자 중 미가입자와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 (3) 농가로부터 농작업을 위탁, 도급 받는 업체에서 고용되는 근로자임.

- 농림어업 부문은 타 부문과 달리 비법인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체에는 「고용보험법」 적용을 제외하고 있어 해당 사업체에 속한 근로자와 자영업자는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되어 있음. 적용 대상 제외 사업체의 고용보험 인지도나 필요성에 대한 인식, 향후 가입 의사는 농업 분야 고용보험 확대에 있어서 수용성 측면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 중,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낮음. 현재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가입한 사업주들은 농업 부문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미가입 사업주와 적용 제외 사업주와 비교할 때 매우 높게 나타남.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은 전반적으로 낮고, 법인보다 비법인에서 낮게 나타남.
- 현재 자영업자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주들이 생각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서는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는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으며, 보험 가입신청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음.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대상 제외 경영주(사업주)도 마찬가지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보험료 일부 지원을 꼽음.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험료 지원이 농업 분야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서는 필요한 정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지만, 향후 정책을 고려할 때는 보험료 지원 폭과 재원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음.
- 사업장 관리번호 부여 및 폐업 확인을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이 필수적 요건이지만 고용보험 가입 경영주(사업주)의 사업체를 제외하면 사업자 등록율은 낮음. 특히, 농가에서 사업자 등록 비율이 낮아 향후 고용보험 확대 적용 시 사업자 등록이 선결과제로 부상할 것임.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비자발적 폐업에 대비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는 보험으로, 자영업자의 경우 비자발적 폐업과 관련한 조건에 부합한 서류를 제출해야 함. 그중 매출액 및 소득 감소로 인한 비자발적 폐업의 경우, 생산 관련 증빙자료 및 경영/회계장부 작성이 필요함. 미가입 농가는 원칙적으로 임의 가입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 미가입한 농가의 절반 이상이 생산 관련 증빙자료의 보관 및 기장을 하지 않고 있어, 고용보험 가입에 필요한 서류 작성 및 제출 등 제반 행정처리를 위한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임.

-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료 산정 및 보험급여 지급액에 사용되는 기준보수는 현재 7단계로 구성되어 있음. 자영업자 소득 파악의 어려움으로 현재 기준보수를 자영업자가 선택하도록 함. 1단계 월 1,820,000원~7단계 3,380,000원으로 설정됨. 해당 기준보수 설정액이 농업 부문에서도 적절한 수준인지 판단하는 것이 필요함.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밀접하게 연관될 수 있는 농업 부문에서의 경영안정 정책보험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수입보장보험임. 특히, 농가가 폐업할 경우, 주요 생계비 조달 방법은 과거의 자금을 사용하거나, 가족 중 다른 사람의 소득에 기대는 방법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남. 폐업 시, 최소한의 생계 마련에 대한 안전망이 없음을 알 수 있음.
- 농업 부문은 타 부문과 달리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신체활동이 어려워 휴업한 경우, 폐업을 하지 않고, 사업체는 유지한 상태로 휴업하는 경우가 발생함. 현재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서는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신체활동 및 가족 간병으로 인한 폐업을 수급 요건으로 두고 있으나, 폐업을 하지 않는 이상 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질병 등으로 인한 휴업이지만, 농업 부문에서는 이는 실질적으로 폐업 상태로, 소득 창출을 할 수 없음. 비록 휴업을 경험하는 비율은 낮지만, 휴업을 할 경우 생계를 이어나갈 최소한의 안전망이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음.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농업 부문 자영업자 고용보험 수급요건 범위에 포함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농업부문의 법인을 제외한 사업체에서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된 비법인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체의 비율을 고려할 때, 현재의 법 기준으로는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가능 범위가 제한적임.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적용 제외 대상의 비율은 농가의 경우 76.1%, 농업관련 비법인 사업체 중 45.3%에 해당함.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대상 제외 사업체의 적용대상 확대를 검토하려면 해당 정책 당사자들의 수용성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함. 더불어 근로자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 중, 근로자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사업체에 대해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이유와 향후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의사 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 근로자 고용보험도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마찬가지로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보험관계 성립 신고서를 작성 및 접수할 수 있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농가 및 농업관련 민간 사업자

는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해도 현재로서는 가입이 불가능함.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려면 고용 여부 확인, 고용기간, 급여(일당 또는 월급) 지급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갖춰져야 함. 또한 「고용보험법」 적용을 받는 사업주를 분별하는 데 있어 고용관계 파악이 기초가 되어야 함. 특히 농가의 경우, 지인의 소개 및 지역 내 농작업팀, 인력회사 등을 통해 근로자를 알선·소개·파견 받거나, 농작업 업무 위탁·도급 형태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있어, 이의 관계 파악이 중요함.

정책 제언

-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현행 법률에서 정한 적용대상을 유지하되, 비법인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을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임의가입 가능하도록 변경함. 타 부문과의 형평성 및 해당 정책을 희망하는 정책 대상자에게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필요함. 또한 사회보험 중 하나인 산재보험의 경우, 농업경영주를 적용대상 제외에서 임의가입으로 전환하였음. 고용보험도 이와 같은 전환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근로자 고용보험의 경우도 자영업자 고용보험 변경과 마찬가지로 현행 적용대상을 유지하되, 비법인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 가입을 추진함. 1단계는 임의가입 방식, 2단계는 당연 가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65세 이상의 농업 경영주의 비율이 타 부문에 비해 높고, 현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또 다른 안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대상 연령을 80세(또는 70세) 이상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함.
- 자영업자 고용보험 관계 신고를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명시된 농업인으로 인정될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을 때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현재 고용노동부는 내부적으로 비법인 4인 이하 사업체만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활용할 계획을 담고 있어, 이 부분은 추후 고용노동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협의가 필요함. 재하도급이 여러 단계로 이루어질 경우, 일부 산업에서는 서면계약을 통해 원수급인의 근로자 고용보험을 하수급인이 인수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농업부문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관리에 있어 서면고용계약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함.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농업부문 표준근로계약서 마련과 이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들이 수급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특히 매출액 증빙과 관련한 서류를 작성·보관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함. 자영업자 고용보험 비자발적 폐업에 해당하는 사유 중, 일부 사유에 대한 증빙 서류를 농업 부문에 적합하도록 증빙 인정 서류 목록에 추가할 필요가 있음. 농업 분야의 생산주기가 길다는 점을 고려하여 매출이 아닌 생산비 손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도 폐업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더불어 질병, 부상에 따른 휴업 시, 농가 경영주가 해당 사업체를 폐업하지 않고 휴업 상태로 유지하는 특성을 고려한 수급요건이 추가될 필요가 있음. 농업 부문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및 수급 자격 요건 등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 피보험단위기간을 18개월 동안 180일에서 농업 부문 고용 현실에 부합하도록 일용근로자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축소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1안에 대한 최대 필요 예산 규모액은 근로자 고용보험료를 최대 80%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지원하고, 미가입자들이 모두 가입한다고 가정할 때 연간 총 38,835백만 원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시, 기준보수 4등급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 30%를 지원하고, 미가입자들이 모두 가입한다고 가정할 때 연간 필요 예산 규모는 총 75,114백만 원임. 2안에 대한 최대 필요 예산 규모액은 근로자 고용보험료를 최대 80%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지원하고, 미가입자들이 모두 가입한다고 가정할 때 연간 총 38,835백만 원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시, 기준보수 4등급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 30%를 지원하고, 미가입자들이 모두 가입한다고 가정할 때 연간 필요 예산 규모는 총 103,809백만 원임. 3안에 대한 최대 필요 예산 규모액은 근로자 고용보험료를 최대 80%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지원하고, 미가입자들이 모두 가입한다고 가정할 때 연간 총 38,835백만 원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시, 기준보수 4등급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 30%를 지원하고, 미가입자들이 모두 가입한다고 가정할 때 연간 필요 예산 규모는 총 155,599백만 원임.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 내용 및 방법	8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5

제2장 농업부문 노동시장 환경과 특성

1. 노동 공급자 측면	19
2. 노동 수요자 측면	38

제3장 농업부문 고용보험 적용 실태

1. 현행 농업부문 고용보험 적용 개요	49
2. 농업 부문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실태	52
3. 농업 부문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현황	56
4. 현행 농업부문 고용보험 적용 사각지대	67
5. 타 부문 고용보험 적용사례	69

제4장 농업 고용환경 및 근로 실태조사

1. 조사 개요	91
2. 사업주 실태조사 분석 결과	101
3. 근로자 실태조사 분석 결과	151

제5장 농업부문 고용보험 적용 확대 및 도입 시 쟁점

1.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 및 도입 시 쟁점	181
2.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 및 도입 시 쟁점	197

제6장 농업부문 고용보험 적용 대상과 관리 방안

- 1. 농업부문의 고용보험 적용 대상 227
- 2. 농업부문 고용보험 관리 개선 방안 233
- 3. 농업부문 고용보험료 지원 시, 필요 예산 규모 추계 257

부록

- 1.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 265
- 2. 해외 농업 부문 고용보험 제도 266
- 3. 2021년 산업별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률 270

- 참고문헌 271

제1장

〈표 1-1〉	현행 농업 부문 고용보험 적용 현황	4
〈표 1-2〉	활용 통계 내용과 장, 단점	9

제2장

〈표 2-1〉	농업 부문 종사상 지위별 평균 취업자 수 변화(2010~2020)	20
〈표 2-2〉	농업 소분류기준 및 성별 취업자 수 변화(2010~2020)	21
〈표 2-3〉	농림어업 종사상 지위별 평균 취업자 수 변화(2017~2019)	23
〈표 2-4〉	농업법인 법인수와 종사상 지위별 평균 취업자 수 변화(2010~2020)	23
〈표 2-5〉	농업법인 사업유형별·종사상 지위별 평균 취업자 수 변화(2018~2019)	24
〈표 2-6〉	노지 채소 단위당(10a) 연간 평균 노동시간과 고용노동력 투입 비중	27
〈표 2-7〉	시설 채소 단위당(10a) 연간 평균 노동시간과 고용노동력 투입 비중	28
〈표 2-8〉	노지 과수 단위당(10a) 연간 평균 노동시간과 고용노동력 비중	30
〈표 2-9〉	시설 과수 단위당(10a) 연간 평균 노동시간과 고용노동력 비중	30
〈표 2-10〉	화훼 단위당(10a) 연간 평균 노동시간과 고용노동력 비중	31
〈표 2-11〉	특용·약용 단위당(10a) 연간 평균 노동시간과 고용노동력 비중	31
〈표 2-12〉	주요 발작물의 기계화율	32
〈표 2-13〉	농업 부문 일 평균 임금근로자 노동시간(2019~2020년 기준)	35
〈표 2-14〉	농업 부문 품목별·종사상지위별 내국인 임금근로자 평균 임금(일당)(2019년 기준)	36
〈표 2-15〉	농림어업 임금근로자 근로계약 작성 여부(2019년)	36
〈표 2-16〉	농림어업 임금근로자 사회보험 가입률	37
〈표 2-17〉	농림어업 임금근로자 임금 지급 업체	38
〈표 2-18〉	농림어업 임금근로자 사업장 근로자 수	38
〈표 2-19〉	품목별 임금근로자 고용 농가 비율	39
〈표 2-20〉	사업유형별 농업법인 수	41
〈표 2-21〉	상시 종사자 규모별 농업법인 사업체 수와 비율	41
〈표 2-22〉	농가의 내국인 근로자 구인 경로	43

〈표 2-23〉 농가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방법(고용 경로): 작물재배업 일용근로자 및 임시근로자	43
〈표 2-24〉 농가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방법(고용 경로): 상용근로자	44
〈표 2-25〉 농업법인의 일용근로자(내·외국인) 구인 경로	44

제3장

〈표 3-1〉 현행 농업 부문 고용보험 적용 현황	50
〈표 3-2〉 현행 농업 부문 고용보험 가입 시 보험요율	51
〈표 3-3〉 실업급여액 소정급여일수	51
〈표 3-4〉 농림업 고용규모별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수	53
〈표 3-5〉 농림업 연도별·지역별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수	55
〈표 3-6〉 농림업 분야 고용규모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6
〈표 3-7〉 농림업 성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7
〈표 3-8〉 농림업 연령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8
〈표 3-9〉 농림업 지역별 고용보험 순수 피보험자 수	59
〈표 3-10〉 농림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현황	60
〈표 3-11〉 농림업의 상실사유별 피보험자격 상실자 현황	61
〈표 3-12〉 농림업의 기초임금일액별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63
〈표 3-13〉 농림업 분야 실업급여 지급 현황	64
〈표 3-14〉 사업장 규모별 산전후휴가급여 지원 현황(농림수산 분야)	65
〈표 3-15〉 사업장 규모별 육아휴직급여 지원 현황(농림수산 분야)	66
〈표 3-16〉 특수 업종의 고용보험 적용 논의 과정	69
〈표 3-17〉 예술인 실업급여 지급기간	80
〈표 3-18〉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보험관계 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액	82
〈표 3-19〉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액	84
〈표 3-20〉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87
〈표 3-21〉 일반근로자,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정리	88

제4장

〈표 4-1〉 설문조사 내용	96
〈표 4-2〉 농가의 근로자 고용형태	101
〈표 4-3〉 고용 형태별 내국인 근로자 수 평균	102
〈표 4-4〉 고용조건 협의 주체와 방식	103
〈표 4-5〉 근로자의 임금 수령 주체 및 지급 방식	104
〈표 4-6〉 정책보험 가입 경험	105
〈표 4-7〉 생산 관련 자료 보관 여부	105
〈표 4-8〉 회계장부 작성 여부	105
〈표 4-9〉 사업자 등록 여부 및 등록 업종	106
〈표 4-10〉 휴업 경험 여부	107
〈표 4-11〉 휴업 기간 및 이유	107
〈표 4-12〉 폐업 시 예상 생계비 조달 방법	108
〈표 4-13〉 가입된 경영안정정책	109
〈표 4-14〉 고용계약서 작성 여부	109
〈표 4-15〉 고용계약서 작성 주체	110
〈표 4-16〉 임금대장 및 근로자명부 작성 여부	110
〈표 4-17〉 임금대장 또는 임금내역서 제공 여부	110
〈표 4-18〉 고용 관련 교육 경험	111
〈표 4-19〉 노무 관련 교육 희망 여부 및 미희망 사유	111
〈표 4-20〉 고용 주체에 대한 인식	112
〈표 4-21〉 자영업자 고용보험 인지도	113
〈표 4-22〉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113
〈표 4-23〉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 및 미가입 이유	114
〈표 4-24〉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희망 여부	115
〈표 4-25〉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	115
〈표 4-26〉 근로자 고용보험 인지도	116

〈표 4-27〉 근로자 고용보험 필요성	116
〈표 4-28〉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 및 미가입 이유	117
〈표 4-29〉 근로자 대상 고용보험 가입 의향	118
〈표 4-30〉 근로자 대상 고용보험 가입 미희망 사유	118
〈표 4-31〉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	119
〈표 4-32〉 농업법인 종사상 지위별 평균 근로자 수 및 평균 고용기간	120
〈표 4-33〉 일용근로자 고용 시기	120
〈표 4-34〉 종사상 지위별 근로자 고용경로	121
〈표 4-35〉 산재보험 및 농작업근로자 안전보험의 종사상 지위별 가입률	121
〈표 4-36〉 종사상 지위별 고용계약서 작성 여부	122
〈표 4-37〉 종사상 지위별 고용계약서 작성 주체	122
〈표 4-38〉 종사상 지위별 임금 지급 대상과 방법	123
〈표 4-39〉 종사상 지위별 근로자 명부 및 임금 대장 작성 여부	123
〈표 4-40〉 종사상 지위별 고용보험 가입 여부	124
〈표 4-41〉 근로자 고용보험에 대한 인지도(미가입 사업체)	124
〈표 4-42〉 근로자 고용보험 인지도별 고용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 대한 인지도(미가입 사업체)	125
〈표 4-43〉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미가입 사업체)	125
〈표 4-44〉 과거 고용보험 가입 경험(미가입 사업체)	126
〈표 4-45〉 고용보험 가입 필요성에 대한 의견(미가입 사업체)	126
〈표 4-46〉 향후 고용보험 가입 의향(미가입 사업체)	126
〈표 4-47〉 고용보험료의 최대 80% 지원 시 고용보험 가입 의향(미가입 사업체)	126
〈표 4-48〉 고용보험료의 최대 80% 지원 시에도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 이유 (미가입 사업체)	127
〈표 4-49〉 근로자 고용보험 확대 시 필요 정책	127
〈표 4-50〉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한 인지도	128
〈표 4-5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필요성에 대한 의견	128
〈표 4-52〉 과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경험과 현재 가입 여부	128
〈표 4-53〉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현재까지 가입하지 않은 이유	129

〈표 4-54〉 향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의향	129
〈표 4-55〉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최대 50% 지원 시 고용보험 추가 가입 의향	129
〈표 4-56〉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최대 80% 지원 시 고용보험 추가 가입 의향	130
〈표 4-57〉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최대 80% 지원 시에도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 이유	130
〈표 4-58〉 자영업자 고용보험 확대 시 필요 정책	130
〈표 4-59〉 농작업 기준에 따른 사업체 분류	131
〈표 4-60〉 농가와 맺는 계약 형태에 따른 사업체 유형	131
〈표 4-61〉 농작업 계약 기준과 사업체 형태 분류	132
〈표 4-62〉 농업 관련 사업체 농작업 주요 품목	132
〈표 4-63〉 계약 형태에 따른 농업 관련 사업체의 연간 거래 평균 농가(법인) 수	133
〈표 4-64〉 사업체 운영 기간	133
〈표 4-65〉 사업체 유형별 근로자 직접 고용 여부	134
〈표 4-66〉 간접 고용 경로	134
〈표 4-67〉 사업체 유형별 재하도급, 위탁 비율	135
〈표 4-68〉 사업체 유형별·종사상 지위별 평균 내국인 근로자 수	136
〈표 4-69〉 사업체 유형별·종사상 지위별 고용 형태	136
〈표 4-70〉 종사상 지위별 근로자 업무 내용 협의 주체와 방법	137
〈표 4-71〉 종사상 지위별 근로자 구인 경로	137
〈표 4-72〉 종사상 지위별 근로자 평균 고용 기간	138
〈표 4-73〉 종사상 지위별 임금 지급 대상	138
〈표 4-74〉 종사상 지위별 임금 지급 방법	139
〈표 4-75〉 농업 관련 사업체의 사회보험 가입률(산재보험, 농작업근로자 안전보험)	139
〈표 4-76〉 사업체 유형별 사업자 등록 비율	140
〈표 4-77〉 종사상 지위별·상시근로자 고용 규모별 고용계약서 작성 비율	140
〈표 4-78〉 종사상 지위별·상시 근로자 규모별 고용계약서 작성 주체	140
〈표 4-79〉 종사상 지위별 임금대장 작성 여부	141
〈표 4-80〉 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작성, 고용계약서 작성 교육 수강 여부	141
〈표 4-81〉 향후 교육을 수강하지 않는 이유	142

〈표 4-82〉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률	143
〈표 4-83〉 농업 관련 사업체 종사상 지위에 따른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률	143
〈표 4-84〉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체 사업주의 근로자 고용보험 인지도	144
〈표 4-85〉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가입하지 않은 이유	144
〈표 4-86〉 사업체 규모별 미가입 사업장의 과거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경험	145
〈표 4-87〉 사업체 규모별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사업주의 근로자 고용보험 필요성 인식	145
〈표 4-88〉 사업체 규모별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사업주의 향후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의향	145
〈표 4-89〉 사업체 규모별 보험료 80% 보조 시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의향, 가입 원하지 않는 이유(미가입 사업장)	146
〈표 4-90〉 사업체 규모별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확대 필요 정책	147
〈표 4-91〉 농업 관련 사업체 사업주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인지도	148
〈표 4-92〉 농업 관련 사업체 규모별 자영업자 고용보험 필요성 인식	148
〈표 4-93〉 사업체 규모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경험 및 현재 가입 여부 및 가입하지 않은 경우, 이유	149
〈표 4-94〉 사업체 규모별 향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의향, 보험료 보조 시 가입 의향, 가입 의향 없는 이유	150
〈표 4-95〉 농업 관련 사업체 규모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확대 필요 정책	150
〈표 4-96〉 일용근로자의 일 평균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151
〈표 4-97〉 고용 경로별 근로 내용 및 조건 협의 주체	152
〈표 4-98〉 고용 경로별 업무 지휘 주체	153
〈표 4-99〉 고용 경로별 고용 기간 사전 협의 여부 및 주체: 일용근로자	154
〈표 4-100〉 고용 경로별 고용 기간 사전 협의 여부 및 주체: 임시 및 상용근로자	154
〈표 4-101〉 고용 경로별 임금 지급 주체 및 지급 형태: 일용근로자	155
〈표 4-102〉 고용 경로별 임금 지급 주체 및 지급 형태: 임시 및 상용 근로자	155
〈표 4-103〉 고용 경로별 임금 대장 제공 여부	155
〈표 4-104〉 고용 경로별 고용 주체에 대한 인식	156

〈표 4-105〉 고용 경로별 고용계약서 작성 여부	156
〈표 4-106〉 고용보험 가입 경험 및 현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 가능 여부	157
〈표 4-107〉 농가에 일 없을 때의 대처 방법	157
〈표 4-108〉 고용보험 인지 여부 및 필요성	158
〈표 4-109〉 향후 고용보험 적용 희망 여부	159
〈표 4-110〉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선호 여부	159
〈표 4-111〉 고용보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160
〈표 4-112〉 농업법인 임금근로자의 하루 평균 근로 시간, 한 달 평균 근로 일수, 일년 평균 근로 월수	160
〈표 4-113〉 농업법인 임금근로자의 평균 임금	161
〈표 4-114〉 종사상 지위별 임금근로자의 고용조건 협의 대상과 방법	161
〈표 4-115〉 종사상 지위별 임금근로자의 임금 지급 주체와 수령 방법	162
〈표 4-116〉 종사상 지위별 임금근로자의 임금대장 또는 임금내역서 수령 여부	162
〈표 4-117〉 종사상 지위별 임금근로자의 고용계약서 작성 여부	162
〈표 4-118〉 종사상 지위별 임금근로자의 고용계약서 작성 주체	163
〈표 4-119〉 종사상 지위별·사업체 형태별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	164
〈표 4-120〉 임시 및 상용근로자의 농업 부문 실직 경험	164
〈표 4-121〉 임시 및 상용근로자의 농업 부문 실직 시 주요 생계 수단	164
〈표 4-122〉 현재 사업체에 일이 없을 시 겸업 여부	165
〈표 4-123〉 현재 사업체에 일이 없을 시 겸업하지 않을 경우 주요 생계 수단	165
〈표 4-124〉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에 대한 인식 여부	165
〈표 4-125〉 임금근로자의 과거 고용보험 가입 경험	166
〈표 4-126〉 현재 사업체의 고용보험 가입 가능 여부에 대한 인지도	166
〈표 4-127〉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필요성에 대한 의견	167
〈표 4-128〉 사업주에게 과거 고용보험 가입 요청 경험 또는 향후 고용보험 가입 요청 의향	167
〈표 4-129〉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가입 요청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	168
〈표 4-130〉 향후 고용보험 적용 희망 여부	168
〈표 4-131〉 향후 고용보험 적용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	169

〈표 4-132〉 기타 고용 조건이 동일한 경우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선호 여부	169
〈표 4-133〉 농업 부문 사업체의 고용보험 적용 확대 시 필요 정책	170
〈표 4-134〉 농업 관련 사업체 종사상 지위별 평균 근로시간, 평균 임금, 평균 근로 일수	170
〈표 4-135〉 근로자들의 근무하는 사업체의 주요 형태	171
〈표 4-136〉 근로자들이 작업하는 주요 품목	171
〈표 4-137〉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업무 내용 사전 협의 대상과 방법	172
〈표 4-138〉 종사상 지위별 근로자가 인지하는 업무 지휘 주체	172
〈표 4-139〉 종사상 지위별 고용기간 정함 여부 및 평균 설정 근로기간	173
〈표 4-140〉 종사상 지위별 고용기간 정한 주체	173
〈표 4-141〉 종사상 지위별 고용계약서 작성 여부 및 고용계약서 작성 주체	174
〈표 4-142〉 임금 지급 주체 및 임금 수령(현찰, 금융계좌) 형태: 종사상 지위별	174
〈표 4-143〉 종사상 지위별 임금 대장, 내역서 제공 여부	175
〈표 4-144〉 고용 주체 인식: 종사상 지위별	175
〈표 4-145〉 고용보험 가입 여부	176
〈표 4-146〉 종사상 지위별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고용보험 인지도	176
〈표 4-147〉 종사상 지위별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고용보험 과거 가입 경험	176
〈표 4-148〉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현재 고용보험 현재 사업체 당연가입 대상 인지 여부	177
〈표 4-149〉 종사상 지위별 근로자 고용보험 필요성	178
〈표 4-150〉 근로자 고용보험 향후 적용 희망 여부 및 적용 희망하지 않는 이유	178
〈표 4-151〉 종사상 지위별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선호 여부	179
〈표 4-152〉 근로자 고용보험 확대 시 필요한 정책	179

제5장

〈표 5-1〉 농가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가능 사업체 분류	182
〈표 5-2〉 농업 관련 사업체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가능 사업체 분류	182
〈표 5-3〉 자영업자 고용보험 인지도	183
〈표 5-4〉 자영업자 고용보험 필요성 인식	183

〈표 5-5〉 자영업자 고용보험 필요성 인식	184
〈표 5-6〉 자영업자 고용보험 인지도	184
〈표 5-7〉 자영업자 고용보험 필요성 인식	185
〈표 5-8〉 고용보험 가입 가능 여부 및 가입 경험에 따른 분류(자영업자 고용보험)	185
〈표 5-9〉 자영업자 고용보험 미가입 이유(농가)	186
〈표 5-10〉 자영업자 고용보험 미가입 이유(농업법인, 농업 관련 사업체)	186
〈표 5-1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의향	187
〈표 5-12〉 보험료 보조에도 자영업자 고용보험 미가입 이유(농가)	188
〈표 5-13〉 보험료 보조에도 자영업자 고용보험 미가입 이유(농업법인, 농업 관련 사업체)	188
〈표 5-14〉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의향	188
〈표 5-15〉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의향	189
〈표 5-16〉 보험료 보조에도 자영업자 고용보험 미가입 이유	190
〈표 5-17〉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확대 위한 필요정책	191
〈표 5-18〉 비법인 사업자 등록률	192
〈표 5-19〉 생산 관련 자료 보관 및 기장(미가입 농가)	193
〈표 5-20〉 생산 관련 자료 보관 및 기장(적용 제외 농가)	193
〈표 5-21〉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 보험료 및 월 실업급여	194
〈표 5-22〉 농작물 재해보험, 가축 재해보험, 수입보장보험 목적	194
〈표 5-23〉 농가 폐업 시, 경영주의 생계비 조달 방법	195
〈표 5-24〉 휴업 기간 및 이유	196
〈표 5-25〉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현황	197
〈표 5-26〉 사업주의 근로자 고용보험 인지도(적용대상 제외)	199
〈표 5-27〉 근로자 고용보험 필요성 인식(적용대상 제외)	200
〈표 5-28〉 사업주의 근로자 고용보험 인지도(미가입)	201
〈표 5-29〉 근로자 고용보험 필요성 인식(미가입)	202
〈표 5-30〉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의향(적용대상 제외)	203
〈표 5-31〉 보험료 보조에도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의향 없는 이유(적용 제외 사업주)	204
〈표 5-32〉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가입하지 않은 이유(사업주)	205

〈표 5-33〉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의향(미가입)	206
〈표 5-34〉 보험료 보조에도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의향 없는 이유(미가입 사업주)	207
〈표 5-35〉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미희망 이유(미가입 근로자)	207
〈표 5-36〉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의향(가입자)	208
〈표 5-37〉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미희망 이유(근로자 가입자)	209
〈표 5-38〉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정책 수요(미가입)	210
〈표 5-39〉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정책 수요(적용 제외)	210
〈표 5-40〉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정책 수요(가입자)	211
〈표 5-41〉 비법인 사업자 등록률	212
〈표 5-42〉 고용계약서 작성 비율(미가입 농가)	213
〈표 5-43〉 근로자 명부 및 임금대장 작성/제공(미가입 농가)	213
〈표 5-44〉 고용계약서 작성 비율(적용대상 제외 농가)	214
〈표 5-45〉 근로자 명부 및 임금대장 작성/제공(적용대상 제외 농가)	214
〈표 5-46〉 농업법인: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종사상 지위별 고용계약서 작성 여부	215
〈표 5-47〉 농업법인: 고용법인 미가입 사업장의 종사상 지위별 근로자 명부 작성, 임금대장 작성/수령 비율	216
〈표 5-48〉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체 고용계약서 작성 여부	217
〈표 5-49〉 농업관련 사업체 미가입 사업체의 종사상 지위별 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작성 여부	217
〈표 5-50〉 농업관련 사업체 미가입 사업체의 임금대장 제공 및 수령 여부	218
〈표 5-51〉 고용보험 적용 대상 제외 사업체 고용계약서 작성 여부	218
〈표 5-52〉 농업관련 사업체 적용 대상 제외 사업장의 종사상 지위별 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작성 여부	219
〈표 5-53〉 농가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고용 관계(근로자 설문)	220
〈표 5-54〉 농업관련 사업체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유형별 하도급, 위탁 비율	221
〈표 5-55〉 농가 경영주의 고용 관련 교육 경험	221
〈표 5-56〉 노무 관련 교육 희망 여부 및 미희망 사유	222
〈표 5-57〉 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작성, 고용계약서 작성 교육 수강 여부	223
〈표 5-58〉 향후 교육을 수강하지 않는 이유	223

〈표 5-59〉 농가 고용 일용근로자의 일 평균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224
〈표 5-60〉 농업법인 임금근로자의 하루 평균 근로 시간, 한 달 평균 근로 일수, 일년 평균 근로 월수	224
〈표 5-61〉 농업 관련 사업체 종사상 지위별 평균 근로시간, 평균 임금, 평균 근로 일수	224

제6장

〈표 6-1〉 현행 농업 부문 고용보험 적용 현황	227
〈표 6-2〉 현행 농업부문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	228
〈표 6-3〉 농업부문 고용보험 적용 대상(안)	229
〈표 6-4〉 향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의향 있는 비법인 상시근로자 규모	230
〈표 6-5〉 농업경영주 연령별 영농경력	231
〈표 6-6〉 농업경영주 대상 경영이양 관련 지원제도	231
〈표 6-7〉 산업별 고령 취업자(65~79세) 비율	231
〈표 6-8〉 비법인 상시근로자 1~4인 사업주와 근로자의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의향(희망) ..	233
〈표 6-9〉 현행 고용보험 보험 신고·자격 관리	235
〈표 6-10〉 농업부문 고용보험 보험 신고·자격 관리 개선(안)	244
〈표 6-11〉 현행 고용보험 보험료 산정	245
〈표 6-12〉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 보험료 및 월 실업급여	245
〈표 6-13〉 5분위 농가 월소득(2020)에 따른 월보험료와 월 실업급여액	246
〈표 6-14〉 농업부문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 보험료 및 월 실업급여 개선 방안	246
〈표 6-15〉 농업부문 고용보험 보험료 산정 개선(안)	247
〈표 6-16〉 현행 고용보험 보험 급여	249
〈표 6-17〉 자영업자의 비자발적 폐업 사유	250
〈표 6-18〉 자영업자의 비자발적 폐업 사유 증빙 서류	251
〈표 6-19〉 농업 일용근로자 평균 고용기간	252
〈표 6-20〉 농업회계프로그램 현황	253
〈표 6-21〉 농업부문 고용보험 보험급여 개선(안)	255

〈표 6-22〉 농업부문 고용보험 적용 확대 및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사항 정리·요약 …	256
〈표 6-23〉 1안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 미가입 규모 추산 ……………	259
〈표 6-24〉 2안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 미가입 규모 추산 ……………	260
〈표 6-25〉 3안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 미가입 규모 추산 ……………	260
〈표 6-26〉 1안에 따른 고용보험 지원 대상 규모와 지원 예산 최대 규모 ……………	262
〈표 6-27〉 2안에 따른 고용보험 지원 대상 규모와 지원 예산 최대 규모 ……………	262
〈표 6-28〉 3안에 따른 고용보험 지원 대상 규모와 지원 예산 최대 규모 ……………	263

제1장

〈그림 1-1〉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추진 방향 3

제2장

〈그림 2-1〉 농림어업 비임금근로자 종사상 지위별 연령 비율 변화 26
 〈그림 2-2〉 농림어업 임금근로자 종사상 지위별 연령 비중 변화 33
 〈그림 2-3〉 농업법인 내국인 종사자 연령 비중 변화 34
 〈그림 2-4〉 농업부문 고용 형태 구분 47

제3장

〈그림 3-1〉 농림업 지역별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수(2020년 기준) 53
 〈그림 3-2〉 농림업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62
 〈그림 3-3〉 현행 농업부문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사각지대 도식화 69
 〈그림 3-4〉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보험료 부과 절차 85

제4장

〈그림 4-1〉 일용 근로자의 근로 월 103
 〈그림 4-2〉 평균 근로 월 151

제6장

〈그림 6-1〉 건설현장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241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1. 연구 배경과 필요성

- 2020년 5월 대통령은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 기초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함.
 - 실업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법적인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육아휴직 급여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 예술인,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대상으로 고용보험 의무 가입을 추진함.
 - 또한 법적으로는 근로자이지만, 고용보험 적용 예외 및 근로 확인 어려움 등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머무르는 근로자들¹⁾에 대해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해 나가기로 함.
- 후속 작업으로 정부는 2020년 12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하여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자영업자 및 기타 적용제외 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일차적으로 2020년 6월 9일 자로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를 신설하였고, 특례조항에서는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구직급여, 출산전후급여 등을 예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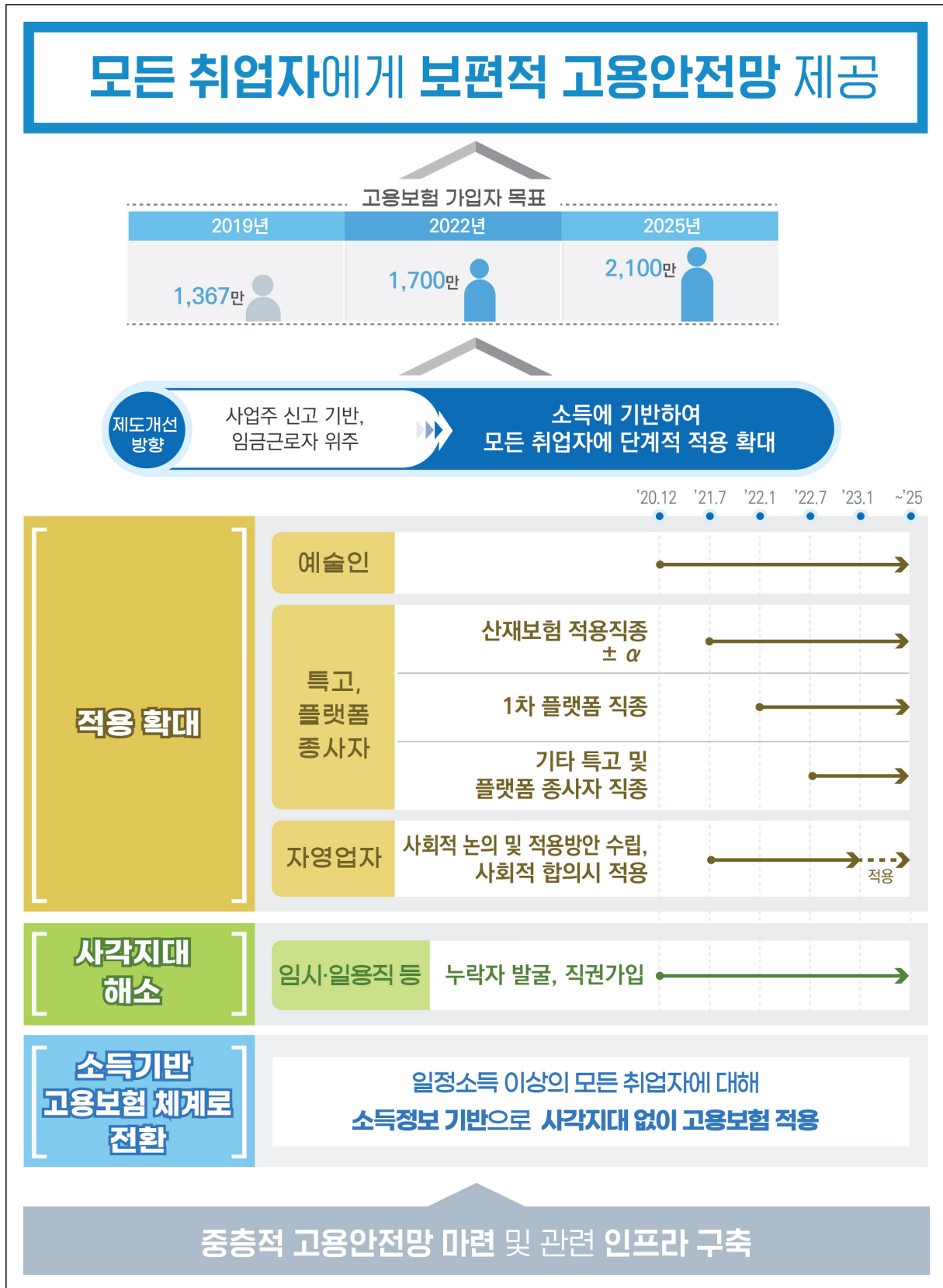
1) 2020년 현재 고용보험 대상은 1,300만 명이고 그 이외 약 1,500만 명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머무는 것으로 추정됨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2020년 5월 1일 정책 세미나 발표)

인의 고용 특징에 맞게 규정함. 제도의 안착을 위해 서면계약을 위한 문화예술용역 가이
드라인 마련, 온라인 계약서 작성 및 체결을 할 수 있는 문화예술용역 전자계약 플랫폼 마
련 계획을 하고 있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
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2020년 9월 국무회의에서 심
의·의결함. 12월에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단계로 2021년 7월 1일부터
12개 직종²⁾ 종사자에 대해 노무제공계약을 통해 얻은 월보수가 80만 원 이상인 자를 대
상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함. 2단계는 플랫폼 기반 사업체 중에 사업주를 특정하기 쉬운 직
종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적용을 계획하고 있으며, 3단계는 1단계와 2단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플랫폼종사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
로 하고 있음.
-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할 계획
임. 특히 1인 자영업자에 대한 가입을 추진하기로 발표하였고, 2022년 자영업자 고용보
험 적용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이지만, 이직·전직이 빈번하고, 근로 확인이 어려워 고용보험 가입
률이 낮았던 임금근로자에 대해 국세청 소득 자료를 활용하여 월 단위 소득 확인을 통해
2022년까지 고용보험 직권 가입을 추진함.
- 현재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과 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고
용보험 가입이 제외된 대상자의 고용보험 확대를 검토할 계획임. 현재 농업부문의 경우,
해당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비법인 4인 이하 사업장의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됨.
- 장기적으로 일정 소득 이상의 모든 취업자에 대해 소득 정보에 근거한 고용보험 적용을
통해 적용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2)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학교),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임.

〈그림 1-1〉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추진 방향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0: 5).

○ 현재 농업부문에 고용보험이 일부 적용되고 있음. 구체적으로 법인 근무 근로자와 비법인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³⁾ 5인 이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는 당연가입 대상으로 고용보험이 적용됨. 법인 운영 자영업자 중,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고용 사업장과 비법인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운영 자영업자(경영주)는 임의가입 형태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함. 그러나 비법인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와 해당 사업장 운영 자영업자(경영주)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 비법인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적용대상 제외이지만,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하면 임의가입 형태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함.
- 만약 비법인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위의 과정을 통해 고용보험에 임의가입 되었다면, 해당 사업장 운영 자영업자(경영주)도 고용보험 임의가입이 가능함.

〈표 1-1〉 현행 농업 부문 고용보험 적용 현황

구분		법인	비법인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피보험자: 근로자	내국인	당연가입 대상	당연가입 대상	적용대상 제외*
	외국인(고용허가제)	가입 대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희망 시 가입 가능(임의가입)		
피보험자: 자영업자(경영주)		임의가입 대상 (사업자등록증 필수)	임의가입 대상 (사업자등록증 필수)	적용대상 제외 **

주: * 4인 이하 상시 고용 비법인 사업장은 근로자 과반수 이상 동의가 있고, 이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하면 가입이 가능함.
 ** 4인 이하 상시 고용 비법인 사업장의 경영주는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함. 그러나 고용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어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하여 근로자 고용보험이 적용된 사업장의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이 가능함.
 자료: 엄진영 외(2021).

○ 원칙적으로 농업부문에 고용보험 가입이 당연가입·임의가입 형태로 적용 가능하지만, 현실은 농업 취업자⁴⁾들의 고용보험 가입은 매우 미미한 수준임.

- 농어업인 복지실태 조사(2018)에 근거하여 판단하면 농업 경영주의 고용보험 가입은 매

3)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의미는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의 근로자의 수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 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를 의미함. 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2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 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함. 그러나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가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는 고용보험 적용에 제외됨.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대상임(엄진영 외 2021).

4) 여기서 취업자는 경영주와 임금근로자를 모두 포함한 것을 의미함. 즉, 자영업자(경영주)와 임금근로자(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를 포괄하는 용어임.

우 낮을 것으로 예상됨.⁵⁾ 해당 조사의 보험 가입률에 따르면, 고용보험과 가장 비슷한 적용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산재보험 가입률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농어가 중 10.4%만 가입하는 것으로 나타남. 엄진영 외(2021)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고용원이 있는 농업 경영주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0%이었음.

- 농업부문의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은 법인에 고용된 근로자와 비법인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이지만,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2019년 8월 기준으로 각각 72.7%(총 응답자 수:55명), 19.2%(총 응답자 수: 78명), 2.8%(총 응답자 수:104명)이었음(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부가조사). 그러나 현실은 더 낮을 가능성이 많음. 동일한 항목에 대해 엄진영 외(2021)에서 실시한 농업법인 100곳의 근로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법인 근무 임시 및 상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38.6%이었음.

○ 농업부문 취업자들의 낮은 고용보험 가입률은 사업장의 폐업 및 실직 위험에 대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 취약함을 의미하고, 동시에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직업능력개발 및 재취업 지원 기반, 모성보호지원 등의 사회적 지원에서도 벗어나 있음을 의미함.

○ 더불어 농업부문 취업자들은 개인 단위에서도 폐업 및 실직 등의 위험에 대비한 경제적 대비도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이를 대비할 수 있는 수단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모두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임.

- 자영농의 경우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재해 등에 경제적 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한 비중은 평균 47.9%⁶⁾에 달함(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2018). 또한 자영농의 경우 폐업 시,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책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고용원이 없는 자영농은 3.0%(총 응답자 수:99명), 고용원이 있는 자영농은 6.1%(총 응답자 수: 81명)에 지나지 않음(엄진영 외 2021). 개인 수준에서도 경제적 대비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임금근로자의 경우도 실직 위험에 대한 경제적 대비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일용근로자의 경우 농사일에 고용되지 않은 실직 기간에 다른 일에 종사한다는 비중은 49.3%(총 응답자 수: 71명)에 지나지 않아, 약 절반의 근로자들은 실업 상태에 머무름. 농

⁵⁾ 참고로 농업 경영주의 고용보험 가입 관련 공식 통계는 없음. 고용보험 가입을 분석할 수 있는 공식 통계는 현재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가 유일하지만, 농업부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여부 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있어, 고용보험 가입을 알 수 없음. 농어업인 복지실태 조사에서도 고용보험 가입 설문조사 항목 자체가 없어, 실태를 알기 어려움.

⁶⁾ 연령대별로 분석하면, 30대 이하는 28.7%, 40대는 44.7%, 50대는 43.9%, 60대는 49.0%로 나타남.

업법인에 근무하는 임시 및 상용근로자 중, 실직을 겪은 근로자들의 생계유지 방법은 가족 중 다른 사람의 소득에 의존한다는 응답이 47.8%(총 응답자 수: 23명)로 나타나, 개인적인 대비도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보여줌(엄진영 외 2021).

-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조와 함께 농업부문 취업자들에게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 제공 측면에서 고용보험 적용 방안 연구가 필요한 시점임. 더불어, 농업부문의 고용보험 확대 및 도입은 청년 경영주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폐업 위험 대비 및 재취업 지원 기반, 모성보호 등의 안전망을 제공하는 측면에서도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또한 농업노동시장에서 임금근로자에게 실직과 재취업 기반 마련 등의 안전망을 제공함으로써 내국인 유입 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도 검토가 필요함.
- 하지만 농업 부문에 현재의 고용보험 체계를 직접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음. 따라서 농업부문의 고용환경 특성을 고려한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함.
 - 우선 피보험자가 근로자일 경우 첫째, 현행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자격 및 수급 요건이 농업 부문 고용환경에 부합한지 판단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일용근로자의 사업장 확인, 수급 요건 설정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⁷⁾ 둘째, 비법인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적용 제외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셋째, 일용근로자 고용 계약 원수급자에 따른 보험 인수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넷째, 구두 계약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서면 근로계약 환경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함.
 - 피보험자가 자영업자인 경우, 첫째, 사업체 확인 방법, 둘째, 상시근로자 0~4인 이하 사업체의 경영주(사업주)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대상 포함 여부 판단이 필요하며, 셋째, 자영업자의 수급 요건 설정 문제, 넷째, 현재 자영업자의 기준보수 기준 적용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농업 부문처럼 해당 산업 특성으로 현재의 고용보험 체계를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없었던 타 산업 부문 사례를 참고하면, 해당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고용보험 적용 관련 연구 및 논의는 짧게 몇 년부터 길게는 십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꾸준히 진행됨.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각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고용보험법」 내에 조항을 신설(예:건설업의 일용근로자)하거나,

⁷⁾ 본 과업에 포함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름. 자세한 내용은 6장 참고

「고용보험법」 특례조항을 신설(예: 예술업, 특수고용형태근로자)하여 고용보험을 적용함.

- 주로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예술인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임. 2012년 11월부터 「예술인 복지법」이 시행되었으나 그 한계로 인해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됨. 박근혜 정부는 2013년에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및 지원강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함. 문재인 정부는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에 관해 수차례 논의를 거쳐 2018년 발표한 ‘문화비전 2030’의 8대 핵심과제 중 예술인 복지 분야에서 ‘한국형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을 중·장기 문화정책 비전으로 선언함. 관련 법안 발의는 2016년 9월에 장석춘 의원이 예술인을 자영업자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대표발의한 법안과 2018년 11월에 한정애 의원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을 당연가입으로 고용보험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대표발의한 법안 등이 있음(엄진영·김부영 2020: 66-67).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법적 보호에 대한 논의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및 간접 고용 확대가 심화되면서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점차 본격화됨. 박근혜 정부는 2013년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으나 입법화하지 않음. 2016년 9월에 장석춘 의원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함.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에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 적용을 국정과제로 제시함. 앞서 언급했듯이 2018년 11월에 한정애 의원이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함(엄진영·김부영 2020: 70-72).

○ 하지만 농업부문의 고용보험 적용 관련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2020년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 발표로 언론에서 농업부문의 고용보험 도입 및 확대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임. 현재까지 농업부문 고용보험 관련 연구는 엄진영 외(2021)가 유일함.

- 엄진영 외(2021)에서는 고용보험법률의 내용, 고용보험 현황, 농업 분야의 고용특징과 이에 따른 고용보험 확대 및 도입 필요성, 적용 시 쟁점 등에 대한 논의를 했지만, 농업 부문의 고용보험을 어떤 대상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어지지 못하였음.

○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에 맞추어 농업부문 취업자에게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고, 농업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내국 인력 유입 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향후 연구가 지속될 필요가 있음.

1.2. 연구 목적

- 농업분야의 고용환경, 노동환경 분석을 통한 농업 분야의 특성과 정책 당사자들의 수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농업 취업자의 고용보험 적용 대상 및 적용 방안을 제시함. 이를 위한 분석의 기초자료가 될 농업경영주와 근로자 대상 설문조사를 설계함.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농업 부문 고용보험 적용 방향 검토의 기초자료가 될 농업경영주와 근로자 대상 설문조사를 설계함.
 - 둘째, 관련 통계 및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업 부문의 고용보험 적용 시 쟁점을 도출함.
 - 셋째, 고용보험 적용대상과 적용 방안을 제시함.

2. 연구 내용 및 방법

2.1. 연구 내용

□ 농업부문 노동시장 환경과 특성

○ 노동 공급자 측면

- 취업자(경영주, 임금근로자) 규모 변화를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로 분석하고, 소분류 기준 취업자 수 변화를 분석함. 더불어 농업 법인 근로자 수 변화를 분석함.
- 공급자 측면에서의 노동시장 환경과 특성을 분석함. 고령화에 따른 임금근로자 및 고용노동력의 증가현상을 분석하고, 임금근로자 노동환경이 어떠한지 기존 연구 및 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함.

○ 노동 수요자 측면

- 농가의 경우 품목별, 농업법인은 사업유형별로 전체 사업장 수를 분석함.
- 노동 수요자 측면에서 근로자의 구인 경로와 임금근로자와 농업 경영주(사업주) 간의 고용관계에 특징을 분석함.

- 농업법인자료, 고용보험 DB원자료를 통해 농림업 부문 농림업 가입 사업장 수 변화와 가입 근로자 수 변화, 실업급여 지급액 변화 등을 분석함.
-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고용보험의 적용 가능 사업장 및 적용 사업장 현황과 변화 등을 분석함.

□ 농업부문 고용보험 적용 실태

○ 농업부문 고용보험 적용 개요

- 현재 농업부문 고용보험제도 적용 현황을 서술함.

○ 농업부문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실태

- 고용보험 DB원자료를 바탕으로 가입 사업장 수를 지역별로 분석함.

○ 농업부문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현황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수를 사업체 종사자 규모별,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분석함.

○ 농업부문 고용보험 적용 사각지대

- 현재 고용보험이 농업부문에 적용됨에도 사각지대가 어디에서 발생하고 있는지를 제시함.

○ 타 부문 고용보험 적용 사례

- 타 부문의 고용보험 적용 논의와 사례의 진행 과정을 자세하게 제시함.

○ 2장과 3장에서 사용한 통계의 내용과 장, 단점은 아래 <표 1-2>과 같음.

<표 1-2> 활용 통계 내용과 장, 단점

통계명	수집주체	공개여부	연도	장점	단점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산업대분류 까지만 공개	1986~2020	-월별, 연간 국내 농업 노동력 변화 파악 가능 -영농활동 시작 시기에 따른 노동력 규모 파악 가능	-농업, 임업, 어업 분리 불가능 -표본에서 농업부문에 포함된 내국인, 외국인 구분 불가능, 외국인 포함 비율은 매우 미미할 것으로 유추 -영농형태 분석 불가능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8월	통계청	산업대분류 까지만 공개	2001~2020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에 관한 조사 -근로자 입장에서의 고용 및 노무환경 일부 파악 가능	-농업, 임업, 어업 분리 불가능 -농림어업부문 근로자 전체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음.

(계속)

통계명	수집주체	공개여부	연도	장점	단점
					-고용 및 노무환경 전반을 파악하기에는 통계 조사 항목의 한계가 있음.
농업법인 통계조사	농림축산식품부	공개	2000~2019 *일부통계는 2018~2019에만 가능	-품목별 법인수, 운영주체, 종사자 수, 근로자의 종사상 지위, 재배면적, 경영실태 등 파악 가능	-사업장의 보험 가입 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없음
농업총조사	통계청	공개	2000~2015 *2020년 자료는 올해 공개 예정	-농업면적, 작목 등 농업 관련 정보와 농업고용(상시, 임시) 간의 개략적 관계 파악 가능 -외국인 상시, 임시 고용 파악 가능	-월별, 연간 농업 노동력 파악 불가능
고용보험 DB원자료 *해당기관 협조 필요	고용노동부	비공개	2007~2021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한 정형통계 년도 기준임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의 산업 규모 별 사업장 현황,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련 현황,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현황, 출산전후휴가급여 지원 현황 파악 가능	-공개된 자료(정형통계)에는 농림어업 분리가 안 됨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대한 정보만 취득할 수 있어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어, 한계가 있음
지역별 고용조사	통계청	공개	2003~2020	-산업별 취업자 수, 직종, 임금 등을 조사함 -농업부문 중분류, 세세분류 기준 취업자 수 분석 가능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보완적으로 활용	-사회보험가입 등의 자료 기간이 한정적임. 2017년 이후 조사되지 않음.

* 연도는 노동력 관련 데이터가 수집된 시점을 의미하고, 원자료 사용 가능한 연도를 고려한다.

□ 농업 고용환경 및 근로 실태조사

○ 조사 개요와 조사 방법

- 표본 추출 방법, 설문조사 내용, 설문조사 방식(방문조사, 전화, 우편, 이메일) 등을 설계함. 고용보험 적용은 피보험자의 종사상 지위에 따라 차이가 나므로 농업경영주(자영농, 법인, 개인사업체)와 임금근로자를 구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함.
- 농업경영주는 농가, 농업법인, 농업관련 사업체로 구분하고, 각 집단별로 조사함. 임금근로자는 농가 취업 근로자, 농업법인 취업 근로자, 농업 관련 사업체 취업 근로자로 구분하여 각 집단별로 조사함.
- 설문조사 항목(안)은 공통적으로는 응답자의 인구·경제학적 항목, 주·부업 및 겸업 여부, 고용계약 및 노무 제공 관련 실태, 고용보험 인지도 및 가입 여부, 사회보험 가입 실태, 실업 위험 대비 여부, 고용보험 가입 의향 등을 조사함.
- 각 집단별로는 농업경영주(자영농, 법인)의 경우, 휴·폐업 관련 항목 등을 추가로 설계하며,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수 및 시간, 근로계약 여부·농작업 인력 계약 형태(도급, 파견, 직업 알선·소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로 설계함.

- 일차적으로 설문조사 내용을 분석하며, 고용보험 적용 확대 및 도입 시 쟁점 및 범위 설정, 적용 방안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함.

○ 농업경영주(사업주) 실태조사 분석 결과

- 농업경영주(사업주) 실태조사 분석 결과는 농가 경영주, 농업 법인 사업주, 농업 관련 사업체 사업주로 구분하여 제시함.

○ 근로자 실태조사 분석 결과

- 근로자 실태조사 결과 분석 결과는 농가 취업 근로자, 농업법인 취업 근로자, 농업 관련 사업체 취업 근로자로 구분하여 제시함.

□ 농업부문 고용보험 적용 확대 및 도입 시 쟁점

○ ‘피보험자: 농업경영주(자영농, 법인)’ 고용보험 적용 확대 및 도입 시 쟁점

- [범위 설정 원칙] 현재의 고용보험 체계에서는 비법인 고용 상시근로자 수 4인 이하 자영업자(농업 경영주)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비법인 상시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고, 이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준다는 측면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또는 당연가입) 확대 여부 논의가 필요함. 확대 여부에 관한 논의 다음에는 고용보험이 적용 가능한지 아래에서 서술된 피보험자관리, 보험료 산정, 보험급여 측면에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 [피보험자관리] 비법인일 경우, 사업장관리번호 부여 및 폐업 확인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필수적 요건임. 그러나 비법인의 사업자등록율은 낮은 상황임.
- [보험료 산정] 현재 고용보험 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보수를 농업 부문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함.
- [보험급여] 현재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수급 요건을 갖춘 비법인의 비율은 낮은 상황임. 비자발적 폐업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들이 현재 농업부문에서는 미비하거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서류들임.⁸⁾ 자영업자 고용보험 수급 요건에 필요한 항목과 서류들을 농업부문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⁸⁾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6장 참고. 해당 서류는 매출액 감소 증빙 관련 서류, FTA 피해에 따른 폐업 관련 서류, 대규모 자연재해로 폐업한 경우의 서류임.

○ ‘피보험자: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 및 도입 시 쟁점

- [범위 설정 원칙] 비법인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고용 사업체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대상 제외를 임의가입 또는 당연가입 형태로 확대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함. 현재는 일정 조건 하에서 적용대상 제외라도 임의가입으로 하고 있으나, 별도의 신청과정을 거쳐야 함. 물론 이 경우에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처럼 아래에서 서술된 피보험자관리, 보험 급여 등에 서의 논의가 함께 필요함.
- [피보험자관리] 첫째, 고용된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관계 신고를 위한 사업장관리번호 부여시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하나, 비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율은 낮음. 둘째, 고용관계를 확인하고 증명하는 서면계약이 낮아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가 어려움. 특히 농업부문 일용근로자에 부합한 근로내역확인 신고서 및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은 현재 따로 존재하지 않음. 현재 건설업 부문에서는 건설업 특성에 맞게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역확인 신고서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마련하고 있음. 건설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양식을 농업부문에서도 그대로 차용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⁹⁾ 더불어 사업주 보험 가입 회피 시, 근로자가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을 공단에 직접 요청할 수 있으나, 이때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작성(고용계약서, 임금내역서 등) 비율이 매우 낮아, 고용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움. 셋째, 고용계약 관계 파악과 이에 따른 보험 가입 사업주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함. 넷째, 농작업 재하도급의 경우 서면계약에 따른 보험 인수가 현재로서는 불가능함.
- [보험급여] 임금근로자의 공통적인 수급 요건은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유지해야 함. 이의 조건이 농업부문 근로자의 고용 특성에 부합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농업부문 고용보험 적용 범위 설정(적용 대상) 및 적용 방안

○ 농업부문 고용보험 적용 범위 설정(적용 대상) 기준(안)

- 자영업자 고용보험, 근로자 고용보험으로 구분하여 적용 범위(적용 대상) 설정 기준(안)을 제시함. 범위 설정 기준(안)은 앞서 언급된 쟁점을 고려하여 제시함.¹⁰⁾
- 범위(적용 대상) 설정 기준(안)과 관련하여 정책 대상자의 고용보험 필요성 등을 고려함.

9) 자세한 내용은 6장 참고

10) 6장 1절에서 제시함.

○ 농업부문 고용보험 적용 방안 제시

- 고용보험 적용 방안도 마찬가지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근로자 고용보험으로 구분하고 범위 설정 기준(안)을 고려하여 해당 대상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안)을 제시함.
- 적용 방안 제시에 있어, 농업 부문 특성에 부합하면서 쟁점을 고려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 농업부문 고용보험료 지원 시, 필요 예산 규모 추계

- 농업부문 고용보험 미가입 규모를 추계하고, 고용보험료 지원 기준에 따른 필요 예산 규모를 추계함.

2.2. 연구 방법

○ 문헌 연구 및 자료 수집·분석

○ 설문조사 실시

- 설문조사 대상과 회수 부수

구분	설문조사 대상	회수 부수
농업 법인	· 고용주	200명
	· 근로자	200명
농업 관련 사업체	· 고용주 대상	300명
	· 근로자	201명
농가	· 고용주(농업 경영주)	351명
	· 근로자	200명

자료: 저자 작성

○ 현장 면담 및 사전 설문조사 실시

-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인 농가 경영주, 법인 사업주, 농업 관련 사업체 사업주, 농업 인력 업체 대표와 면담 조사 및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함.

구분	내용
2021년 7월	담양군 노지 채소·과수 농가 경영주 면담 및 사전 설문조사 -설계된 설문 문항과 관련된 사전 설문조사 실시
2021년 7월	영광군 축산 농가 경영주 면담 및 사전 설문조사 -설계된 설문 문항과 관련된 사전 설문조사 실시

(계속)

구분	내용
2021년 7월	강진군 시설 과수 농가 경영주 면담 및 사전 설문조사 -설계된 설문 문항과 관련된 사전 설문조사 실시
2021년 7월	인력업체 대표 면담 및 사전 설문조사 -설계된 설문 문항과 관련된 사전 설문조사 실시
2021년 7월	농업법인 대표 면담 및 사전 설문조사 -설계된 설문 문항과 관련된 사전 설문조사 실시
2021년 8월	한국농업유통법인 중앙연합회 담당자 면담 및 사전 설문조사 -설계된 설문 문항과 관련된 사전 설문조사 실시

자료: 저자 작성

○ 전문가 협의회 및 의견 수렴

- 설문 관련 내용 및 주요 연구 내용에 대해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관련 의견을 수렴함.

구분	내용
2021년 5월	착수보고회 및 전문가 의견 수렴 - 주요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등에 대한 의견 수렴 - 농림축산식품부 정아름 과장, 농림축산식품부 최재웅 서기관, 고용노동부 박수영 사무관, 한국노동연구원 오상봉 연구위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흥준 교수, 서울교육기술대학교 장신철 교수, 연구진 3명
2021년 7월	전문가 협의회 - 설문 관련 논의 및 의견 수렴 - 한국노동연구원 오상봉 연구위원, 서울기술교육대학교 장신철 교수, 연구진 3명
2021년 7월	연구협의회 - 설문 설계 및 문항 관련 구두보고 및 협의 - 농림축산식품부 정아름 과장, 연구진 2명(엄진영 연구위원, 임소영 연구위원)
2021년 8월	전문가 협의회 -설문 관련 논의 및 의견 수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내 전문가 김미복 연구위원, 연구진 3명
2021년 8월	전문가 협의회 -설문 관련 논의 및 의견 수렴 -오내원 박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미복 연구위원, 연구진 3명
2021년 8월	연구협의회 - 설문 설계 및 문항 관련 보고 및 협의 - 농림축산식품부 최재웅 서기관, R&R리서치 김한솔 팀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엄진영 연구위원

주: 발주처(농림축산식품부)와 유선 및 이메일로 협의한 내용은 제외함.

자료: 저자 작성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 농업부문 고용보험 적용 확대 및 도입과 관련한 국내의 연구 동향은 현재까지 엄진영 외(2021)를 제외하고 관련 연구가 존재하지 않음. 농업부문의 고용보험은 연구가 먼저 시작되었다기보다 2020년 전국민 고용보험 발표로 인해 언론에서 농업부문에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어 왔음.
 - 농업부문에서는 연구가 거의 진행되고 있지 못하지만, 고용보험의 일반적인 적용이 어려운 타 산업 부문(건설업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도입,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용보험 확대, 예술인 고용보험 특례, 특수근로형태종사자 고용보험 가입 등)에서는 각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고용보험 적용 및 확대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됨.
 - 농업을 포함한 일부 산업에서 특성을 고려한 고용보험법 적용 관련 연구 동향은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관련 연구, 자영업자 고용보험 도입 관련 연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도입 관련 연구,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실태 및 개선방안 관련 연구로 구분할 수 있음(엄진영 외 2021).
-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관련 연구
- 예술인 고용보험은 특례조항으로 2020년 고용보험법에 포함되었으나, 관련 연구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음. 관련한 연구를 종합하면, 예술인 고용보험 기초연구,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부문 관련 연구, 예술인 고용보험 세부 적용 방안 연구로 구분할 수 있음.
 - 예술인 고용보험 기초 연구로 안주엽·황준욱(2014), 서우석·이경원(2019), 노성준(2020) 등을 들 수 있음. 안주엽·황준욱(2014)은 고용보험의 예술인 적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용보험 적용 대상 예술인의 정의, 가입 방식, 보험료율, 구직급여 등을 검토하였음. 연구 결과, 공연과 영상 분야에 종사하는 예술인만 당연가입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그 밖의 예술인은 실업부조를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연구 당시의 실업급여 보험료율인 1.3%를 적용하고, 기준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은 각각 18개월과 180일 또는 12개월과 120일로 설정하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음. 서우석·이경원(2019)은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과 관련한 해결 과제로 예술계의 하청 및 제도

급 관계, 사업주 확정, 취약한 수익 구조, 예술인 노동의 불명확성 및 불안전성, 예술계와 예술인의 복수 용역계약 체결과 겸업을 제기하였음. 노성준(2020)은 고용보험 적용 안착을 위해서는 제도의 홍보와 공감대 형성, 서면계약 활성화, 표준계약서 보완, 행정 지원, 관련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였음.

-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부문과 관련한 연구로는 양혜원 외(2018), 정미경(2020) 연구를 들 수 있음. 양혜원 외(2018)의 연구에서는 영화, 뮤지컬, 연극 분야에 한정하여 예술인 고용보험 대상이 되는 예술인의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였음. 정미경(2020)은 예술인 고용보험을 콘텐츠 분야에 도입하기 위해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이 가능한 콘텐츠산업의 영역과 콘텐츠산업 종사자의 노무 제공 형태를 분석하여, 다단계 계약 구조로 인한 노무제공자와 사업주 간 지위 중복, 노무제공자와 사업자 간의 관계 확인, 사용자 지정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음.
- 전병유 외(2019) 연구에서는 적용대상, 적용 방법, 보험료 산정 및 부과 방안, 실업급여 지급 방안, 출산휴가급여 지급 방안 등 각 사안별로 쟁점을 설정하고 세부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음. 신규 예술인과 경력단절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누락 가능성이 있으므로 규정을 통해 보호할 것을 주장하였고, 용역계약서 문화 정착, 소득 적용 제외 기준 설정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음.

□ 자영업자 고용보험 도입 관련 연구

○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도입한 산업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 도입은 가장 역사가 오래 됨. 다양한 부문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초기에는 도입 필요성, 시행령 개정에 필요했던 구체적인 방안(고용보험요율, 자영업자의 소득 수준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됨. 이후,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 확대 방안 연구, 해외 자영업자 고용보험 연구 등이 진행되고 있음.

- 이승렬·박찬임(2008) 연구에서는 고용보험 제도가 필요한지를 규명하고, 고용보험 제도의 제반 프로그램의 적용 필요성을 분석하였음. 영세자영업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이나 구직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생계 활동 중단에 따른 소득 감소를 보전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자영업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참가율과 임의가입이 가능한 고용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원인이 되었음을 언급하였음. 노화봉 외(2010) 연구는 고용보험 시행령 개정 작업에 필요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요율, 자영업자의 소득 수준,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제한 등을 분석하였음.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요율은 1.5%, 1.8%, 2.0%를 부과하는 방안

을 비교·분석하였고, 기준 소득 수준을 월평균 182만 원으로 설정하고, 비자발적 폐업을 규정하였음.

- 전순옥(2014), 김수환·감형규(2017), 박충렬(2020) 등의 연구에서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은 원인을 분석하고, 가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자영업자 지원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 제도 홍보 강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1인 소상공인의 보험료 지원료 사업을 기준보수와 관계없이 지원하는 방안과 고용보험료 지원 비율을 높이는 방안 등을 제시함.
- 해외 자영업자 고용보험 사례 연구로는 오상호(2019)와 이경희(2018a)는 독일 사례를, 이경희(2018b)는 오스트리아 사례를, 박제성·양승엽·신수정(2018) 연구에서는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의 사례를, 최영준(2009) 연구에서는 영국의 사례를, 신수정(2019)은 이탈리아의 고용보험을 연구하였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도입 관련 연구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방식에 대한 연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 시 쟁점이 되는 근로자 개념 설정과 적용 방안에 대해 연구가 진행되어 옴.

- 이호근(2008), 이주하(2018) 연구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개념에 초점을 두고 분석함. 더불어 고용보험 적용 방식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였음. 공통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개념을 준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당연가입 방안 추진과 함께 기준임금에 따른 보험료 적용을 제시하였음. 그러나 윤애림(2019)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를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직접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은 적용 대상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임의성으로 인해 오분류의 가능성을 제기하며, 새로운 기준 필요성을 언급하였음.
- 윤조덕·이지은(2008) 연구에서는 6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에서의 고용보험 도입에 대한 수요도를 조사하고 적용방안을 제시하였고, 이병희(2018)에서는 전속성에 따라 고용보험의 단계적 적용을 주장하였음.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실태 및 개선 방안 관련 연구

○ 일용근로자에 대한 연구는 주로 건설업 일용근로자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음. 최근의 연구에서는 현재의 고용보험 적용 실태를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방하남(2008) 연구에서는 건설업 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음. 이 연구에서는 건설 공사의 특징을 제시하며, 건설업 일용직의 고용 특성을 고려하여 실업급여에 대한 신청 및 인정 기준과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행정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음. 또한 고용보험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건설업의 고용 관행과 인력 관리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음.
- 이성균(2010) 연구에서는 건설업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실태 파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영세사업체 또는 팀반장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고 일당과 사회보험료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제시하였음. 이 연구에서는 고용보험 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건설업 일용직의 고용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일거리가 단속적인 노동 형태에 맞추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음.

□ 농업부문 고용보험 도입 관련 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농업부문 고용보험 도입 관련 연구는 엄진영 외(2020) 이외에는 진행되고 있지 못함.
 - 엄진영 외(2020)에서는 농업부문의 고용보험 확대 및 도입 필요성, 도입 또는 확대 시 고려할 점을 제시하였음. 그러나 엄진영 외(2020)에서는 앞서 언급한 대로 적용 대상과 적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음.
-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고 향후 지속적 논의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정책 대상자인 농업 경영주, 농업 법인 운영자, 임금근로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범위, 정책 대상자들의 정책 수요 및 수용가능성 등을 고려한 적용 방안 등을 논의함.

2

농업부문 노동시장 환경과 특성¹¹⁾

1. 노동 공급자 측면

1.1. 취업자 수 변화

- 농업 부문의 취업자 수는 2010년 1,251천 명에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가 2018년 이후¹²⁾ 다시 증가함.
 - 농업부문 취업자 수는 2010년 1,251천 명에서 2012년 1,194천 명으로 감소하였지만, 2014년에 1,602천 명으로 증가하였음. 그러나 이후 2016년 1,420명으로 감소하였음.
 - 하지만 감소 추세는 다시 증가 추세로 이어져 2018년 1,492천 명, 2020년 1,574천 명으로 증가하였음.

- 임금근로자¹³⁾와 비임금근로자¹⁴⁾를 구분하여 증감을 분석하면, 경제활동인구조사 농림어업

11) 통계청의 산업별 전체 취업자 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역별 고용조사 등을 통해 제시함. 각 산업별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의 수치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통계 자료로 전체 산업의 취업자 수를 분석할 수 있음. 여기서 말하는 취업자 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서 정의하는 농업인의 정의에 따른 취업자 수를 의미하지 않음.

12) 정확히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역별고용조사의 통계 결과를 분석하면, 2017년 하반기 이후 농림어업 취업자 수가 증가하였음.

13) 임금근로자는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를 합한 개념임. 여기서 일용근로자의 의미는 1개월 미만 고용 근로자, 임시근로자는 1개월 이상~1년 미만 고용 근로자, 상용근로자는 1년 이상의 근로자를 의미함. 이는 해당 통계의 취업자 분류 기준이며, 각 종사상 지위별 근로자 수를 분석하는 데 활용함.

14) 비임금근로자에 해당하는 유형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임. 고용원이 있

부문 취업자 수의 증가 및 감소 방향으로 비슷하게 움직이지만, 최근 2020년에는 이러한 경향이 바뀌어 임금근로자는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비임금근로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의 농업 부문 취업자 수 증가는 비임금근로자 증가가 견인한 것으로 판단됨.

- 임금근로자는 2010년 146천 명에서 2012년 118천 명으로 감소했으나, 2014년 145천 명으로 증가하였음. 하지만 이후 감소하다 2018년 140천 명으로 증가한 뒤로 2020년 127천 명으로 감소하였음.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2014년 26천 명에서 2018년 29천 명, 2020년 35천 명으로 증가 추세를 이어감. 그러나 임시·일용근로자는 2014년 119천 명에서 2020년 92천 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함. 임시·일용근로자의 급격한 감소는 일용근로자의 급격한 감소로 발생함.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농림어업부문 임시근로자 수는 증가하지만, 일용근로자 수는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임(〈표 2-3〉).
- 비임금근로자는 2010년 1,105천 명에서 2014년 1,457천 명으로 증가하다가 이후 2016년 1,290천 명으로 감소한 후, 2018년 이후 1,352천 명, 2020년 1,447천 명으로 증가 추세로 나타남.

〈표 2-1〉 농업 부문 종사상 지위별 평균 취업자 수 변화(2010~2020)

단위: 천 명

구분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임금근로자	상용근로자	146	118	145	26	20	29
	임시·일용근로자				119	110	111
비임금근로자		1,105	1,076	1,457	1,290	1,352	1,447
계		1,251	1,194	1,602	1,420	1,492	1,574

주 1) 분기 자료 중, 분기 말 수치임.

2) 비임금근로자 수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의 합계임.

자료: 통계청(각 연도). 지역별 고용조사.

○ 농업 소분류 기준¹⁵⁾ 작물재배업 취업자 수 변화는 농업부문 취업자 수 변화와 비슷한 추세를 나타내고, 축산업 취업자 수 변화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최근 2018년 이후 증가 추세를 나타남.

는 자영업자는 한사람 이상의 유급 고용원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사업 규모에 상관없이 임금을 주는 종업원을 채용하고 있는 경우가 해당됨.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자기 책임 하의 독립적인 형태로 일이 수행되며 유급 종업원 없이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일을 하는 사람을 의미함(통계청, 통계별질문, http://www.kostat.go.kr/understand/info/info_qst/1/index.board?bmode=read&bSeq=&aSeq=161839&pageNo=17&rowNum=15&navCount=10&currPg=&sTarget=title&sTxt= 검색일: 2022년 2월 1일)

15) 소분류 기준이라 함은 농업(중분류)에서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업+축산업, 관련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것을 말함.

- 작물재배업 취업자 수는 2010년 995천 명에서 2014년 1,427천 명으로 증가하였고, 이후 2016년 1,259천 명으로 감소하였음. 그러나 2018년 이후 1,307천 명으로 증가한 후, 2020년 1,374천 명으로 증가하였음.
 - 축산업 취업자 수는 2010년 160천 명에서 2016년 80천 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한 뒤, 2018년 이후 90천 명, 2020년 100천 명으로 증가하였음.
 - 작물과 축산업에 모두 종사하거나, 작물재배업 및 축산업 관련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취업자 수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작물재배업 및 축산업 관련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취업자 수는 2010년 9천 명에서 2020년 10천 명으로 증가하였음.
- 농업 소분류 기준과 성별로 구분하면, 축산업은 작물재배업에 비해 남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작물재배업의 남성과 여성 비율은 최저 53.6%(2014년)에서 최고 58.4%(2010년)로 나타나, 작물재배업의 취업자 성별 비율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 축산업 취업자의 성별 비율은 작물재배업과 달리 남성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남. 남성 비율은 2010년 68.7%에서 2012년 74.1%로 증가한 후 72.5~73.6%를 유지하고 있음.
 - 작물재배업 및 축산업 관련서비스업도 축산업과 마찬가지로 남성 비율이 높게 나타나 최저 70%(2020년)에서 최고 81.8%(2014년)로 나타남.
- 농업부문 전체 취업자 대부분은 작물재배업에 종사하고, 대부분의 여성도 작물재배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2〉 농업 소분류기준 및 성별 취업자 수 변화(2010~2020)

단위: 천 명

구분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작물재배업	남성	581	573	765	690	718	791
	여성	414	404	662	569	589	583
	계	995	977	1,427	1,259	1,307	1,374
축산업	남성	110	92	64	58	65	73
	여성	50	32	24	23	25	27
	계	160	124	87	80	90	100
작물+축산업	남성	0	1	0	0	1	0
	여성	0	0	0	0	0	0
	계	0	1	0	0	1	0

(계속)

구분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관련서비스업	남성	7	7	9	6	7	7
	여성	2	2	2	2	2	3
	계	9	9	11	8	9	10

주: 분기 자료 중, 분기 말 수치임.
 자료: 통계청(각 연도). 지역별 고용조사.

○ <표 2-3>에서 나타난 것처럼 농업부문 취업자 대부분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가운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함. 특히 농업부문 취업자 수가 증가한 2017년 이후의 자료를 분석하면 해당 취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음.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2017년 787.8천 명에서 2018년 801.3천 명, 2019년 821.5천 명으로 2017년 이후 증가 추세임.
- 무급가족종사자도 2017년 이후 증가 추세로 2017년 322.6천 명에서 2018년 358.4천 명, 2019년 385.1천 명으로 증가하였음.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017년 38.7천 명에서 2018년 49.4천 명, 2019년 61.2천 명으로 증가하였음.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와 임시근로자는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일용근로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상용근로자는 2017년 28.6천 명에서 2018년 33.4천 명으로 2019년 33.8천 명으로 증가하였고, 임시근로자는 동일 연도에 32.8천 명에서 35.6천 명, 39.6천 명으로 증가하였음.
- 일용근로자는 2017년 68.1천 명에서 2018년 62.0천 명, 2019년 53.6천 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남.¹⁶⁾

¹⁶⁾ 이 통계는 외국인 일용근로자는 거의 포함되지 않은 값임. 따라서 농업에서 고용된 내국인과 외국인을 모두 포함한 일용근로자 전체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고 단언할 수 없으며,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가 일용근로자로 현재 고용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전체 규모가 감소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표 2-3〉 농림어업 종사상 지위별 평균 취업자 수 변화(2017~2019)

단위: 천 명

구분	2017	2018	2019
상용근로자	28.6	33.4	33.8
임시근로자	32.8	35.6	39.6
일용근로자	68.1	62.0	53.6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38.7	49.4	61.2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787.8	801.3	821.5
무급가족종사자	322.6	358.4	385.1
계	1,278.6	1,340.2	1,394.9

주: 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각 연도) 원자료 분석.

○ 농업법인 취업한 근로자 수는 전체 농업부문 취업자 수에 포함됨. 최근 농업법인 수와 농업 법인에 속한 근로자 수의 증가가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통계를 분석하면 아래 〈표 2-4〉와 같음.

- 농업법인 수는 2010년 8,361개에서 2014년 15,043개, 2018년 21,780개, 2020년 23,315개로 연평균 10.8% 증가하였음.
- 농업법인에 속한 상시종사자 수는 2010년 41,742명에서 2014년 82,932명, 2020년 112,644명으로 연평균 10.4% 증가하였음.
- 농업법인에 취업한 임시 및 일용근로자 수는 2010년 18,376명에서 2020년 47,604명으로 연평균 1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외국인 근로자 수는 2010년 2,563명에서 2020년 9,649명으로 연평균 1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내국인 종사자 수는 법인이 증가함에 따라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4〉 농업법인 법인수와 종사상 지위별 평균 취업자 수 변화(2010~2020)

단위: 개, 명, %

구분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2010~2020 연평균 변화율
법인 수	8,361	11,747	15,043	18,088	21,780	23,315	10.8%
상시 종사자	41,742	60,364	82,932	97,815	102,905	112,644	10.4%
임시·일용근로자	18,376	19,373	19,364	24,450	46,288	47,604	10.0%
외국인 근로자	2,563	3,177	4,389	8,646	9,218	9,649	14.2%
내국인 종사자수 합계	60,118	79,737	102,296	122,265	149,192	160,249	10.3%

주: 상시종사자는 상근출자자와 상용근로자 수를 합한 개념임.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업법인조사.

- 농업법인의 사업유형별, 종사상 지위별 평균 취업자 수를 구분하면, 가장 많은 수의 내국인 근로자가 취업한 법인 유형은 작물재배업, 농축산물유통업, 농축산물가공업 형태로 나타남.
- 작물재배업 농업법인의 내국인 상시 종사자 수는 2019년 기준 26,254명, 임시 및 일용근로자는 22,038명으로 가장 많은 수의 근로자가 취업하고 있는 법인 유형으로 나타남. 특히 임시 및 일용근로 형태의 근로자가 가장 많이 취업하고 있는 법인 유형임.
 - 농축산물 유통업의 내국인 상시 종사자 수는 2019년 기준 33,824명, 임시 및 일용근로자는 11,600명으로 작물재배업 다음으로 근로자 수가 많은 법인 유형임. 작물재배업에 비해 상시 종사자 수 대비 임시 및 일용근로자 비율이 낮지만, 다른 법인 유형과 비교하면, 여전히 임시 및 일용근로자 비율이 높은 법인 유형임.
 - 농축산물 가공업의 내국인 상시 종사자 수는 2019년 기준 31,119명, 임시 및 일용근로자는 9,475명으로 작물재배업, 농축산물 유통업 다음으로 근로자가 많이 근무하는 법인임. 그러나 작물재배업과 농축산물 유통업 법인과 달리 상시종사자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농업서비스업과 축산업 농업법인의 경우, 법인 수와 종사자 수가 적지만, 농축산물 가공업과 마찬가지로 상시 종사자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내국인 근로자 중 농업법인에 취업한 임시 및 일용근로자는 작물재배업, 농축산물 유통업 법인에 많이 고용되어 있고, 상시종사자 비율이 높은 법인 유형은 농축산물 가공업, 축산업, 농업서비스업으로 나타남.

〈표 2-5〉 농업법인 사업유형별·종사상 지위별 평균 취업자 수 변화(2018~2019)

단위: 개, 명

구분		2018년	2019년	구분		2018년	2019년
작물 재배업	법인 수	5,756	6,687	축산업	법인 수	1,416	1,453
	상시 종사자	21,324	26,254		상시 종사자	9,708	9,806
	임시·일용근로자	17,677	22,038		임시·일용근로자	1,099	1,494
	외국인 근로자	2,852	2,883		외국인 근로자	1,078	1,403
농축산물 가공업	법인 수	4,517	4,927	농축산물 유통업	법인 수	6,737	7,215
	상시 종사자	27,990	31,119		상시 종사자	31,948	33,824
	임시·일용근로자	9,145	9,475		임시·일용근로자	14,444	11,600
	외국인 근로자	1,285	2,025		외국인 근로자	3,812	3,105
농업 서비스업	법인 수	771	598	농어촌 관광휴양 사업	법인 수	890	888
	상시 종사자	2,632	2,120		상시 종사자	2,907	3,409
	임시·일용근로자	625	407		임시·일용근로자	1,352	1,571
	외국인 근로자	46	34		외국인 근로자	32	47

(계속)

구분		2018년	2019년	구분	2018년	2019년
기타 사업	법인 수	1,693	1,547			
	상시 종사자	6,396	6,113			
	임시·일용근로자	1,947	1,020			
	외국인 근로자	112	150			

주: 상시종사자는 상근출자자와 상용근로자 수를 합한 개념임.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업법인조사.

1.2. 공급자 측면 노동시장 환경과 특성

1.2.1. 고령화에 따른 농업노동시장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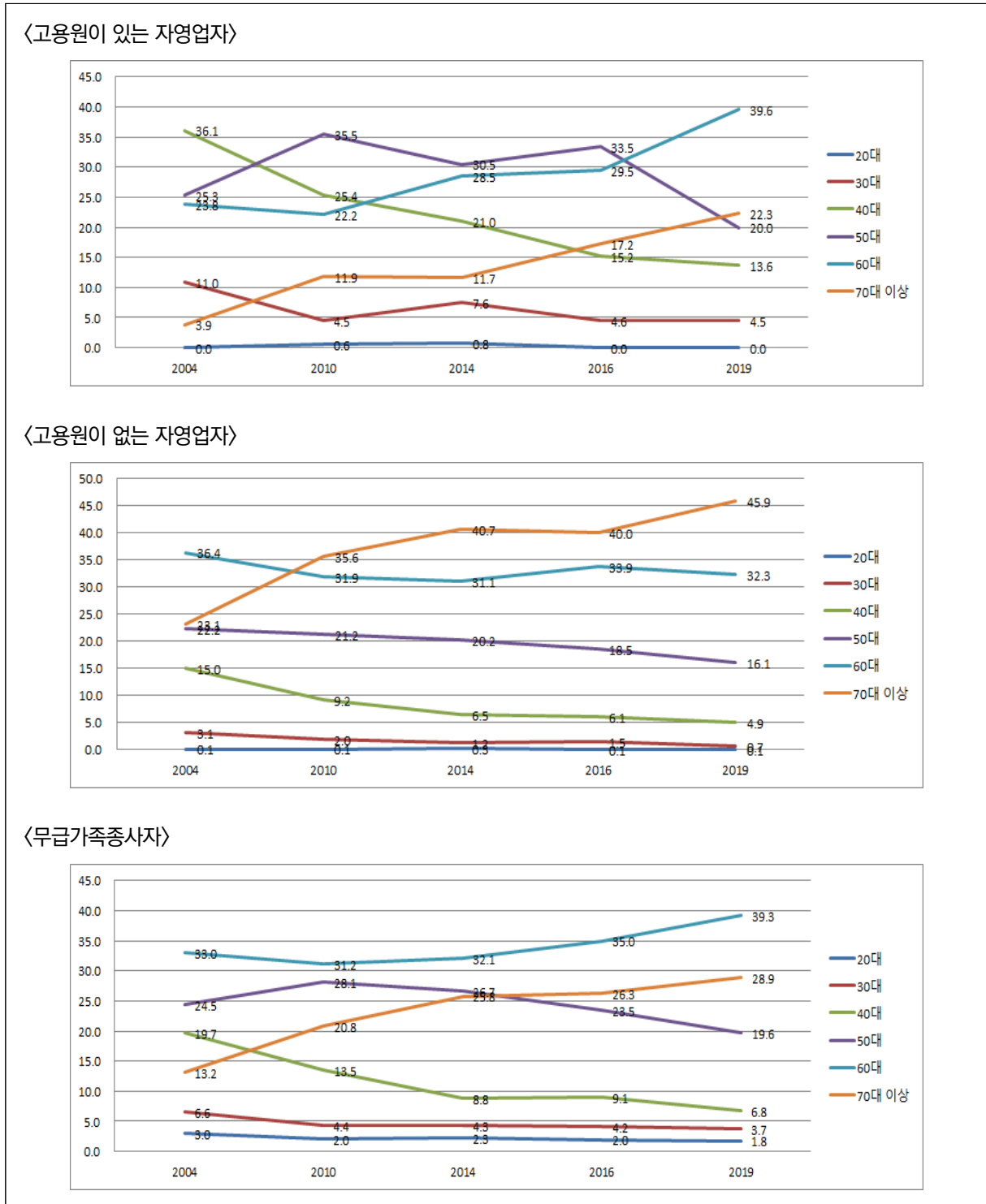
○ 농업부문 취업자가 증가한 2017년 이후의 비임금근로자의 주 연령대를 분석하면, 대부분 60대, 70세 이상으로 나타나, 고령화된 것을 알 수 있음. 특히 농업부문 취업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연령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연령 비율은 70세 이상 연령 집단 비율 증가가 가장 높게 나타남. 2019년 기준, 70대 이상의 비율이 45.9%로 나타남. 또한 60대 비율은 32.3%로, 60세 이상은 전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78.2%로 나타나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고령 자영업자의 비율이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음.
- 무급가족종사자는 60대 비율이 가장 높은 가운데 60대와 70세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반해 50대와 40대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40대와 50대의 감소는 자영업자의 고령화와 함께 생각할 수 있음. 즉, 신규 농가(자영업자) 유입이 고령화 현상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규모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무급가족종사자의 연령대도 40대와 50대의 비율이 낮게 나타남. 또한 다른 이유로는 겸업농가 증가와 연관됨. 청년, 중장년 농가에서의 겸업농가 증가는 가족 구성원 중 농업 이외 부문에서의 취업활동이 점차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청년, 중장년 농가에서의 무급가족종사자 비율은 점차 감소할 수밖에 없음.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004년과 2010년에는 40대와 50대 비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이후 40대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60대와 70대 비율이 점차 증가하여, 2019년에는 60대와 70대의 비율이 50대와 40대 비율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남.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고령화는 가족 내 노동력으로 영농활동을 수행하기 점차 어려운 상황임을 의미함. 즉, 가족 외부 노동력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는 것을 의미함.

〈그림 2-1〉 농림어업 비임금근로자 종사상 지위별 연령 비율 변화

단위: %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분석, 각 연도.

자료: 업진영 외(2021: 89).

- 농축산물 소득조사 자료집을 통해 세부 품목별로 단위당 생산에 필요한 연간 평균 노동시간과 고용노동력 비중을 분석하면, 앞서 언급한 대로 고용노동력(임금근로자) 투입 비중은 대부분의 품목에서 증가하고 있어 가족 외부 노동력의 의존도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음.
- 노지 채소는 노지수박, 가을무, 고랭지 무, 당근, 봄배추, 가을배추, 고랭지배추, 노지 시금치, 양배추, 대파, 쪽파, 생강으로 구성되어 있음. 고용노동력 투입 비중은 고랭지 무와 당근, 가을배추, 대파, 생강을 제외하고 점차 증가함.
 - 2019년 기준으로 고용노동력 투입 비중이 가장 높은 품목은 당근으로 전체 노동력 투입 비중의 65.6%를 차지함.
 - 이외의 다른 노지채소 품목도 투입 비중 차이는 있지만, 10a당 생산에 필요한 고용노동력 투입 비중이 26.1~65.6%로 나타남. 즉, 노지채소의 경우, 10a당 생산에 필요한 노동력의 약 26.1%에서 65.6%는 임금근로자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함.
- 노지 채소 중, 10a당 연간 전체 노동투입 시간이 100시간이 넘는 품목은 노지시금치, 생강으로 나타남.
 - 노지채소 중 상대적으로 노동집약도가 높은 품목임을 의미함. 해당 품목의 전체 노동시간 변화는 2017년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지만, 2019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2-6〉 노지 채소 단위당(10a) 연간 평균 노동시간과 고용노동력 투입 비중

단위: %, 시간

항목		2003년	2013년	2017년	2019년
노지수박	고용노동력 비중(%)	26.2	24.4	43.6	49.3
	전체 노동시간(hr)	110.5	125.2	78.3	90.8
가을무	고용노동력 비중(%)	31.7	24.1	19.8	32.8
	전체 노동시간(hr)	71.5	61.9	57.5	83.9
고랭지 무	고용노동력 비중(%)	39.7	42.5	63.9	44.6
	전체 노동시간(hr)	57.9	43.3	28.5	46.2
당근	고용노동력 비중(%)	39.8	61.3	70.4	65.6
	전체 노동시간(hr)	92.6	82.6	84.7	96
봄배추	고용노동력 비중(%)	30.4	30.5	36.5	38.0
	전체 노동시간(hr)	89.1	57.0	49.9	49.2
가을배추	고용노동력 비중(%)	25.3	26.0	30.6	26.1
	전체 노동시간(hr)	88.0	68.8	70.5	61.3

(계속)

항목		2003년	2013년	2017년	2019년
고령지배추	고용노동력 비중(%)	50.0	43.6	47.2	47.7
	전체 노동시간(hr)	45.8	53.4	50.4	50.3
노지시금치	고용노동력 비중(%)		19.7	11.9	25.3
	전체 노동시간(hr)		152.9	125.0	156
양배추	고용노동력 비중(%)	37.8	27.5	33.6	47.6
	전체 노동시간(hr)	83.9	48.7	57.1	62.4
대파	고용노동력 비중(%)	44.6	37.8	45.9	40.6
	전체 노동시간(hr)	190.9	105.2	89.6	83.4
쪽파	고용노동력 비중(%)	38.3	36.9	26.4	28.2
	전체 노동시간(hr)	122.7	139.2	94.6	122.3
생강	고용노동력 비중(%)	35.8	43.4	48.7	45.7
	전체 노동시간(hr)	101.7	147.5	122.5	153.3

주 1) 고용노동력 비중은 고용노동력 시간/전체 노동시간으로 저자가 계산함.

2) 고용노동력 시간과 전체 노동시간 모두 농축산물 소득조사 자료집에 있음. 해당 수치로 주1에서 설명한 계산식으로 고용노동력 비중을 계산함.

자료: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소득조사, 2003년, 2013년, 2017년, 2019년

○ 시설채소는 수박, 시설참외, 오이(촉성, 반촉성, 억제), 시설호박, 방울토마토, 시설가지, 시설 부추 품목에서 단위당 생산에 필요한 고용노동력 투입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시설채소 중, 단위당 생산에 필요한 고용노동력 투입 비중이 가장 높은 품목은 파프리카로, 노동력 중 고용노동력 투입 비중은 65.9%이었음.

- 이외 품목의 고용노동력 투입 비중은 17.4%에서 65.9% 범위에서 나타남.

○ 시설채소는 노지 채소에 비해 연간 단위당(10a) 투입되는 노동시간이 평균적으로 높게 나타남. 동일 면적에서 생산한다고 할 때 시설채소에서의 노동력 수요가 노지채소에 비해 높다는 것을 의미함.

〈표 2-7〉 시설 채소 단위당(10a) 연간 평균 노동시간과 고용노동력 투입 비중

단위: %, 시간

항목		2003년	2013년	2017년	2019년
수박 (반촉성)	고용노동력 비중(%)	17.9	26.2	25.9	26.3
	전체 노동시간(hr)	217.3	139.9	113.4	118.4
시설참외	고용노동력 비중(%)	9.1	8.8	12.3	17.4
	전체 노동시간(hr)	439.9	384.8	322.3	305
딸기(촉성)	고용노동력 비중(%)	32.6	29.1	31.0	30.5
	전체 노동시간(hr)	711.1	608.2	609.3	601.6

(계속)

항목		2003년	2013년	2017년	2019년
오이(촉성)	고용노동력 비중(%)	23.0	18.7	21.1	22.3
	전체 노동시간(hr)	838.4	726.9	820.5	664.1
오이(반촉성)	고용노동력 비중(%)	15.3	14.7	20.4	25.5
	전체 노동시간(hr)	683.1	498.9	437.2	371.7
오이(억제)	고용노동력 비중(%)		9.9	17.2	17.6
	전체 노동시간(hr)		354.8	227.4	300.4
시설호박	고용노동력 비중(%)	14.9	10.8	18.2	27.8
	전체 노동시간(hr)	419.5	449.3	327.7	371.8
토마토(촉성)	고용노동력 비중(%)	17.3	39.4	43.3	42.0
	전체 노동시간(hr)	491.2	690.9	661.3	565.3
토마토(반촉성)	고용노동력 비중(%)	21.8	23.0	35.5	30.8
	전체 노동시간(hr)	505.5	435.6	432.7	412.5
방울토마토	고용노동력 비중(%)	25.3	34.2	41.0	43.0
	전체 노동시간(hr)	652.1	440.1	456.6	453.8
시설가지	고용노동력 비중(%)		38.0	32.5	33.9
	전체 노동시간(hr)		408.3	498.5	567.8
파프리카	고용노동력 비중(%)		65.1	67.2	65.9
	전체 노동시간(hr)		538.7	606.3	536.6
시설시금치	고용노동력 비중(%)	49.7	57.2	57.7	44.4
	전체 노동시간(hr)	211.8	137.0	79.6	109.3
시설상추	고용노동력 비중(%)	48.3	50.4	47.9	38.7
	전체 노동시간(hr)	628.8	472.2	347.7	372.3
시설부추	고용노동력 비중(%)		52.0	43.9	45.4
	전체 노동시간(hr)		470.0	391.7	370.4
시설고추	고용노동력 비중(%)	26.3	36.9	37.0	32.2
	전체 노동시간(hr)	788.1	582.3	465.2	370.9

주 1) 고용노동력 비중은 고용노동력 시간/전체 노동시간으로 저자가 계산함.

2) 고용노동력 시간과 전체 노동시간 모두 농축산물 소득조사 자료집에 있음. 해당 수치로 주1에서 설명한 계산식으로 고용노동력 비중을 계산함.

자료: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소득조사, 2003년, 2013년, 2017년, 2019년

○ 노지 과수의 단위당 생산에 필요한 고용노동력 투입 비중은 2003~2013년 사이에는 전반적으로 증가하였고, 사과, 배, 복숭아를 제외하고, 2017년에 감소하였다가 2019년 증가하였다.

- 노지 과수에서 단위당 생산에 필요한 고용노동력 투입 비중은 2019년 기준 단감에서 39.3%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다음으로는 노지감귤로 전체 노동력 투입 시간 중 36.9%는 고용노동력 투입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동일 연도에 노지포도와 복숭아, 참다래(키위)는 고용노동력 투입 비중이 20% 이하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음.

〈표 2-8〉 노지 과수 단위당(10a) 연간 평균 노동시간과 고용노동력 비중

단위: %, 시간

항목		2003년	2013년	2017년	2019년
사과	고용노동력 비중(%)	34.1	34.7	33.7	34.8
	전체 노동시간(hr)	162.4	145.8	146.1	161
배	고용노동력 비중(%)	29.9	29.4	31.5	33.7
	전체 노동시간(hr)	200.3	148.5	181.0	169.8
복숭아	고용노동력 비중(%)	20.7	15.7	15.9	16.1
	전체 노동시간(hr)	197.4	162.8	161.1	172.5
노지포도	고용노동력 비중(%)	14.6	18.6	16.7	17.9
	전체 노동시간(hr)	239.4	210.2	190.8	237.2
노지감귤	고용노동력 비중(%)	31.2	34.1	27.3	36.9
	전체 노동시간(hr)	115.1	120.0	117.7	120
단감	고용노동력 비중(%)	31.2	34.1	27.3	39.3
	전체 노동시간(hr)	115.1	120.0	117.7	111.8
참다래(키위)	고용노동력 비중(%)	31.2	34.1	27.3	18.7
	전체 노동시간(hr)	115.1	120.0	117.7	123.3

주 1) 고용노동력 비중은 고용노동력 시간/전체 노동시간으로 저자가 계산함.

2) 고용노동력 시간과 전체 노동시간 모두 농축산물 소득조사 자료집에 있음. 해당 수치로 주1에서 설명한 계산식으로 고용노동력 비중을 계산함.

자료: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소득조사, 2003년, 2013년, 2017년, 2019년

○ 시설포도의 단위당 생산에 필요한 고용노동력 투입 비중은 2003년 14.3%에서 2013년 13.3%, 2017년 12.8%, 2019년 14.3% 로 노지과수에 비해 고용노동력 투입 비중이 평균적으로 낮게 나타남.

〈표 2-9〉 시설 과수 단위당(10a) 연간 평균 노동시간과 고용노동력 비중

단위: %, 시간

항목		2003년	2013년	2017년	2019년
시설포도	고용노동력 비중(%)	14.3	13.3	12.8	14.3
	전체 노동시간(hr)	339.1	203.2	169.0	240.7

주 1) 고용노동력 비중은 고용노동력 시간/전체 노동시간으로 저자가 계산함.

2) 고용노동력 시간과 전체 노동시간 모두 농축산물 소득조사 자료집에 있음. 해당 수치로 주1에서 설명한 계산식으로 고용노동력 비중을 계산함.

자료: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소득조사, 2003년, 2013년, 2017년, 2019년

○ 화훼 단위당 생산에 필요한 평균 노동시간 중 고용노동력 비중은 조사 기간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시설국화의 고용노동력 투입 비중은 2017년 기준 33.3%, 시설장미는 2017년 32.1%, 2019년 41.3%로 나타남. 시설 포도보다 고용노동력 투입 비중은 높게 나타남.

〈표 2-10〉 화훼 단위당(10a) 연간 평균 노동시간과 고용노동력 비중

단위: %, 시간

항목		2003년	2013년	2017년	2019년
시설국화	고용노동력 비중(%)		29.6	33.3	-
	전체 노동시간(hr)		504.2	481.3	-
시설장미	고용노동력 비중(%)		30.3	32.1	41.3
	전체 노동시간(hr)		624.3	724.1	849.5

주 1) 고용노동력 비중은 고용노동력 시간/전체 노동시간으로 저자가 계산함.

2) 고용노동력 시간과 전체 노동시간 모두 농축산물 소득조사 자료집에 있음. 해당 수치로 주1에서 설명한 계산식으로 고용노동력 비중을 계산함.

자료: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소득조사, 2003년, 2013년, 2017년, 2019년

○ 특용·약용 품목의 단위당 생산에 투입되는 고용노동력 비중은 참깨와 인삼(4년근)을 제외하고 평균적으로 증가하였다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용·약용 품목 중, 인삼(4년근)에서 단위당 생산에 투입되는 고용노동력 비중이 2019년 기준 58.7%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전체 노동시간에서도 가장 높게 나타남. 인삼(4년근)이 특용·약용 품목에서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품목임을 알 수 있음.
- 엽연초는 고용노동력 투입 비중이 2013년 41.2%로 높게 나타났지만, 2017년 31.9%로 감소함.
- 참깨는 고용노동력 투입 비중과 전체 노동시간이 특용·약용작물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오미자는 2013~2017년 기간 동안 고용노동력 투입 비중이 27.3%에서 27.8%로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된 이후, 2019년 16.0%로 감소함.

〈표 2-11〉 특용·약용 단위당(10a) 연간 평균 노동시간과 고용노동력 비중

단위: %, 시간

항목		2003년	2013년	2017년	2019년
참깨	고용노동력 비중(%)		14.4	11.3	10.0
	전체 노동시간(hr)		76.2	48.8	66.3
엽연초	고용노동력 비중(%)	33.4	41.2	31.9	-
	전체 노동시간(hr)	164.8	94.1	101.5	-
인삼(4년근)	고용노동력 비중(%)	43.8	56.6	55.1	58.7
	전체 노동시간(hr)	462.1	208.8	209.6	188.1
오미자	고용노동력 비중(%)		27.3	27.8	16.0
	전체 노동시간(hr)		179.6	174.7	125.9

주 1) 고용노동력 비중은 고용노동력 시간/전체 노동시간으로 저자가 계산함.

2) 고용노동력 시간과 전체 노동시간 모두 농축산물 소득조사 자료집에 있음. 해당 수치로 주1에서 설명한 계산식으로 고용노동력 비중을 계산함.

자료: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소득조사, 2003년, 2013년, 2017년, 2019년

- 대부분의 세부 품목 단위당 생산에 필요한 전체 노동시간은 감소하는 경향과 더불어 고용노동력 투입 비중은 몇 가지 품목을 제외하고 증가하는 추세임. 농가 수의 감소에 따른 전체 농업노동력 규모의 감소 및 기계화에 따른 노동력 절감 효과가 분명 존재하지만, 기계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음.
- 고용노동력 투입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는 향후 지속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됨. 그 이유는 앞서 분석한 대로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급격한 고령화는 가족 이외의 외부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게 됨. 또한 기계화에 따른 노동력 대체는 여전히 한계가 있기 때문임. 특히 발작물에서 노동력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정식과 수확기의 기계화율은 매우 낮은 수준임.
 - 발작물 중 노동력 투입이 상대적으로 높은 마늘, 무, 배추, 고추와 양파의 기계화율은 <표 2-12>에서 보듯이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음.

〈표 2-12〉 주요 발작물의 기계화율

품목	파종·정식 기계화율	수확 기계화율
마늘	16.1%	39.2%
무, 배추, 고추	0%	0%
양파	11.5%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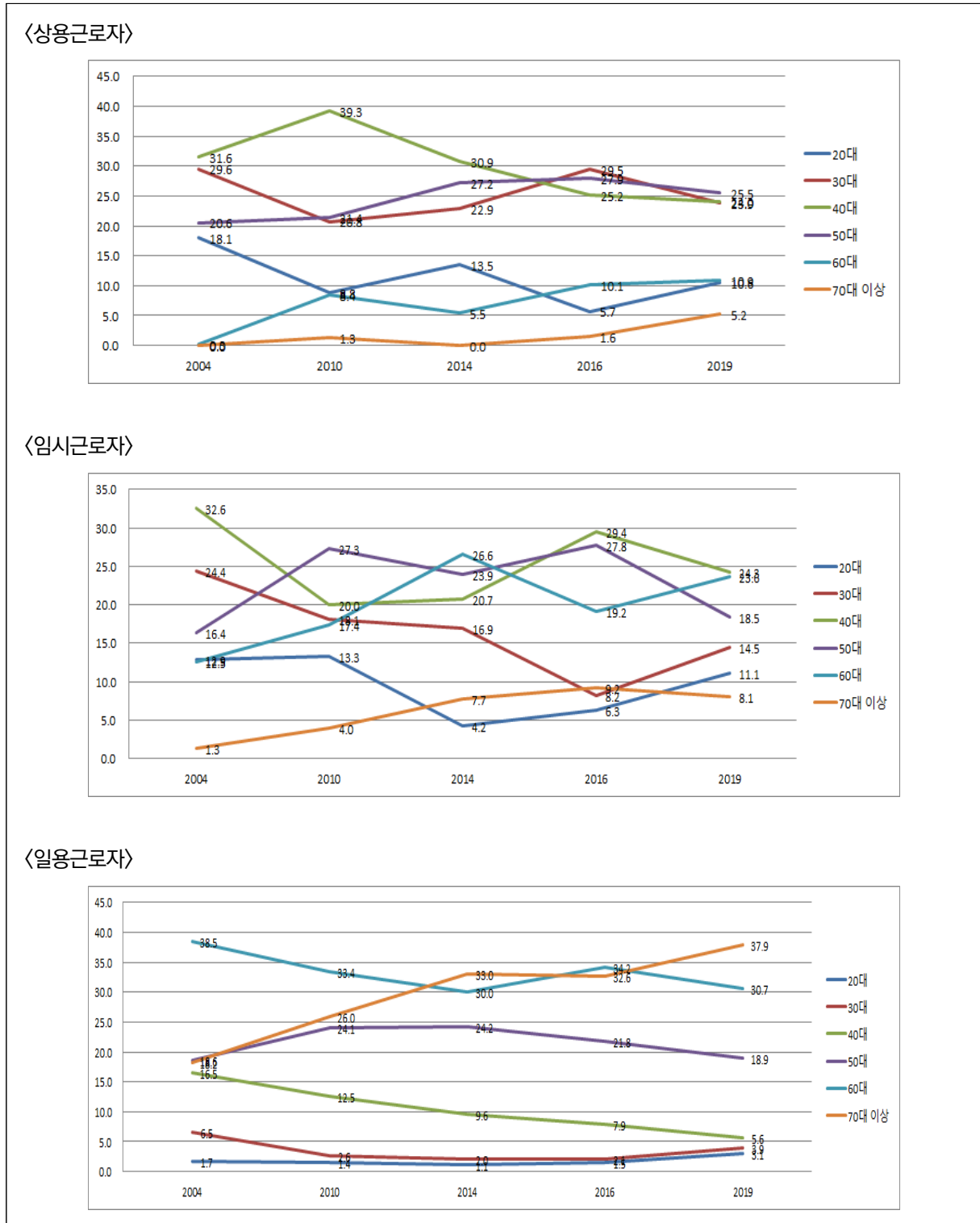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KOSIS.

- 농림어업 부문 근로자의 고용 형태 중 다수를 차지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와 마찬가지로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음.
 - 2004년 이후 70세 이상의 연령 집단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19년 일용근로자 중 37.9%는 70세 이상으로 나타남. 그다음으로 많은 일용근로자의 연령대는 60대로 30.7%로 나타나, 60대 이상의 근로자가 68.6%를 차지함.
 - 50대 일용근로자는 2010년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9년 18.9%로 나타남.
- 많은 수의 농가와 농업법인이 필요한 노동력 형태인 일용근로자의 고령화는 내국인 청년, 중장년층의 유입이 증가하지 않는 이상 향후 내국인 일용근로자 공급 어려움은 심화될 가능성이 높음.
- 이에 반해 상용근로자와 임시근로자의 70대와 60대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 청년, 중장년

층의 농림어업부문 임금근로자는 상용근로자 또는 임시근로자 형태로 노동력을 공급하는 것을 알 수 있음(엄진영 외 2021).

〈그림 2-2〉 농림어업 임금근로자 종사상 지위별 연령 비중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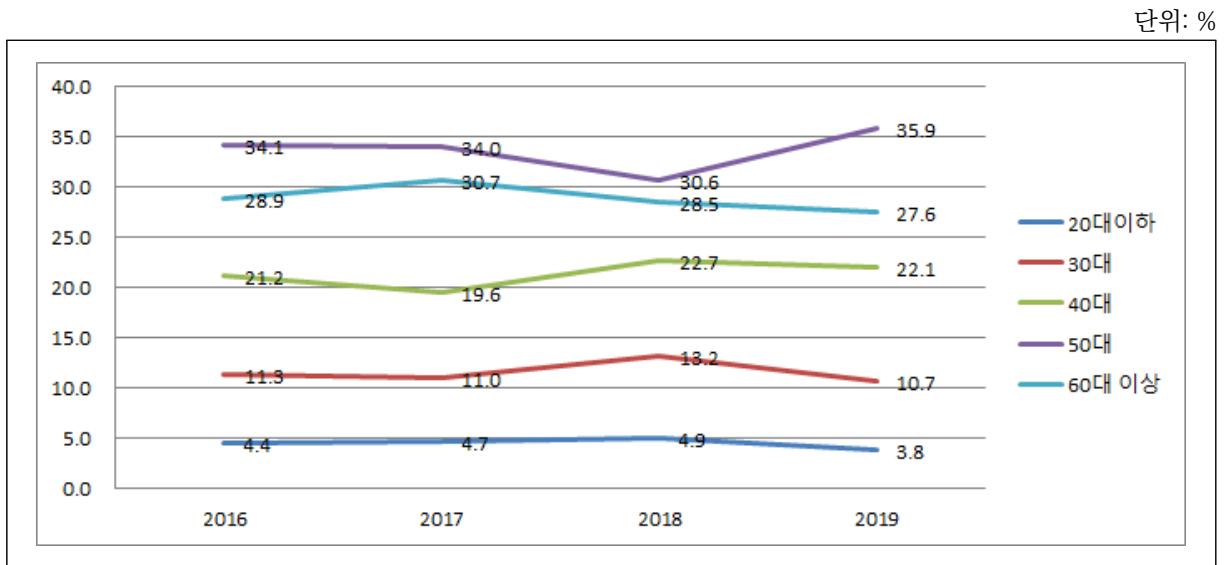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분석. 각 연도; 엄진영 외(재인용). 2021. p. 91.

○ 농업법인의 내국인 근로자의 연령대는 5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다음으로 60대 이상, 40대, 30대, 20대 순서로 나타남.

- 2019년 기준으로 농업법인에 취업한 근로자 중 35.9%는 50대, 27.6%는 60대 이상, 22.1%는 40대인 것으로 나타남. 30대는 10.7%, 20대는 3.8%로 나타남.

〈그림 2-3〉 농업법인 내국인 종사자 연령 비중 변화



주: 상시종사자(상근출자자+상용근로자), 임시·일용근로자를 모두 합한 내국인 근로자들의 연령 비중 변화임.
 자료: 통계청, KOSIS.

○ 내국인 청년, 중장년층이 상용 및 임시근로자로 취업하고 있음에도 농업법인과 농가의 내국인 근로자 고용의 한계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일용근로자는 노동력 고령화와 근로자 부족이 최근 외국인 근로자에 의한 노동력 공급을 더욱 확대하고 있음(엄진영 외 2021).

- 엄진영 외(2020)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농가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 중 외국인 근로자 비율은 64.2%이었음.
 - 농업법인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수는 2010년 2,563명에서 2020년 9,649명으로 연평균 14.2% 증가함(통계청, KOSIS).

○ 그러나 많은 수의 외국인 근로자는 미등록 외국인으로 현장에서는 해당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남.

- 외국인 근로자만 고용한 농가의 85.0%는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였으며, 내국인

과 외국인 근로자를 함께 고용하고 있는 농가의 94.9%가 미등록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으로 나타남(엄진영 외 2020).

1.2.2. 임금근로자 노동환경

○ 농업 부문의 임금근로자들은 하루 평균 8~10시간 미만(작물재배업 농번기 기준), 10~12시간 미만(축산업) 근무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남.

〈표 2-13〉 농업 부문 일 평균 임금근로자 노동시간(2019~2020년 기준)

단위: %, 명

구분		8시간 미만	8~10시간 미만	10~12시간 미만	12시간 이상	응답 수
작물재배	농한기	32.5	58.4	9.1	0	77
	농번기	13.8	78.1	8.1	0	123
축산		0	0	96.5	3.5	143

주 1) 노동시간은 설문조사에서 일 시작하는 시간과 마치는 시간의 차이에, 점심시간과 휴게시간을 고려한 값임. 참고로, 점심시간으로 1시간, 휴게시간으로 1시간을 차감함.

2) 내국인, 외국인 구분 없이 조사함. 설문에 앞서 조사한 현장 면접조사에서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설문 문항에서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 근로시간을 구분 짓지 않음.

3) 주 1) 2)의 설명은 해당 연구(엄진영 외(2020))에서의 설명 내용임.

4) 작물재배 세세 품목(예시: 배추, 무, 당근, 파, 쪽파 등)은 해당 연구에서 조사하지 않음.

5) 농번기와 농한기는 설문응답자가 구분하여 해당 설문조사에 응답하도록 함.

자료: 엄진영 외(2020)

○ 내국인 임금근로자 임금은 축산업이 작물재배업보다 높았고, 남성이 여성에 비해 임금이 높게 나타남.

- 2019년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축산업 근로자는 월평균 257.3만 원, 작물재배업 임시 및 상용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남성의 경우 190만 원~193.4만 원, 여성은 153.2만 원~160만 원이었음.

- 작물재배업 남성 일용근로자는 농번기에 일평균 11.5만 원을, 여성은 8.3만 원의 임금을 받았고, 농한기에는 각각 11.1만 원과 8.0만 원을 받았음.¹⁷⁾

17) 엄진영 외(2020)에서 언급했듯이, 남성의 임금이 여성보다 높은 이유는 성별 차별에 따른 결과이기보다는 남성과 여성이 맡는 업무의 노동 강도가 다르기 때문임. 남성은 대부분 노동의 강도가 높은 일, 예를 들면 하우스 철거 작업, 상하차 작업등을 주로 하고, 여성은 이보다는 힘을 덜 쓰는 일, 즉, 노동의 강도가 남성에 비해 낮은 일, 예를 들면, 농작물 따기, 풀뽑기 등의 업무를 주로 맡기 때문에 임금의 차이가 나타남.

〈표 2-14〉 농업 부문 품목별·종사상지위별 내국인 임금근로자 평균 임금(일당)(2019년 기준)

단위: 만 원

구분		작물재배업		축산업
		남성	여성	
일용근로자	농번기	11.5	8.3	해당 없음
	농한기	11.1	8.0	
임시 및 상용근로자	최대	193.4	153.2	257.3
	최소	190.0	160.0	

주: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임시는 1개월 이상 근로자를 의미함.

자료: 업진영 외(2020); 업진영 외(2021)

○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사용자(고용주)와 근로계약을 작성하는 비율이 상용근로자를 제외하고 매우 낮게 나타남.

- 상용근로자 중 70.9%의 근로자는 사용자(고용주)와 근로계약을 맺었으나, 임시근로자는 전체 임시근로자 대비 26.9%만 근로계약을 작성하였고, 일용근로자의 고용계약서 작성 비율은 4.8%에 지나지 않았음.

〈표 2-15〉 농림어업 임금근로자 근로계약 작성 여부(2019년)

단위: %, 명

구분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함	70.9	26.9	4.8
총 응답 수	55	78	104

주: 가중치값을 적용하지 않은 표본 값임.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각 연도) 8월 부가조사; 업진영 외(재인용). 2021.

○ 농림어업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전반적으로 매우 낮았음. 2014년 이후 가입률은 증가하였으나, 증가 폭은 매우 적었음.

- 국민연금 가입률은 2014년 16.6%에서 2015년 17.3%, 2016년 17.5%, 2017년 17.1%로 2014년 대비 0.4~0.9%p 증가하였지만, 증가폭이 매우 적어 여전히 가입률은 낮음을 알 수 있음.
- 건강보험 가입률도 2014년 19%에서 2017년 20%로 1%p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건강보험 가입률도 낮은 상황임을 알 수 있음.
- 고용보험 가입률은 2014년 16.8%에서 2015년 18.5%, 2016년 19.6%, 2017년 18.5%로 2014년 대비 1.7~2.8%p 증가하였음. 그러나 전체 근로자 대비 가입률은 낮은 상황임.

〈표 2-16〉 농림어업 임금근로자 사회보험 가입률¹⁸⁾

단위: %, 천 명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국민연금 가입률	16.6	17.3	17.5	17.1
건강보험 가입률	19.0	19.8	18.7	20.0
고용보험 가입률	16.8	18.5	19.6	18.5
총 응답 수	145	136	123	124

주: 지역별고용조사 통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https://www.narastat.kr/metasvc/index.do?orgId=101&confmNo=101067&kosisYn=Y> 참고. 조사 대상은 표본가구 내에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 가구원임. 표본가구는 인구주택총조사 지역을 표본추출틀로 사용하여 선정함.

자료: 통계청(각 연도) 지역별고용조사.

○ 농림어업 임금근로자의 임금 지급 업체 비율을 분석하면, 대부분 직장(일한 곳)에서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응답함. 파견업체 및 용역업체에서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 중 2.6%에서 3.7%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직장(일한 곳)에서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이유는 해당 설문조사에 임시 및 상용근로자가 다수 포함되었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됨. 고령자를 제외한 많은 수의 내국인은 임시 및 상용근로자로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임시 및 상용근로자는 인력소개소 등의 알선·소개를 통해 농가가 직접 고용하는 형태임.
- 더불어 농가와 계약재배 및 포전매매 계약 등을 통해 업무를 도급받는 업체에 속한 근로자가 해당 설문조사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비율이 낮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음.
- 다른 이유로는 파견업체 또는 용역업체 형태로 농가에 근로자를 공급하는 비공식 인력소개소에 소속된 근로자 대부분이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임을 고려하면(엄진영 외 2020), 아래 표에서 이러한 파견업체와 용역업체의 근로자 대부분이 포함되지 않아서 해당 비율이 낮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음. 또한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업체가 파견 및 용역업체임에도 근로자는 직장(일한 곳), 즉, 농가에서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생각한 경우임. 이러한 경우는 농가가 해당 인력업체에 속한 반장에게 임금을 주고, 반장이 근로자에게 수수료를 제외한 임금을 준 경우, 근로자는 농가로부터 임금을 받았다고 생각함.

18) 농림어업 임금근로자 사회보험 가입률은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활용 가능함. 그러나 해당 항목은 2013~2017년에만 조사되어, 2017년 이후의 자료는 현재 없음.

〈표 2-17〉 농림어업 임금근로자 임금 지급 업체

단위: %, 명

구분	직장(일한 곳)	파견업체	용역업체	기타	총 응답 수
2011년	96.7%	0.6%	2.6%		116
2014년	96.3%	0.3%	3.4%		178
2017년	97.4%	0.2%	2.4%	0.1%	

자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환경조사.

○ 농림어업 임금근로자가 속한 사업장 평균 근로자 수는 1명과 2~4명이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농림어업에 취업하고 있다고 응답한 3,481명의 근로자 중 본인이 취업한 사업장에서의 전체 근로자 수가 1명인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 비율은 농림어업 취업응답자 중 47.5%(2011년), 35.3%(2014년)로 나타남.
- 근로자 수가 2~4명인 사업장에 소속된 농림어업 근로자 비율은 전체 농림어업에 취업응답자 중 49.9%(2011년), 60.7%(2014년)로 나타남.

〈표 2-18〉 농림어업 임금근로자 사업장 근로자 수

단위: %, 명

구분	1명	2~4명	5~9명	10~49명	50인 이상	총 응답 수
2011년	47.5	49.9	1.7	0.7	0.2	3,481
2014년	35.3	60.7	2.1	1.2	0.7	3,054

자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환경조사

2. 노동 수요자 측면

2.1. 임금근로자 고용 사업장(농가, 농업법인) 수 변화

○ 농업부문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은 주로 농가와 농업법인임. 품목별로 임금근로자¹⁹⁾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농가 비율은 〈표 2-19〉와 같음. 2010~2019년 기간에 임금근로자 고용 평균 비율이 30% 이상인 품목은 채소·산나물, 과수, 약용·특용, 화초·관상품목임.

- 임금근로자 고용 비율이 높은 품목은 과수 품목으로, 임금근로자 고용 농가 평균 비율은 47.4%로 나타남. 즉, 과수품목은 열 농가 중에서 네다섯 농가가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을

19) 임금근로자는 일용, 임시, 상용을 모두 포함하며, 농림어업조사에서는 근로자 고용 여부만을 조사함.

의미함. 다음으로는 약용작물로 임금근로자 고용 비율은 39.9%이었고, 화초·관상식물은 39.0%, 채소 품목은 35.9%, 축산은 29.8%이었음.

○ 2010년 대비 2019년 품목별 농가 수의 연평균 변화율을 계산하면, 채소·산나물, 특용·버섯 품목을 제외하고 모든 품목에서 농가 수는 감소하였음. 큰 폭으로 감소한 농가는 기타품목 (-8.9%), 화초·관상식물(-4.9%), 축산(-4.6%)으로 나타남.

- 채소·산나물 농가 수는 2010~2019년 기간에 연평균 0.3% 증가하였고, 특용·버섯 농가 수는 연평균 4.6% 증가하였음.

○ 그러나 2010년 대비 2019년 임금근로자 고용 농가 비율은 채소·산나물, 특용·버섯, 화초·관상식물을 제외한 품목에서는 모두 증가하였음.

- 2010년 대비 2019년 논벼농가의 임금근로자 고용 비율은 5.6%p 증가하였고, 식량작물은 5.0%p, 과수는 2.0%p, 약용은 2.5%p, 축산은 7.0%p, 기타 품목은 8.9%p 증가하였음. 특히, 축산과 기타품목은 전체 농가 수의 연평균 감소율이 컸음에도 임금근로자 고용 농가 비율은 오히려 가장 많이 증가하였음. 축산과 기타품목의 농업생산에서 임금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음.

- 채소·산나물 품목의 임금근로자 고용 비율은 2010년 대비 2019년에 3.0%p 감소, 특용·버섯은 8.0%p 감소, 화초·관상식물은 3.0%p 감소하였음.

- 채소·산나물, 특용·버섯 품목은 임금근로자 고용 비율은 감소하였으나, 해당 농가 수는 증가하였음. 이는 임금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가족노동력 중심의 신규 농가 진입이 근로자 고용 농가 증가 정도보다 많았다는 것을 의미함.

〈표 2-19〉 품목별 임금근로자 고용 농가 비율

단위: %, 명

구분		2010	2012	2014	2016	2018	2019	'10~'19 변화율
논벼	임금 근로자 고용	21.5	32.8	28.1	29.6	29.9	27.1	5.6
	전체 농가	523,153	494,352	472,097	415,649	386,739	393,841	-3.1%
식량 작물	임금 근로자 고용	14.7	30.0	21.7	22.6	20.5	19.7	5.0
	전체 농가	115,978	90,148	98,579	76,460	89,495	95,471	-2.1%
채소 산나물	임금 근로자 고용	35.8	44.4	38.3	32.2	32.1	32.8	-3.0
	전체 농가	223,873	271,845	254,892	265,116	254,797	229,377	0.3%

(계속)

구분		2010	2012	2014	2016	2018	2019	'10~'19 변화율
특용· 버섯	임금 근로자 고용	30.0	41.7	30.5	26.0	22.3	22.0	-8.0
	전체 농가	28,063	26,717	31,352	49,108	39,892	42,044	4.6%
과수	임금 근로자 고용	42.9	55.3	51.2	45.8	44.6	44.9	2.0
	전체 농가	170,237	173,467	176,646	181,973	173,085	170,688	0.0%
약용	임금 근로자 고용	33.9	48.9	50.0	38.5	31.5	36.4	2.5
	전체 농가	7,290	7,714	8,628	8,882	7,794	6,951	-0.5%
화초· 관상	임금 근로자 고용	39.5	44.5	43.1	36.2	34.4	36.5	-3.0
	전체 농가	18,635	17,676	15,749	11,742	11,323	11,825	-4.9%
기타	임금 근로자 고용	23.7	28.3	22.7	26.9	27.8	32.6	8.9
	전체 농가	8,934	6,742	4,948	5,882	4,843	3,864	-8.9%
축산	임금 근로자 고용	23.5	35.6	30.6	29.8	28.6	30.5	7.0
	전체 농가	81,155	62,454	57,885	53,462	52,870	53,098	-4.6%

주: 기타 품목은 사료작물(사료 옥수수, 사료 호밀, 청보리, 수단글라스 등), 육묘 작물(모, 묘목, 묘상), 종자, 녹비작물 등을 포함함.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림어업조사.

○ 2010~2019년 기간에 농업법인 수는 연평균 12.1%씩 증가하여 2010년에 8,321개에서 2019년 2만 3,315개로 증가하였음.

○ 농업법인 세부 사업별로 구분하면, 농업서비스업을 제외하고 모든 법인 수는 증가하였음. 가장 많이 증가한 법인 유형은 유통업, 가공업, 농업생산 순서로 나타남. 절대적 수치로는 농업생산, 유통업, 가공업 순서로 나타남.

- 유통업을 하는 농업법인은 2010년 1,730개에서 2019년 7,215개로 연평균 17.2% 증가하였고, 가공업은 13.6%, 농업 생산은 11.3% 증가하였음. 농업서비스업은 2010년 982개에서 2016년 1,805개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감소하여 2019년에는 598개로, 2010~2019년 사이에는 연평균 5.4% 감소하였음.

- 2019년 기준, 농업법인 수는 농업생산(작물+축산) 법인이 8,140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유통 법인이 7,215개, 가공 법인이 4,927개로 그 뒤를 이었음.

○ 근로자 고용이 증가하는 사업장은 축산 농가, 기타품목 농가이고, 근로자 고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품목은 과수, 채소 품목임. 해당 작물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수요가 주요하게 발생함. 농업법인에서는 유통업, 농업생산, 가공업체에서 근로자 수요가 주요하게 발생함.

〈표 2-20〉 사업유형별 농업법인 수

단위: 개

구분		2010	2012	2014	2016	2018	2019	'10~'19 연평균변화율
농업 생산	작물	3,112	3,803	4,461	6,546	5,756	6,687	11.3%
	축산					1,416	1,453	
가공업		1,568	2,181	3,154	3,313	4,517	4,927	13.6%
유통업		1,730	3,014	4,100	4,676	6,737	7,215	17.2%
농업서비스업		982	1,395	1,758	1,805	771	598	-5.4%
기타		1,338	1,903	2,386	2,542	1,693	1,547	6.9%
농어촌관광휴양						890	888	
총합		8,361	11,747	15,043	18,088	21,780	23,315	12.1%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업법인조사.

○ 상시종사자 규모별 농업법인 수는 전반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4인 이하의 사업체 수는 2010년 5,276개에서 2019년 1만 5,714개로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함. 50인 이상의 사업체는 2010년 41개 업체에서 2019년 155개 업체로 약 3.7배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 속도를 보였음. 5~9인, 10~49인 업체도 2010년 대비 2019년에 각각 2.3배, 2.7배 증가하여 농업법인 사업체의 증가 폭이 전반적으로 커졌음을 알 수 있음.

- 4인 이하 사업체와 50인 이상의 사업체에서 증가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지만, 사업체 수 측면에서는 4인 이하 사업체 수가 급증하여 영세 규모의 농업법인 수 증가가 상대적으로 컸음을 알 수 있음.

○ 하지만 해당 사업체의 비율은 2010~2019년 기간에 비슷하게 유지된 가운데 4인 이하의 사업체 비율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고, 5~9인 이하 사업체 비율은 2016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임. 10~49인 이하 사업체와 50인 이상 사업체 비율은 일정 수준에서 유지됨.

○ 농업법인 사업체 수는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지만, 50인 이상의 사업체 비율은 2019년 기준 0.7%에 지나지 않아 농업법인 사업체 대부분은 50인 미만의 사업체이었음.

〈표 2-21〉 상시 종사자 규모별 농업법인 사업체 수와 비율

단위: %, 개

구분	2010		2012		2014		2016		2018		2019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4인 이하	63.1	5,276	63.5	7,465	59.5	8,952	61.2	11,078	70.0	15,255	67.4	15,714
5~9인	26.2	2,189	25.5	2,993	28.4	4,274	27.1	4,909	19.7	4,286	22.0	5,121

(계속)

구분	2010		2012		2014		2016		2018		2019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10~49인	10.2	855	10.4	1,217	11.5	1,733	10.9	1,974	9.7	2,105	10.0	2,325
50인 이상	0.5	41	0.6	72	0.6	84	0.7	127	0.6	134	0.7	155
계		8,361		11,747		15,043		18,088		21,780		23,315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업법인조사.

2.2. 농업노동시장 수요자 측면 특징

○ 구인 경로와 고용관계 성립, 고용 주체는 근로자의 사용자 확정과 연결되는 문제로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시 가입 주체 문제와 연결됨. 따라서 직·간접고용 형태로 이루어지는 인력사무소, 지역 내 농작업팀 등을 통한 근로자 구인 경로와 고용 방식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2.2.1. 근로자 구인 경로

○ 농업노동시장에서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와 농업법인이 근로자를 구인하는 경로는 내국인 여부, 종사상 지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 농가에 고용되는 내국인 농작업 근로자는 지역 내 지인 등을 통해 구인하거나 인터넷, 신문 등의 광고를 통해 구인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이에 반해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작물재배 농가는 대부분 지역 내 농작업팀·사설인력소개소를 통해, 축산 농가는 제도권을 통한 고용이 높게 나타남.

- 작물재배 농가 경영주는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 지인 소개로 고용하는 비율이 80.6%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음. 축산 농가의 경우 지인 소개로 고용하는 비율이 51.7%로 가장 많았으나, 인터넷·신문 등의 광고로 고용하는 비율이 32.2%로 나타나 공식적인 경로로 채용하는 경우도 많음을 알 수 있음.

- 작물재배 농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방법은 지역 내 농작업팀 또는 사설인력소개소, 이전 또는 현재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을 통한 고용이 많은 수를 차지하였고, 이에 반해 축산업에서는 고용허가제를 통한 고용이 높았음. 참고로 현재의 외국인 근로자 정책은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를 통한 고용만 가능함. 따라서 대부분의 외국인 근로자는 제

도권 밖의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임.

- 농가 단위에서 내국인 근로자 고용이 지인 소개가 높게 나타난 이유는 농작업팀 또는 사설인력소개소에 소속된 근로자 다수는 미등록 외국인으로, 내국인 근로자 대부분은 농작업팀 또는 사설인력소개소를 통해 고용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지인 소개가 다수를 이루게 됨(엄진영 외 2020). 또한 농가에서 고용되는 내국인 근로자가 있다면, 대부분은 지인 소개 등을 통해 축산, 시설작물 등의 상용근로자로 고용되는 경우가 많음(엄진영 외 2021).

○ 그러나 지역 내 농작업팀과 사설인력사무소를 통한 내국인 고용 비율이 작물재배 농가 13.2%, 축산 농가 14.9%로 조사되어 지역 내 농작업팀 및 사설인력사무소 등을 통한 내국인 근로자 고용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됨.

〈표 2-22〉 농가의 내국인 근로자 구인 경로

단위: %, 명

구분	지인소개	농작업팀	인력사무소	농협인력중개센터	인터넷, 신문 등의 광고	총 응답 수
작물재배	80.6	9.7	3.5	1.4	4.9	144
축산	51.7	6.9	8.0	1.1	32.2	87

자료: 엄진영 외(2020); 엄진영 외(2021).

〈표 2-23〉 농가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방법(고용 경로): 작물재배업 일용근로자 및 임시근로자

단위: %, 호

항목	일용근로자	임시근로자
고용허가제 신청	3.4	5.0
계절근로자제 신청	1.4	1.3
동네 한국사람(지인)소개	18.2	17.5
농작업팀, 사설인력소개소	52.7	66.3
지역 내 다문화가정 이주민	1.4	6.3
이전 또는 현재 고용 외국인 근로자를 통해서	22.3	3.8
기타	0.7	-
농가 수	148	80

주: 임시근로자는 6개월 미만 고용 근로자를 의미함.

자료: 엄진영 외(2020); 엄진영 외(2021).

〈표 2-24〉 농가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방법(고용 경로): 상용근로자

단위: %, 호

구분	작물재배업	축산업
고용허가제 신청	10.0	55.8
동네 한국사람(지인)소개	13.3	14.1
이전 또는 현재 고용 외국인 근로자를 통해서	26.7	14.1
사실 인력소개소, 농작업팀 통해서	36.7	10.0
외국인 근로자 모임(SNS등)	-	1.6
지역 내 다문화가정 이주민	10.0	1.6
기타	3.3	2.5
농가 수	15	120

주: 작물재배업 상용근로자는 6개월 이상 고용 근로자를 의미함.

자료: 엄진영 외(2020); 엄진영 외(2021).

○ 농업법인에서 고용하는 내·외국인 일용근로자는 주로 인력사무소와 지역 내 농작업팀을 통해 고용되었고, 다음으로는 지인 소개가 높은 비율로 나타남.

- 인력사무소와 지역 내 농작업팀을 통한 고용은 전체 응답자 중 70%,²⁰⁾ 지인 소개를 통한 고용은 25%로, 다수가 인력사무소와 지역 내 농작업팀을 통한 고용이었음.

〈표 2-25〉 농업법인의 일용근로자(내·외국인) 구인 경로

단위: %, 명

구분	지인소개	인력사무소·지역 내 농작업팀	인터넷, 신문 등의 광고	총 응답 수
내·외국인근로자	25.0	70.0	5.0	75

주: 일용근로자는 한 달 미만 고용된 근로자를 의미함.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분석.

○ 농업법인의 임시 및 상용 내국인 근로자는 인력사무소와 지역 내 농작업팀을 통해 고용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지인소개, 인터넷·신문 등의 광고 순서로 나타남.

- 농업법인의 임시 및 상용 내국인 근로자는 인력사무소와 지역 내 농작업팀 35.5%, 지인 소개가 31.2%, 인터넷·신문 등의 광고가 27% 순서로 나타남.

○ 농가 및 농업법인에서 고용되는 내국인 근로자 중에 지역 내 농작업팀 및 인력사무소 등을 통한 고용은 단순한 근로자의 알선·소개에서부터 간접고용까지 포괄함. 또한 농작업팀 및 인력사무소의 범위가 광역단위를 넘어서는 주산지 전문작업단 및 산지유통인(업체)에 고용되는 형태로 고용 사업체의 범위도 다양하게 나타남.

20) 인력사무소와 지역 내 농작업팀 비율이 높게 나타난 이유는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 모두를 통합하여 조사하였기 때문임.

- 단순한 근로자의 알선·소개부터 간접고용까지 고용관계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기존 연구 결과 및 면접조사 등을 통해 분석한 결과를 다음 절에서 서술함.

2.3. 농업부문 임금근로자 고용 관계

- 농업부문 임금근로자 고용은 직접고용과 간접고용으로 구분할 수 있음. 직접 고용은 해당 사업체에서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자를 고용하는 형태임. 간접 고용 형태는 파견, 사내하도급, 소사장제 등이 있으며, 간접고용 형태가 점차 복잡해지면서 사용자 확정 문제가 대두됨(박소민 2021).
- 간접고용 형태의 복잡성은 근로계약 관계와 사용자를 확정하기 어렵게 함. 간접고용에 있어 근로계약과 사용자 확정은 사회보험 가입 및 근로자 사용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과 연관되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됨. 관계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법원의 판결로 해당 내용을 구분하기도 함.
- 박소민(2021)은 간접고용 관련 판례에서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 법리, 파견법상 불법파견²¹⁾에 관한 법리, 실질적 지배력설(영향력설)의 법리를 다음과 같이 정리함.
 -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는 형식상 사업주인 수급인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도급인과 수급인 근로자 사이의 근로 관계를 인정하는 법리임. 해당 법리를 적용하면 사내 하도급 근로자와 도급회사 사이의 대면 관계로서 직접근로계약 관계를 인정하는 것임.
 -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는 원고용주인 수급인에게 사업주로서의 실체(독립성)가 없고, 도급인과 수급인 근로자 사이에 지휘·명령관계, 근로계약의 기본적인 관계(임금지급과 근로제공)가 있어야 함. 특히, 중간에 개재된 근로관계의 주체(소사장, 형식상 수급인)는 형식상 존재임. 이 경우에는 사용자 책임이 도급인에게 전환되어 공급사업주는 「노동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 책임에서 벗어나는 한계가 있음.

21) 파견법상 불법파견이라 함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1항에 따라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에 대해서만 근로자 파견이 허용됨. 근로자 파견이 허용된 업무를 제외한 업무에서 근로자를 파견할 경우, “파견법상 불법파견”임. 근로자 파견이 허용된 업무는 <부록 1> 참고. 여기서 “근로자 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자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자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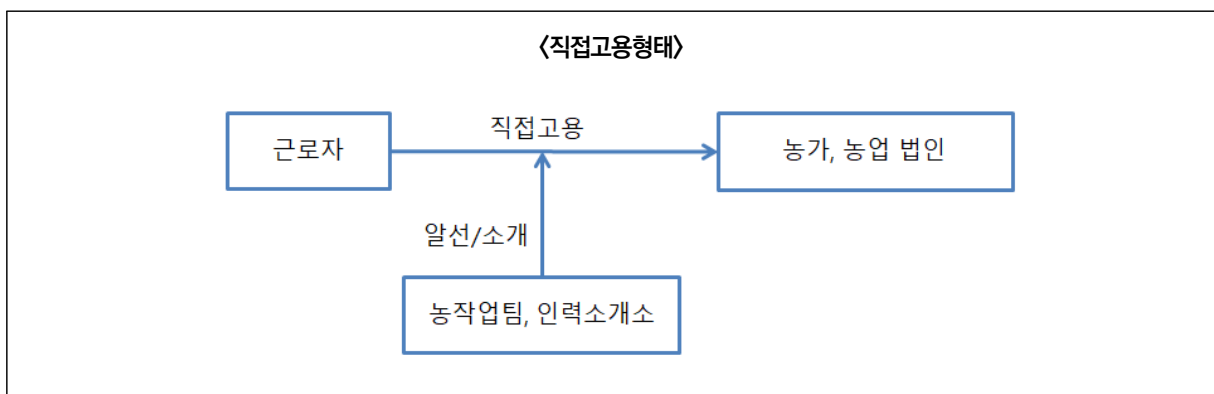
- 파견법상 불법파견 법리와 관련해서 2015년 2월 26일 도급과 파견을 구분하는 기준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였는데,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업무 수행 자체에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경우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당해 근로자가 하나의 작업집단에 구속되어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된 경우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그러나 만약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 선발, 근로자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등에 관한 결정을 원고용주가 하거나, 계약 목적이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진 업무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 업무와 구별되는 경우는 도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실질적 지배력설(영향력설)과 관련해서는 근로자와 직접적 고용계약관계가 없더라도 노동관계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에 사용자로 평가하는 개념임. 즉, 근로자 취업 조건에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노조법상 사용자가 됨.
- 위의 기준에 따라 농업부문도 직접고용과 간접고용으로 구분할 수 있음. 농업부문에서 임금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례를 직접고용과 간접고용으로 구분하면 <그림 2-4>와 같음.
- 농가와 농업법인에 고용되는 근로자 중에 지인 등의 소개를 통해 고용하거나 온·오프라인 광고를 통해 고용을 하는 경우는 해당 사업체에서 직접 고용하는 형태임. 이때 근로계약 관계 및 사용주는 해당 농가 및 농업법인이라고 할 수 있음.
- 농가의 직접 고용은 시설원예, 축산, 대규모 노지재배 농가에서 상용근로자 또는 임시근로자를 주로 직접 고용하는 형태임. 해당 근로자는 내국인, 외국인 모두 포함함.
- 농가와 법인에서 지역 내 등록/미등록 인력소개소를 통해 근로자 알선·소개를 받아, 근로자를 고용하기도 함. 이때 근로계약 관계 및 사용주는 앞서 언급한 것과 동일하게 해당 농가 및 농업법인이며, 해당 사업체에서 직접 고용관계를 가짐.
- 지역 내 등록/미등록 인력소개소를 통해 근로자 알선·소개를 통해 고용하는 근로자는 주로 일용근로자 또는 임시근로자를 고용하는 형태임. 경우에 따라서는 상용근로자를 고용하기도 함. 근로자 대부분은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이며, 도시 근교의 인력소개소에는 일부 내국인 근로자도 포함된 경우가 있음.
- 이외에 농업 임금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산지유통인(업체), 주

산지 전문작업단,²²⁾ 지역 내 등록/미등록 인력소개소에서 근로자를 고용한 후 농가 및 농업법인과 도급·위탁 및 파견법상 불법 파견 형태로 임금근로자를 공급하는 형태임. 이때 농가 및 농업법인과 해당 임금근로자의 고용 관계는 간접고용 형태를 띠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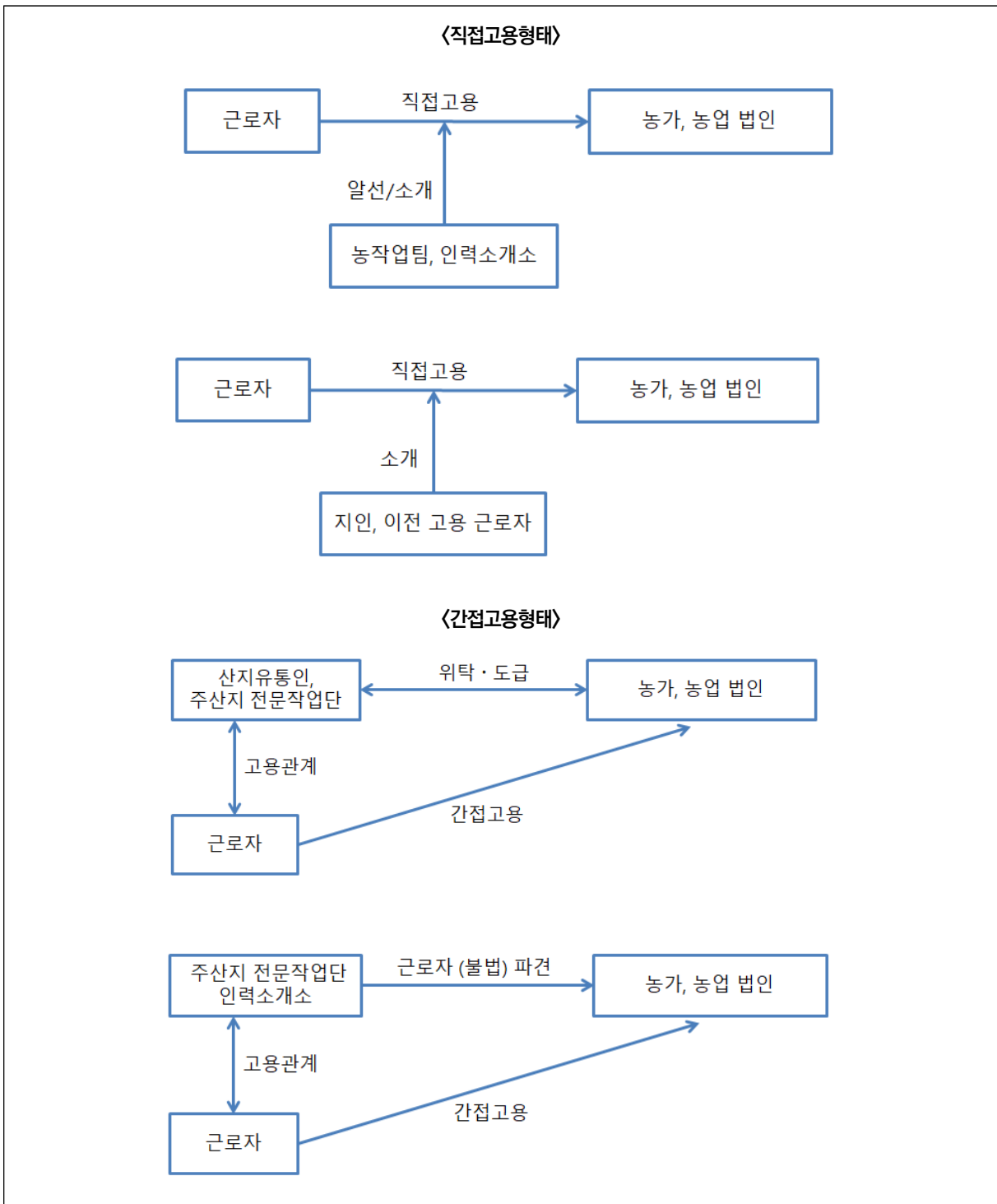
- 도급·위탁의 경우는 산지유통인(업체), 주산지 전문작업단이 농가로부터 포전매매를 하거나 농작업 중 일부 업무, 예를 들면 수확 작업 등을 위탁·도급 받아 수행하는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근로자 채용 및 고용은 산지유통인(업체) 또는 주산지 전문작업단이 직접 하거나 인력이 필요한 농작업을 포함한 일부 농작업을 하도급 업체에서 수행하면서 근로자를 고용하는 형태임.
- 파견법상 불법 파견 형태는 주산지 전문작업단, 지역 내 등록/미등록 인력소개소 등에서 근로자를 고용한 뒤에 농가 또는 농업법인에 근로자를 공급하는 형태임. 이 경우에는 해당 농가 또는 농업법인의 사용주가 근로자의 업무 수행 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경우임. 대부분 수확기철에 대규모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주로 이에 해당함.

○ 직접고용형태 이외의 간접고용의 경우는 ‘고용’과 ‘사용’의 관계가 분리되어 있고, ‘하나의 사용자’를 전제함. 하지만, ‘고용’과 ‘사용’의 관계가 불명확하고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새로운 간접고용 형태에 기존의 법리가 완벽히 부합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함. 이로 인해 최근에는 하급심을 중심으로 직·간접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복수의 사용자 모두에게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을 지우는 ‘공동사업주’의 법리가 형성되기도 함(박소민 2021).

〈그림 2-4〉 농업부문 고용 형태 구분



22) 주산지 전문작업단은 특정 농작업(수확)을 농가 또는 농산물 유통업체(포전매매 포함)로부터 위탁을 받는 형태임.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도 있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음. 주산지 전문작업단 중에는 농산물 유통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음. 또한 법인으로 등록하지 않고, 농산물 유통을 하는 농가 또는 경영체의 경우, 주산지 전문작업단처럼 특정 농작업(수확)을 농가로부터 위탁 또는 도급을 받게 되므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주체가 됨.



자료: 저자 작성.

3

농업부문 고용보험 적용 실태

1. 현행 농업부문 고용보험 적용 개요

- 고용보험은 현재 농업부문에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음. 근로자와 자영업자(농업 경영주 및 사업주) 여부 및 사업체의 법인 여부, 국적에 따라 각각 당연가입과 임의가입으로 정해짐.
 - 농업 법인에 고용되어 있는 내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으로 사업주가 사업체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있음.
 - 농업부문의 비법인 사업체의 경우, 5인 이상의 상시근로자²³⁾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체의 내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임. 하지만 4인 이하의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체는 「고용보험법」 제 8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라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됨.
 - 농업부문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²⁴⁾는 「고용보험법」 제10조의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 23조의 2에 따라, 가입 대상이 되는 사업체(농업법인, 농업비법인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사업장)에서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임의가입형태로 가입 가능함.²⁵⁾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농업법인 사업주와 상시근로자 5인 이상~50인 미만을 고용하는 농업 비법인 사업주 및 경영주는 임의가입 형태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가

23)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2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함.

24)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님.

25) 이 경우에도 사업주의 동의 및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이 필요함.

능함. 그러나 농업 비법인 중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의 사업주 및 경영주는 「고용보험법」 제 8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됨.

〈표 3-1〉 현행 농업 부문 고용보험 적용 현황

구분		법인	비법인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피보험자: 근로자	내국인	당연가입 대상	당연가입 대상	적용대상 제외*
	외국인(고용허가제)	가입 대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희망 시 가입 가능(임의가입)		
피보험자: 자영업자(경영주)		임의가입 대상 (사업자등록증 필수)	임의가입 대상 (사업자등록증 필수)	적용대상 제외**

주 1)* 4인 이하 상시 고용 비법인 사업장은 근로자 과반수 이상 동의가 있고, 이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하면 가입이 가능함.
 2)** 4인 이하 상시 고용 비법인 사업장의 경영주는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고용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어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하여 근로자 고용보험이 적용된 사업장의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이 가능함.
 자료: 김미복 외(2021); 엄진영 외(2021: 128).

○ 고용보험의 수급은 크게 실업급여 및 모성보호로 구분될 수 있음.

-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구성되며, 취업촉진수당은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로, 연장급여는 훈련연장 급여, 개발연장 급여, 특별연장 급여로 다시 구분됨.
- 모성보호는 출산전후 휴가 급여,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등으로 구성됨.

○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요율과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 사업에 따른 보험요율로 구성되며,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보험료는 사업주 또는 경영주와 근로자가 분담하여 지불하며,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 사업은 사업주 또는 경영주가 지불함. 해당 보험요율은 아래 〈표 3-2〉와 같음.

- 근로자의 실업급여요율은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각각 월 임금액의 0.8%씩, 총 1.6%를 부담함. 자영업자의 실업급여요율은 기준보수 구간에 따른 소득의 2%를 보험료로 지불함.
- 고용보험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 사업에 대한 보험요율은 사업체의 종사자 규모에 따라 자영업자 및 종사자 150인 미만의 사업체이거나 150인 이상 기업 중, 우선지원대상기업 일 경우 월소득액의 0.25%를 보험료로 지급함. 따라서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 보험요율까지 합산할 경우, 근로자 고용보험료로 사업주는 근로자의 월급여액 중 1.05%의 보험료를 지불하게 됨.

〈표 3-2〉 현행 농업 부문 고용보험 가입 시 보험요율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

구분	법인	비법인
피보험자: 근로자	사업주: 0.8%	사업주: 0.8 %
	근로자: 0.8%	근로자: 0.8%
피보험자: 자영업자(경영주)	2%	

〈고용보험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

구분	사업체 종사자 규모	보험요율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자영업자	0.25%
	150인 미만 기업	0.25%
	150인 이상 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0.25%
	150인 이상~1,000인 미만(우선지원대상기업 제외)	0.65%
	1,000인 이상 기업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0.85%

주: 근로자 고용보험은 월급여액 기준으로 산정되며, 자영업자의 소득은 기준보수(총 7등급)를 기준으로 산정함.

자료: 엄진영 외(2021: 129)

고용보험소개(<https://www.ei.go.kr/ei/eih/eg/ei/eiEminsrr/retrieveEi0301Info.do>: 2020. 12. 12.).

○ 고용보험 가입 후 실직 또는 폐업을 하는 경우 정해진 지급 기준을 만족하면 소정급여일수 동안 퇴직 전 평균임금²⁶⁾(또는 기준보수액)의 60%를 구직급여로 지급함. 이때 일평균 상한액은 2019년 1월 이후로는 1일 66,0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법상 시간당 최저임금의 80%×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함.

-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후인 경우에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부터 270일까지이며,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이면 최소 90일부터 최대 240일까지임. 자세한 사항은 다음 표와 같음.

〈표 3-3〉 실업급여액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후인 경우〉

연령,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인 경우〉

연령,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26) 일용근로자 평균 임금 =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간의 임금 총액 /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간의 총 일수”로 계산됨(엄진영 외 2021).

(계속)

연령,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이상~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자료: 고용보험소개<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3Info.do>: 2021. 9. 1).

2. 농업 부문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실태

- 농림업의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2010년 기준 가입 사업장은 7,413개소였으나 2020년에는 16,542개소로서 약 2배로 증가함.

- 고용규모별로는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비율이 전체 가입 사업장의 50% 이상을 차지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비율이 더욱 증가함.
 - 5인 미만 사업장의 가입 비율은 2010년 50.1%였으며 2020년 62.3%로 상승함.

- 반면 5인 이상의 가입 사업장 수는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가입 사업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하였음.
 - 5~9인 규모의 사업장은 25.1%에서 23.4%로 감소하였으며 10~49인 규모의 사업장은 22.6%에서 13.2%로 감소, 50인 이상의 사업장은 전체 가입 사업장의 2.2%에서 1.1%로 비율이 감소하였음.

-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의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 2,707개소로 가장 많으며 경북 2,368개소, 전남 2,026개소, 경남 1,976개소 순으로 이들 네 지역의 가입 사업장이 전체 가입 사업장의 약 54.9%를 차지함(2020년 기준).

〈표 3-4〉 농림업 고용규모별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수

단위: 개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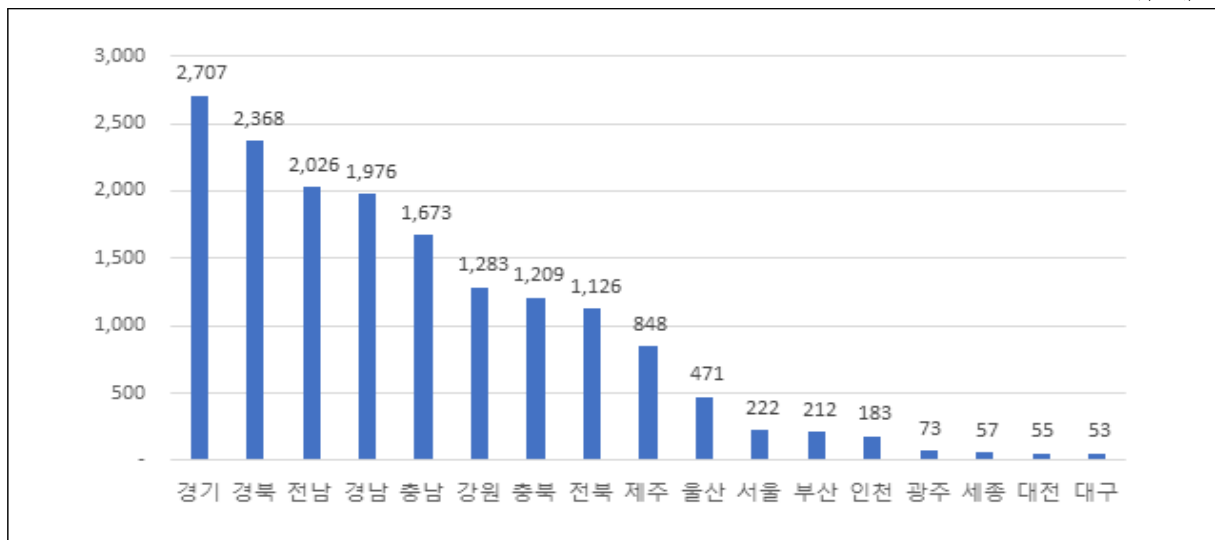
연도	5인 미만	5~9인	10~49인	50인 이상	전체
2010	3,715 (50.1)	1,857 (25.1)	1,679 (22.6)	162 (2.2)	7,413 (100.0)
2011	4,697 (56.7)	2,153 (26.0)	1,310 (15.8)	125 (1.5)	8,285 (100.0)
2012	5,301 (55.5)	2,420 (25.3)	1,679 (17.6)	156 (1.6)	9,556 (100.0)
2013	6,363 (56.3)	2,981 (26.4)	1,780 (15.8)	169 (1.5)	11,293 (100.0)
2014	7,214 (59.0)	3,089 (25.3)	1,747 (14.3)	179 (1.5)	12,229 (100.0)
2015	8,059 (60.1)	3,207 (23.9)	1,985 (14.8)	150 (1.1)	13,401 (100.0)
2016	8,448 (61.5)	3,172 (23.1)	1,983 (14.4)	138 (1.0)	13,741 (100.0)
2017	8,627 (62.3)	3,202 (23.1)	1,867 (13.5)	147 (1.1)	13,843 (100.0)
2018	9,060 (61.9)	3,419 (23.4)	1,993 (13.6)	162 (1.1)	14,634 (100.0)
2019	9,791 (62.5)	3,624 (23.1)	2,072 (13.2)	175 (1.1)	15,662 (100.0)
2020	10,312 (62.3)	3,867 (23.4)	2,178 (13.2)	185 (1.1)	16,542 (100.0)

주: 괄호 안은 비율임.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각 연도. (<https://www.ei.go.kr/ei/eih/st/retrieveHoOfferList.do> 2021.8.26. 방문)

〈그림 3-1〉 농림업 지역별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수(2020년 기준)

단위: 개소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각 연도. (<https://www.ei.go.kr/ei/eih/st/retrieveHoOfferList.do> 2021.8.26. 검색)

- 지역별 연도별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울산, 충북, 경북, 전남, 제주 지역의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특히 울산 지역의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은 연평균 20.8% 증가하여 가장 빨리 가입 사업장이 늘어난 지역으로 나타남.
 - 전남, 경북, 경남 지역은 최근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연평균 10% 이상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지역별 비율에서도 상위에 랭크되어 있음.

- 반면 강원도 지역은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 연평균 0.8%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3-5〉 농림업 연도별 지역별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수

단위: 개소, %

연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2010	143	131	35	92	29	30	71	0	1,241	1,393	436	671	569	841	863	684	184	7,413
2011	151	160	40	96	39	32	101	0	1,389	1,398	490	757	704	1,110	875	708	235	8,285
2012	182	175	42	95	53	38	99	30	1,807	1,282	578	794	675	1,366	1,218	808	314	9,556
2013	174	167	41	91	50	44	156	30	1,731	1,697	756	930	841	1,792	1,345	1,051	397	11,293
2014	196	193	49	110	65	41	158	71	1,868	1,606	729	1,087	866	1,665	1,592	1,397	536	12,229
2015	194	209	52	112	68	44	172	41	2,103	1,470	832	1,207	1,055	1,801	1,913	1,459	669	13,401
2016	235	227	53	120	68	47	232	42	2,228	1,246	866	1,244	1,066	1,837	2,106	1,408	716	13,741
2017	252	201	54	112	63	40	259	38	2,184	1,202	911	1,327	1,006	1,835	2,117	1,489	753	13,843
2018	232	163	55	124	69	40	351	52	2,358	1,102	981	1,405	1,068	1,872	2,311	1,638	813	14,634
2019	233	185	51	148	69	52	386	53	2,485	1,294	1,074	1,523	1,127	2,018	2,274	1,848	842	15,662
2020	222	212	53	183	73	55	471	57	2,707	1,283	1,209	1,673	1,126	2,026	2,368	1,976	848	16,542
연평균 증감율	4.5	4.9	4.2	7.1	9.7	6.2	20.8	8.4	8.1	-0.8	10.7	9.6	7.1	9.2	10.6	11.2	16.5	8.4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각 연도. (<https://www.ei.go.kr/ei/eih/st/retrieveHoOfferList.do> 2021.8.26. 방문)

3. 농업 부문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현황

- 사업장 수가 증가함에 따라 농림업 분야의 고용보험 순수 피보험자 수 역시 증가하고 있음.
 - 피보험자수는 2010년 2만 6,079명에서 2020년 3만 1,800명으로 연평균 2.0%씩 증가
- 고용 규모별로는 주로 중소기업 사업장의 비율이 높음.
 - 10~49인 사업장의 피보험자 수가 가장 많은데 2020년 기준 1만 1,768명으로서 전체 피보험자의 37.0%를 차지하는 반면 50인 이상 사업장의 피보험자수는 4,748명으로서 가장 적은 비율(14.9%)을 차지함.
- 이는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농림업 사업장의 평균 규모가 빠르게 축소되었기 때문임.
 - 5인 미만 사업장의 피보험자는 2010년에 전체 피보험자 중 17.2%에 불과하였으나 2020년에는 24.9%로 비율이 빠르게 증가한 반면 50인 이상 사업장의 피보험자는 23.2%에서 14.9%로 감소하였음.

〈표 3-6〉 농림업 분야 고용규모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단위: 명, %

연도	5인 미만	5~9인	10~49인	50인 이상	전체
2010	4,497 (17.2)	5,630 (21.6)	9,899 (38.0)	6,053 (23.2)	26,079 (100.0)
2011	5,451 (22.1)	5,816 (23.6)	8,634 (35.0)	4,740 (19.2)	24,641 (100.0)
2012	5,566 (20.9)	5,790 (21.8)	10,358 (39.0)	4,874 (18.3)	26,588 (100.0)
2013	5,436 (19.3)	6,269 (22.2)	11,244 (39.8)	5,276 (18.7)	28,225 (100.0)
2014	5,208 (18.2)	6,004 (21.0)	11,283 (39.5)	6,079 (21.3)	28,574 (100.0)
2015	5,905 (19.6)	6,700 (22.3)	12,438 (41.3)	5,064 (16.8)	30,107 (100.0)
2016	5,871 (19.8)	6,497 (21.9)	12,586 (42.5)	4,656 (15.7)	29,610 (100.0)
2017	6,522 (22.6)	5,857 (20.3)	11,775 (40.7)	4,750 (16.4)	28,904 (100.0)
2018	6,931 (23.9)	6,331 (21.9)	10,817 (37.3)	4,892 (16.9)	28,971 (100.0)
2019	7,408 (24.3)	6,758 (22.2)	11,130 (36.6)	5,154 (16.9)	30,450 (100.0)
2020	7,909 (24.9)	7,375 (23.2)	11,768 (37.0)	4,748 (14.9)	31,800 (100.0)

주: 괄호 안은 비율임.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각 연도. (<https://www.ei.go.kr/ei/eih/st/retrieveHoOfferList.do> 2021.8.26. 방문)

○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성별 비율을 살펴보면, 남성의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남성의 비율은 감소하고 여성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 2010년도 남성 피보험자 수는 1만 8,648명으로서 전체 피보험자의 71.5%를 차지하였으나 2020년에는 2만 451명으로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64.3%로 비율이 감소함.
- 같은 기간, 여성 피보험자수는 7,431명(28.5%)에서 1만 1,349명(35.7%)으로 증가하였음.

〈표 3-7〉 농림업 성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단위: 명, %

연도	남		여		합계	
	피보험자수	비율	피보험자수	비율	피보험자수	비율
2010	18,648	71.5	7,431	28.5	26,079	100
2011	17,476	70.9	7,165	29.1	24,641	100
2012	18,739	70.5	7,849	29.5	26,588	100
2013	19,756	70.0	8,469	30.0	28,225	100
2014	19,275	67.5	9,299	32.5	28,574	100
2015	20,371	67.7	9,736	32.3	30,107	100
2016	19,591	66.2	10,019	33.8	29,610	100
2017	18,912	65.4	9,992	34.6	28,904	100
2018	18,776	64.8	10,195	35.2	28,971	100
2019	19,717	64.8	10,733	35.2	30,450	100
2020	20,451	64.3	11,349	35.7	31,800	100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각 연도. (<https://www.ei.go.kr/ei/eih/st/retrieveHoOfferList.do> 2021.8.26. 방문)

○ 연령별 피보험자 분포를 살펴보면, 농림업 피보험자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있음.

-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50대 비율은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는데 2015년 30.6%에서 2020년 28.9%로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30대의 비율은 16.5%에서 14.9%로 감소하였고 40대의 비율은 25.5%에서 19.0%로 감소한 반면 60세 이상은 18.2%에서 26.9%로 증가함.
- 3·40대 비율의 감소와 60세 이상 근로자 비율의 증가는 농림수산 분야 근로자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줌.

〈표 3-8〉 농림업 연령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단위: 명, %

연도	30세 미만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전체
2015	2,776 (9.2)	4,954 (16.5)	7,678 (25.5)	9,224 (30.6)	5,475 (18.2)	30,107 (100.0)
2016	2,869 (9.7)	4,922 (16.6)	7,346 (24.8)	8,924 (30.1)	5,549 (18.7)	29,610 (100.0)
2017	2,899 (10.0)	4,683 (16.2)	6,972 (24.1)	8,813 (30.5)	5,537 (19.2)	28,904 (100.0)
2018	2,917 (10.1)	4,479 (15.5)	6,341 (21.9)	8,829 (30.5)	6,405 (22.1)	28,971 (100.0)
2019	2,995 (9.8)	4,561 (15.0)	6,189 (20.3)	9,147 (30.0)	7,558 (24.8)	30,450 (100.0)
2020	3,282 (10.3)	4,736 (14.9)	6,029 (19.0)	9,206 (28.9)	8,547 (26.9)	31,800 (100.0)

주: 괄호 안은 비율임.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각 연도. (<https://www.ei.go.kr/ei/eih/st/retrieveHoOfferList.do> 2021.8.26. 방문)

○ 지역별로는 전체 순수 피보험자 수가 연평균 2.0% 증가하는 동안 서울, 부산, 대구에서는 피보험자 수가 감소하였으며 나머지 지역에서는 피보험자 수가 증가하였음.

- 특히 대구 지역의 피보험자 수는 257명에서 84명으로 연평균 10.6%씩 매우 빠른 속도로 감소하였음.
- 세종, 전북, 충남, 경기, 전남, 제주 등의 지역에서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지역별 비율을 살펴보면, 경기 지역의 피보험자 수가 5,349명으로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경북이 4,176명, 전남이 3,999명, 경남이 3,848명, 충남 3,760명으로 그 뒤를 잇고 있음. 이들 상위 4개 지역이 전체 피보험자 수의 66.5%를 차지함(2020년 12월 기준).

〈표 3-9〉 농림업 지역별 고용보험 순수 피보험자 수

단위: 명, %

연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2010	1,050	289	257	223	125	85	210	0	3,921	2,516	1,733	2,672	2,100	2,982	3,867	3,377	672	26,079
2011	825	208	233	281	130	88	247	0	3,997	2,573	1,643	2,686	1,860	2,951	3,437	2,948	534	24,641
2012	779	220	231	355	146	168	254	67	4,242	2,937	1,691	2,893	1,924	3,201	3,641	3,039	800	26,588
2013	577	181	233	232	99	158	282	51	4,108	2,918	1,571	3,082	2,147	3,757	4,317	3,589	923	28,225
2014	431	269	213	286	89	162	299	82	4,893	2,579	1,424	3,075	2,272	3,661	3,871	3,905	1,063	28,574
2015	346	267	158	269	93	173	234	92	4,949	2,916	1,642	3,158	2,807	3,688	4,214	3,932	1,169	30,107
2016	306	250	98	192	99	147	228	89	5,023	2,745	1,634	3,467	2,803	3,608	3,881	3,758	1,282	29,610
2017	410	240	78	220	117	155	238	72	5,031	2,308	1,786	3,435	2,504	3,703	3,975	3,389	1,243	28,904
2018	442	237	89	232	146	50	243	92	5,041	2,434	1,652	3,461	2,638	3,455	4,048	3,327	1,384	28,971
2019	407	244	85	263	153	62	218	107	5,254	2,769	1,803	3,588	2,657	3,552	4,234	3,613	1,441	30,450
2020	439	197	84	292	140	96	263	113	5,349	2,890	1,863	3,760	2,932	3,999	4,176	3,848	1,359	31,800
연평균 증감율	-8.4	-3.8	-10.6	2.7	1.1	1.2	2.3	6.8	3.2	1.4	0.7	3.5	3.4	3.0	0.8	1.3	7.3	2.0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각 연도. (<https://www.ei.go.kr/ei/eih/st/retrieveHoOfferList.do> 2021.8.26. 방문).

○ 농림업의 피보험자 수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피보험자 수는 2010년 2만 6,079명에서 2020년 3만 1,880명으로 약 22% 증가함.

○ 농림업의 연간 피보험자격 취득자와 상실자 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고 있음.

- 피보험자격 취득자 수는 2010년에 5만 268명이었으나 2020년도에는 2만 1,828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상실자 수도 5만 2,756명에서 2만 164명으로 감소하였음.

〈표 3-10〉 농림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현황

단위: 명

연도	피보험자 수	취 득			상실자 수
		계	신규취득자 수	경력취득자 수	
2010	26,079	50,268	6,328	43,940	52,756
2011	24,641	33,462	4,303	29,159	33,994
2012	26,588	28,664	3,880	24,784	26,353
2013	28,225	32,076	3,622	28,454	30,092
2014	28,574	31,539	3,662	27,877	31,081
2015	30,107	32,187	3,690	28,497	29,829
2016	29,610	28,523	3,260	25,263	28,149
2017	28,904	19,525	2,864	16,661	18,845
2018	28,971	19,458	2,697	16,761	17,644
2019	30,450	21,454	3,279	18,175	19,601
2020	31,800	21,828	2,964	18,864	20,164

자료: 한국고용정보원(각 연도). 「고용보험통계연보」. (<https://www.ei.go.kr/ei/eih/st/retrieveHoOfferList.do>; 2021.9.1.).

○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상실은 주로 사업장의 사정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과반이 넘지만 개인사정 등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함으로써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근로자의 개인사정이나 징계 또는 근로조건 변경, 임금체불 등으로 자발적 퇴사(피보험자격 상실)를 하는 근로자는 연간 1만 명가량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그중 남성이 2/3, 여성이 1/3을 차지하고 있음.

- 사업장의 폐업이나 도산, 구조조정에 따른 퇴사, 계약만료 등 사업장의 사정으로 인해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근로자는 2014년에 1만 9,990명에 이르렀다가 2020년에는 9,397명으로 줄어들었음.

〈표 3-11〉 농림업의 상실사유별 피보험자격 상실자 현황

단위: 명

성별	연도	근로자 귀책				사용자 귀책				기타	계
		개인 사정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사직	근로조건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	소계	폐업, 도산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계약만료, 공사종료	소계		
전체	2014	9,074	111	257	9,442	354	2,714	16,922	19,990	247	29,679
	2015	9,836	216	419	10,471	558	2,890	15,650	19,098	259	29,828
	2016	9,865	183	306	10,354	517	2,500	14,407	17,424	371	28,149
	2017	9,134	150	323	9,607	664	2,222	6,107	8,993	245	18,845
	2018	9,024	165	373	9,562	288	2,054	5,463	7,805	274	17,641
	2019	9,594	201	239	10,034	376	2,169	6,556	9,101	466	19,601
	2020	9,772	170	327	10,269	249	2,368	6,780	9,397	498	20,164
남	2014	6,408	84	191	6,683	252	1,535	13,008	14,795	205	21,683
	2015	6,615	148	316	7,079	334	1,646	12,013	13,993	186	21,258
	2016	6,752	130	208	7,090	352	1,296	11,006	12,654	295	20,039
	2017	6,194	94	223	6,511	417	1,207	3,383	5,007	188	11,706
	2018	6,096	106	221	6,423	204	1,092	2,788	4,084	188	10,695
	2019	6,203	140	134	6,477	187	1,127	3,149	4,463	367	11,307
	2020	6,553	117	163	6,833	137	1,201	3,399	4,737	357	11,927
여	2014	2,666	27	66	2,759	102	1,179	3,914	5,195	42	7,996
	2015	3,221	68	103	3,392	224	1,244	3,637	5,105	73	8,570
	2016	3,113	53	98	3,264	165	1,204	3,401	4,770	76	8,110
	2017	2,940	56	100	3,096	247	1,015	2,724	3,986	57	7,139
	2018	2,928	59	152	3,139	84	962	2,675	3,721	86	6,946
	2019	3,391	61	105	3,557	189	1,042	3,407	4,638	99	8,294
	2020	3,219	53	164	3,436	112	1,167	3,381	4,660	141	8,237

주: 기타는 정년으로 인한 퇴사, 분류불능, 기타를 포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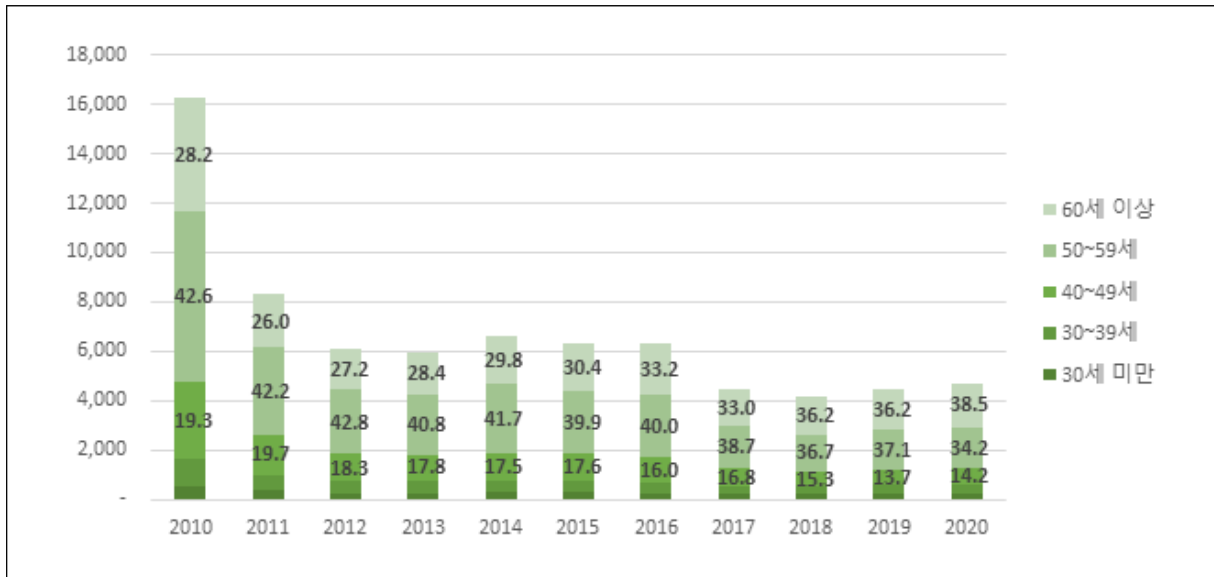
자료: 한국고용정보원(각 연도). 「고용보험통계연보」. (<https://www.ei.go.kr/ei/eih/st/retrieveHoOfferList.do>: 2021. 9. 1.)

○ 농림업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자는 2010년에 1만 6,241명이었으나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2020년에는 4,718명에 불과함.

- 그중에서도 4·50대의 감소 속도가 매우 빨랐는데 40대의 비율은 2010년 19.3%에서 2020년 14.2%로 감소하였으며 50대의 비율은 42.6%에서 34.2%로 감소하였음.
- 반면 60세 이상 근로자의 비율은 같은 기간 동안 28.2%에서 38.5%로 증가하였음.
- 이같은 연령 구조 변화는 농림업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근로자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함.

〈그림 3-2〉 농림업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단위: 명, %



주: 바 그래프의 숫자는 전체 인원 대비 연령별 비율임.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연보』, 각 연도. (<https://www.ei.go.kr/ei/eih/st/retrieveHoOfferList.do> 2021.9.1. 방문)

○ 근로자의 임금 수준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현황을 살펴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자의 평균 임금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0년도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30,160~40,000원 구간(42.5%)에 있는 근로자이며 40,000~60,000원 구간(36.6%) 근로자가 그 뒤를 잇고 있음.
- 그러나 2020년에는 80,000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비율이 29.0%로 가장 높고 60,000~70,000원 구간의 근로자 비율이 24.0%로 그 뒤를 잇고 있어 2010년에 비해 수급자격자의 평균 임금이 상승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음.

〈표 3-12〉 농림업의 기초임금일액별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단위: 명

연도	30,160원 미만	30,160~40,000원	40,000~60,000원	60,000~70,000원	70,000~80,000원	80,000원 초과	전체
2010	2,478 (15.3)	6902 (42.5)	5,949 (36.6)	375 (2.3)	183 (1.1)	350 (2.2)	16,241 (100.0)
2011	1,181 (14.2)	3003 (36.2)	2,957 (35.6)	442 (5.3)	249 (3.0)	465 (5.6)	8,299 (100.0)
2012	812 (13.3)	2136 (35.0)	2,275 (37.3)	287 (4.7)	175 (2.9)	419 (6.9)	6,104 (100.0)
2013	596 (10.1)	2113 (35.7)	2,147 (36.3)	313 (5.3)	219 (3.7)	525 (8.9)	5,913 (100.0)
2014	523 (7.9)	2384 (36.0)	2,576 (38.9)	363 (5.5)	191 (2.9)	592 (8.9)	6,629 (100.0)
2015	348 (5.5)	1524 (24.2)	3,323 (52.7)	349 (5.5)	210 (3.3)	546 (8.7)	6,301 (100.0)
2016	276 (4.4)	806 (12.8)	3,634 (57.7)	632 (10.0)	225 (3.6)	730 (11.6)	6,303 (100.0)
2017	230 (5.2)	374 (8.4)	2,347 (52.8)	534 (12.0)	257 (5.8)	702 (15.8)	4,445 (100.0)
2018	187 (4.5)	262 (6.3)	1,636 (39.6)	674 (16.3)	522 (12.6)	853 (20.6)	4,134 (100.0)
2019	151 (3.4)	192 (4.3)	1,368 (30.9)	883 (19.9)	650 (14.7)	1,185 (26.8)	4,429 (100.0)
2020	113 (2.4)	192 (4.1)	1,125 (23.8)	1,134 (24.0)	784 (16.6)	1,369 (29.0)	4,718 (100.0)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연보』, 각 연도. (<https://www.ei.go.kr/ei/eih/st/retrieveHoOfferList.do> 2021.9.1. 방문)

○ 농림업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액은 2010년에 약 505억 원이었으며 2만 1,078명에게 지급되었으나 실업급여 수급자 수가 감소하면서 지급액도 함께 낮아졌음.

○ 다만 2017년 이후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소폭 증가하였고 건당 지급액이 꾸준히 상승함에 따라 총 지급액은 반등하였음.

- 건당 지급액은 2010년에 231만 원가량이었다가 2020년에는 약 598만 원으로 상승하였는데 이는 정부가 물가상승이나 정책 관점에서 실업급여 지급단가를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²⁷⁾

○ 급여유형별로는 구직급여가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6,330명이 구직급여를 수령하였음.

27) 구직급여일액의 상한과 하한의 평균금액은 2010년에 34,796원에서 2020년에 63,060원으로 상승하였음(경총 2021).

〈표 3-13〉 농림업 분야 실업급여 지급 현황

단위: 명, 천 원

급여유형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구직급여	순수인원	20,725	13,079	8,421	7,884	8,843	8,280	7,873	6,200	5,227	5,688	6,330
	건수	21,368	13,402	8,602	8,033	8,988	8,370	7,938	6,256	5,289	5,723	6,361
	금액	49,681,265	30,836,480	20,830,075	21,405,806	25,326,932	25,892,370	26,783,076	23,010,375	21,999,161	27,373,002	38,285,165
상병급여	순수인원	75	40	37	22	10	8	3	8	8	9	3
	건수	106	72	62	42	69	62	48	36	31	28	18
	금액	114,328	97,675	68,158	72,290	127,942	109,954	110,600	57,845	60,472	80,914	44,476
조기재취직 촉진수당	순수인원	276	256	157	177	119	97	140	138	139	91	99
	건수	384	353	226	255	174	97	141	138	139	91	103
	금액	696,240	568,785	391,639	531,547	346,033	246,066	347,588	362,495	374,292	296,395	415,902
기타	순수인원	2	3	1	3	1	1	1	0	0	0	0
	건수	4	5	1	5	5	5	2	0	1	1	1
	금액	2,481	3,868	964	2,456	7,685	3,112	1,858	0	867	12	1,142
합계	순수인원	21,078	13,378	8,616	8,086	8,973	8,386	8,017	6,346	5,374	5,788	6,432
	건수	21,862	13,832	8,891	8,335	9,236	8,534	8,129	6,430	5,460	5,843	6,483
	금액	50,494,313	31,506,808	21,290,836	22,012,099	25,808,591	26,251,502	27,243,122	23,430,716	22,434,793	27,750,324	38,746,686
	건당 지급액	2,310	2,278	2,395	2,641	2,794	3,076	3,351	3,644	4,109	4,749	5,977

주 1) 순수인원은 동일인이 2가지 이상의 급여를 수령한 경우 동일한 사람으로 취급하여 계산한 것임.

주 2) 기타 급여는 미지급급여, 광역구직활동비, 직업능력개발수당, 이주비, 진찰비의 합임.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연보』, 각 연도. (<https://www.ei.go.kr/ei/eih/st/retrieveHoOfferList.do> 2021.9.1. 방문)

○ 산전 후 휴가급여를 받은 근로자 수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상승하는 추세였으나 이후 급격하게 감소하였음.

○ 연간 지급금액은 2억 1,320만 원~3억 500만 원가량이었으며 해가 지날수록 산전 후 휴가 급여의 지급단가가 오르면서 지급자 1인당 지급금액은 2019년에 380만 원에 이룸.

○ 사업장 규모별로는 10~99인 규모의 사업장에서 지급자가 가장 많았음.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기준으로는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가장 비중이 높으나 산전 후휴가를 부여할 수 있을 정도의 근무 여건을 갖춘 사업장은 중규모 이상이기 때문임.

〈표 3-14〉 사업장 규모별 산전후휴가급여 지원 현황(농림수산 분야)

단위: 명, 백만 원

연도	구분	계	5인 미만	5~9인	1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2010	초회수급자	86	16	14	43	11	2
	수급 금액	256.1	47.9	50.4	125.0	30.1	2.7
2011	초회수급자	98	16	14	51	17	0
	수급 금액	276.4	52.3	47.1	137.2	39.9	0.0
2012	초회수급자	90	15	11	56	8	0
	수급 금액	266.0	49.4	39.4	165.7	11.4	0.0
2013	초회수급자	78	10	14	42	12	0
	수급 금액	219.4	34.1	51.7	113.6	20.0	0.0
2014	초회수급자	85	11	9	54	10	1
	수급 금액	247.5	38.2	29.8	159.9	18.2	1.4
2015	초회수급자	101	11	10	68	9	3
	수급 금액	305.0	36.4	37.3	202.3	25.0	4.1
2016	초회수급자	103	20	18	61	2	2
	수급 금액	337.1	66.8	60.9	198.6	8.1	2.7
2017	초회수급자	90	11	6	70	2	1
	수급 금액	304.1	43.8	33.5	221.1	4.2	1.5
2018	초회수급자	62	14	3	41	3	1
	수급 금액	213.2	59.1	16.6	128.0	7.9	1.6
2019	초회수급자	69	20	11	33	3	2
	수급 금액	261.6	98.0	54.3	99.7	6.0	3.6

주: 농업, 임업, 수산 분야를 포함함.

자료: 한국고용정보원(각 연도). 「고용보험통계연보」. (<https://www.ei.go.kr/ei/eih/st/retrieveHoOfferList.do>: 2021. 9. 1.)

○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받은 근로자 수와 수급금액은 2010년 이후 매년 증가하여 2019년에는 102명에게 9억 908만 원을 지급하였음.

○ 규모별로는 10~99인 규모의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받은 근로자가 가장 많았으며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단가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수급자 1인당 수급 금액이 상승하였음.

- 1인 평균 수급액은 2010년 약 425만 원에서 2019년 약 891만 원으로 상승하였음.

〈표 3-15〉 사업장 규모별 육아휴직급여 지원 현황(농림수산 분야)

단위: 명, 천 원

연도	인원/금액	계	5인 미만	5~9인	1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2010	초회수급자	37	6	7	18	6	0
	수급 금액	157,285	39,000	24,933	74,352	19,000	0
2011	초회수급자	50	12	9	21	8	0
	수급 금액	265,285	55,140	37,692	120,051	52,401	0
2012	초회수급자	51	14	4	27	6	0
	수급 금액	317,950	72,674	39,969	171,836	33,471	0
2013	초회수급자	45	5	8	29	3	0
	수급 금액	293,200	61,787	39,905	174,945	16,563	0
2014	초회수급자	51	12	5	31	3	0
	수급 금액	319,948	55,907	30,566	221,305	12,170	0
2015	초회수급자	66	12	10	38	6	0
	수급 금액	427,620	70,770	69,321	255,387	32,142	0
2016	초회수급자	76	11	9	54	2	0
	수급 금액	460,746	72,588	67,890	311,767	8,501	0
2017	초회수급자	92	20	7	63	2	0
	수급 금액	581,825	118,047	58,843	395,501	9,434	0
2018	초회수급자	80	12	7	55	5	1
	수급 금액	665,746	102,870	51,183	474,385	36,183	1,125
2019	초회수급자	102	24	12	55	9	2
	수급 금액	909,082	178,628	94,760	537,621	75,219	22,854

주: 농업, 임업, 수산 분야를 포함함.

자료: 한국고용정보원(각 연도). 「고용보험통계연보」. (<https://www.ei.go.kr/ei/eih/st/retrieveHoOfferList.do>: 2021. 9. 1.).

4. 현행 농업부문 고용보험 적용 사각지대

- 농림수산부문의 고용보험 적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입 사업장 수와 피보험자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농업부문 법인 수와 해당 법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수 등을 고려할 때, 여전히 일부 농업법인에서는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됨.
 - 이와 관련한 예로 엄진영 외(2021)에서 실시한 70명의 농업법인 사업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률(38.6%)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비법인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은 당연가입 대상,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의 사업장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및 근로복지공단 신청이 전제될 경우 임의가입이 가능함.

- 하지만 비법인의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률은 낮을 것으로 예상됨.
 - 농림어업 부문 근로자 5인 이상²⁸⁾의 사업장 근무 근로자 비율은 2019년 기준 6.5%로 나타남.²⁹⁾ 이는 고용보험 가입이 처음부터 가능하지 않은 사업장 비율이 일정부분 농업 부문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함.
 - 또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비법인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고용보험 가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첫째,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아 사업장 신고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함. 엄진영 외(2021)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한 180개의 비법인 경영체 중 사업자 등록을 한 비법인 경영체는 38.3%에 지나지 않았음. 둘째, 비법인 중 다수를 차지하는 농가경영주는 상시근로자 산출 방법³⁰⁾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고용보험 당연가입 사업장 해당 여부를 인지 못 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판단됨. 셋째, 비법인 사업장의 많은 수의 근로자들이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인 상황과 지역 내 농작업팀 및 등록/미등록 인력소개소를 통한 근로자 공급에 대한 고용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은 현장에서의 고

28)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법인과 비법인을 확인할 수 없음. 따라서 법인과 비법인이 모두 포함된 수치라고 할 수 있음.

29)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함. 해당 비율은 전체 응답자 36,789명 중 해당하는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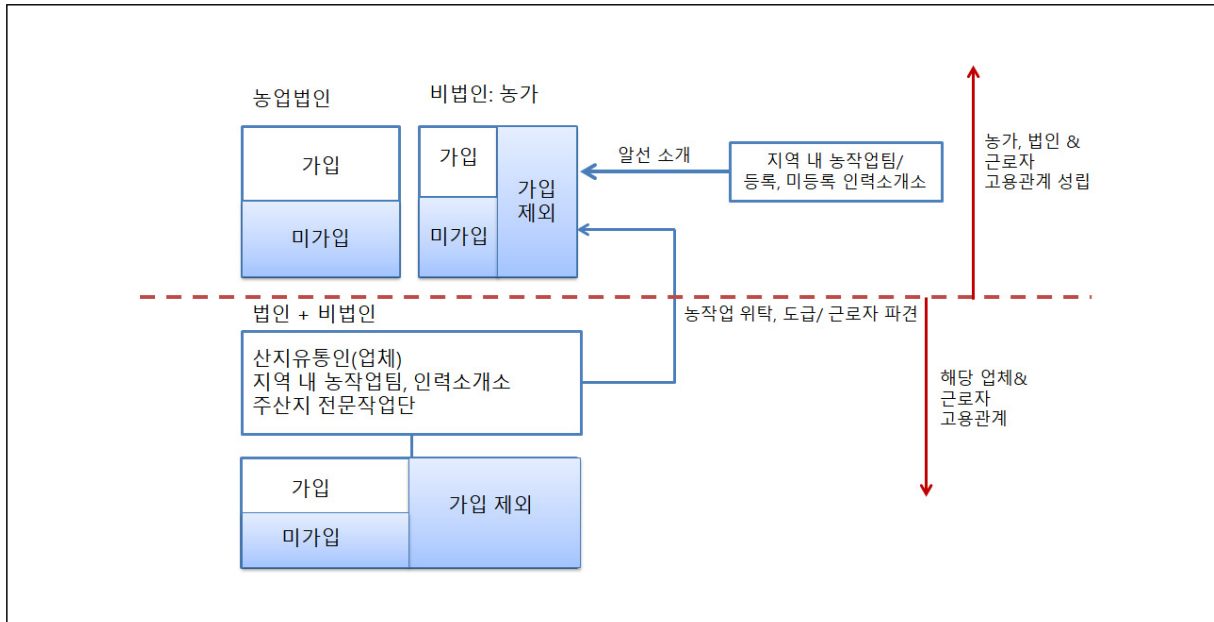
30) 상시근로자 산출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눈 값으로 정의하고 있음. 이때의 사용한 근로자에는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를 모두 포함하며, 파트타임 근로자도 포함됨. 그러나 건설업처럼 상시근로자 수가 수시로 변할 경우, 설정된 산정기간 내에서의 근로자 연인원을 산정기간 내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함. 그러나 근로시간 적용의 특례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 등과 관련된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총 공사 계약금액×해당 연도 노무비율) / (해당 연도의 건설업 월 평균임금×조업월수)로 산정함.

용보험 적용 여부 판단을 어렵게 함.

- 2019년 기준, 농림어업 부문에서 근무하는 237명의 근로자³¹⁾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 중 24.1%인 57명에 지나지 않았음(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부가조사, 2019).
- 현행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사각지대는 (1) 당연가입 대상인 농업법인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와 (2) 농가 등의 비법인에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당연가입 대상자 중 미가입자와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임.
 - 농가 및 법인에서 고용하는 근로자는 지인을 통해 고용되는 근로자, 지역 내 농작업팀, 또는 인력소개소 등을 통해 근로자를 소개받고 고용하는 근로자 등을 포함하며, 이 경우의 고용관계는 법인 및 농가와 근로자 사이에 성립되므로 법인과 농가가 고용보험 가입 주체에 해당함.
- 또 다른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는 (3) 농가로부터 농작업을 위탁, 도급 받는 업체에서 고용되는 근로자임. 그러나 현재 해당 업체들의 근로자 고용 규모, 고용 방식 등에 대한 자료는 전혀 존재하고 있지 않아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파악할 수 없음.
 - 농가로부터 농작업을 위탁, 도급받는 업체는 산지유통인(업체), 주산지전문작업단 등이 이에 속하며, 농가에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파견하는 업체는 지역 내 농작업팀, 등록 또는 미등록 인력소개소로 이 경우의 고용관계는 근로자와 해당 업체 간 성립되므로 고용보험 가입 주체는 해당 업체가 됨.
 - 산지유통업체와 등록 인력소개소의 경우 법인 또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산지유통인(비법인), 주산지전문작업단, 인력을 파견하는 지역 내 농작업팀, 미등록 인력소개소의 경우 사업자 등록 및 법인 형태일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됨. 산지유통인(업체)의 경우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근로자가 필요한 농작업을 다시 하도급하기도 함. 재하도급을 한 경우의 원수급자와 재하도급자 간의 보험 인수에 따라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가 달라지게 됨.

31) 법인, 비법인을 모두 포함하며, 농업, 임업, 어업 종사자를 모두 포함함. 농업부문의 법인 근로자, 농업부문의 비법인 근로자를 분리할 수 없음. 해당 수치는 응답자 수로 가중치를 반영하지 않은 수치임.

〈그림 3-3〉 현행 농업부문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사각지대 도식화



자료: 저자 작성.

5. 타 부문 고용보험 적용사례

5.1. 특수 업종의 고용보험 적용 논의 과정

○ 임금근로자에 대한 적용을 기초로 고용보험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해당 제도에서 포함하지 못했던 건설업 일용근로자, 예술업,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에 대한 논의와 연구는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표 3-16〉 참고).

〈표 3-16〉 특수 업종의 고용보험 적용 논의 과정

구분		논의 과정
임금 근로자	건설업 일용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5년 7월: 일용근로자, 60세 이후 취업자 제외 임금근로자 대상 고용보험 도입. • 1998년 9월: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월 80시간(주 18시간) 이상 근로자 포함 • 2004년 1월: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에게 고용보험 확대 적용 • 건설업 일용근로자 당면 적용 대상 사업장 기준 설정: 총공사금액이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미만인 경우에 「고용보험법」 당면 적용을 제외 • 건설업 일용근로자 피보험자격 신고: 하수급인 책임 하.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
	예술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 11월: 「예술인 복지법」 제정 • 2012년 11월: 「예술인 복지법」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 복지법」에 근거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예술인의 생계를 보장. 한계로 인해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필요성을 계속해서 제기

구분	논의 과정
예술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년: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및 지원강화'를 국정과제 채택 • 2014년: 고용노동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의 고용보험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 시작 • 2015년: 기존의 '문화예술인실태조사'를 '예술인실태조사'로 명칭 변경. 14개 예술분야, 16개 지역 대상으로 3년 주기로 실태조사 실시. 조사 내용은 예술활동 분야, 예술활동 내용, 고용 및 근로 형태, 생활 및 복지, 예술정책 만족도 임. • 2016년 9월: 장석춘 의원이 예술인을 자영업자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법안 대표 발의 • 2018년 11월: 한정애 의원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을 당연가입으로 고용보험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법안 대표 발의 • 2018년: 문재인 정부는 수차례 논의를 거쳐, '문화비전 2030'의 8대 핵심과제 중 예술인 복지 분야에서 '한국형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을 중장기 문화정책 비전으로 선언 • 2020년 5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 2020년 6월 공포, 2020년 12월 시행
임금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및 간접고용 확대가 심화되면서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본격화 • 2000년 10월: "비정형근로자 보호대책"을 발표, '근로자에 준하는 자' 개념을 신설. • 2002년 5월: "비정규근로자대책 관련 노사정 합의문"을 시작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에 대한 논의 촉발. • 2007년 10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을 위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008년 7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 • 2013년: 박근혜 정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국정과제로 채택 • 2016년 9월: 장석춘 의원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는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 적용을 국정과제로 제시 • 2018년 11월: 한정애 의원이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 2020년 5월: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사항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 • 2020년 9월: 국무회의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 • 2020년 12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 2021년 7월 이후 시행
자영업자 고용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8년 외환위기 이후 폐업하는 자영업자 증가.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도입 논의 및 연구 용역 • 2006년 1월: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제도를 도입 • 2012년 1월: 50인 미만 근로자 사용 자영업자 실업급여 적용 임의가입 방식 시작. 이후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 및 실업급여 모두 가입 방식 • 2016년 1월: 실업급여 가입제한 기간 개업일 6개월에서 1년 이내로 확대 • 2018년 1월: 5년 이내로 확대. 이후 가입제한 기간 삭제

자료: 저자 작성.

○ 논의 결과, 건설업 일용근로자는 2004년 1월 적용,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2006년 1월 도입, 예술업 고용보험은 2020년 12월 시행, 특수고용형태 종사자는 2021년 7월 이후 시행됨.

- 건설업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법」 내에 일괄적으로 포함되었으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제24조(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제32조(건설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 지원)에서만 건설업을 구분하여 제정함.
- 예술업 고용보험(「고용보험법」 제5장의 2), 특수형태고용보험(「고용보험법」 제5장의 3),³²⁾

자영업자 고용보험(「고용보험법」 제4절)은 기존의 임금근로자 고용보험법의 특례 조항으로 신설되어 추가됨.

○ 해당 내용의 고용보험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절과 같음.

5.2. 일반 근로자 고용보험(건설업 일용근로자 포함)³³⁾

가. 고용보험 적용 대상

○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함.

- 개인이 운영하는 상시근로자 4명 이하의 농·임·어업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제외됨. 그러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있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뒤 승인을 얻으면 임의가입이 가능함.
- 건설면허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000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나 연면적 100m² 이하인 건축 또는 연면적 200m² 이하인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고용보험의 적용을 제외함.

○ 고용보험 가입 제외 대상 근로자는 다음과 같음.

-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은 실업급여 적용을 제외하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함.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하여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고용보험 가입 제외 대상임.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된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임.
- 그 밖에 공무원(실업급여에 한해 별정직 및 임기제 공무원 예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외국인 근로자(체류자격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는 고용보험 적용 제외임.

32) 정확하게는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 명칭으로 추가됨.

33) 근로복지공단(2021), 한국예술인복지재단(2020)을 참고하여 작성함.

□ 사업장 신고(보험관계 신고)

○ 고용보험 의무가입사업장은 해당 사업이 시작된 날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해당하게 된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됨. 해당 사업주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은 종료일 전날까지)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표초본, 근로자명부 등을 제출해야 함. 근로자 고용신고서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제출함.

- 건설공사 및 별목업의 제출서류는 보험관계성립신고서, 공사도급계약서(공사비내역서 포함), 건축 또는 별목허가서임.

○ 임의가입사업장은 보험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접수한 날의 다음날이 보험관계 성립일임. 하수급인 사업주가 보험가입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공사의 실제 착공일이 보험관계 성립일임. 해당 사업주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은 종료일 전날까지) 보험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표초본, 근로자명부 등을 제출해야 함. 근로자 고용신고서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제출함.

- 건설공사 및 별목업은 사업종료일 전날까지 보험가입신청서, 공사도급계약서(공사비내역서 포함), 건축 또는 별목허가서를 제출해야 함.

○ 해당 사업주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에 변경 사항이 발행하면 그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함.

- 변경 사항에는 사업주(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 사업의 종류,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포함), 사업의 기간(건설공사 또는 별목업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해당 여부에 변경이 있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있음.

나. 피보험자격 관리

□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 해당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사유가 발생한 경우 취득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등기임원이나 사업주의 동거친족의 경우 일반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다만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 일반근로자와 같이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 받는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음.

○ 피보험자격 취득일은 다음과 같음.

- 적용제외 근로자였던 자가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
- 새로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보험관계 성립일
- 고용보험 적용사업에 새로 채용된 경우에는 처음으로 근로를 시작한 날
- 피보험자격이 없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변경 등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새로운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시작한 날
-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가입신청을 한 날의 다음날
- 고용보험에 가입신청을 한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가입을 신청한 날의 다음날
- 둘 이상의 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된 근로자가 나중에 신고된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미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업장에서의 피보험자격 상실일

□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 해당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피보험자격 상실일은 다음과 같음.

- 이직(퇴직)에 의하여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이직일(퇴직일)의 다음날
-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날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의 보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보험관계 소멸일
- 근로계약의 변경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의 다음날
-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보험 탈퇴신청을 한 경우에는 탈퇴를 신청한 날의 다음날

- 고용보험에 가입한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이 고용보험 탈퇴신청을 한 경우에는 탈퇴를 신청한 날의 다음날
- 피보험자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제외 대상자가 된 날
- 이종고용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나중에 고용된 사업에서의 피보험자격 취득일

□ 근로내용확인신고

-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주는 근로자 취득(고용)신고, 상실(고용종료)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고 신고사유 발생일 다음달 15일까지 공단에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여러 달을 한 장에 신고할 수 없고 월별로 각각 신고해야 함.
 -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경우에 당해 일용근로자에 대해서 국세청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음.
- 당연적용 대상 외국인 일용근로자는 국내근로자와 같이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따라 신고함.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 외국인 일용근로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와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를 제출함.
- 건설업은 고용관리책임자를 기재하며, 고용관리책임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장별(건설공사별)로 지정 신고해야 함.

다. 보험료 산정 및 부과

- 고용보험료는 개인별 월평균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함. 실업급여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험료의 각각 절반씩을 부담하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함.
 - 건설업 및 별목업은 사업주가 직접 당해연도의 보수총액 추정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개산 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납부함.
 - 보수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급여액과 동일한 개념으로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임.

-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0.8%이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규모에 따라 150인 미만 기업 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0.45%, 150인 이상~1,000인 미만 기업 0.65%, 1,000인 이상 기업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는 0.85%임.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 단위로 보험료율이 결정되어 해당 사업주가 운영하는 모든 국내 사업의 규모를 기준으로 결정함.
- 일반(상용) 근로자의 월별보험료는 고용일(자격취득일)부터 고용종료일(자격상실일) 전일까지 부과하며, 개인별 월평균보수에 고용보험 보험료율을 곱하여 월별보험료를 산정하여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사업장 단위로 부과함. 일용근로자의 월별보험료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기입된 해당 월의 보수총액을 월평균보수로 간주하여 월별보험료를 산정함.
- 월별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장에서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신고대상 근로자의 연간 보수총액을 매년 3월 15일까지 신고하면, 확정된 보험료를 산정함(추가 부과, 충당, 반환).
 - 근로자가입정보가 있는 상용근로자는 개인별로 정산하며, 일용근로자 및 그 밖의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상용근로자 또는 산재보험 고용정보미신고 외국인근로자 등은 사업장 정산임.

5.3.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특례³⁴⁾

가. 고용보험 적용 대상

- 예술인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에 한해, 근로자³⁵⁾가 아닌 프리랜서 예술인으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이 50만 원 이상이며 본인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당연적용됨.
 - 적용 제외 대상은 65세 이후에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신규 체결한 예술인임.
 -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의 '단기예술인'은 소득에 관계없이 고용보험을 당연적용함.

³⁴⁾ 근로복지공단(2021), 한국예술인복지재단(2020)을 참고하여 작성함.

³⁵⁾ 근로계약을 맺은 예술인은 근로자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임.

○ 「고용보험법」은 원칙적으로 피보험자격의 이중취득을 허용하지 않으나, 동시에 여러 계약을 수행하는 예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각의 당연가입 대상 일자리에서 피보험자격 취득을 허용함.³⁶⁾

- 다만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 이중취득과 임의가입 방식의 자영업자로서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을 제한함. 일용근로자와 단기예술인은 해당 피보험자격과 자영업자 피보험자격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함.

○ 또한 예술인이 하나의 사업주와 맺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이 50만 원 미만이라도 둘 이상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서 합산한 월평균소득이 50만 원 이상이면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취득을 신청할 수 있음.

□ 사업장 신고(보험관계 신고)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여 보험가입자가 된 사업주는 처음 한번만 '고용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함.

- 처음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예술인 고용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함.

- 사업장에 이미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있고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별도의 고용보험 성립신고를 해야 함.

- 제출 서류: 성립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표초본, 기타(예술인명부 등) 함께 제출 (「전자정부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생략)

- 제출 방법: 우편, FAX, 직접 방문 제출,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를 통한 인터넷 신고

○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성립신고서를 처리하면 각 사업장별로 고용보험 관리번호(예시: ***-**-*****-* 형식 11자리 숫자)를 부여함. 이후 해당 관리번호를 통해 각종 예술인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또는 보험료 신고를 처리함.

36)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은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각각 체결하거나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근로계약'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적용됨.

- 예술인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별도로 관리번호를 부여함. 임금근로자를 고용하여 보험관계가 기 성립된 사업장은 예술인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시 직권으로 예술인 관련 사업장관리번호를 부여함.

○ 사업의 폐업 및 종료 등으로 인해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 그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멸신고를 해야 함.

나. 피보험자격 관리

○ 예술인은 문화예술용역 계약기간에 따라서 피보험자격을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일반예술과 1개월 미만인 단기예술인으로 구분함.

○ 예술인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보험가입자)는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법」 등에서 정한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에 대해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 보험료 납부 등의 의무가 부여됨.

- 다만 개별 계약의 월평균소득이 50만 원 미만이나 중복 계약기간 중의 합산 월평균소득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예술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취득 신청함.

- 단기예술인의 경우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사업주 의무 가입임.

○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3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도급사업 중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발주사업은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에게 피보험자격 신고 의무가 있음.

- 원칙적으로는 여러 차례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예술인과 직접 체결한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 보험료 납부 등의 의무를 부담함.

○ 피보험자격을 유지되는 피보험 기간은 문화예술용역 계약기간으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개시일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며 계약 종료일 다음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함.

□ 피보험자격을 관한 신고

○ 피보험자격 신고 기한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다음 달 15일까지임.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일반예술인은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를 제출하고,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단기예술인은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와

유사하게 ‘고용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함.

-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예술인이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직접 공단에 신고할 수 있음.

○ 일반예술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에 대한 개별 사항을 신고함.

- ① 이름, ②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체류자격), ③ 월평균보수액, ④ 자격취득일(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결에 따른 처음 노무제공일), ⑤ 계약종료연월(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 ⑥ 예술인의 직종 부호, ⑦ 보험료 부과구분 부호를 ‘56’, 사유를 ‘25’로 기재³⁷⁾

○ ‘단기예술인 노무제공 내용 확인신고서’는 매월 작성하여 제출함.

- 매일 노무제공 여부를 표기함. 일자별 노무제공은 예술인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에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사항임.

다. 보험료 산정 및 부과

□ 보험료 산정

○ 예술인은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만 적용함에 따라 실업급여 계정의 보험료만 부담함. 예술인 고용보험료는 보수액에 실업급여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데, 2021년 7월 1일부터 보험료율이 기존 1.6%에서 1.4%로 인하됨에 따라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각 0.7%를 균등 부담함.

- 예술인 고용보험료 = 예술인 보수액 × 1.4%(보험료율)

○ 예술인의 보수액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제19조)과 기타소득(제21조)에서 비과세소득 및 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임. 경비는 단일공제율 20%를 적용함. 보수액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월평균보수가 월단위 기준보수보다 낮은 경우에는 기준보수 80만 원(=보험료 하한액)을 적용함. 다만 단기예술인과 소득합산신청 예술인은 월평균보수 하한액을 적용하지 않고 실제 보수를 적용함.

37) 보험료 부과구분 부호 ‘56’은 보험료 부과범위가 산재보험은 해당하지 않고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만 해당함을 의미함. 보험료 부과구분 사유 ‘25’는 대상 종사자가 예술인임을 의미함.

- 월평균보수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전년도 종사개월수로 나누어 산정함. 당해연도 피보험 자격 취득자는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시 신고한 금액을 종사개월수로 나누어 산정함. 단기예술인은 노무제공내용신고서상의 월 보수총액을 월평균보수로 함.
- 예술인 보수액 =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중 「소득세법」 제 12조 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 × 0.8(기준경비율 20% 적용)

□ 보험료 납부

- 사업주는 공단이 매월 산정·부과한 고용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함. 또한 사업주는 예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원천 공제하여 함께 납부함.
 - 보험료 납부시기와 원천공제 시기가 다르므로 보험료 납부와 별개로 예술인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고용보험료를 원천 공제함.
 - 「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제6·7항에 따른 도급사업 중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은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예술인의 고용보험료를 원천 공제하여 납부함.
- 계약 종료(피보험자격상실) 또는 매년 보수총액신고서를 통해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정산함.
 - 일반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정산과 같음.
 - 전년도에 이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 종료된 예술인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아도 됨.
 - 단기예술인도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 및 보험료 정산 대상에 포함함.
 - 보수총액신고서에 따라 정산한 결과 예술인의 보수총액이 월평균보수 하한액(기준보수)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 하한액으로 보험료를 산정함.

라. 실업급여

○ 수급 요건

- 노무 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9개월 이상일 것
-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 예술인으로 피보험자격 유지
- 이직 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일정

수준의 소득 감소로 인한 자발적 이직 시에도 수급자격을 인정함)

- 단기예술인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에 종사시 실업을 신고한 사업 외의 사업에서 90일 이상 단기예술인으로 종사하였을 것

○ 지급 수준

-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60%를 지급하며, 상한액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1일 66,000원임. 구직급여일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일액인 기초일액은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 신고된 보수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임.

○ 지급 기간

- 피보험기간은 이직 전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의 합계로 산정함. 단기예술인은 역월 기준으로 노무제공일이 월 11일 이상이면 1개월로 간주, 11일 미만이면 해당 월의 노무제공일을 모두 합산한 후 22일로 나누어 월단위로 환산함.
-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120~270일 지급함.

〈표 3-17〉 예술인 실업급여 지급기간

구분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일 현재 연령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자료: 한국예술인복지재단(2020: 59). 『예술인 고용보험』.

마. 출산전후급여

○ 수급 요건

- 출산(유산·사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 출산(유산·사산)일 전후로 소정기간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 지급 수준 및 기간

- 지급금액은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이며, 상한액은 월 200만 원, 하한액

은 월 60만 원임.

- 지급기간은 출산 전과 출산 후를 더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 중 소득 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임.

5.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특례³⁸⁾

가. 고용보험 적용 대상

○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직종에는 ① 보험설계사, ② 신용카드회원모집인, ③ 대출모집인, ④ 학습지교사, ⑤ 교육교구방문강사, ⑥ 택배기사, ⑦ 대여제품방문점검원, ⑧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⑨ 방문판매원, ⑩ 화물차주, ⑪ 건설기계조종사, ⑫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가 있음.

- 보험설계사 중 교차 보험모집인은 제외함.
- 신용카드회원모집인 중 제휴업체 카드모집인은 제외함.
- 방문판매원 중 자가소비 방문판매원은 제외함.
- 화물차주는 수출입컨테이너 또는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을 운송함.

○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직종에는 ⑬ 퀵서비스기사, ⑭ 대리운전기사가 있음.

○ 적용 제외 대상은 65세 이후에 신규로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 원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임. 다만 1개월 미만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단기노무제공자는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보수액이란 노무제공자가 노무제공계약 체결 후 월 단위로 실제 발생한 소득으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제소득과 경비를 제외한 금액임.

□ 사업장 신고(보험관계 신고)

○ 노무제공계약 체결 등으로 보험가입자가 된 사업주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해야 함.

³⁸⁾ 근로복지공단(2021), 한국예술인복지재단(2020)을 참고하여 작성함.

- 사업의 폐업·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소멸신고 필요

○ 보험관계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함.

〈표 3-18〉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보험관계 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액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이상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신고 등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자료: 전국민고용보험추진단(2021: 6).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설명자료』.

나. 피보험자격 관리

○ 노무제공자는 노무제공 계약기간에 따라서 노무제공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노무제공자를 일반노무제공자, 1개월 미만인 노무제공자를 단기노무제공자로 구분함.

○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보험가입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에 대해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 보험료의 납부 등의 의무가 부여됨.

○ 노무제공자는 피보험자격의 이중취득이 허용되어 노무제공계약(노무제공자)과 근로계약(근로자) 또는 문화예술용역(예술인) 관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 각 사업에서 모두 피보험자격을 취득함.

□ 피보험자격 취득

○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노무제공계약의 '시작일'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함.

- 2021년 7월 1일 이전에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이 시행되는 2021년 7월 1일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함.

□ 피보험자격 상실

○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법」 제14조에 따라 노무제공계약의 '종료일의 다음 날' 등에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함.

* (피보험자격 상실일) ▲적용제외 대상자가 된 날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사업이 폐지된 날의 다음 날 등) ▲이직한 날의 다음 날 ▲사망한 날의 다음 날 등

□ 노무제공자의 소득합산 신청(2022년 1월부터 적용)

○ 피보험자격 취득

-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노무제공계약의 월보수를 합산하여 80만 원 이상인 경우, '같은 기간의 시작일(사유 발생일)'에 피보험자격 취득

* 소득합산에 따른 고용보험 적용도 당연가입이므로 노무제공자의 소득합산 신청일이 아닌 '사유발생일'에 소급해서 고용보험을 적용함(다만, 노무제공자가 같은 기간의 월보수 합산액이 80만 원 이상인 다음달 15일까지 신청한 경우 취득).

○ 피보험자격 상실

-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노무제공계약의 월보수를 합산하여 80만 원 이상인 경우, '같은 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날'에 피보험자격 상실

□ 사업주의 취득·상실 신고

○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이 적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노무제공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 고용보험 적용 대상임에도 만약 사업주가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무제공자가 노무제공계약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신고 가능

* 노무제공계약 관계 증명서류는 형식보다는 실질적으로 노무제공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의미

□ 피보험자(보험관계) 변경 신고 및 확인 청구

○ (변경 신고) 사업주는 피보험자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거나 정정되었을 때(노무제공자의 경우, 노무제공 관련 계약, 월보수 변경 등 사유 발생 시)에는 변경일이나 정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함.

○ (확인 청구)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노무제공자는 공단에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음.

- 확인 청구 사유는 ①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가 누락된 경우, ②피보험기간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 ③피보험자격을 신고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상실사유 정정 포함)이며, 확인 청구 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함.

□ 과태료 부과

○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등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함.

〈표 3-19〉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액

위반행위	과태료금액		
	1차	2차	3차 이상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	피보험자 1명당 3만 원, 합산액 최대 100만 원	피보험자 1명당 3만 원, 합산액 최대 100만 원	피보험자 1명당 3만 원, 합산액 최대 100만 원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피보험자 1명당 5만 원, 합산액 최대 100만 원	피보험자 1명당 8만 원, 합산액 최대 200만 원	피보험자 1명당 10만 원, 합산액 최대 300만 원

자료: 전국민고용보험추진단(2021: 9).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설명자료』.

다. 보험료 산정 및 부과

○ 노무제공자는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만 적용함에 따라 실업급여 계정의 보험료만 부담함.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는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노무제공자 보험료율은 육아휴직급여 사업 등이 적용되지 않음을 고려하여 1.4%를 적용하되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0.7%를 균등 부담함.

-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 노무제공자 보수액 × 1.4%(보험료율)

○ 노무제공자 보수액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제19조)과 기타소득(제21조)에서 비과세소득 및 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임.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는 직종에 따라 국세청의 기준경비율과 동일하게 적용함.

○ 보수액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월평균보수가 월단위 기준보수보다 낮은 경우에는 기

준보수 133만 원(=보험료 하한액)을 적용함. 수차례 도급 등으로 소득 확정이 어려운 건설 기계조종사와 화물차주는 직종별 기준보수(건설기계조종사 2,479,444원, 화물차주 4,310,000원)를 적용함.

○ 노무제공자에게 적용되는 고용보험료 상한액은 고용보험 재정건전성,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전전년도 보험가입자 보험료 평균액의 10배 이내로 설정함.

- 월별 상한액 441,150원, 연간 상한액 5,293,800원

○ 사업주는 노무제공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노무제공자 월보수액을 신고함.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는 사업주가 노무제공자 부담분까지 원천공제하여 매월 납부함.

- 노무제공자 월보수액 신고는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2021년 7월부터 사업소득 간이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도록 변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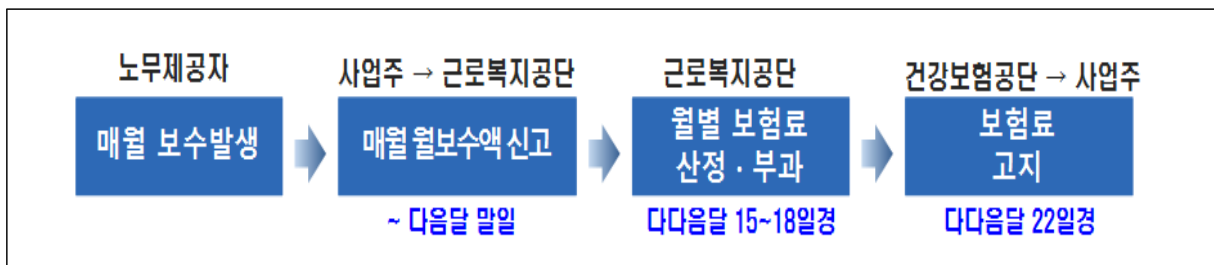
□ 보험료 부과방식

○ 사업주가 매월 신고하는 노무제공자의 월보수액을 기준으로 매월 보험료를 산정·부과함.

- 사업주는 노무제공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노무제공자 월보수액을 신고함.

* 2021년 7월부터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토록 변경 (7월 소득 지급 시 8월 말일까지 신고)

〈그림 3-4〉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보험료 부과 절차



자료: 전국민고용보험추진단(2021: 13).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설명자료』.

□ 보험료 납부

○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는 사업주가 노무제공자 부담분까지 원천공제하여 매월 납부함.

○ 보험료 부과 고지 방법

- 보험료는 사업장당 매월 부과·납부해야 하는 노무제공자 총 인원수 및 총 보험료(1.4%, 사업주·노무제공자 각 0.7%)로 부과·고지
- 사업장 또는 고용보험료 부과 대상인 노무제공자가 매월 부과되는 보험료의 확인을 원할 경우 '고용산재토탈서비스'를 통해 조회 가능

□ 기준보수 적용(보험료 하한액)

○ 기준보수 적용 사유(보험료징수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 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보수 산정·확인이 곤란한 경우
-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소재지 파악이 곤란한 경우
- 조사에 의한 산정 시 보수 관련 자료 확인이 곤란한 경우
- 노무제공자의 개인별 월보수액이 월단위 기준보수보다 적은 경우

라. 실업급여

○ 수급 요건

- 노무 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2개월 이상일 것³⁹⁾
-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 노무제공자로 피보험자격 유지
- 이직 사유가 「고용보험법」 제77조의8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일

³⁹⁾ 다수의 고용 형태에 종사한 사람의 피보험단위기간은 각 고용 형태별 종사기간의 비율에 따라 각 고용 형태별 기여요건 산정 방식으로 산정한 결과를 합하여 산정함.

정 수준의 소득 감소로 인한 자발적 이직 시에도 수급자격을 인정함)⁴⁰⁾

○ 지급 수준

-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60%를 지급하며, 상한액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1일 66,000원임. 하한액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기준보수의 60%가 실질적인 하한액으로 작용함. 구직급여일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일액인 기초일액은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 신고된 보수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임.

○ 지급 기간

- 노무제공자에 대한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120~270일 지급함.

〈표 3-20〉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구분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일 현재 연령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자료: 전국민고용보험추진단(2021: 21).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설명자료』.

마. 출산전후급여

○ 수급 요건

- 출산(유산·사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 출산(유산·사산)일 전후로 소정기간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 지급 수준 및 기간

- 지급금액은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이며, 상한액은 월 200만 원, 하한액은 월 80만 원임.

40)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의 노무제공계약 소득(보수)이 전년 동일기간보다 30% 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에 전년도 월평균 보수보다 3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

- 지급기간은 출산 전과 출산 후를 더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 중 소득 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임.

〈표 3-21〉 일반근로자,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정리

구분	근로자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 범위	적용 대상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단기예술인 포함)	
	주요 적용 제외	주 15시간 미만자 (단, 3개월 이상 근무시 적용)	문화예술용역 계약별 월평균 소득 50만 원 미만자 (단, 소득합산신청으로 50만 원 이상시 적용)	14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단기노무제공자 포함)
		65세 이후 신규자	65세 이후 신규자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월평균 소득 80만 원 미만자 (단, 소득합산신청으로 80만 원 이상시 2022년 1월부터 적용)
피보험자 관리	보험관계 신고 (성립·소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립) 사업주가 근로자 최초 사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 ▶ 고용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 (소멸) 사업주가 사업의 폐업·종료 등 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소멸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립) 사업주가 예술인 최초 사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 ▶ 고용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 (소멸) 사업주가 사업의 폐업·종료 등 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소멸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립) 사업주가 노무제공자 최초 사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 ▶ 고용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 (소멸) 사업주가 사업의 폐업·종료 등 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소멸신고
	피보험자격 신고 (취득·상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퇴사 시) 사업주가 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 ▶ 근로자: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매월 다음달 15일까지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시) 사업주가 노무제공개시일 다음달 15일까지 취득신고, 계약만료일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 ▶ 일반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 단기예술인: 고용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매월 다음달 15일까지 제출) * 소득을 합산하여 가입할 경우 예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무제공계약 시) 사업주가 노무제공개시일 다음달 15일까지 취득신고, 계약만료일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 ▶ 일반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 단기노무제공자: 고용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매월 다음달 15일까지 제출) * 소득을 합산하여 가입할 경우 노무제공자가 합산신청을 하고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
	가입기간 (피보험자격)	근로계약 기간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기간(노무제공기간)	노무제공계약 기간(노무제공기간)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p>이중취득 금지(주된 사업장으로만 피보험자격 취득)</p> <p>* 주된 사업장 기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② (월평균보수가 동일한 경우) 월수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③ ①, ② 판단이 어려울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이중취득 허용 (예술인+예술인, 근로자+예술인)	<p>이중취득 허용(노무제공자+노무제공자, 노무제공자+근로자, 노무제공자+예술인)</p> <p>* 노무제공자+자영업자는 원칙적으로 금지이나 원하는 경우 유지 또는 취득</p>
보험료 납부	월보험료 산정	월평균보수 × 보험료율	월보수액 × 보험료율	월보수액 × 보험료율
	보수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사업소득+기타소득)-비과세소득-경비 * 기준경비율 20% 적용	(사업소득+기타소득)-비과세소득-경비 * 직종에 따라 국세청의 기준경비율 적용

(계속)

구분		근로자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험료 납부	보험료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업급여 1.6%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0.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업급여 1.4%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미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업급여 1.4%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미적용
	보험료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월 사업장 소속 근로자 전체 보험료 합산 부과 • 매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보험료 원천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월 예술인 전체 보험료 합산 부과 • 매월 사업주가 예술인 보험료 원천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월 사업주가 매월 말까지 노무제공자 (전월)월보수액 신고 * 매월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매월 노무제공자 전체 보험료 합산 부과 • 매월 사업주가 노무제공자 보험료 원천공제
실업급여 (구직급여) 지급	수급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직 전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 기간 9개월 이상 • 이직 전 24개월 중 예술인 피보험자격 3개월 이상 유지 • 비자발적 이직 * 소득 감소에 따른 이직 일부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직 전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 기간 12개월 이상 • 이직 전 24개월 중 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 3개월 이상 유지 • 비자발적 이직 * 소득 감소에 따른 이직 일부 인정
	지급 수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구직급여 기초일액의 60%	이직 전 12개월 보수총액 기준으로 산정한 구직급여 기초일액의 60%	이직 전 12개월 보수총액 기준으로 산정한 구직급여 기초일액의 60%
	지급 기간	120일 ~ 270일	120일 ~ 270일	120일 ~ 270일
	수급기간 중 소득활동인정	수급기간 중 취업한 날에 대해서는 구직급여일액 전부를 감액	수급기간 중 소득 발생시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고 구직급여 지급	수급기간 중 소득 발생시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고 구직급여 지급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급	수급 요건	휴가종료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출산(유산, 사산)일 직전 피보험 단위기간 3개월 충족	출산(유산, 사산)일 직전 피보험 단위기간 3개월 충족
	지급 수준	휴가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100%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
	지급 기간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일부	출산일 전후 90일	출산일 전후 90일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적용 여부	적용	미적용	미적용

자료: 근로복지공단(2021); 전국민고용보험추진단(2021: 21).

4

농업 고용환경 및 근로실태 조사⁴¹⁾

1. 조사 개요

1.1. 조사 목적

- 농업부문의 취업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안전망, 고용관계, 근로계약, 서면 계약, 고용보험 제도 인지도 및 가입률, 고용보험 필요성 인지 정도, 향후 고용보험 가입 의향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1:1 방문 면접조사를 통해 실시함.

1.2. 표본 설계와 한계

- 설문조사 대상은 농업법인, 농가, 농업 관련 사업체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며, 경영주(사업주)와 근로자를 구분하여 설문 조사함.
 - 농업 관련 사업체는 농가와 농작업 관련 계약을 맺는 사업체로, 발떼기(포전매매), 계약재배, 농작업 위탁·도급, 인력파견 등을 하는 업체이면서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고 있는 업체를 의미함. 참고로 인력 알선·소개(직업소개소)의 경우,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맺는 주체는 농가가 되기 때문에 이의 경우는 배제함.

41) 해당 설문조사는 R&R 리서치에서 수행한 결과를 사용함.

1.2.1. 농업법인

○ 농업법인 표본 설계는 다음과 같음.

○ 추출 방식은 2019년 농업법인실태조사를 추출 틀로 하여 지역과 법인 형태를 고려한 할당 표본 추출을 하였음.

- 본 연구에서의 지역과 법인 형태를 고려하여 할당표본 추출 이유는 첫째, 농업 관련 통계(경제활동인구조사,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농림어업조사 등)에서 할당표본 추출을 할 때 지역을 기준으로 표본을 추출한 것을 고려하였음. 둘째, 한정된 예산에서 표본 수를 최대한 늘리기 위해, 지역과 법인 형태 이외의 세부 정보를 반영하지 못하였음.
- 현재의 농업법인 대상 설문조사 표본 추출은 지역과 법인 형태 이외의 세부 정보가 반영되어 추출되지 않아, 이의 고려가 필요한 연구일 경우, 본 연구의 설문조사 자료는 한계가 존재함.

○ 농업법인 사업주와 농업법인 근로자는 각각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농업법인 사업주 표본에서 도출된 통계치는 신뢰수준 95%에서 표본오차 $\pm 6.84\%P$ 이며, 농업법인 근로자 표본에서 도출된 통계치는 신뢰수준 95%에서 표본오차 $\pm 6.92\%P$ 임.

○ 설문조사를 위한 개별 사업체명과 연락처, 주소 등에 관한 정보는 NICE 신용평가 기업체 정보를 활용함.

- 즉, 2019년 농업법인조사의 지역과 법인 형태를 기준으로 200개 할당표본 틀을 추출하고 연락처, 주소 등 설문조사를 위한 정보는 NICE 기업체 정보를 활용한 것임.
- 이에 따라 전체 기준으로 2019년 농업법인조사와 일부 법인의 형태(영농법인 및 회사법인) 및 종사자의 지위별(임시·상용 및 일용근로자 등) 비율이 일부 차이가 있으나 오차 범위 내에 존재함.
- 하지만 표본 추출 틀의 기준을 지역-법인 형태를 연계하여 설정할 경우, 일부 지역의 지역-법인 형태의 농업법인조사 비율과 본 연구의 설문조사 자료에서의 비율 차이가 오차 범위 밖에서 존재할 수 있음. 이는 표본 추출 틀이 지역-법인 형태를 연계한 것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임. 따라서 지역-법인의 형태를 연계하고, 추가로 이외의 세부 정보(예: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업의 세세 품목(예시: 배추, 당근, 무, 노지시금치 등)이 반영되어

추출이 필요한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설문조사 자료를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함.

○ 농업법인 근로자의 경우, 농업법인 사업주와 마찬가지로 지역과 법인 형태를 고려한 할당표본 추출에 따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농업법인 경영주와 동일한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농업법인 경영주 설문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모두 포함되어 있음. 농업법인 경영주와 동일한 사업체의 근로자로 구성하지 못한 이유는 해당 근로자들이 응답을 거부하거나 농업법인 방문 시에 근로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 등임.
- 농업법인 근로자도 지역-법인 형태를 연계하고, 이외의 세부 정보(예: 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업의 세세 품목(예시: 배추, 당근, 무, 노지시금치 등))가 반영되어 추출이 필요한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설문조사 자료를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함.

○ 농업법인 표본 설계와 한계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음.

구분	경영주	근로자
1. 조사 대상	• 전국의 농업회사법인 및 영농조합법인을 경영하는 경영주 및 고용 근로자 • 모집단: 영농조합법인 10,230개, 농업회사법인 13,085개 총 23,315개	
2.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개별면접 조사	
3. 표본수	• 200명	• 200명
4.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 6.84%P	• 95% 신뢰수준에서 ± 6.92%P
5. 표본 추출	• 지역, 법인형태 고려한 할당표본 추출 • 표본 추출 틀: 「2019년 기준 농업법인조사」	• 지역, 법인 형태를 고려한 할당표본 추출 • 표본 추출 틀: 「2019년 기준 농업법인조사」
6. 한계	• 모집단과 실제 설문조사를 위한 사업체명, 연락처, 주소 등 필요 정보의 출처가 달라서 추적 조사가 필요할 경우 한계가 존재함.	

1.2.2. 농가 (비법인)

○ 농가의 표본 설계는 다음과 같음.

○ 표본 추출 틀은 1차로 2015년 기준 농업총조사로 하되 2015년 자료가 최신이므로 한계가 존재함. 이를 고려하여 2차로 2019년 농림어업조사를 표본 추출 틀로 하여 표본을 추출함. 2015년 농업총조사와 2019년 농림어업조사의 지역 기준은 동일하며, 작목 기준은 아래와 같음.

- 2015년 농업총조사의 작목은 논벼노지, 식량작물 노지, 식량작물 시설, 채소·산나물 노지, 채소·산나물 시설, 특용작물·버섯 노지, 특용작물·버섯 시설, 과수 노지, 과수 시설, 약

용작물 노지, 약용작물 시설, 화초·관상 작물 노지, 화초·관상 작물 시설, 기타 작물 노지, 기타 작물 시설, 축산으로 구분됨.

- 2019년 농림어업조사의 작목은 논벼, 식량작물, 채소·산나물, 특용작물·버섯, 과수, 약용작물, 화초·관상작물, 기타작물, 축산으로 구분됨.

○ 지역은 농업총조사와 농림어업조사의 기준과 마찬가지로 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로 구분함. 그러나 비례 배분은 농업이 집중된 남부 지역에 표본이 많이 배분되는 문제가 있어 제곱근 비례 배분을 통해 표본을 구성함.

○ 작목 기준의 경우, 농업총조사와 농림어업조사의 작목 분류기준을 종합하여, 6개 작목으로 분류하여 표본을 추출함. 6개 작목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였음. 이의 분류 방법은 농업총조사와 농림어업조사를 합한 것으로 농림어업조사의 작목 분류기준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한계가 있음.⁴²⁾ 농업총조사와 농림어업조사를 합한 이유는 농업총조사에서는 시설과 노지가 구분되지만, 가장 최신 자료가 2015년 자료여서 분류기준은 농림어업조사를 따르되 분류 내에서 농업총조사의 분류기준을 따라 노지와 시설을 구분함.

- 분류1(식량 작물): 수도작 (논벼), 벼 외 식량작물(옥수수, 기장, 조, 수수 등)
- 분류2(채소): 노지, 시설
- 분류3(과수): 노지, 시설
- 분류4(특작 및 약용): 노지, 시설, 버섯
- 분류5(축산)
- 분류6(기타): 화훼, 묘목 등

○ 농가 설문조사도 마찬가지로 현재의 농업총조사와 농림어업조사를 기준으로 한 표본 틀 추출은 지역과 작목 이외의 세부 정보(예시: 사과, 배추, 양파, 고추 등)가 없으므로 세부 정보까지 필요한 연구에서는 현재의 설문조사는 한계가 존재함.⁴³⁾

42) 이의 기준으로 표본을 추출하기 위함이었고, 본 연구의 고용보험과 관련한 분석에서는 해당 작목 분류가 영향을 미치지 않음.

43) 각 품목 근로자의 직군별(예: 단순노무자, 농업숙련기술자(예: 전지작업 등) 세세 고용보험 적용이 필요한 연구에서는 언급한 세부정보(예시: 사과, 배추, 양파, 고추)와 직군(단순노무자, 농업숙련기술자)를 모두 조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

○ 농가 고용 근로자는 농림어업조사와 농업총조사를 표본 추출 틀로 지역과 작목을 기준으로 표본 틀을 추출함.

- 여러 농가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특성을 감안하고, 기본적으로 지역별 작목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도록 농가 경영주의 작목을 확인하고 근로자를 섭외함.
- 1농가에 최대 1근로자만 배정하고 전화로 사전 조사 약속이 가능한 근로자 위주로 면접 조사하였음. 이렇게 농가와 매칭된 근로자는 약 40% 수준임.
- 농가경영주/작업반장/이장 등을 통해 근로자들을 소개받아 사전에 전화로 컨택 후 조사 약속을 하고 설문조사를 진행함.
- 농가에서 근로자가 작업 시 조사 참여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약속 후 설문 진행하거나 오전 일찍 작업 전 또는 인력소개소에 작업 대기하는 시간 등을 활용하여 조사함.

○ 농가 고용 근로자의 경우, 지역과 작목을 기준으로 표본을 구성한 이유는 근로자 설문조사의 대표적인 통계인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역별 고용조사 등의 표본 구성이 지역을 기준으로 표본을 할당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설정하였음.

-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작목 분류 기준이 농림어업조사의 작목 분류기준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한계가 있으며, 지역과 작목 이외의 세부 정보까지 고려가 필요한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설문조사 자료 활용에 한계가 있음.

구분	경영주	근로자
1. 조사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의 농업을 경영하는 농가의 경영주 및 농가 고용근로자 • 모집단: 1,007,158 농가(2019년 농림어업조사) 	
2. 조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개별면접 조사 	
3. 표본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5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명
4. 표본오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5% 신뢰수준에서 $\pm 5.2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5% 신뢰수준에서 $\pm 6.92\%P$
5. 표본 추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작목을 고려한 할당표본 추출 • 표본 추출 틀: 「2019년 기준 농림어업조사」, 「2015 농업총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작목을 고려한 할당표본 추출 • 표본 추출 틀: 「2019년 기준 농림어업조사」, 「2015 농업총조사」
6.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목 분류기준을 농업총조사, 농림어업조사를 합해, 농림어업조사의 분류기준과 동일 하지 않음. • 표본 추출 틀이 지역과 작목 기준으로 되어 있어, 세부 정보까지 고려가 필요한 경우, 한계가 있음. 	

주: 33쪽은 엄진영 외(2020)에서 수행한 설문조사로 본 연구의 설문조사와 관련이 없음.

으며, 해당 세부 정보와 직군별로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필요하다면) 제시할 수 있을 것임.

1.2.3. 농업 관련 사업체

○ 농업 관련 사업체는 농가 또는 농업법인이 농축산물을 생산, 가공, 유통, 판매 등의 과정에서 일부 업무를 위탁·도급·인력파견 등을 할 때 이를 수행하는 사업체를 의미함.

○ 하지만 해당 사업체에 대한 모집단은 현재 존재하고 있지 않아 모집단 명부 구축을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음. 따라서 표본을 구성할 때 눈덩이 표집 방법과 NICE 신용평가 기업 정보 일부를 활용하여 위탁·도급하는 업체를 선별하였음. 이후 구성된 표본에서 지역과 위탁 유형을 고려하여 표본을 할당하여 추출하였음.

- 해당 모집단이 없고 이와 관련한 설문조사 및 통계 조사가 지금까지 시행된 적이 없어 본 연구 설문조사에 포함된 농업 관련 사업체 표본 구성에 한계가 있음.

구분	경영주	근로자
1. 조사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의 농업법인 및 농가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체 경영주 및 근로자 모집단: 주산지 전문작업단, 파견업체, 화물운송업체, 유통업체, 가공업체 생산업체 중 위탁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조직으로 모집단 규모는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 	
2. 조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개별면접 조사(Face to Face Interview) 	
3. 표본수	• 300명	• 201명
4.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 5.57%P	• 95% 신뢰수준에서 ± 6.91%P
5. 표본 추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위탁 유형을 고려한 할당표본 추출 눈덩이 표집 병행 표본 추출 틀: 「나이스 신용평가 정보」 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위탁 유형을 고려한 할당표본 추출 눈덩이 표집 병행 표본 추출 틀: 「나이스 신용평가 정보」 일부
6.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집단이 존재하지 않아 표본 구성에 한계가 있음. 	

1.3. 조사 내용

○ 설문조사 내용은 아래 <표 4-1>과 같음.

<표 4-1> 설문조사 내용

구분	조사항목	
농가 경영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경영체 경영 여부 연령 품목 지역 학력 성별

구분	조사항목	
농가 경영주	• 사업체 관련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판매 및 구입 농자재 증빙, 지출 자료 작성 및 보관 여부 • 회계장부 작성 여부 • 사업자등록 여부
	• 휴·폐업 관련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사를 쉬었던 경험과 기간, 이유 • 쉬는 동안의 생계유지 방법 • 폐업시, 생계비 조달 방법
	• 사업장 근로자 고용 관련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고용 여부 • 근로자 근무 기간 • 농번기, 농한기 근로자 수 • 근로자 구인 방법 • 임금, 근로시간, 업무 협의 방법 • 근무기간과 시기 • 고용계약서 작성 여부 및 작성 주체 • 임금지급 대상과 방법 • 고용근로자 평균 연령대 • 내국인 근로자 주요 업무 •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작성 여부 • 임금대장, 임금내역서 근로자 제공 여부 •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고용계약서 작성과 관련한 교육 수강 여부 • 노무관리 교육 수강 여부 및 무료 제공시 수강 의향, 수강 원치 않을 경우 이유 • 본인 사업체 근로자의 고용 주체 인지
	• 고용보험 인지도와 가입 관련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보험 인지도 • 고용보험 가입 필요성 • 고용보험 가입 경험, 가입하지 않은 이유 • 고용보험 가입 의향, 보험료 지원 시 가입 의향 • 경영안정정책 가입 여부 • 농작업근로자 안전보험 가입 여부 및 가입 신청 방법 • 산재보험 가입 여부 및 가입 신청 방법 • 근로자 고용보험 인지도 • 근로자 고용보험 필요성 •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 가입하지 않은 이유 •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의향, 보험료 지원 시 가입 의향
	• 필요정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 지원 정책
농가 고용 근로자	• 기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 • 종사상지위 • 주요 고용 품목 • 지역 • 성별 • 소득
	• 사업체 관련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직방법 • 사업체 규모 • 내외국인 근로자 수 • 담당 업무
	• 근로 관련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기간 • 임금 • 근로시간 • 임금, 근로시간, 업무 내용 협의 주체와 방법 • 업무지휘관계 • 사전고용기간 설정 여부 및 방법, 기간

구분	조사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계약서 작성 여부, 주체 • 임금지급 대상과 방법 • 임금대장, 임금내역서 수령 여부 • 고용 주체 • 근로 실행 때의 겸업과 생계유지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보험 관련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되어 있는 보험 • 고용보험 인지도 및 가입 경험 • 현재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 가능 여부 • 근로자 고용보험 필요성, 적용 희망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선호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정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보험 확대 시, 필요 정책
법인 사업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 유형 • 연령 • 매출액 • 지역 • 학력 • 성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고용 관련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고용 수,기간 • 근로자 구인 방법 • 임금, 근로시간, 업무 내용 협의 • 근로시간 • 고용계약서 작성 여부, 작성 대상 • 임금 지급 방법, 대상 • 근로자 연령대 • 근로자 주요 업무 •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작성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보험 관련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재, 농작업근로자 안전보험 가입 여부, 가입 신청 방법 •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 •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시기 •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명수 •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인지도, 당연적용 대상 여부 • 인지도, 가입하지 않은 이유 • 근로자 고용보험 필요성 •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의향, 보험료 보조 시 가입 의향 •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원하지 않는 이유 • 자영업자 고용보험 인지도 • 자영업자 고용보험 필요성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경험, 가입하지 않은 이유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의향, 보조시 가입 의향, 가입 의사 없는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근로자 고용보험, 자영업자 고용보험 관련 지원 받는 내용 • 고용보험 가입 확대하려면 필요한 정책
법인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 유형 • 연령 • 소득 • 지역 • 학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체 관련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체 고용 경로 • 사업체 주요 품목 • 내외국인 근로자 수 • 본인 담당 주요 업무 • 사업체 일 시작 시기

구분	조사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 관련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기간 • 임금 •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근로 시기 • 임금, 근로시간, 업무 내용 협의 주체 • 고용계약서 작성 여부, 주체 • 사전고용기간 설정 여부, 방법, 기간 • 임금지급 대상과 방법 • 임금대장, 임금내역서 수령 여부 • 고용 주체 • 근로 설 때의 검업과 생계유지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보험 관련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되어 있는 보험 • 고용보험 인지도 및 가입 경험 • 현재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 가능 여부 • 근로자 고용보험 필요성, 적용 희망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선호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정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보험 확대 시, 필요 정책
농업 관련 사업체 사업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체 유형 • 연령 • 매출액 • 지역 • 학력 • 성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체 관련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 법인과 맺는 계약 형태 • 농작업 위탁, 도급, 파견 주요 품목 • 거래 농가, 법인 수 • 위탁, 도급, 파견 여부 • 사업장 근로자 규모 • 사업자 등록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고용 관련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수, 고용기간 • 근로자 구인 방법 • 임금, 근로시간, 업무 내용 협의 • 근로시간 • 고용계약서 작성 여부, 작성 대상 • 임금 지급 방법, 대상 • 근로자 연령대 • 팀장 국적 여부 •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작성 여부 • 임금대장, 임금내역서 근로자 제공 여부 •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고용계약서 작성과 관련한 교육 수강 여부 • 노무관리 교육 수강 여부 및 무료 제공시 수강 의향, 수강 원치 않을 경우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보험 인지도와 가입 관련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재, 농작업근로자 안전보험 가입 여부, 가입 신청 방법 • 근로자 고용보험 인지도 •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 가입하지 않을 경우 이유 •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경험 •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수 •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의향, 보험료 지급 시 가입 의향, 가입 의향 없는 경우 이유 • 자영업자 고용보험 인지도 • 자영업자 고용보험 필요성

(계속)

구분	조사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 가입하지 않은 이유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의향, 보험료 지원 시 가입 의향
농업 관련 사업체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 정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근로자 고용보험, 자영업자 고용보험 관련 지원 받는 내용 • 고용보험 가입 확대하려면 필요한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체 유형 • 연령 • 소득 • 지역 • 학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체 관련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체 근로자 규모 • 본인 주요 업무 • 내외국인 근로자 수 • 직종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 관련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기간 • 임금 •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근로 시기 • 임금, 근로시간, 업무 내용 협의 주체 • 고용계약서 작성 여부, 주체 • 사전고용기간 설정 여부, 방법, 기간 • 임금지급 대상과 방법 • 임금대장, 임금내역서 수령 여부 • 고용 주체 • 근로 할 때의 검업과 생계유지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보험 관련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되어 있는 보험 • 고용보험 인지도 및 가입 경험 • 현재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 가능 여부 • 근로자 고용보험 필요성, 적용 희망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선호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정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보험 확대 시 필요 정책

자료: 저자 작성.

1.4. 조사 기간

○ 2021년 8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1:1 방문 면접을 진행함.

2. 사업주 실태조사 분석 결과

2.1. 농가 경영주

○ 농가의 고용 및 고용보험에 관한 실태 파악을 위하여 농가 경영주를 대상으로 설문함.

- 설문에 응답한 농가 경영주는 총 351명이며 그중에서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영주는 268명(76.4%)이었음.⁴⁴⁾
-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 중 83농가가(35.5%) 쌀 농가⁴⁵⁾이며 노지 채소 농가는 77농가(32.9%). 시설채소 농가는 57농가(24.4%), 노지과수 농가는 65농가(27.8%), 시설과일 농가는 15농가(6.4%), 축산농가는 26농가(11.1%), 특작·전작 농가는 26농가(11.1%), 기타 농가는 7농가(3.0%)임.⁴⁶⁾

2.1.1. 근로자 고용 실태

○ 농가에서 고용하는 근로자의 주요 고용 형태는 일용근로자 고용 비중이 가장 높고, 임시근로자, 상용근로자 고용 순서로 나타남.

-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 중 일용근로자만 고용하는 농가는 53.0%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음.
- 그다음으로는 일용근로자와 임시근로자를 모두 고용하는 농가가 17.1%, 임시근로자만 고용하는 농가가 14.5%로 뒤를 잇고 있음.

〈표 4-2〉 농가의 근로자 고용형태

단위: 호, %

고용 형태	응답 수	비율
일용근로자	124	53.0
임시근로자	34	14.5
상용근로자	21	9.0
일용근로자+임시근로자	40	17.1

44) 참고로 엄진영 외(2020)에서 조사한 농가 경영주를 활용하지 않았음. 서로 다른 설문 대상자이고, 다른 설문조사임을 밝혀둠.

45) 쌀만 재배하는 농가를 의미하지 않음. 쌀과 다른 품목을 함께 재배하는 농가를 의미함. 다른 품목도 마찬가지로.

46) 여러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는 재배 품목에 모두 표시하도록 하였으므로 품목별 합산 결과와 총 표본 수와는 차이가 있음.

(계속)

고용 형태	응답 수	비율
일용근로자+상용근로자	1	0.4
임시근로자+상용근로자	4	1.7
일용근로자+임시근로자+상용근로자	10	4.3
합계	234	100.0

주 1) 고용형태 구분은 근무 기간에 따라 구분함. 일용근로자는 일일 단위로 한 달 미만 근무, 임시근로자는 한 달 이상 1년 미만 근무, 상용근로자는 1년 단위 근무

2) 전체 351 농가 중 117개 농가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상시근로자 계산에서 탈락한 농가 수임.

자료: 설문조사 결과.

○ 고용 형태별 평균 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음.

- 농가가 고용하는 평균 일용 근로자 수는 농번기에 5.3명, 농한기에 1.7명, 농번기 농한기 구분이 없는 경우 2.6명 가량인 것으로 나타남.
- 한 달 이상 고용하는 임시근로자의 평균 고용 인원은 농번기에 5.1명, 농한기에 1.8명, 농번기 농한기 구분이 없는 경우 2.8명가량임.
- 상용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는 농번기에 3.5명, 농한기에 2.5명, 농번기와 농한기 구분 없이 5.0명을 고용하고 있음.

〈표 4-3〉 고용 형태별 내국인 근로자 수 평균

단위: 명

기간 특성	고용형태		
	일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상용근로자
농번기	5.3	5.1	3.5
농한기	1.7	1.8	2.5
농번기 농한기 구분 없음	2.6	2.8	5.0

주 1) -는 해당 사항 없음 또는 무응답.

2) 품목을 크게 쌀, 채소, 과일, 축산, 특작·전작, 기타로 구분할 수 있으나 노지와 시설 농가의 고용 행태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채소와 과일은 시설 농가와 노지 농가를 분리하였음.

자료: 설문조사 결과.

○ 근로자 종사상 지위별 고용조건 협의 대상과 방법은 종사상 지위 형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 일용근로자의 고용 조건에 대한 협의는 근로자와 경영주가 직접 구두로 하는 경우가 49.2%로 가장 많았으며 근로자를 소개해 주는 곳과 구두로 협의를 하는 경우도 42.9%를 차지하여 일용근로자의 근로조건 협의는 대부분 구두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응답자의 92.1%).
- 임시 및 상용 근로자와는 직접 구두로 협의하는 비율이 근로자를 소개하는 곳과 협의하는

비율보다 높았으며 직접 구두로 협의하는 비율이 45.4%로 가장 높았음. 또한 협의 내용을 서류로 작성하는 비율도 39.2%로 일용근로자에 비해 높았음.

〈표 4-4〉 고용조건 협의 주체와 방식

단위: 호, %

구분	일용근로자		임시 및 상용 근로자	
	응답 수	비율	응답 수	비율
근로자를 소개하는 곳(인력사무소, 농작업팀) 반장과 구두로 협의	82	42.9	20	15.4
근로자를 소개 하는 곳(인력사무소, 농작업팀) 반장과 서류 작성(계약 서류, 지급각서 등)	13	6.8	22	16.9
근로자와 직접 구두로 협의	94	49.2	59	45.4
근로자와 서류로 작성(계약 서류, 지급각서 등)	2	1.1	29	22.3
합계	191	100.0	130	100.0

자료: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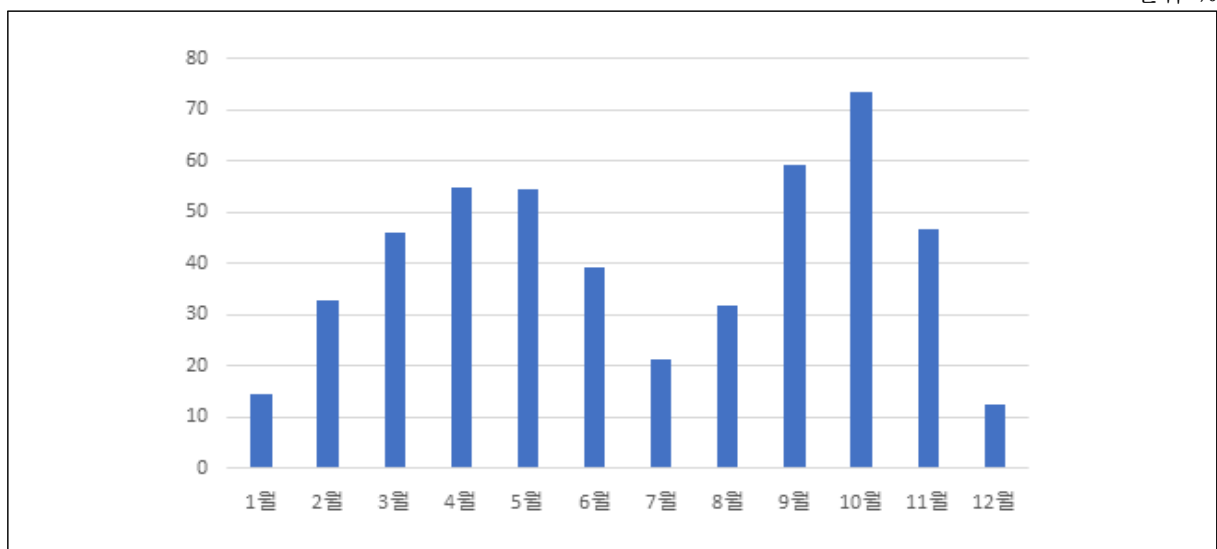
○ 일용근로자의 한 달 중 평균적으로 근로하는 기간은 11.8일로 나타남. 하루 평균 8시간 근무를 하는 것을 가정할 경우에 한 달 평균 98.4시간을 일함.

○ 일용근로자가 주로 일을 하는 기간은 파종기인 3~5월과 수확기인 9~11월에 집중되어 있음.

- 아래 그림은 근로자가 일을 하는 달을 응답한 농가의 비중을 나타냄. 일일 단위 근로자를 가장 많이 고용하는 달은 10월이며 전체 응답 농가의 약 73.3%가 해당 월에 일용근로자가 일을 한다고 응답하였음.

〈그림 4-1〉 일용 근로자의 근로 월

단위: %



자료: 설문조사 결과.

○ 근로자 임금지급 주체와 지급 방식은 대부분 본인이 수령하였으나 근로자가 아닌 인력을 알선·소개하는 곳에서 수령하는 경우도 여전히 있었음.

- 일용근로자와 임시 및 상용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 모두 근로자의 임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근로자 본인(일용근로자 63.2%, 임시 및 상용 근로자 76.2%)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상대적으로 임시 및 상용 근로자의 경우에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경우가 더 많았음. 일용근로자의 임금은 인력사무소 사장이나 농작업팀 반장이 대리 수령하는 경우가 각각 18.9%, 17.8%였음.

- 일용근로자와 임시 및 상용 근로자 모두 임금은 현장에서 현찰로 지급되는 경우가 78.9%, 66.4%로 일반적이었으나 임시 및 상용 근로자가 금융계좌로 송금받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음.

〈표 4-5〉 근로자의 임금 수령 주체 및 지급 방식

단위: 호, %

임금 지급		일용근로자		한 달 이상 근로자	
		응답 수	비율	응답 수	비율
임금 수령 주체	근로자 본인	117	63.2	99	76.2
	인력사무소 사장	35	18.9	11	8.5
	농작업팀 반장(봉고차 운전자 등)	33	17.8	19	14.6
	기타	-	-	1	0.8
	합계	185	100.0	130	100.0
임금 지급 방식	현찰	146	78.9	77	66.4
	금융계좌로 송금	39	21.1	39	33.6
	합계	185	100.0	116	100.0

자료: 설문조사 결과.

○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과 농작업 근로자 안전보험에 가입한 농가 비율은 전반적으로 낮음. 이는 농가 경영주 대부분이 사회보험에 노출이 덜 되었다는 점을 의미함.

- 과거에 산재보험이나 농작업 근로자 안전보험에 가입한 경험이 있는 농가는 각각 25.4%, 12.7%로 산재보험 가입 경험이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남.

- 산재보험 및 농작업 근로자 안전보험 가입 시에는 신청 기관을 방문하여 접수하는 것이 보편적이었음.

〈표 4-6〉 정책보험 가입 경험

단위: 호, %

산재보험 가입 경험			농작업 근로자 안전보험 가입 경험		
구분	응답 수	비율	구분	응답 수	비율
있음	66	25.4	있음	33	12.7
관련 기관 방문 접수	60	23.1	농·축협 방문 접수	29	11.2
관련 기관에 우편, 팩스로 접수	4	1.5	농·축협에 우편, 팩스로 접수	2	0.8
인터넷 접수	1	0.4	인터넷 접수	1	0.4
무응답	1	0.4	무응답	1	0.4
없음	194	74.6	없음	227	87.3
합계	260	100.0	합계	260	100.0

자료: 설문조사 결과.

2.1.2. 고용보험 적용 관련 경영체 기반 사항

가. 경영체 운영 관련 기반 사항

○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서는 생산 및 매출 관련 증빙자료의 보관 및 작성, 회계장부 등 기본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중요함. 설문 응답자 중 판매 증빙자료를 보관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9.0%이며 농자재 지출자료를 보관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9.6%로 대체로 경영 관련 자료 보관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간편장부를 작성하거나 복식부기를 하는 경영주 비율은 43.9%로 절반 이상의 경영주가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표 4-7〉 생산 관련 자료 보관 여부

단위: 호, %

농산물 판매 증빙자료 보관 여부						농자재 지출자료 보관 여부					
보관		미보관		합계		보관		미보관		합계	
응답 수	비율	응답 수	비율	응답 수	비율	응답 수	비율	응답 수	비율	응답 수	비율
137	39.0	214	61.0	351	100.0	139	39.6	212	60.4	351	100.0

자료: 설문조사 결과.

〈표 4-8〉 회계장부 작성 여부

단위: 호, %

간편장부 작성		복식부기		미작성		모름		합계	
응답 수	비율	응답 수	비율	응답 수	비율	응답 수	비율	응답 수	비율
142	40.5	12	3.4	190	54.1	7	2.0	351	100.0

자료: 설문조사 결과.

○ 경영체가 사업자 등록을 한 비율은 22.2%였으며 등록 업종은 도·소매업이나 농림어업이 대부분을 차지함. 현재의 고용보험 적용 기반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농업부문 고용보험 적용에 있어 경영체의 사업장 식별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함.

- 참고로 사업자 등록은 개인(비법인)일 경우, 국세청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동업사업자인 경우 동업계약서를 온라인 또는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됨.
- 사업자등록 신청서에는 인적사항(상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장 현황(업종, 사업장 구분, 허가 등 사업 여부, 사업자금 명세, 사업자금 명세,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신고 여부, 그 밖의 신청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
- 사업자등록율이 낮은 이유는 가공하지 않은 농산물판매는 부가가치세 면세이며 작물재배업은 과세소득 제외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 의무가 없어 대부분의 농가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유추됨. 영농활동을 하는 데 있어 필수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번거로운 행정적 신청 절차를 거쳐 등록할 유인이 없으므로 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음.
- 사업자등록을 한 작물재배업 농가의 경우는 농산물을 재배해서 직거래 또는 납품하는 경우, 축산 농가일 경우는 매출에 대한 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상황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됨. 더불어 농가 민박, 체험농장 등 부가가치세 면세가 아닌 농가부업소득을 하는 상황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됨.⁴⁷⁾
- 본 연구의 설문에서는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왜 했는지, 그리고 사업자등록에 따른 이점은 무엇인지,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는지 설문 문항에 포함하지 못하여, 관련 내용을 분석하지 못한 한계가 있음. 추후 후속 연구에서는 필요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이유 등에 대한 설문을 추가해서 물어보는 것이 필요함.

〈표 4-9〉 사업자 등록 여부 및 등록 업종

단위: 호, %

등록(등록 업종)/미등록		응답 수	비율
등록		78	22.2
	농림어업	47	13.4
	도매 및 소매업	24	6.8

47) <https://m.blog.naver.com/chany1120/221874340861> 검색일: 2022년 3월 24일
<http://www.chukkyu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63>

(계속)

등록(등록 업종)/미등록	응답 수	비율
숙박 및 음식점업	3	0.9
기타	2	0.6
미등록	273	77.8
합계	351	100.0

자료: 설문조사 결과.

○ 지금까지 휴업을 한 경험이 있는 경영주는 전체 응답자의 6.8%에 불과하였음.

- 휴업은 2년 이하의 기간에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며 휴업을 한 이유로는 질병 및 사고로 인하여 신체활동이 어려웠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농업 수익성이 나쁠 것으로 예상하거나 다른 직업을 찾아보려는 경제적 이유도 응답이 많았음.⁴⁸⁾
- 휴업을 하는 동안에는 과거 저축액을 활용하는 비율이 62.5%로 가장 많았으며 가족 중 다른 사람의 소득을 활용하는 비율이 그다음으로 나타남. 그 외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계비를 조달하거나 재산소득, 차용금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었음.
- 비록 휴업을 경험하는 비율은 낮지만, 휴업을 할 경우 생계를 이어나갈 최소한의 안전망이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음.

〈표 4-10〉 휴업 경험 여부

단위: 명, %

휴업 경험	응답 수	비율
없음	327	93.2
있음	24	6.8
합계	351	100.0

자료: 설문조사 결과.

〈표 4-11〉 휴업 기간 및 이유

단위: 호, %

구분	응답 수	비율
휴업 기간	1년 이하	29.2
	1~2년	62.5
	3~4년	4.2
	5년 이상	4.2
휴업 이유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	33.3
	수익성이 나쁠 것으로 예상되어서	25.0

48) 휴업의 사유 중에서 현재 자영업자 고용보험에서 인정하는 비자발적 폐업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이 해당함. 해당 내용은 5장 1절, 6장 2절을 참고.

(계속)

구분		응답 수	비율
휴업 이유	농사에 흥미가 없어져서	0	0.0
	다른 직업을 찾아보려고	4	16.7
	결혼, 진학 등 신상의 변화로 인해	1	4.2
	고용원을 구할 수 없어 인력 부족으로	1	4.2
	토지를 구할 수 없어서	0	0.0
	농업 경영비를 조달할 수 없어서	2	8.3
	기후 변화로 작물 재배가 힘들어져서	2	8.3
휴업 시 생계비 조달 방법	임시 아르바이트	2	8.3
	가족 중 다른 사람의 소득	7	29.2
	과거 모아놓았던 돈	15	62.5
	재산소득(이자, 집세 등)	2	8.3
	은행이나 개인으로부터 빌린 돈	2	8.3
	기타	0	0.0
응답자 합계		24	100

주 1) 생계비 조달 방법은 중복응답 허용함.

2) 위 응답자 수를 제외한 327 농가는 휴업을 한 적이 없다고 응답함.

자료: 설문조사 결과.

○ 폐업을 가정할 경우, 농가 경영주 대부분은 생계비 조달을 과거의 저축(38.5%), 다른 가족원의 소득(26.5%), 임시 아르바이트(21.1%)로 하겠다는 응답이 주를 이루었음. 농가 경영주에게는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를 대비한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하다는 점을 시사함.

〈표 4-12〉 폐업 시 예상 생계비 조달 방법

단위: 호, %

생계비 조달 방법	응답 수	비율
임시 아르바이트	74	21.1
가족 중 다른 사람의 소득	93	26.5
과거 모아놓았던 돈	135	38.5
재산소득(이자, 집세 등)	19	5.4
은행이나 개인으로부터 빌린 돈	27	7.7
기타	3	0.9
응답자 합계	351	100.0

자료: 설문조사 결과.

○ 설문대상 농가 중 70.1%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였으며 35.9%는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가격불안정성에 대비한 수입보장보험 가입률은 0%에서 2.8%로 매우 낮게 나타남.

〈표 4-13〉 가입된 경영안정정책

단위: 호, %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수입보장보험		농업인안전보험		응답자 합계	
응답 수	비율	응답 수	비율	응답 수	비율	응답 수	비율	응답 수	비율
246	70.1	64	18.2	7	2.0	126	35.9	351	100.0

자료: 설문조사 결과.

나. 근로자 고용 관련 기반 사항

○ 농가는 일용 근로를 대상으로 거의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으며 임시 및 상용근로자를 대상으로는 일부 농가가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음.

- 일용근로자만 고용하는 농가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응답 대상 농가 중 1농가만 있었음.
- 반면 임시 및 상용근로자를 고용한 농가는 이들을 대상으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는 비율은 29.6%로 상승함.
- 근로자와 경영주 간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고용계약서 작성 비율은 전반적으로 높지 않음.

〈표 4-14〉 고용계약서 작성 여부

단위: 명, %

고용 형태	일용근로자만 고용	임시 및 상용근로자 고용 농가
일용근로자	1 (0.8)	1 (2.0)
임시 및 상용근로자	-	32 (29.6)

주 1) 임시 및 상용근로자 고용 농가 중 2농가는 무응답하여 표에서 제외함.

2) 괄호 안은 해당 그룹 샘플 수 대비 비율임.

자료: 설문조사 결과.

○ 고용계약서의 작성은 주로 인력사무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 계약서 작성 주체가 인력사무소 사장인 비율이 높았으나 임시 및 상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고용계약서를 작성하는 비율이 78.1%에 이르렀음.

- 인력사무소를 통해 고용계약서가 작성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인력의 알선·소개 범위를 넘어서는 것임. 이의 경우는 불법적인 파견계약의 형태이거나 인력의 알선·소개이지만, 현장에서 굳어져 온 관행에 따른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음.

〈표 4-15〉 고용계약서 작성 주체

단위: 명, %

종사상 직위	근로자 본인		인력사무소 사장		농작업팀 반장		합계	
	응답 수	비율	응답 수	비율	응답 수	비율	응답 수	비율
일용근로자	0	0.0	2	100.0	0	0.0	2	100.0
임시 및 상용근로자	25	78.1	7	21.9	0	0.0	32	100.0
합계	25	73.5	9	26.5	0	0.0	34	100.0

자료: 설문조사 결과.

○ 임금대장, 근로자 명부를 모두 작성하지 않는 비율은 임시 및 상용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에서 낮게 나타나고, 상대적으로 일용근로자만 고용하는 농가에서 높게 나타남.

- 일용근로자를 고용할 때에는 임금대장이나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는 비율이 71.8%로 매우 높았으나 임시 및 상용 근로자를 고용할 때에는 임금 대장 및 근로자 명부 미작성 비율이 41.8%로 다소 낮아짐.
- 근로자에게 임금과 함께 임금대장이나 임금내역서를 제공하는 비율 또한 낮았는데, 일용근로자만 고용하는 경우에는 11.3%의 농가만이 임금대장이나 임금내역서를 제공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임시 및 상용근로자 고용 농가 중 20.0%만 해당 서류를 제공함.

〈표 4-16〉 임금대장 및 근로자명부 작성 여부

단위: 호, %

구분	일용근로자만 고용 농가	임시 및 상용근로자 고용 농가
근로자 명부만 작성	3 (2.4)	6 (5.5)
임금대장만 작성	16 (12.9)	12 (10.9)
근로자명부와 임금대장 통합 작성	16 (12.9)	46 (41.8)
모두 작성하지 않음	89 (71.8)	46 (41.8)
합계	124 (100.0)	110 (100.0)

주: 괄호 안은 비율임.

자료: 설문조사 결과.

〈표 4-17〉 임금대장 또는 임금내역서 제공 여부

단위: 호, %

구분	일용근로자만 고용 농가	임시 및 상용근로자 고용 농가
제공 비율	11.3	20.0
표본 수	124	110

자료: 설문조사 결과.

○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고용계약서 등 고용 관련 서류 작성을 위한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경영주는 매우 드물었음(7.5%, 3.4%).

- 많은 수의 농가 경영주가 근로자 노무관리 관련 교육에 노출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 고용 관계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갖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함.

〈표 4-18〉 고용 관련 교육 경험

단위: 호, %

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고용계약서 작성 교육				근로자 노무관리 관련 교육 수강			
수강		미수강		수강		미수강	
응답 수	비율	응답 수	비율	응답 수	비율	응답 수	비율
20	7.5	248	92.5	9	3.4	223	83.2

자료: 설문조사 결과.

○ 노무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기를 희망하는가를 조사한 결과, 교육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2.2%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음.

- 교육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로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47.8%) 그다음으로는 시간 부족이 꼽히고 있음(27.3%).

〈표 4-19〉 노무 관련 교육 희망 여부 및 미희망 사유

단위: 호, %

구분		합계	
		응답 수	비율
노무관리 교육 수강 희망 여부	예	62	27.8
	아니오	161	72.2
합계		223	100.0
교육 미희망 사유	시간 부족	44	27.3
	교육 장소의 접근성 부족	14	8.7
	필요성 체감하지 않음	77	47.8
	이미 관련 내용 숙지	26	16.1
합계		161	100.0

자료: 설문조사 결과.

○ 경영주에게 고용 주체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설문한 결과, 경영주 본인이 고용주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음.

- 이는 대부분의 경영주가 최종 사업주는 본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함.

○ 그러나 근로자의 고용 형태에 따라서 차이가 존재함.

- 일용근로자 고용 농가의 55.7%, 임시근로자 고용 농가의 68.0%, 1년 단위 상용근로자 고용 농가의 86.4%가 경영주 자신을 고용 주체로 인식하고 있어 상시 근로자를 고용할수록 스스로를 고용 주체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아짐.

〈표 4-20〉 고용 주체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종사상 지위	고용 주체	응답 수(비율)
일용근로자	본인(농가)	107 (55.7)
	근로자 파견 업체/농작업팀 대표	68 (35.4)
	모르겠음	17 (8.9)
	소계	192 (100.0)
임시 근로자	본인(농가)	68 (68.0)
	근로자 파견 업체/농작업팀 대표	30 (30.0)
	모르겠음	2 (2.0)
	소계	100 (100.0)
상용 근로자	본인(농가)	38 (86.4)
	근로자 파견 업체/농작업팀 대표	6 (13.6)
	모르겠음	0 (0.0)
	소계	44 (100.0)

자료: 설문조사 결과.

2.1.3. 고용보험 인지도와 적용 확대 필요성

가. 자영업자 고용보험 인지도와 적용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해서 듣거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비율은 17.4%였으며 들어본 적이 있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62.4%로 나타나

대부분의 농가 경영주가 고용보험에 대해 들었지만,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거나 들어본 적이 없었음.

〈표 4-21〉 자영업자 고용보험 인지도

단위: 명, %

들어본 적 없음		들어본 적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함		잘 알고 있음		합계	
응답 수	비율	응답 수	비율	응답 수	비율	응답 수	비율
71	20.2	219	62.4	61	17.4	351	100.0

자료: 설문조사 결과.

○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39.3%, 유보적 입장인 보통이 36.3%,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43.4%를 차지하였음.

〈표 4-22〉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전혀 불필요		대체로 불필요		보통		대체로 필요		매우 필요		합계	
응답 수	비율	응답 수	비율	응답 수	비율	응답 수	비율	응답 수	비율	응답 수	비율
38	12.9	90	30.5	107	36.3	101	34.2	15	5.1	295	100.0

자료: 설문조사 결과.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 농가 중 가입 경험이 있는 경영주는 임의가입 대상 농가의 3.6%에 불과하여 대다수의 농가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미가입 이유는 아래와 같음.

- 고용 규모가 5인 이상으로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은 전체 설문 농가 중 84 농가임.
- 미가입 농가의 미가입 사유로는 보험료 부담이 27.2%로 가장 컸고, 영농중단 또는 폐업 의사가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2.2%로 뒤를 잇고 있음(미가입 농가 81호 중 80 농가 응답).

〈표 4-23〉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 및 미가입 이유

단위: 명, %

구분		응답 수(비율)
고용보험 가입 여부	네	3 (3.6)
	아니오	81 (96.4)
	합계	84 (100.0)
고용보험 미가입 이유 (미가입 농가만)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가 부담되므로	22 (27.2)
	어떤 상황에도 영농중단이나 폐업할 생각이 없으므로	18 (22.2)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가 올라갈까 염려되어서	15 (18.5)
	고용보험에 대해서 잘 몰라서	10 (12.3)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절차나 요건이 까다로워서	15 (18.5)
	무응답	1 (1.2)
	합계	81 (100.0)

주 1) 괄호 안은 적용 제외 농가를 제외한 전체 농가 대비 비율임.

2) 위 항목은 상시근로자 규모가 5인 이상으로서 임의가입 대상인 84 농가만을 분석 대상으로 함.

3)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3농가는 시설채소 농가 1, 양돈농가 2명임. 시설채소 농가와 양돈농가 1명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양돈농가 1명만 전화로 응답함. 사업자등록을 한 이유는 개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데 사업자등록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하였다고 응답하였음(2022년 3월 25일 전화 통화 결과).

자료: 설문조사 결과.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향후 가입할 의사가 있는지 설문한 결과, 가입 의사가 있는 비율은 26.5%로 대부분은 가입을 희망하지 않았음.

○ 가입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응답자 258명에게 다시 보험료를 50% 지원한다면 의사를 변경할 것인가를 설문하였을 때, 14.2%의 응답자들은 가입을 희망한다고 하였음.

○ 이들을 대상으로 다시 보험료를 80%까지 지원한다면 의사를 변경할 것인지를 설문한 결과, 38.5%는 가입을 하겠다고 응답하였음. 보험료 부담이 보험 가입을 일정 부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됨.

〈표 4-24〉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희망 여부

단위: 명, %

가정	가입 희망		가입 미희망		소계	
	응답 수	비율	응답 수	비율	응답 수	비율
보험료 지원 없음	93	26.5	258	73.5	351	100.0
(가입 미희망자 대상) 보험료 50% 지원	52	14.8	206	79.8	258	100.0
(보험료 50% 지원시 가입 미희망자 대상) 보험료 80% 지원	79	38.5	126	61.5	205	100.0

자료: 설문조사 결과.

-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확대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보험료 지원이 꼽혔으며 그다음으로는 신청절차 간소화와 고용보험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음.
- 이는 보험료 부담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임을 암시함.

〈표 4-25〉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

단위: 명, %

지원정책	1순위	2순위	1순위+2순위
보험료 일부 지원	155 (48.6)	61 (19.1)	216 (67.7)
신청절차 간소화	70 (21.9)	81 (25.4)	151 (47.3)
신청 대행 지원	26 (8.2)	49 (15.4)	75 (23.5)
고용보험에 대한 교육/홍보	40 (12.5)	59 (18.5)	99 (31.0)
고용보험 가입 혜택 확대	60 (18.8)	68 (21.3)	128 (40.1)
기타	0 (0.0)	1 (0.3)	1 (0.3)
합계			319

주: 1순위와 2순위 합을 낸 결과는 응답자 수 대비 100%를 초과할 수 있음.

자료: 설문조사 결과.

나. 근로자 고용보험 인지도와 적용

- 근로자 대상 고용보험을 듣거나 알고 있는지를 설문한 결과, 들어본 적이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낮았음.
- 일용근로자만 고용한 농가는 23.4%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반면 임시 및 상용근로자를 고용한 농가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3.6%로 상대적으로 낮았음.
 - 그러나 대부분의 농가는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해 실질적으로 해당 정책에 인지하지 못한 비율이 높을 것으로 분석됨.

〈표 4-26〉 근로자 고용보험 인지도

단위: 명, %

구분	일용근로자만 고용 농가	임시 및 상용근로자 고용 농가
들어본 적 없음	29 (23.4)	4 (3.6)
들어본 적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함	80 (64.5)	77 (70.0)
잘 알고 있음	15 (12.1)	29 (26.4)
합계	124 (100.0)	110 (100.0)

자료: 설문조사 결과.

○ 근로자 고용보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에 비해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음.

- 일용근로자만 고용한 농가의 경우 16.9%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으며 41.9%의 농가가 불필요하다는 응답을 하였음.
- 임시 및 상용근로자 고용 농가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56.4%로 일용근로자만 고용한 농가보다 높았고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18.2%로 일용근로자만 고용한 농가에 비해 높아 고용보험의 필요성에 대해 좀 더 의견이 갈린 것으로 나타남.

〈표 4-27〉 근로자 고용보험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일용근로자만 고용 농가	임시 및 상용근로자 고용 농가
불필요	52 (41.9)	62 (56.4)
보통	51 (41.1)	28 (25.5)
필요	21 (16.9)	20 (18.2)
합계	124 (100.0)	110 (100.0)

자료: 설문조사 결과.

○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경험이 있는 농가는 매우 적었음.

- 일용근로자만 고용한 농가에 비해 임시 및 상용근로자 고용 농가의 고용보험 가입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일용근로자만 고용한 농가 중 99.2%가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임시 및 상용근로자 고용 농가의 미가입 비율은 79.1%로 감소함.

- 일용근로자만 고용한 농가의 고용보험 미가입 이유는 주로 가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응답자의 35.0%) 보험 대상 파악이 쉽지 않기 때문(응답자의 27.6%)인 것으로 나타남.
- 임시 및 상용근로자 고용 농가도 마찬가지로 가입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이 32.2%로 가장 많았으나 일용근로자만 고용한 농가와 달리 보험 대상 파악의 어려움(11.5%)보다는 보험료 부담(27.6%)이 더 중요한 미가입 사유인 것으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농가 경영주는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음. 그러나 현행 고용보험 적용 기준은 비법인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일 경우 당연 가입에 해당함에도 전반적인 농가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매우 낮고, 인지도도 낮으며, 필요성의 인식도 낮아 이에 대한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 4-28〉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 및 미가입 이유

단위: 명, %

구분		일용근로자만 고용 농가	임시 및 상용근로자 고용 농가
고용보험 가입 여부	네	1 (0.8)	23 (20.9)
	아니오	123 (99.2)	87 (79.1)
	합계	124 (100.0)	110 (100.0)
고용보험 미가입 이유 (미가입 농가만)	근로자 대상 고용보험에 대해 잘 알지 못함	11 (8.9)	10 (11.5)
	고용보험료가 부담됨	17 (13.8)	24 (27.6)
	세금 또는 사회보험료 인상이 우려되어	13 (10.6)	12 (13.8)
	가입 필요성을 느끼지 않음	43 (35.0)	28 (32.2)
	보험료 대비 보험 혜택이 좋지 않아서	2 (1.6)	1 (1.1)
	일시적으로 일하는 근로자이기에 보험 대상 파악이 쉽지 않음	34 (27.6)	10 (11.5)
	주로 일하는 근로자가 65세 이상 고령자임	2 (1.6)	2 (2.3)
	기타	1 (0.8)	0 (0.0)
	합계	123 (100.0)	87 (100.0)

주: 괄호 안은 비율임.
자료: 설문조사 결과.

○ 보험료 지원이 별도로 없을 경우, 근로자 고용보험 전체 가입 의향은 17.7%(일용근로자만 고용), 22.7%(임시 및 상용근로자 고용)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음.

○ 근로자 고용보험 보험료를 80%까지 지원할 경우, 일용근로자만 고용한 124 농가 중 12.9%가 추가적으로 가입의사가 있다고 밝혔으며, 임시 및 상용근로자 고용 농가의 26.4%가 추가적으로 가입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29〉 근로자 대상 고용보험 가입 의향

단위: 명, %

구분	일용근로자만 고용 농가	임시 및 상용근로자 고용 농가
무지원시 가입 의사 있음(%)	17.7	22.7
80% 지원시 가입 의사 있음(%)	12.9	26.4
표본 수(명)	124	110

자료: 설문조사 결과.

○ 보험료 지원이 있더라도 가입 의사가 없는 농가의 주된 미가입 이유 중 하나는 가입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점임.

- 일용근로자만 고용하는 농가의 47.6%, 임시 및 상용근로자 고용 농가의 23.3%가 가입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응답함.

○ 그러나 두 번째 미가입 이유는 일용근로자만 고용하는 농가와 그렇지 않은 농가 간에 차이가 존재하는데 일용근로자만 고용하는 농가는 보험료 대비 혜택이 좋지 않다는 점이, 임시 및 상용근로자 고용 농가는 세금 또는 사회보험료 인상에 대한 우려와 고용보험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 주요한 미가입 사유임.

〈표 4-30〉 근로자 대상 고용보험 가입 미희망 사유

단위: 명, %

구분	일용근로자만 고용 농가	임시 및 상용근로자 고용 농가
근로자 대상 고용보험에 대해 잘 알지 못함	4 (4.7)	12 (21.4)
고용보험료가 부담됨	4 (4.7)	10 (17.9)
세금 또는 사회보험료 인상이 우려되어	12 (14.0)	15 (26.8)
가입 필요성을 느끼지 않음	37 (43.0)	12 (21.4)

(계속)

구분	일용근로자만 고용 농가	임시 및 상용근로자 고용 농가
보험료 대비 보험 혜택이 좋지 않아서	27 (31.4)	1 (1.8)
일시적으로 일하는 근로자이기에 보험 대상 파악이 쉽지 않음	1 (1.2)	6 (10.7)
주로 일하는 근로자가 65세 이상 고령자임	1 (1.2)	0 (0.0)
합계	86 (100.0)	56 (100.0)

주: 보험료 지원 시 고용보험 가입 의사가 없는 농가를 대상으로 설문함.

자료: 설문조사 결과.

○ 근로자 고용보험의 가입 확대를 위해서는 보험료를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으며 그다음으로는 ‘고용보험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와 ‘신청 대행을 지원해야 한다’가 뒤를 이었음.

- 대부분의 농가 경영주는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이 인건비 상승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저항감이 큰 것으로 판단됨.

〈표 4-31〉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

단위: 명, %

지원 정책	1순위	2순위	1순위+2순위
보험료 일부 지원	165 (47.0)	55 (15.7)	220 (62.7)
고용보험 신청 대행 지원	56 (16.0)	73 (20.8)	129 (36.8)
보험 가입과 관련된 근로자 노무관리 사전 교육	41 (11.7)	44 (12.5)	85 (24.2)
고용보험에 대한 홍보	29 (8.3)	71 (20.2)	100 (28.5)
고용보험 가입 혜택 확대	59 (16.8)	76 (21.7)	135 (38.5)
기타	1 (0.3)	0 (0.0)	1 (0.3)
합계	351		

주: 괄호 안은 연령 합계 대비 비율이며 1순위+2순위 비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있음.

자료: 설문조사 결과.

2.2. 농업법인 사업주

2.2.1. 근로자 고용 실태

○ 농업법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종사상 지위별로 평균 근로자 수와 고용 기간은 다음과 같음.

-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업법인은 평균 6.1명의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평균 고용 기간은 16.9일로 조사됨.
- 임시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업법인은 평균 4.4명의 임시근로자를 고용하며, 고용 기간은 평균 5.9개월로 나타남.
- 상용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업법인은 평균 5.3명을 고용하며, 평균 고용 기간은 3.5년으로 나타남.

〈표 4-32〉 농업법인 종사상 지위별 평균 근로자 수 및 평균 고용기간

단위: 명, 일, 개월, 년

일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상용근로자	
평균 근로자 수	고용기간(일)	평균 근로자 수	고용기간(개월)	평균 근로자 수	고용기간(년)
6.1 (N=69)	16.9 (N=69)	4.4 (N=87)	5.9 (N=87)	5.3 (N=159)	3.5 (N=159)

주: N은 응답한 사업체 수를 의미함.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 일용근로자의 연중 고용 시기는 상반기에는 3월부터 5월까지, 하반기에는 8월부터 10월까지 집중되어 나타남.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이 가장 높은 달은 10월(10.5%)이고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이 가장 낮은 달은 12월(5.4%)임.

〈표 4-33〉 일용근로자 고용 시기

단위: %, 명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응답 수
비중	7.0	7.2	9.1	9.1	9.9	7.8	8.5	9.1	10.5	9.7	6.8	5.4	75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 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로 고용경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구인 광고보다 지역 내 인적 네트워크에 의존하지만, 내국인 임시 및 상용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매체를 통해 구인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일용근로자 구인 시 알고 지내는 농작업 반장(40.0%)이나 인력사무소(30.0%)에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조사됨. 그 밖에 지인의 소개(25.0%), 매체를 통한 구인(5.0%)을 통해 고용이 이루어짐.
- 임시 및 상용근로자는 인력사무소 27.1%, 농작업 반장 31.4%, 지인 소개 21.3%, 구인광고 14.4%로 나타남.

〈표 4-34〉 종사상 지위별 근로자 고용경로

단위: %, 명

구분	지역 내 아는 농작업 반장에게 전화	인력사무소에 전화	지인의 소개	벼룩시장, 교차로, 인터넷 등에 구인 광고	기존 직원의 소개	응답 수
일용근로자	40.0	30.0	25.0	5.0	-	75
임시 및 상용근로자	31.4	27.1	21.3	14.4	5.9	187

주: 임시 및 상용근로자는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만 해당함.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 작업 중 부상 등의 위험에 대비한 산재보험 및 농작업 근로자 안전보험 가입률은 상용근로자에 대한 가입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상용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76.5%, 농작업근로자 안전보험은 40.7%로 나타남.
- 일용근로자와 임시근로자는 표본에 포함된 숫자가 적어 해석에 한계가 있지만, 산재보험의 경우, 일용근로자 가입률은 50%, 임시근로자는 15.4%로 나타남. 농작업근로자 안전보험은 일용근로자는 41.7%, 임시근로자는 11.5%로 나타남.

〈표 4-35〉 산재보험 및 농작업근로자 안전보험의 종사상 지위별 가입률

단위: %, 명

구분	구분	가입함	가입하지 않음	응답 수
산재보험	일용근로자	50.0	50.0	12
	임시근로자	15.4	84.6	26
	상용근로자	76.5	23.5	162
농작업근로자 안전보험	일용근로자	41.7	58.3	12
	임시근로자	11.5	88.5	26
	상용근로자	40.7	59.3	162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2.2.2. 고용 계약 관련 기반 사항

○ 고용계약서 작성 여부는 종사상 지위와 사업체 규모에 따라 작성 비율에 차이가 나타남.

- 임시 및 상용근로자는 72.9%가 고용계약서를 작성한다고 응답한 반면에 일용근로자는 14.7%에 불과함.

〈표 4-36〉 종사상 지위별 고용계약서 작성 여부

단위: %, 명

구분	작성함	작성하지 않음	응답 수
일용근로자	14.7	85.3	75
임시 및 상용근로자	72.9	27.1	188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 사업체와 고용계약서를 작성한 주체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근로자 본인과 고용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일용근로자는 81.8%, 임시 및 상용근로자는 94.2%가 사업주와 직접 고용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37〉 종사상 지위별 고용계약서 작성 주체

단위: %, 명

구분	근로자 본인	근로자를 소개한 사람		응답 수
		인력사무소 사장	농작업팀 반장	
일용근로자	81.8	18.2	9.1	11
임시 및 상용근로자	94.2	5.8	-	137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 사업체가 임금을 지급하는 대상과 방법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일용근로자의 임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경우가 64.5%이며, 인력사무소 소장이나 농작업팀장에게 지급하는 경우가 각각 25.0%, 10.5%로 나타남.

○ 임시 및 상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자 본인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비율이 91.0%이었음.

○ 일용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방법은 현찰로 지급하는 방법이 금융계좌로 송금하는 비율보다 높았고, 임시 및 상용근로자에게는 금융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이 일반적이었음.

〈표 4-38〉 종사상 지위별 임금 지급 대상과 방법

단위: %, 명

구분	임금 지급 대상			임금 지급 방법	
	근로자 본인	인력사무소 소장	농작업팀 반장	현찰	송금
일용근로자 (N=75)	64.5	25.0	10.5	54.4	45.6
임시 및 상용근로자 (N=188)	91.0	6.4	2.7	7.0	93.0

주: 임금 지급 방법은 복수 응답 기준임.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 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로 근로자 명부 및 임금 대장 작성은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임시근로자, 상용근로자 순서로 크게 나타남.
 - 근로자 명부 작성 비율은 일용근로자 34.7%, 임시근로자 78.3%, 상용근로자 91.4%로 나타남.
 - 임금 대장 작성 비율은 일용근로자 37.3%, 임시근로자 76.4%, 상용근로자 86.4%이었음.

〈표 4-39〉 종사상 지위별 근로자 명부 및 임금 대장 작성 여부

단위: %, 명

구분	근로자 명부			임금 대장		
	작성함	작성하지 않음	응답 수	작성함	작성하지 않음	응답 수
일용근로자	34.7	65.3	75	37.3	62.7	75
임시근로자	78.3	21.7	106	76.4	23.6	106
상용근로자	91.4	8.6	162	86.4	13.6	162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2.2.3. 사업체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실태

- 종사상 지위별 고용보험 가입률을 분석한 결과,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순서로 나타남.
 - 상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88.9%로 가장 높고, 일용근로자 41.7%, 임시근로자 19.2%로 조사됨.
 - 현행 고용보험법 내에서는 농업법인에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는 65세 이상이 아닌 이상 당 연가입 대상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가입률은 낮음.

〈표 4-40〉 종사상 지위별 고용보험 가입 여부

단위: %, 명

구분	가입함	가입하지 않음	응답 수
일용근로자	41.7	58.3	12
임시근로자	19.2	80.8	26
상용근로자	88.9	11.1	162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가.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체

○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체를 대상으로 고용보험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고용보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거나 들어본 적이 있더라도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사업체가 전체 미가입 사업체의 약 70%에 달함.

-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은 10.9%, 들어본 적이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는 응답은 58.7%,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30.4%이었음.
- 농업법인의 경우, 당연가입 사업장임에도 들어본 적이 없거나 자세한 내용을 모른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나, 이의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표 4-41〉 근로자 고용보험에 대한 인지도(미가입 사업체)

단위: %, 명

구분	들어본 적 없음	들어본 적이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모름	잘 알고 있음	응답 수
전체	10.9	58.7	30.4	46

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집계한 수치임.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 근로자 고용보험에 대한 인지도별로 해당 사업체의 고용보험 당연적용 사업체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고용보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체의 60%가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인지 모른다고 응답하였고 40%가 당연가입 사업장이 아니라고 응답함.

○ 근로자 고용보험의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고 응답한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체의 22.2%가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인지 모른다고 응답하였고, 당연가입 사업장으로 인식함에도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의 비율이 3.7%임.

○ 근로자 고용보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고용보험 사업체의 92.9%는 고용보험 당연가입 사업장이 아니라고 응답하였고, 당연가입 사업장으로 인식함에도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의 비율이 7.1%로 조사됨.

○ 많은 수의 농업법인이 근로자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

- 당연가입 대상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정책 홍보 강화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표 4-42〉 근로자 고용보험 인지도별 고용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 대한 인지도(미가입 사업체)

단위: %, 명

구분	들어본 적 없음			들어본 적이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모름			잘 알고 있음		
	당연가입 사업장임	당연가입 사업장 아님	모름	당연가입 사업장임	당연가입 사업장 아님	모름	당연가입 사업장임	당연가입 사업장 아님	모름
전체	0.0 (N=5)	40.0 (N=5)	60.0 (N=5)	3.7 (N=27)	74.1 (N=27)	22.2 (N=27)	7.1 (N=14)	92.9 (N=14)	0.0 (N=14)

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집계한 수치임.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체를 대상으로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를 설문한 결과, 고용보험료가 부담된다는 응답이 41.3%로 가장 많았음. 그다음으로 ‘고용보험 대상자 파악이 쉽지 않음’ 28.3%, ‘가입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13.0%, ‘세금 또는 기타 사회보험료 인상 우려’ 10.9%로 나타남.

〈표 4-43〉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미가입 사업체)

단위: %, 명

구분	고용보험료가 부담됨	주로 일시적으로 일하는 근로자가 많아 보험 대상 파악이 쉽지 않음	가입 필요성을 느끼지 않음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세금이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추가적으로 내라고 할 것 같아서	근로자 대상 고용보험에 대해 잘 알지 못함	기타	응답 수
전체	41.3	28.3	13.0	10.9	4.3	2.2	46

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집계한 수치임.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체의 과거 고용보험 가입 경험을 조사한 결과,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체의 91.3%가 과거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과거에 가입하지 않았던 사업체는 현재에도 가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함.

〈표 4-44〉 과거 고용보험 가입 경험(미가입 사업체)

단위: %, 명

구분	있음	없음	응답 수
전체	8.7	91.3	46

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집계한 수치임.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설문한 결과,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체의 사업주의 45.7%가 근로자들이 실직 위험에 대비해 고용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농가 경영주에 비해 근로자 고용보험에 대한 필요성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4-45〉 고용보험 가입 필요성에 대한 의견(미가입 사업체)

단위: %, 명

구분	전혀 불필요	대체로 불필요	보통	대체로 필요	매우 필요	응답 수
전체	2.2	10.9	41.3	41.3	4.3	46

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집계한 수치임.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 그러나 향후 고용보험 가입 의향을 조사한 결과,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체의 71.7%가 앞으로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함.

〈표 4-46〉 향후 고용보험 가입 의향(미가입 사업체)

단위: %, 명

구분	있음	없음	응답 수
전체	28.3	71.7	46

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집계한 수치임.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가입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고용보험료의 최대 80%를 지원 시 가입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66.7%는 여전히 고용보험 가입 의향이 없다고 밝힘.

〈표 4-47〉 고용보험료의 최대 80% 지원 시 고용보험 가입 의향(미가입 사업체)

단위: %, 명

구분	있음	없음	응답 수
전체	33.3	66.7	33

주: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가입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집계한 수치임.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 정부가 고용보험료의 최대 80%를 지원하는 상황에서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사업체를 대상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은 이유를 조사한 결과, ‘고용보험료 부담’과 ‘고용보험 대상자를 잘 알지 못함’이 각각 30.4%, 30.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보험료 지원폭이 충분히 크지 않아 근로자 고용보험 보험료 부담을 여전히 느끼거나 고용보험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로 파악됨.

〈표 4-48〉 고용보험료의 최대 80% 지원 시에도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 이유(미가입 사업체)

단위: %, 명

구분	고용보험료가 부담됨	일시적으로 일하는 근로자가 많아서 보험 대상 파악이 쉽지 않음	근로자 대상 고용보험에 대해 잘 알지 못함	가입 필요성을 느끼지 않음	근로자를 고용을 하지 않고 가족끼리 운영할 예정임	응답 수
전체	30.4	30.4	17.4	13.0	8.7	22

주: 고용보험료의 최대 80% 지원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집계한 수치임.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나. 필요 정책

- 농업법인의 근로자 대상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조사한 결과, ‘보험료 일부 지원’이 36.8%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다음으로 ‘신청절차 간소화’ 21.5%, ‘고용보험 신청 대행 지원’ 21.0%, ‘고용보험 가입 혜택 확대’ 12.5% 순임.

〈표 4-49〉 근로자 고용보험 확대 시 필요 정책

단위: %, 명

구분	보험료 일부 지원	신청절차 간소화	고용보험 신청 대행 지원	고용보험 가입 혜택 확대	고용보험에 대한 교육·홍보	고용보험 대상이 되는 근로자 범주 명확화	사례 수
전체	36.8	21.5	21.0	12.5	5.8	2.5	200

주: 복수 응답(1·2순위 두 가지) 기준임.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2.2.4. 자영업자 고용보험 인지도와 가입 의향

- 농업법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한 인지 정도를 조사한 결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거나 들어본 적이 있더라도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사업주가 전체 사업체의 약 65%에 달함. 전반적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남.

〈표 4-50〉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한 인지도

단위: %, 명

구분	들어본 적 없음	들어본 적이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모름	잘 알고 있음	응답 수
전체	15.8	49.5	34.7	196

주: 50인 이상 사업체(4개 사업체)는 분석에서 제외함.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 농업법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설문한 결과, 전체 사업주의 38.8%가 농업법인 폐업의 위험에 대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그 밖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필요성이 보통이라는 의견이 41.8%,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19.4%로 조사됨.

〈표 4-5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필요성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구분	전혀 불필요	대체로 불필요	보통	대체로 필요	매우 필요	응답 수
전체	2.0	17.4	41.8	33.2	5.6	196

주: 50인 이상 사업체는 분석에서 제외함.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 농업법인 사업주의 과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경험과 현재 가입 여부를 조사한 결과, 사업주의 84.7%가 과거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고 현재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남.

〈표 4-52〉 과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경험과 현재 가입 여부

단위: %, 명

구분	과거에 가입 경험이 있거나 현재 가입함	과거에 가입 경험이 없고 현재도 가입하지 않음	응답 수
전체	15.3	84.7	196

주: 50인 이상 사업체는 분석에서 제외함.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험이 없고 현재도 가입하지 않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현재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를 설문한 결과, 가입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이 50.0%로 가장 많았음.
 - 그다음으로 '세금 또는 기타 사회보험료 인상 우려' 22.9%, '고용보험료 부담' 9.6%,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좋지 못함' 9.6%,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낮음' 7.8%로 나타남.

〈표 4-53〉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현재까지 가입하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구분	가입 필요성을 느끼지 않음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세금이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추가적으로 내라고 할 것 같아서	고용보험료가 부담됨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좋지 못함	사업장의 폐업 등의 확률이 낮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낮음	응답 수
전체	50.0	22.9	9.6	9.6	7.8	166

주 1) 50인 이상 사업체는 분석에서 제외함.

2)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험이 없고 현재도 가입하지 않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집계한 수치임.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 향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의향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사업주의 32.1%는 가입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그러나 68.9%가 가입 의향이 없다고 하였음.

〈표 4-54〉 향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의향

단위: %, 명

구분	있음	없음	응답 수
전체	32.1	68.9	196

주: 50인 이상 사업체는 분석에서 제외함.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 향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최대 50%를 지원 시 가입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77.8%는 여전히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의향이 없다고 밝힘.

〈표 4-55〉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최대 50% 지원 시 고용보험 추가 가입 의향

단위: %, 명

구분	있음	없음	응답 수
전체	22.2	77.8	135

주 1) 50인 이상 사업체는 분석에서 제외함.

2) 향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집계한 수치임.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 정부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최대 50% 지원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최대 80%를 지원할 때 가입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1.0%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의향이 있다고 밝힘.

〈표 4-56〉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최대 80% 지원 시 고용보험 추가 가입 의향

단위: %, 명

구분	있음	없음	응답 수
전체	41.0	59.1	105

주 1) 50인 이상 사업체는 분석에서 제외함.

2)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최대 50% 지원 시에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집계한 수치임.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 정부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최대 80%를 지원하는 상황에서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사업체를 대상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은 이유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가입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이 64.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그다음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좋지 못함’ 14.5%, ‘고용보험료 부담’ 9.7%, ‘세금 또는 기타 사회보험료 인상 우려’ 8.7%,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낮음’ 4.8%로 나타남.

〈표 4-57〉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최대 80% 지원 시에도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구분	가입 필요성을 느끼지 않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좋지 못함	고용보험료 가 부담됨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세금이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추가적으로 내라고 할 것 같아서	사업장의 폐업 등의 확률이 낮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낮음	응답 수
전체	64.5	14.5	9.7	6.5	4.8	62

주 1) 50인 이상 사업체는 분석에서 제외함.

2)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최대 80% 지원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집계한 수치임.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 농업법인의 자영업자 대상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조사한 결과, ‘보험료 일부 지원’이 30.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그다음으로 ‘신청절차 간소화’ 23.5%, ‘고용보험에 대한 교육·홍보’ 15.8%, ‘고용보험 신청 대행 지원’ 15.3%, ‘고용보험 가입 혜택 확대’ 14.5% 순임.

〈표 4-58〉 자영업자 고용보험 확대 시 필요 정책

단위: %, 명

구분	보험료 일부 지원	신청절차 간소화	고용보험에 대한 교육·홍보	고용보험 신청 대행 지원	고용보험 가입 혜택 확대	사례 수
전체	30.9	23.5	15.8	15.3	14.5	196

주 1) 50인 이상 사업체는 분석에서 제외함.

2) 복수 응답(1·2순위 두 가지) 기준임.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2.3. 농업 관련 사업체 운영 사업주

2.3.1. 기본 정보

○ 농업 활동에 있어 농가 및 농업법인과 포전매매, 계약재배, 농작업 위탁, 도급, 파견계약 등을 맺는 사업체는 여러 형태로 나타남. 그러나 해당 업체들의 정보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기존의 연구는 현장 조사를 통해 사례 연구로만 진행되었음.

○ 본 연구의 설문에 참여한 사업체를 농작업 기준으로 유형을 분류하면, 농산물(산지)유통업체가 48.3%로 가장 많았고, 파견업체⁴⁹⁾ 15%, 주산지 전문작업단 11.0%로 나타남.

〈표 4-59〉 농작업 기준에 따른 사업체 분류

단위: %, 명

주산지 전문작업단	파견업체	농산물(산지)유통업체	기타	응답 수
11.0%	15.0%	48.3%	25.7%	300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 농가와 맺는 계약 형태로 사업체 유형을 분류하면, 본 설문에 참여한 사업체는 농작업 위탁, 도급 계약을 맺는 비율이 36.0%로 가장 높았고, 계약재배 29.7%, 밭떼기(포전매매) 14.3% 순서로 나타남.

○ 두 가지 이상의 계약을 맺는 사업체는 밭떼기(포전매매)+농작업 위탁, 도급계약 형태와 계약재배+농작업 위탁, 도급계약이 주를 이루었음.

- 밭떼기(포전매매)+농작업 위탁, 도급계약 비율은 5.3%, 계약재배+농작업 위탁, 도급 계약 비율은 3.3%이었음.

〈표 4-60〉 농가와 맺는 계약 형태에 따른 사업체 유형

단위: %, 명

밭떼기(포전매매)	계약재배	농작업위탁, 도급	파견계약	기타
14.3	29.7	36.0	4.3	3.0

49) 현재 농업부문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1항에 따라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부문임. 파견업체로 응답한 사업체의 경우, 불법적으로 파견을 하거나, 농작업 위탁/도급 형태를 오해했을 가능성이 있음.

(계속)

발떼기+계약재배	발떼기+농작업 위탁, 도급	발떼기+파견계약	계약재배+농작업 위탁, 도급	농작업 위탁, 도급+ 파견계약
1.3	5.3	0.7	3.3	2.0
전체 응답 수				300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 농작업 계약 기준에 따른 사업체 유형을 분석하면, 전반적으로 민간사업체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가운데, 발떼기(포전매매)와 계약재배는 상대적으로 영농조합법인 형태의 업체 비율도 높게 나타남.

- 발떼기(포전매매)를 하는 업체 중 민간사업체 비율은 54.9%, 영농조합 법인은 23.5%, 농업회사법인은 17.7%로 나타남.
- 계약재배를 하는 업체의 사업체 유형은 민간사업체가 39.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영농조합법인도 31.0%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농작업 위탁, 도급하는 업체는 민간사업체 비율이 73.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회사법인이 11.4%로, 상대적으로 농업법인 형태보다는 민간 업체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다른 계약 형태와 비교할 때, 파견계약에서 민간사업체 비율이 94.1%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4-61〉 농작업 계약 기준과 사업체 형태 분류

단위: %, 명

구분	발떼기(포전매매)	계약재배	농작업 위탁·도급	파견계약	기타
농업회사법인	17.7	14.0	2.4	0.0	0.0
영농조합법인	23.5	31.0	13.0	5.9	11.1
회사법인	3.9	16.0	11.4	0.0	11.1
민간사업체	54.9	39.0	73.2	94.1	77.8
응답 수	51	100	123	17	9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 농가 또는 농업법인과 농작업을 위탁, 도급, 파견, 포전매매 및 계약재배하는 품목은 채소가 41.3%로 가장 높게 나타남. 과수는 19.0%, 식량작물은 17.0%로 나타나 주요 품목은 채소, 과수, 식량작물이었음.

〈표 4-62〉 농업 관련 사업체 농작업 주요 품목

단위: %, 명

채소	과수	약용	특용	식량	기타	응답 수
41.3	19.0	5.0	6.0	17.0	11.7	300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 해당 업체들이 1년간 거래하는 농가 또는 농업법인의 평균은 5.3개 사업체(경영체)에서 23.2⁵⁰⁾ 사업체(경영체)까지 다양하게 나타남.

- 가장 많은 농가 또는 농업법인과 거래하는 사업체의 계약형태는 계약재배가 평균 23.2개 사업체(경영체)와 거래를 하였고, 발매기(포전매매)+농작업 위탁, 도급 업체, 파견계약 업체가 그다음으로 14.8 사업체(경영체)와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남.

〈표 4-63〉 계약 형태에 따른 농업 관련 사업체의 연간 거래 평균 농가(법인) 수

단위: 개, 명

구분	발매기(포전매매)	계약재배	농작업위탁, 도급	파견계약	기타
평균 수	13.5	23.2	9.3	14.3	24.5
응답자	43	89	108	13	9
구분	발매기+계약재배	발매기+농작업 위탁, 도급	발매기+파견계약	계약재배+농작업 위탁, 도급	농작업 위탁, 도급+ 파견계약
평균 수	5.3	14.8	9.5	5.4	11.5
응답자	4	16	2	10	6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 해당 사업체를 운영한 기간은 6~10년 사이가 가장 많았고(42.3%), 10년 이상이 된 업체도 36.7%로, 5년 이하의 신생기업 비율은 낮게 나타남.

〈표 4-64〉 사업체 운영 기간

단위: %, 명

5년 이하	6년~10년 이하	10년 이상	응답 수
21.0	42.3	36.7	300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2.3.2. 근로자 고용 실태

○ 설문조사 대상 업체의 근로자 직접 고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파견계약과 농작업 위탁, 도급 +파견계약 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체에서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근로자를 본인의 업체에서 직접 고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위의 두 유형을 제외하고 66.7%에서 100%로 높게 나타남. 상대적으로 계약재배에서 근로자의 직접 고용 비율이 높게 나타남.

50) 기타를 제외한 값임.

〈표 4-65〉 사업체 유형별 근로자 직접 고용 여부

단위: %, 명

구분	발떼기(포전매매)	계약재배	농작업위탁, 도급	파견계약	기타
직접 고용	79.1	89.9	67.6	38.5	66.7
응답자	43	89	108	13	9
구분	발떼기+계약재배	발떼기+농작업 위탁, 도급	발떼기+파견계약	계약재배+농작업 위탁, 도급	농작업 위탁, 도급+ 파견계약
직접 고용	75.0	68.8	100.0	90.0	16.7
응답자	4	16	2	10	6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는 업체 대상으로 간접 고용을 어떻게 하는지 조사한 결과, 대부분은 지역 내 인력 사무소 및 농작업팀 반장과 협력 관계에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경우 고용관계 설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함.
 - 지역 내 인력 사무소를 통해 근로자를 간접 고용하는 비율은 50.0%, 지역 내 농작업팀 반장을 통한 비율은 31.6%로 나타났음.

〈표 4-66〉 간접 고용 경로

단위: %, 명

화물운송업자	지역 내 농작업팀 반장	지역 내 인력사무소	중요회사 소개	기타	응답 수
4.0	31.6	50.0	2.6	11.8	76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 조사 대상 업체에 업무를 하도급 및 위탁하는지 조사한 결과, 하도급 및 위탁 비율은 전반적으로 높지 않았음.
 - 그러나 농작업 위탁·도급하는 업체의 경우, 이를 재하도급·재위탁하는 경우는 26.9%로 나타남.
- 참고로 하도급 및 위탁의 경우, 고용보험법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원수급인임. 그러나 허용된 산업⁵¹⁾에서만 보험 인수에 따라 하수급인이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됨.

5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에 따라,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고용보험법」 제 15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사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사업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를 의미함.

- 농업부문은 허용된 산업에 속하지 않음.

○ 평균적으로 낮은 근로자의 간접 고용 비율과 낮은 재하도급 및 위탁 비율은 원수급인 업체에서 근로자와 사업주(경영주) 간의 고용관계를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을 의미함. 이는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시 가입 주체를 해당 업체로 둘 수 있음을 의미함.

- 그러나 농작업 위탁·도급 업체의 하도급 비율이 26.9%로 나타나 해당 업체에서의 보험인수 여부는 논란이 될 수 있음.

〈표 4-67〉 사업체 유형별 재하도급, 위탁 비율

단위: %, 명

구분	발때기(포전매매)	계약재배	농작업위탁, 도급	파견계약	기타
하도급, 위탁함	18.6	10.1	26.9	30.8	0.0
응답자	43	89	108	13	9
구분	발때기+계약재배	발때기+농작업 위탁, 도급	발때기+파견계약	계약재배+농작업 위탁, 도급	농작업 위탁, 도급+ 파견계약
하도급, 위탁함	25.0	0.0	50.0	20.0	33.3
응답자	4	16	2	10	6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 해당 업체에서 고용하고 있는 평균 내국인 근로자 수를 종사상 지위로 구분하면, 일용근로자 고용은 상대적으로 영농조합법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임시근로자는 농업회사법인, 상용근로자는 회사법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농업회사법인 중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법인은 평균 13.6명의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였고 임시근로자는 7.4명, 상용근로자는 3.9명을 고용하였음.

-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영농조합법인은 평균 35.5명으로 고용하여 가장 많은 수를 고용하였고, 임시근로자는 5.5명, 상용근로자는 평균 9명을 고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회사법인의 경우, 일용근로자는 평균 2.6명으로, 임시근로자는 5.6명을, 상용근로자는 9.9명을 고용하였음.

- 민간사업체에서는 일용근로자는 평균 19.9명, 임시근로자는 4.0명, 상용근로자는 3.7명을 고용하였음.

〈표 4-68〉 사업체 유형별·종사상 지위별 평균 내국인 근로자 수

단위: %, 명

구분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회사법인	민간사업체
일용근로자	13.6	35.5	2.6	19.9
응답 수	12	19	5	85
임시근로자	7.4	5.5	5.1	4.1
응답 수	16	35	16	48
상용근로자	3.9	9.0	9.9	3.8
응답 수	12	21	22	95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 해당 업체에서의 종사상 지위별 고용 형태를 분석하면, 사업체 형태에 따라 주요 근로자 고용 형태가 다르게 나타남.

- 상용근로자 고용은 상대적으로 회사법인, 민간사업체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남. 회사법인 중, 상용근로자만을 고용하는 법인은 42.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민간사업체는 30.0%로 나타남.
- 회사법인의 경우, 임시근로자만을 고용하는 사업체가 27.3%로 나타났으나 민간사업체의 경우는 일용근로자만을 고용하는 사업체가 29.4%로 나타나 주요 형태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었음.
- 상대적으로 일용근로자, 임시근로자만 주로 고용하는 해당 사업체는 영농조합법인으로 각각 21.3%, 37.7%로 나타남.
- 농업회사법인은 임시와 상용근로자를 함께 고용하는 형태의 사업체 비율이 26.9%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4-69〉 사업체 유형별·종사상 지위별 고용 형태

단위: %, 명

고용형태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회사법인	민간사업체
일용근로자	19.2	21.3	3.0	29.4
임시근로자	19.2	37.7	27.3	7.2
상용근로자	7.7	16.4	42.4	30.0
일용+임시근로자	15.4	6.6	3.0	4.4
일용+상용근로자	11.5	3.3	6.1	11.7
임시+상용근로자	26.9	14.8	18.2	17.2
응답 수	26	61	33	180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업무 내용 등의 협의 시, 임시 및 상용근로자는 서류를 작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51.7%), 일용근로자는 구두로 협의하는 비율이 높았음(84%).
- 일용근로자는 구두로 협의하는 경우, 근로자를 소개하는 곳의 사업주 또는 반장(팀장)과 협의하는 비율과 근로자와 직접 구두로 협의하는 비율이 동일하게 나타났고, 임시 및 상용근로자는 근로자와 직접 서류로 해당 내용을 작성하는 비율이 구두로 협의하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남.
 - 임시 및 상용근로자의 경우, 서류로 작성하는 비율은 51.7%인 것이 비해, 일용근로자는 16.1%에 지나지 않음.

〈표 4-70〉 종사상 지위별 근로자 업무 내용 협의 주체와 방법

단위: %, 명

구분	일용근로자	임시 및 상용근로자
근로자를 소개 하는 곳 사장(반장)과 구두로 협의	42.0	19.7
근로자와 직접 구두로 협의	42.0	28.5
근로자를 소개 하는 곳 사장(반장)과 서류 작성	9.2	20.6
근로자와 서류로 작성	6.9	31.1
응답 수	131	228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 농업 관련 사업체에서 근로자를 고용할 때, 대부분은 지인 소개를 통해 고용하고 있으나 그 외에는 종사상 지위에 따라 조금씩 다름.
 - 일용근로자는 지인 소개를 통해 고용하는 비율이 44.9%, 지역 내 아는 농작업 반장을 통해서 26.5%, 인력사무소를 통한 고용은 22.4%이었음.
 - 임시 및 상용근로자는 지인 소개를 통한 고용이 34.3%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신문·인터넷 등 구인광고를 통한 고용이 29.6%로 나타남.

〈표 4-71〉 종사상 지위별 근로자 구인 경로

단위: %, 명

구분	일용근로자	임시 및 상용근로자
인력사무소	22.4	17.8
지역 내 아는 농작업 반장	26.5	17.4
지인 소개	44.9	34.3
신문, 인터넷 등 구인광고	3.4	29.6

(계속)

구분	일용근로자	임시 및 상용근로자
화물운송업자에 고용된 근로자 활용	0.7	0.4
종묘회사 소개	2.0	-
기타	-	0.4
응답 수	131	228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 평균 고용기간도 종사상 지위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용근로자는 14.4일 고용하였고, 임시 근로자는 6.1개월, 상용근로자는 평균 4.3년을 고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72〉 종사상 지위별 근로자 평균 고용 기간

단위: 명

구분	일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상용근로자
고용기간	14.4일	6.11개월	4.33년
응답 수	119	113	147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근로자 본인에 지급하는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은 가운데 근로자를 소개하는 사업체의 사장 또는 반장에게 지급하는 비율이 일용근로자는 22.1%, 임시 및 상용 근로자는 9.6%로 나타남.

-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자를 소개한 업체에 임금을 지급하는 비율보다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비율이 높은 것을 고려하면, 인력소개소 및 지역 내 농작업팀을 통해 알선·소개받는 비율이 더 높을 것으로 해석됨.

〈표 4-73〉 종사상 지위별 임금 지급 대상

단위: %, 명

임금지급대상	근로자 본인	근로자를 소개한 사장, 반장	응답 수
일용근로자	77.9	22.1	131
임시 및 상용	90.4	9.6	228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종사상 지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일용근로자에게는 대부분 현장에서 지급하였고, 임시 및 상용근로자에게 금융계좌로 송금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일용근로자의 경우, 임금, 근로시간, 근무 내용을 구두로 협의하고 현장에서 직접 지급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근로를 증명하는 것이 어려움. 향후 농업 관련 사업체의 일용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해 나갈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표 4-74〉 종사상 지위별 임금 지급 방법

단위: %, 명

임금지급방법	현찰로 지급	금융계좌로 송금	응답 수
일용근로자	64.3	35.7	131
임시 및 상용	12.6	87.4	228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 농작업근로자 안전보험 가입률은 상대적으로 낮았음. 산재보험은 44.0%에 지나지 않았고, 농작업근로자 안전보험도 20.7%이었음.

○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은 근로자의 직접 고용관계가 규명되고, 사업장관리번호 등이 부여되었음을 의미함. 다시 말하면, 산재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이 44.0%이라는 의미는 잠재적으로 고용보험이 쉽게 적용될 수 있는 사업장의 비율을 의미하기도 함.

〈표 4-75〉 농업 관련 사업체의 사회보험 가입률(산재보험, 농작업근로자 안전보험)

단위: %, 명

구분	산재보험	농작업근로자 안전보험	응답 수
가입함	44.0	20.7	300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2.3.3. 고용보험 적용 관련 경영체 기반 사항

○ 농업 관련 사업체의 사업자 등록 비율은 조사 대상 기업 중 74.7%로서 과반의 업체가 사업자 등록을 하였음.

○ 사업자등록 비율이 낮은 업체는, 두 가지 계약을 모두 하는 업체를 제외하면, 발떼기(포전매매)하는 사업체(경영체)이며, 등록 비율이 높은 업체는 파견계약을 하는 사업체임.

- 발떼기(포전매매)의 경우 민간사업체의 등록율이 54.9%이었고, 이외의 사업체는 농업법인, 회사법인 형태를 띠는 것을 고려하면, 민간사업체 중 일부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분석됨.

- 이외의 계약재배 업체의 사업자등록 비율은 82.0%, 농작업위탁·도급 업체는 70.4%, 파견계약 업체는 92.3%로 나타남.

〈표 4-76〉 사업체 유형별 사업자 등록 비율

단위: %, 명

사업자등록함(전체)		74.7%(300)			
구분	발떼기(포전매매)	계약재배	농작업위탁, 도급	파견계약	기타
사업자등록업체	69.7	82.0	70.4	92.3	55.6
응답자	43	89	108	100	9
구분	발떼기+계약재배	발떼기+농작업 위탁, 도급	발떼기+파견계약	계약재배+농작업 위탁, 도급	농작업 위탁, 도급+ 파견계약
사업자등록업체	25.0	68.7	100	90.0	83.3
응답자	4	16	2	10	6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 농업 관련 사업체의 고용계약서 작성 여부를 분석하면, 일용근로자와 고용계약서를 작성하는 사업체는 전반적으로 낮은 비율이었음.

- 법인의 경우, 일용근로자와 고용계약서를 작성하는 비율은 23.6%, 임시 및 상용근로자는 47.5%로 나타남.
- 비법인의 경우, 고용계약서를 작성하는 비율은 일용근로자 14.6%, 임시 및 상용근로자 54.2%로 나타남.

〈표 4-77〉 종사상 지위별·상시근로자 고용 규모별 고용계약서 작성 비율

단위: %, 명

구분	법인	민간사업자(비법인)
일용근로자	23.6%(38)	14.6%(48)
임시 및 상용근로자	47.5%(101)	54.2%(118)

주 1) 괄호 안의 값은 응답자 수임.

2) 복수 응답을 허용한 값임.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 고용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대부분 근로자 본인과 작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임시 및 상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와 작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4-78〉 종사상 지위별·상시 근로자 규모별 고용계약서 작성 주체

단위: %, 명

구분	근로자 본인	근로자 소개하는 곳 사장, 반장	기타	응답 수
법인	일용	66.6	33.3	9
	임시 및 상용	95.8	2.1	2.1
민간사업자(비법인)	일용	100	0	9
	임시 및 상용	87.1	12.9	0.0

주: 비법인 근로자 규모를 구분하지 않은 이유는 해당 전체 응답자 수가 적어 비법인으로 통합함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 근로자 명부 및 임금대장 작성 여부는 일용근로자에서 작성 비율이 가장 낮고, 임시근로자와 상용근로자 순서로 나타남. 임시 및 상용근로자의 작성 정도는 69.1~74.5%로 나타나, 상당수의 사업체가 이를 작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일용근로자 근로자명부를 작성하는 사업체(경영체) 비율은 20.6%, 임금대장을 작성하는 비율은 25.9%로 나타남.
- 임시근로자의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는 사업체 비율은 69.1%, 임금대장을 작성하는 사업체 비율은 71.6%이었음. 상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업체에서는 근로자 명부와 임금대장 작성 비율은 74.5%로 동일하게 나타남.

〈표 4-79〉 종사상 지위별 임금대장 작성 여부

단위: %, 명

구분	일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상용근로자
근로자명부 작성함	20.6	69.1	74.5
임금대장 작성함	25.9	71.6	74.5
응답 수	131	120	161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 농업 관련 사업체의 사업주(경영주) 중 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작성, 고용계약서 작성과 관련한 근로자 노무관리 교육 등을 수강한 경험이 있는 사업주(경영주)는 18%에 지나지 않아, 대부분의 사업주(경영주)는 관련 교육을 수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전반적으로 해당 교육에 대해 노출된 정도는 낮은 것으로 분석됨.

○ 관련 교육을 수강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주)를 대상으로 향후 교육 수강 의향을 조사한 결과, 관련 교육이 무료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교육을 수강할 의향은 수강하지 않은 사람 중 27.2%밖에 지나지 않음.

〈표 4-80〉 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작성, 고용계약서 작성 교육 수강 여부

단위: %, 명

구분	근로자 노무관리 교육 수강 경험 있음	수강 하지 않은 경우, 향후 의향 있음
해당함	18.0	27.2
응답 수	300	246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 관련 교육을 수강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주) 중 향후에도 교육 수강 의향이 없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비율이 41.9%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는 업무가 바빠서 시간을 내기 어렵다는 비율이 31.8%로 나타남. 이미 관련 내용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11.7%에 지나지 않음.

- 고용계약서 및 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작성 등과 관련한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사업주(경영주)가 준수해야 하는 항목임에도 실질적으로 작성 비율도 크게 높지 않음. 이의 비율을 높이려면 정책 홍보도 중요하지만, 해당 사업주(경영주)의 인식 전환을 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비율이 높음을 고려할 때, 해당 내용에 대한 교육과 교육 필요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인식을 전환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함.

〈표 4-81〉 향후 교육을 수강하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구분	비율
업무가 바빠서 시간 내기 어려움	31.8
교육 받는 곳이 집에서 멀리 있음	14.5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41.9
이미 관련 내용을 알고 있음	11.7
응답 수(명)	179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2.2.4. 사업체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실태

○ 농업 관련 사업체에서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률은 영농조합법인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고, 농업회사법인과 회사법인, 민간사업자(비법인)순서로 나타남. 현재의 고용보험 적용 기준에서는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법인과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는 민간사업자(비법인)은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지만, 전반적으로 가입률이 높지 않음.

- 농업회사법인의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률은 조사 대상 사업체 중 57.6%만 가입하였고, 영농조합법인은 32.7%, 회사법인은 57.5%로 나타남. 민간사업자(비법인)는 조사 대상 업체 중, 42.2%만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남.
- 해당 업체의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

〈표 4-82〉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률

단위: %, 명

구분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회사법인	민간사업자(비법인)
고용보험가입	57.6	32.7	57.5	42.2
응답 수	26	61	33	180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 농업 관련 사업체의 종사상 지위에 따른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률은 상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률이 높게 나타남.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률이 가장 높은 사업장은 상용근로자만을 고용하는 사업장으로 조사 대상 사업장 중 88.8%는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일용 및 임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매우 낮은 수준임.

- 상용근로자만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88.8%, 임시근로자와 상용근로자를 함께 고용하는 사업장은 66.0%,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를 함께 고용하는 사업장의 가입률은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반면에 일용근로자와 임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조사 대상 사업장의 2.0~11.1% 범위로 나타나,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음.

〈표 4-83〉 농업 관련 사업체 종사상 지위에 따른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률

단위: %, 명

구분	일용	임시	상용	일용+임시	일용+상용	임시+상용
가입률	11.1	2.0	88.8	5.9	50.0	66.0
응답 수	72	50	80	17	28	53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가.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은 사업체

○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주)의 근로자 고용보험에 대한 인지도는 법인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현재 근로자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법인 사업주의 77.2%는 근로자 고용보험을 인지하고 있었고, 민간사업자(비법인)의 56.7%가 근로자 고용보험을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84〉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체 사업주의 근로자 고용보험 인지도

단위: %, 명

구분	법인	비법인
근로자 고용보험 알고 있음	77.2	56.7
응답 수	66	104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는 법인 사업주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시 세금이나 타 사회보험의 추가 납부 우려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고, 민간사업자(비법인)는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비법인 4인 이하 사업장을 제외하고 농업 관련 사업체 대부분은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 사업장임에도 가입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가입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시킴과 동시에 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을 의미함.

〈표 4-85〉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가입하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구분	법인	비법인
근로자 대상 고용보험에 대해 잘 알지 못함	18.2	10.6
고용보험료가 부담됨	16.7	21.2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세금이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추가 납부 우려	24.2	7.7
가입 필요성을 느끼지 않음	19.7	41.4
보험료 대비 보험 혜택이 좋지 않아서	3.0	0.0
일시적으로 일하는 근로자이기에 보험 대상 파악이 쉽지 않음	15.2	11.5
주로 일하는 근로자가 65세 이상 고령자임	1.5	4.8
직접 고용하는 근로자 수가 적음	1.5	2.9
응답 수	66	104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 미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과거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체는 근로자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됨.

- 현재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 법인에서 과거에 근로자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3.0%로 나타남.
- 과거에도 근로자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던 사업장이 현재에도 가입하지 않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음.

〈표 4-86〉 사업체 규모별 미가입 사업장의 과거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경험

단위: %, 명

구분	법인	비법인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경험 있음	3.0	0.9
응답 수	66	104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 현재 근로자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의 근로자 고용보험 필요성 인식은 법인에서 높게 나타나고, 비법인에서 낮게 나타남.

-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 법인에서는 근로자 고용보험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3.6%로 나타남. 그러나 비법인의 경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32.7%로 법인에 비해 낮게 나타남.

〈표 4-87〉 사업체 규모별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사업주의 근로자 고용보험 필요성 인식

단위: %, 명

구분	불필요	보통	필요함	응답 수
법인	10.6	25.8	63.6	66
비법인	46.2	21.1	32.7	104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향후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의향을 조사한 결과, 법인에서 높게 나타나고, 비법인에서 낮게 나타남.

- 향후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의향이 있는 법인은 60.6%, 비법인은 25.9%로 나타남.

〈표 4-88〉 사업체 규모별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사업주의 향후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의향

단위: %, 명

구분	법인	비법인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의향 있음	60.6	25.9
응답 수	66	104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의향이 없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고용보험료 80% 보조 시, 추가적으로 가입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법인 15.3%, 비법인 19.4%로 나타남.

○ 보험료 보조에도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의향이 낮은 이유는 법인 사업주는 고용보험 가입 시 세금이나 타 사회보험의 추가적 납부 우려가, 비법인 사업주는 가입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4-89〉 사업체 규모별 보험료 80% 보조 시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의향, 가입 원하지 않는 이유(미가입 사업장)

단위: %, 명

구분	법인	비법인
보조시, 가입 의향 있음	15.3	19.4
응답 수	26	77

가입 원하지 않는 이유	법인	비법인
근로자 대상 고용보험에 대해 잘 알지 못함	0.0	4.8
고용보험료가 부담됨	9.1	11.3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세금이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추가 납부 우려	50.0	19.4
가입 필요성을 느끼지 않음	13.6	35.5
보험료 대비 보험 혜택이 좋지 않아서	0.0	4.9
일시적으로 일하는 근로자이기에 보험 대상 파악이 쉽지 않음	22.7	14.5
주로 일하는 근로자가 65세 이상 고령자임	4.6	4.8
직접 고용하는 근로자 수가 적음	0.0	4.8
응답 수	22	62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나. 필요 정책

- 농업 관련 사업체의 사업주(경영주)의 농업부문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필요 정책은 현재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과 가입 사업장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 미가입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서는 보험료 일부지원과 고용보험 신청 대행 지원 및 보험 가입 관련 근로자 노무관리 방법에 대해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법인(48.5%)과 비법인 사업주(41.3%)는 보험료를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음.
 - 다음으로는 법인의 경우 고용보험 신청 대행 지원이 33.3%로 나타났고, 비법인은 보험 가입 관련 근로자 노무관리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6.0%로 나타남.
- 현재 근로자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사업주는 보험료 일부 지원이 가장 높게 나타남. 특히, 비법인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남.
 - 현재 근로자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사업주는 인건비 이외의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인해 해당 항목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을 것으로 추측됨.

〈표 4-90〉 사업체 규모별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확대 필요 정책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단위: %, 명

구분	법인	비법인
보험료 일부 지원	48.5	41.3
고용보험 신청 대행 지원	33.3	10.6
보험 가입 관련 근로자 노무관리 사전 교육	9.1	26.0
고용보험 홍보	3.0	6.8
고용보험 가입 혜택 확대	3.0	11.5
기타	3.0	3.8
응답 수	66	104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사업주〉

구분	법인	비법인
보험료 일부 지원	53.7	77.6
고용보험 신청 대행 지원	25.9	9.2
보험 가입 관련 근로자 노무관리 사전 교육	16.7	4.0
고용보험 홍보	1.9	5.3
고용보험 가입 혜택 확대	1.9	4.0
응답 수	54	76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2.2.5. 자영업자 고용보험 인지도와 가입 의향

○ 농업 관련 사업체의 사업주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인지도는 법인 사업주의 경우, 잘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민간사업자(비법인)과 비교할 때 매우 높게 나타남.

- 법인 사업주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60.8%로 높게 나타남. 들어본 적 없다는 비율은 8.3%, 들어봤으나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는 응답은 30.8%임.
- 비법인 사업주의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21.1%, 들어봤으나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는 응답은 45.6%, 들어본 적 없다는 응답은 33.3%로 나타남.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한다는 응답이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나, 향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해 나가려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관한 내용에 대한 설명과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표 4-91〉 농업 관련 사업체 사업주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인지도

단위: %, 명

구분	들어본적 없음	들어봤으나,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함	잘 알고 있음	응답 수
법인	8.3	30.8	60.8	120
비법인	33.3	45.6	21.1	180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 농업 관련 사업체의 사업주에게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설명한 후 필요성에 대해 설문한 결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법인과 민간사업자(비법인)에서 각각 71.7%, 43.9%임.

- 비법인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법인에 비해 낮지만,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높게 나타남.

〈표 4-92〉 농업 관련 사업체 규모별 자영업자 고용보험 필요성 인식

단위: %, 명

구분	필요하지 않음	보통	필요함	응답 수
법인	8.3	20.0	71.7	120
비법인	34.5	21.7	43.9	180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 과거부터 현재까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경험은 조사 대상 사업체의 18.0%(법인)과 20.0%(민간사업자(비법인) 상시근로자 5인 이상)로 나타나, 사업주 대부분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는 대부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시 세금 및 건강보험료 등 추가적인 비용 부담 발생에 대한 걱정, 고용보험 혜택이 낮을 것이라는 이유가 가장 높게 나타남.

- 법인 사업주의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이 29.6%,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혜택이 좋지 않다는 응답이 25.5%, 고용보험 가입 시, 세금이나 타 사회보험료의 추가 납부 우려가 21.4%로 나타남.
- 민간사업자(비법인)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들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응답이 34.7%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4-93〉 사업체 규모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경험 및 현재 가입 여부 및 가입하지 않은 경우, 이유

단위: %, 명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경험 및 현재 가입 여부〉

구분	법인	비법인 5인 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함	18.3	20.0
응답 수	120	75

〈가입하지 않은 경우, 이유〉

구분	법인	비법인 5인 이상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29.6	34.7
고용보험료 부담됨	16.3	22.5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혜택 좋지 않음	25.5	22.5
고용보험 가입 시, 세금, 건강보험료 등 추가적으로 내라고 할 것 같아서	21.4	16.3
사업장 폐업 확률이 낮아 구직급여 받을 가능성 낮음	7.1	4.1
응답 수	98	49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 향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의향은 비법인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자는 34.6%, 4인 이하 사업주가 33.3%, 법인 사업주가 52.5%로 나타남.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의사가 없는 사업주 중, 보험료 50% 지원을 할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의향은 11.8~15.7%로 나타남. 50% 지원에도 여전히 가입 의사가 없다고 밝힌 사업주 중, 80%의 고용보험료 지원을 할 경우, 가입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사업주는 15.1%에서 55.8%로 높아짐.

- 보험료 일부 지원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확대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시,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에도 여전히 가입 의향이 없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이유를 조사한 결과, 공통적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이 많았고, 법인의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 혜택이 좋지 않다는 것을, 비법인의 경우는 고용보험료 부담과 고용보험 가입 시 세금이나 타 사회보험 추가 납부 우려로 가입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4-94〉 사업체 규모별 향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의향, 보험료 보조 시 가입 의향, 가입 의향 없는 이유

단위: %, 명

〈가입 의향〉

구분	법인	비법인	
		4인 이하	5인 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의향 있음	52.5	33.3	34.6
응답 수	120	93	75

〈보험료 보조시 가입 의향〉

구분	법인	비법인	
		4인 이하	5인 이상
50% 보조시, 가입 의향 있음	15.7	11.8	12.2
응답 수	57	62	49
80% 보조시, 가입 의향 있음	33.3	15.1	55.8
응답 수	48	53	43

〈가입 의향 없는 이유〉

구분	법인	비법인	
		4인 이하	5인 이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34.4	86.5	36.8
고용보험료 부담됨	18.8	10.8	10.5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혜택 좋지 않음	31.3	0	5.3
고용보험 가입 시, 세금, 건강보험료 등 추가적으로 내라고 할 것 같아서	12.5	2.7	42.1
사업장 폐업 확률이 낮아 구직급여 받을 가능성 낮음	3.1	0	5.3
응답 수	32	37	19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 향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와 가입자 모두는 보험료 일부 지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고, 다음으로는 신청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음.

〈표 4-95〉 농업 관련 사업체 규모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확대 필요 정책

구분	자영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법인	비법인	법인	비법인
보험료 일부 지원	55.7	47.3	59.1	66.7
신청절차 간소화	33.0	14.7	40.9	13.3
신청대행 지원	4.1	11.3	0.0	6.7
고용보험 교육/홍보	2.1	8.7	0.0	6.7
고용보험 가입 혜택 확대	3.1	16.0	0.0	6.7
기타	2.1	2.0	0.0	0.0
응답 수	97	150	22	15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3. 근로자 실태조사 분석 결과

3.1. 농가 고용 임금근로자

3.1.1. 일반 사항

○ 농가에서의 고용 실태와 근로자의 고용보험 인지 및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농가에 고용된 고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함.

- 설문에 응답한 농가 근로자는 총 200명이며 그중 149명(74.5%)이 일용 근로자이며 1개월 이상 1년 미만 고용된 임시근로자는 29명(14.5%), 1년 이상 고용된 상용 근로자는 22명(11.0%)임.

○ 일용근로자의 일 평균 근로시간은 9.6시간이며 월 평균 14.6일 일하는 것으로 조사됨.⁵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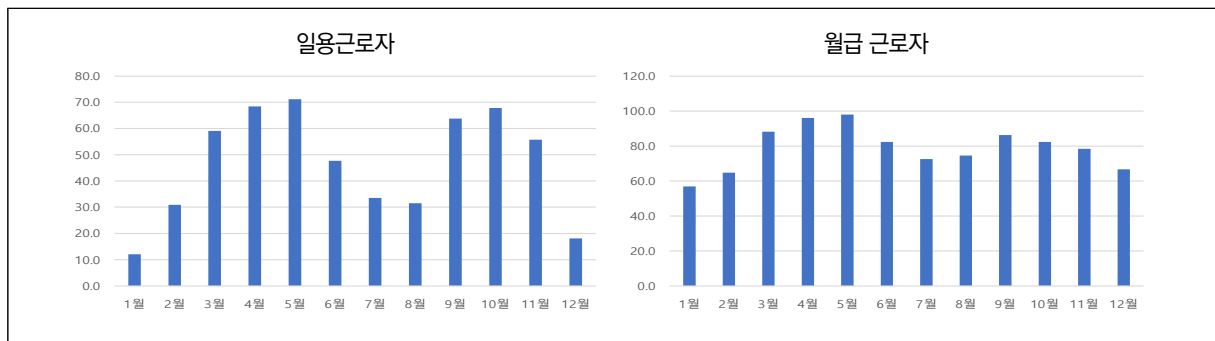
〈표 4-96〉 일용근로자의 일 평균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평균 근로시간(시간/일)	평균 근로일수(일/월)
9.6	14.6

주: 일용근로자라고 응답한 근로자들의 평균 근로시간과 평균 근로일수임.
자료: 설문조사 결과.

○ 일용근로자는 3~5월과 9~11월에 집중적으로 고용되고 있으나 월급 근로자의 고용 기간은 상대적으로 변동이 적어 1, 2월을 제외하면 일정 비율 이상의 근로자가 고용됨.

〈그림 4-2〉 평균 근로 월



주: y축은 해당 월에 일한다고 응답한 근로자의 비율을 의미함.
자료: 설문조사 결과.

52) 참고로 당면 가입 대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임.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도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3.1.2. 근무 내용 및 협의

-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업무 내용에 대한 협의 주체와 방식은 고용 경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 농가가 일용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경우에는 농가 경영주와 근로자가 직접 협의를 진행하며 대부분 구두방식으로 이루어짐.
 - 그러나 인력회사나 지인을 통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인력사무소 또는 농작업팀 반장과 근로자가 협의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며 이때도 서면 작성보다는 구두 협의가 일반적임.
 - 임시 및 상용 근로자의 경우에는 농가 경영주와 근로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며 서면 작성 비율도 일용근로자에 비해 높았음.

〈표 4-97〉 고용 경로별 근로 내용 및 조건 협의 주체

단위: 명, %

근로 내용 및 조건 협의 주체	일용근로자					임시 및 상용 근로자			
	농가 직접 고용	인력회사	지인	지역 내 농작업팀	합계	농가 직접 고용	인력회사	지인	합계
인력사무소/농작업팀 반장과 구두로 협의	6 (10.5)	20 (64.5)	22 (36.7)	0 (0.0)	48 (32.2)	1 (5.9)	5 (33.3)	4 (21.1)	10 (19.6)
인력사무소/농작업팀 반장과 서류 작성	0 (0.0)	2 (6.5)	1 (1.7)	1 (100.0)	4 (2.7)	0 (0.0)	0 (0.0)	0 (0.0)	0 (0.0)
농가 경영주와 직접 구두로 협의	50 (87.7)	9 (29.0)	36 (60.0)	0 (0.0)	95 (63.8)	12 (70.6)	10 (66.7)	13 (68.4)	35 (68.6)
농가 경영주와 서류로 작성	1 (1.8)	0 (0.0)	1 (1.7)	0 (0.0)	2 (1.3)	4 (23.5)	0 (0.0)	2 (10.5)	6 (11.8)
합계	57 (100.0)	31 (100.0)	60 (100.0)	1 (100.0)	149 (100.0)	17 (100.0)	15 (100.0)	19 (100.0)	51 (100.0)

주: 괄호 안은 비율임.
자료: 설문조사 결과.

- 현재 일하는 농가에 고용된 경로에 따라서 업무지휘를 누구에게 받는지 설문한 결과, 대다수의 농가 근로자는 업무지휘를 농가 경영주로부터 받는다고 응답하였음.
 - 일용근로자 81.1%, 임시 및 상용 근로자 94.1%가 이에 해당한다고 응답하였음.
 - 특히 인력회사를 통해 고용된 임시 및 상용 근로자의 경우, 농가의 업무지휘를 받는 비율이 93.3%로 나타나, 임시 및 상용 근로자의 경우 인력회사의 알선·소개·파견 형태로 고용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
 - 그러나 인력회사를 통해 고용된 일용근로자의 경우, 인력사무소 사장의 지휘를 받는다는

응답이 38.7%로 나타나, 알선·소개의 형태가 아닌, 업무 도급 형태를 띠는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4-98〉 고용 경로별 업무 지휘 주체

단위: 명, %

업무지휘 주체	일용근로자					임시 및 상용 근로자			
	농가 직접 고용	인력회사	지인	지역 내 농작업팀	합계	농가 직접 고용	인력회사	지인	합계
농가 경영주	57 (100.0)	19 (61.3)	45 (75.0)	0 (0.0)	121 (81.2)	17 (100.0)	14 (93.3)	17 (89.5)	48 (94.1)
인력사무소 사장	0 (0.0)	12 (38.7)	11 (18.3)	0 (0.0)	23 (15.4)	0 (0.0)	1 (6.7)	1 (5.3)	2 (3.9)
농작업팀 반장	0 (0.0)	0 (0.0)	4 (6.7)	1 (100.0)	4 (3.4)	0 (0.0)	0 (0.0)	1 (5.3)	1 (2.0)
합계	57 (100.0)	31 (100.0)	60 (100.0)	1 (100.0)	149 (100.0)	17 (100.0)	15 (100.0)	19 (100.0)	51 (100.0)

주: 괄호 안은 비율임.

자료: 설문조사 결과.

- 농가에 고용된 근로자들은 고용 기간을 사전에 정하기보다 정해놓지 않고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현상은 임시 및 상용근로자보다 일용근로자 사이에서 더 많이 나타남.
 - 일용근로자 중 고용 기간을 사전에 협의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7.5%였으며 임시 및 상용근로자 중에서는 43.1%가 사전에 협의를 한다고 응답함.
- 일용근로자가 사전에 협의를 할 때에는 주로 농가경영주와 구두로 협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 으로서 구두 합의를 하는 비율은 전체 일용근로자의 11.4%였음.
 - 반면 임시 및 상용근로자가 사전에 협의를 할 때에는 소개소 반장과 구두로 한다는 응답 (19.6%)이 가장 많았으며 농가경영주와 구두로 하는 비율은 11.8%, 서면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2.0%에 불과함.

〈표 4-99〉 고용 경로별 고용 기간 사전 협의 여부 및 주체: 일용근로자

단위: 명, %

고용 기간 사전협의 여부		고용 경로				합계
		농가 직접 고용	인력회사	지인	지역 내 농작업팀	
예		7 (12.3)	10 (32.3)	8 (13.3)	1 (100.0)	26 (17.5)
사전 협의 주체	농가경영주와 구두로	7 (12.3)	6 (19.4)	4 (6.7)	0 (0.0)	17 (11.4)
	농가경영주와 서면 작성	0 (0.0)	0 (0.0)	1 (1.7)	0 (0.0)	1 (0.7)
	소개소 반장과 구두로	0 (0.0)	4 (12.9)	3 (5.0)	1 (100.0)	8 (5.4)
	소개소 반장과 서면 작성	0 (0.0)	0 (0.0)	0 (0.0)	0 (0.0)	0 (0.0)
아니오		50 (87.7)	21 (67.7)	52 (86.7)	0 (0.0)	123 (82.6)
합계		57 (100.0)	31 (100.0)	60 (100.0)	1 (100.0)	149 (100.0)
사전에 정한 고용 기간 평균(일)		11.9	20.4	20.0	20.0	18.0

주: 괄호 안은 비율임.
자료: 설문조사 결과.

〈표 4-100〉 고용 경로별 고용 기간 사전 협의 여부 및 주체: 임시 및 상용근로자

단위: 명, %

고용기간 사전 협의 여부		응답 수	비율
예		22	43.1
고용기간 사전 협의 주체	농가경영주와 구두로	6	11.8
	농가경영주와 서면 작성	1	2.0
	소개소 반장과 구두로	10	19.6
	소개소 반장과 서면 작성	5	9.8
아니오		29	56.9
합계		51	100.0
사전에 정한 고용 기간 평균(개월)			6.2

자료: 설문조사 결과.

○ 농가가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는 경영주가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96.5%를 차지하였으나 인력회사 또는 지인을 통해 고용된 근로자는 인력사무소나 농작업팀을 통해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가 증가함.

- 인력회사를 통해 고용된 경우에는 임금이 금융계좌로 송금되는 비율이 58.1%에 이르지만 타 경로로 고용된 근로자는 현찰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가 더 많았음.
- 임시 및 상용 근로자의 경우, 고용경로에 관계없이 농가 경영주가 임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대부분 금융계좌로 송금하였음.

〈표 4-101〉 고용 경로별 임금 지급 주체 및 지급 형태: 일용근로자

단위: 명, %

구분	농가 직접 고용		인력회사를 통해		지인을 통해		지역 내 농작업팀을 통해		합계		
	응답 수	비율	응답 수	비율	응답 수	비율	응답 수	비율	응답 수	비율	
임금 지급 주체	농가경영주	55	96.5	20	64.5	36	60.0	0	0.0	111	74.5
	인력사무소 사장	0	0.0	10	32.3	11	18.3	0	0.0	21	14.1
	농작업팀 반장	2	3.5	1	3.2	13	21.7	1	100.0	17	11.4
임금 지급 형태	현찰	46	80.7	13	41.9	37	61.7	0	0.0	96	64.4
	금융계좌	11	19.3	18	58.1	23	38.3	1	100.0	53	35.6
합계		57	100.0	31	100.0	60	100.0	1	100.0	149	100.0

자료: 설문조사 결과.

〈표 4-102〉 고용 경로별 임금 지급 주체 및 지급 형태: 임시 및 상용 근로자

단위: 명, %

구분	응답 수	비율	
임금 지급 주체	농가경영주	39	76.5
	인력사무소 사장	5	9.8
	농작업팀 반장	7	13.7
임금 지급 형태	현찰	14	27.5
	금융계좌	37	72.6
합계	51	100.0	

자료: 설문조사 결과.

○ 농가 근로자에게 농가 경영주가 임금대장 또는 임금 내역서를 제공하는지를 설문한 결과, 일용근로자에게는 거의 대부분 관련 서류가 제공되지 않으며 임시 및 상용 근로자의 일부 (13.7%)가 제공받는 것으로 나타남.

〈표 4-103〉 고용 경로별 임금 대장 제공 여부

단위: 명, %

고용경로	일용근로자						임시 및 상용 근로자					
	제공		미제공		합계		제공		미제공		합계	
	응답 수	비율	응답 수	비율	응답 수	비율	응답 수	비율	응답 수	비율	응답 수	비율
농가가 직접 고용	3	5.3	54	94.7	57	100.0	3	17.7	14	82.4	17	100.0
인력회사를 통해	0	0.0	31	100.0	31	100.0	0	0.0	15	100.0	15	100.0
지인을 통해	1	1.7	59	98.3	60	100.0	4	21.1	15	79.0	19	100.0
농작업팀을 통해	0	0.0	1	100.0	1	100.0	-	-	-	-	-	-
합계	4	2.7	145	97.3	149	100.0	7	13.7	44	86.3	51	100.0

자료: 설문조사 결과.

○ 일용근로자나 임시 및 상용 근로자 여부에 관계없이 농가 근로자는 자신의 고용 주체를 농가 경영주로 인식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일용근로자 69.8%, 임시 및 상용 근로자 78.4%가 농가 경영주가 근로자 본인을 고용하고 있다고 생각함.
- 그러나 농가가 직접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 주체를 농작업팀 반장이나 인력소개소 사업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고용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음.

〈표 4-104〉 고용 경로별 고용 주체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고용경로	일용근로자				임시 및 상용 근로자			
	농가 경영주	농작업팀 반장/ 인력소개소 사업주	모르겠음	합계	농가 경영주	농작업팀 반장/ 인력소개소 사업주	모르겠음	합계
농가가 직접 고용	56 (98.3)	1 (1.8)	0 (0.0)	57 (100.0)	17 (100.0)	0 (0.0)	0 (0.0)	17 (100.0)
인력회사를 통해	15 (48.4)	6 (19.4)	10 (32.3)	31 (100.0)	8 (53.3)	2 (13.3)	5 (33.3)	15 (100.0)
지인을 통해	33 (55.0)	17 (28.3)	10 (16.7)	60 (100.0)	15 (79.0)	2 (10.5)	2 (10.5)	19 (100.0)
지역 내 농작업팀 을 통해	0 (0.0)	1 (100.0)	0 (0.0)	1 (100.0)	-	-	-	-
합계	104 (69.8)	25 (16.8)	20 (13.4)	149 (100.0)	40 (78.4)	4 (7.8)	7 (13.7)	51 (100.0)

주: 괄호 안은 비율임.
자료: 설문조사 결과.

- 고용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는가에 대해서 일용근로자 전부는 서면 계약을 작성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며 임시 및 상용 근로자의 경우에도 거의 대부분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응답함.
- 개인 농가가 근로자를 고용할 때 고용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4-105〉 고용 경로별 고용계약서 작성 여부

단위: 명

고용 경로	일용근로자		임시 및 상용 근로자	
	예	아니오	예	아니오
농가가 직접 고용	0	57	7	10
인력회사를 통해	0	31	1	14
지인을 통해	0	60	1	18
지역 내 농작업팀을 통해	0	1	-	-
합계	0	149	9	42

자료: 설문조사 결과.

3.1.3. 고용보험 가입 여부

○ 과거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일용근로자의 75.8%가 가입 경험이 없었으며 임시 및 상용 근로자의 45.1%가 가입 경험 없었음. 농가 고용 근로자들의 고용보험에 대한 노출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파악됨.

- 또한 현 사업장이 고용보험 적용 가능 사업장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일용근로자와 임시 및 상용 근로자가 각각 34.2%, 41.2%로서 상당수의 근로자가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며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비율은 일용근로자 49.7%, 임시 및 상용 근로자 37.3%였음.

〈표 4-106〉 고용보험 가입 경험 및 현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 가능 여부

단위: 명, %

구분		일용근로자		임시 및 상용 근로자	
		응답 수	비율	응답 수	비율
고용보험 가입 경험	있음	36	24.2	28	54.9
	없음	113	75.8	23	45.1
현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 가능 여부	가능	24	16.1	11	21.6
	불가능	74	49.7	19	37.3
	잘 모르겠음	51	34.2	21	41.2
합계		149	100.0	51	100.0

자료: 설문조사 결과.

○ 현재 고용된 농가에서 할 일이 없을 때에는 절반 이상의 일용근로자 응답자가 겸업을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들이 주로 영위하는 겸업 활동은 본인 또는 타인의 농사일과 건설업인 것으로 나타남.

- 겸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로 타 가족원의 소득을 활용하거나 기존 저축액을 이용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107〉 농가에 일 없을 때의 대처 방법

단위: 명, %

농가에 일 없을 때 겸업 여부		일용근로자		임시 및 상용 근로자		
		응답 수	비율	응답 수	비율	
예	겸업활동		79	53.0	20	39.2
		건설업	12	8.1	6	11.8
		농사일	38	25.5	11	21.6
		숙박·외식	10	6.7	1	2.0
		기타	19	12.8	2	3.9

(계속)

농가에 일 없을 때 검업 여부		일용근로자		임시 및 상용 근로자		
		응답 수	비율	응답 수	비율	
아니오		70	47.0	31	60.8	
	생계유지 수단	실업급여 등을 통해 받은 지원금	2	1.3	3	5.9
		가족 중 다른 사람의 소득	47	31.5	12	23.5
		과거 모아놓았던 돈	19	12.8	13	25.5
		재산소득(이자, 집세 등)	2	1.3	1	2.0
		은행이나 개인으로부터 빌린 돈	0	0.0	2	3.9
		기타	0	0.0	0	0.0
합계	149	100	51	100.0		

자료: 설문조사 결과.

3.1.4. 고용보험 인지도 및 가입 의향, 필요 정책

○ 고용보험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를 설문한 결과, 고용보험을 알고 있다고 대답한 비율은 일용근로자의 경우 47.0%, 임시 및 상용 근로자의 경우 78.4%로 대다수의 임시 및 상용근로자는 고용보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고용보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높은 편이었고, 임시 및 상용근로자 사이에서 고용보험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남.
- 일용근로자의 경우 대체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28.9%,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8.7%로 총 37.6%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임시 및 상용근로자의 경우 72.6%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표 4-108〉 고용보험 인지 여부 및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일용근로자		임시 및 상용근로자	
		응답 수	비율	응답 수	비율
고용보험 인지	예	70	47.0	40	78.4
	아니오	79	53.0	11	21.6
고용보험 필요성	전혀 불필요	9	6.0	2	3.9
	대체로 불필요	43	28.9	3	5.9
	보통	41	27.5	9	17.7
	대체로 필요	43	28.9	20	39.2
	매우 필요	13	8.7	17	33.3
합계	149	100.0	51	100.0	

자료: 설문조사 결과.

○ 앞으로 고용보험이 적용되기를 희망하는가를 물어본 결과, 일용근로자의 절반 이상(68.5%) 이 희망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반면 임시 및 상용 근로자의 절반 이상(70.6%)은 희망한다고 응답하여 고용 형태에 따라서 고용보험에 대한 태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일용근로자가 고용보험 적용을 원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보험료 부담과 농가 경영주와의 관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표 4-109〉 향후 고용보험 적용 희망 여부

단위: 명, %

고용보험 적용 희망		일용근로자		임시 및 상용 근로자	
		응답 수	비율	응답 수	비율
희망		47	31.5	36	70.6
미희망		102	68.5	15	29.4
사유	희망해도 농가 경영주가 원하지 않을 것 같음	21	14.1	4	7.8
	본인 부담 보험료를 내는 것이 부담스러움	53	35.6	8	15.7
	보험료 대비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이 좋지 않음	13	8.7	1	2.0
	소득세 등 고용보험료 이외에 추가적 비용이 발생할 것 같아서	13	8.7	2	3.9
	기타	2	1.3	0	0.0
합계		149	100.0	51	100.0

자료: 설문조사 결과.

○ 직장을 선택할 때 다른 모든 근로조건이 동일하다면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사업장을 선호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일용근로자나 임시 및 상용 근로자가 동일하게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을 선호하는 비율이 절반을 넘겼음.

〈표 4-110〉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선호 여부

단위: 명,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일용근로자		임시 및 상용 근로자	
	응답 수	비율	응답 수	비율
선호	82	55.0	36	70.6
비선호	67	45.0	15	29.4
합계	149	100.0	51	100.0

자료: 설문조사 결과.

○ 농가에 고용된 근로자들이 농업 부문 근로자 고용보험 확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이 무엇인지 설문한 결과, 고용보험 가입 방법, 내용 등에 대한 농가 경영주 및 근로자 대상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그다음으로는 일용근로자는 보험료 일부 지원이, 임시 및 상용근로자는 신청 절차 등 행정처리 간소화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음.

〈표 4-111〉 고용보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단위: 명, %

필요 정책	일용근로자		임시 및 상용 근로자	
	명수	비율	명수	비율
고용보험 가입 방법, 내용 등에 대한 농가 경영주 및 근로자 대상 홍보 강화	45	30.2	24	47.1
신청절차 등 행정 처리 간소화	37	24.8	13	25.5
보험료 일부 지원	41	27.5	9	17.7
신청 대행 지원	11	7.4	1	2.0
고용보험 가입 혜택 확대	13	8.7	4	7.8
기타	1	0.7	0	0.0
모름/무응답	1	0.7	0	0.0
모름/무응답	1	0.3	0	0.0
합계	295	100.0	102	100.0

자료: 설문조사 결과.

3.2. 농업법인 고용 임금근로자

3.2.1. 임금과 근로시간

○ 농업법인 임금근로자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 한 달 평균 근로 일수, 일년 평균 근로 월수를 조사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 일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상용근로자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각각 8.6시간, 8.4시간, 9.1시간임.
- 일용근로자의 한 달 평균 근로 일수는 19.6일임. 일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상용근로자의 일년 평균 근로 일수는 각각 4.6개월, 9.2개월, 11.1개월임.

〈표 4-112〉 농업법인 임금근로자의 하루 평균 근로 시간, 한 달 평균 근로 일수, 일년 평균 근로 월수⁵³⁾

단위: 시간/일, 일/월, 개월/년, %

구분	하루 평균 근로 시간 (시간/일)	한 달 평균 근로 일수 (일/월)	일년 평균 근로 월수 (개월/년)
일용근로자 (N=32)	8.6	19.6	4.6

53) 당연 가입 대상 사업장의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임.

(계속)

구분	하루 평균 근로 시간 (시간/일)	한달 평균 근로 일수 (일/월)	일년 평균 근로 월수 (개월/년)
임시근로자(N=18)	8.4	-	9.2
상용근로자(N=150)	9.1	-	11.1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 농업법인 임금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조사한 결과, 일용근로자는 일일 10만 원, 임시근로자는 월 195.3만 원, 상용근로자는 228.6만 원임.

〈표 4-113〉 농업법인 임금근로자의 평균 임금

단위: 만 원

구분	일용근로자 일당	임시근로자 월급	상용근로자 월급
평균 임금	10.0 (N=31)	195.3 (N=18)	228.6 (N=150)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3.2.2. 근무 내용 및 협의

○ 종사상 지위별 임금근로자의 고용조건 협의 대상과 방법을 설문한 결과, 일용근로자는 인력사무소 또는 농작업팀 반장과 협의하는 비율이 높고, 임시 및 상용근로자는 사업주 또는 인사담당자와 협의하는 비율이 높음.

○ 임시근로자와 상용근로자의 경우, 사업주 및 인사담당자와 구두로 협의하는 비중(각각 61.1%, 52.7%)이 서류를 작성하는 비중(각각 38.9%, 47.3%)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 4-114〉 종사상 지위별 임금근로자의 고용조건 협의 대상과 방법

단위: %, 명

구분	인력사무소 또는 농작업팀 반장		사업주/인사담당자		응답 수
	구두 협의	서류 작성	구두 협의	서류 작성	
일용근로자	71.9	40.6	28.1	9.4	32
임시근로자	-	-	100.0	38.9	18
상용근로자	-	-	100.0	47.3	150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 종사상 지위별 임금근로자의 임금 지급 주체와 수령 방법을 조사한 결과, 일용근로자의 임금 지급 주체는 사업주가 약 60%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농작업팀 반장 21.9%, 인력사무소 사장 18.8%임. 임시 및 상용근로자의 임금 지급 주체는 100% 사업주임.

○ 임금 수령 방법의 경우,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임. 일용근로자는 현찰 수령 비중이 높은 반면에 상용근로자는 100% 금융계좌를 통한 송금 수령임.

〈표 4-115〉 종사상 지위별 임금근로자의 임금 지급 주체와 수령 방법

단위: %, 명

구분	임금 지급 주체			임금 수령 방법	
	사업주	농작업팀 반장	인력사무소 사장	현찰	송금
일용근로자	59.4	21.9	18.8	54.5	45.5
임시근로자	100.0	-	-	15.0	85.0
상용근로자	100.0	-	-	0.0	100.0

주: 임금 지급 방법은 복수 응답 기준임.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 임금근로자가 임금을 받을 때 임금대장 또는 임금내역서를 함께 받는지 종사상 지위별로 조사한 결과, 일용근로자 중 임금대장 또는 임금내역서를 받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7.5%인 반면에 임시 및 상용근로자의 수령 비율은 약 50%인 것으로 나타남.

〈표 4-116〉 종사상 지위별 임금근로자의 임금대장 또는 임금내역서 수령 여부

단위: %, 명

구분	수령함	수령하지 못함	응답 수
일용근로자	12.5	87.5	32
임시근로자	50.0	50.0	18
상용근로자	49.3	50.7	150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 종사상 지위별 임금근로자의 고용계약서 작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일용근로자의 고용계약서 작성 비율은 25.0%로 가장 낮았으며, 임시근로자와 상용근로자는 각각 83.3%, 84.7%로 나타남.

- 일용근로자 고용계약서 작성 비율은 낮았지만, 농가에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와 농업 관련 사업체에서 고용된 일용근로자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고용계약서 작성 비율이 높았음.

〈표 4-117〉 종사상 지위별 임금근로자의 고용계약서 작성 여부

단위: %, 명

구분	작성함	작성하지 않음	응답 수
일용근로자	25.0	75.0	32
임시근로자	83.3	16.7	18
상용근로자	84.7	15.3	150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 종사상 지위별 임금근로자의 고용계약서 작성 주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일용근로자의 75.5%가 인력사무소 사장 또는 농작업팀 반장과 작성한다고 응답함. 나머지 25.5%는 사업주 및 인사담당자와 고용계약서를 작성함.

○ 임시 및 상용근로자의 경우, 모두 사업주 및 인사담당자와 고용계약서를 작성함.

〈표 4-118〉 종사상 지위별 임금근로자의 고용계약서 작성 주체

단위: %, 명

구분	사업주/인사담당자	인력사무소 사장, 농작업팀 반장	응답 수
일용근로자	25.0	75.0	8
임시근로자	100.0	-	15
상용근로자	100.0	-	126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3.2.3. 고용보험 가입 여부

○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 및 사업체 형태별로 고용보험 가입률은 일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상용근로자 순서로 나타남.

-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다른 종사상 지위보다 낮게 나타남. 일용근로자의 12.5%는 고용보험에 가입했다고 응답함.
- 임시근로자의 66.7%는 고용보험에 가입했다고 응답함.
- 상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다른 종사상 지위보다 높게 조사됨. 응답 근로자의 82.7%가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했다고 응답함.
- 본 연구의 근로자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근로자에게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만을 조사하였음. 참고로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주체는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함.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 고용보험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음.
- 이러한 절차가 있음에도,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가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을 사업주에게 또는 근로자 복지공단에 요청 또는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설문 조사하였지만,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들 대상으로 어떻게 가입하게 되었는지, 왜 가입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는 하지 않았음. 추후 세부 적용방안을 연구하는 과제에서는 이를 고려해서 설문 문항을 설정할 수 있음.

〈표 4-119〉 종사상 지위별·사업체 형태별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

단위: %, 명

구분	가입함	가입하지 않음	응답 수
전체	70.0	30.0	200
일용근로자	12.5	87.5	32
임시근로자	66.7	33.3	18
상용근로자	82.7	17.3	150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 임시 및 상용근로자의 농업 부문 실직 경험을 설문한 결과, 임시 및 상용근로자의 약 40% 정도가 실직한 경험이 있음.

〈표 4-120〉 임시 및 상용근로자의 농업 부문 실직 경험

단위: %, 명

구분	있음	없음	응답 수
임시근로자	38.9	61.1	18
상용근로자	39.3	60.7	150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 임시 및 상용근로자의 농업 부문 실직 시 주요 생계 수단을 조사한 결과, 임시근로자는 주로 다른 가족 구성원의 소득(42.9%)이나 저축액(42.9%)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남. 상용근로자의 경우, 가족 중 다른 사람의 소득에 의존하는 비중이 50.8%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과거에 모아놓았던 돈' 30.5%, '실업급여 등을 통해 받은 지원금' 18.6%임.

〈표 4-121〉 임시 및 상용근로자의 농업 부문 실직 시 주요 생계 수단

단위: %, 명

구분	가족 중 다른 사람의 소득	과거 모아놓았던 돈	실업급여 등을 통해 받은 지원금	응답 수
임시근로자	42.9	42.9	14.3	7
상용근로자	50.8	30.5	18.6	59

주: 농업 부문에서 실직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임시 및 상용근로자를 대상으로 집계한 수치임.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 현재 근무하는 사업체에서 일이 없을 때 다른 일을 겸하여 하는지 설문한 결과, 종사상 지위별 겸업 비율은 일용근로자가 78.1%로 가장 높고, 임시근로자 27.8%, 상용근로자 12.7%로 조사됨.

〈표 4-122〉 현재 사업체에 일이 없을 시 검업 여부

단위: %, 명

구분	다른 일을 함	다른 일을 하지 않음	응답 수
일용근로자	78.1	21.9	32
임시근로자	27.8	72.2	18
상용근로자	12.7	87.3	150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 현재 근무하는 사업체에서 일이 없을 때 다른 일을 겸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그럴 때의 주요 생계 수단에 대해 조사한 결과, 다른 가족 구성원의 소득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일용근로자는 모두 다른 가족 구성원의 소득에 의존한다고 응답함.
- 임시근로자와 상용근로자도 다른 가족 구성원의 소득에 의존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각각 84.6%, 55.7%로 가장 높으며, 상용근로자의 경우 그다음으로 ‘과거에 모아놓았던 돈’ 29.0%, ‘실업급여 등을 통해 받은 지원금’ 10.7%임.

〈표 4-123〉 현재 사업체에 일이 없을 시 검업하지 않을 경우 주요 생계 수단

단위: %, 명

구분	가족 중 다른 사람의 소득	과거 모아놓았던 돈	실업급여 등을 통해 받은 지원금	은행이나 개인으로부터 빌린 돈	응답 수
일용근로자	100.0	0.0	0.0	0.0	7
임시근로자	84.6	7.7	7.7	0.0	12
상용근로자	55.7	29.0	10.7	4.6	131

주: 현재 근무하는 사업체에서 일을 없을 때 다른 일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집계한 수치임.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3.2.4. 고용보험 인지도 및 가입 의향, 필요 정책

○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에 대한 인식 여부를 조사한 결과, 임시 및 상용근로자의 약 95%는 고용보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함. 반면에 일용근로자는 75%만이 고용보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표 4-124〉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에 대한 인식 여부

단위: %, 명

구분	들어본 적이 있음	들어본 적이 없음	응답 수
전체	92.0	8.0	200
일용근로자	75.0	25.0	32

(계속)

구분	들어본 적이 있음	들어본 적이 없음	응답 수
임시근로자	94.4	5.6	18
상용근로자	95.3	4.7	150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과거에 고용보험 가입 경험을 설문한 결과, 상용근로자의 가입 경험 이 77.3%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임시근로자 66.7%, 일용근로자 43.8% 순임.

〈표 4-125〉 임금근로자의 과거 고용보험 가입 경험

단위: %, 명

구분	있음	없음	응답 수
전체	71.0	29.0	200
일용근로자	43.8	56.3	32
임시근로자	66.7	33.3	18
상용근로자	77.3	22.7	150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 임금근로자가 현재 근무하는 사업체의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가능 여부 인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일용근로자의 50.5%가 잘 모른다고 응답하였으며, 불가능하다는 답변도 40.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임시 및 상용근로자의 경우, 가능하다는 응답이 각각 66.7%, 87.3%를 차지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임시근로자의 22.2%는 잘 모른다고 답변함.

- 농업법인은 당연가입 사업장임에도, 많은 수의 근로자들이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남.

〈표 4-126〉 현재 사업체의 고용보험 가입 가능 여부에 대한 인지도

단위: %, 명

구분	가능함	불가능함	잘 모름	응답 수
전체	73.0	10.3	16.5	200
일용근로자	9.4	40.6	50.0	32
임시근로자	66.7	11.1	22.2	18
상용근로자	87.3	4.0	8.7	150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직 위험에 대비한 고용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는지 설문한 결과, 대부분 필요하다는 의견이 앞서고 있음.

- 일용근로자는 '필요함' 59.4%, '보통' 28.1%, '불필요' 12.5%로 조사됨.

- 임시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이 필요하는 의견이 61.1%, 보통이라는 의견이 38.9%임.
- 상용근로자의 대다수(86.0%)는 고용보험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농가에서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와 달리 근로자 고용보험 필요성을 느끼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4-127〉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필요성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구분	전혀 불필요	대체로 불필요	보통	대체로 필요	매우 필요	응답 수
전체	1.5	2.5	16.5	51.5	28	200
일용근로자	6.3	6.3	28.1	50.0	9.4	32
임시근로자	0.0	0.0	38.9	50.0	11.1	18
상용근로자	0.7	2.0	11.3	52.0	34.0	150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한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요청했던 경험이나 향후에 고용보험 가입을 요청할 생각인지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요청한 적이 없거나 요청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임시근로자의 66.7%가 과거 고용보험 가입 요청 경험이 있거나 향후 고용보험 가입 요청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여 세 가지 종사상 지위 중에 그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해당 응답자 수가 6명에 지나지 않아, 해석에 유의해야 함.
- 상용근로자는 해당 질문에 19.2%, 일용근로자 10.7%로 나타나,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더라도 사업주에게 요청하는 비율은 낮음을 알 수 있음.

〈표 4-128〉 사업주에게 과거 고용보험 가입 요청 경험 또는 향후 고용보험 가입 요청 의향

단위: %, 명

구분	있음	없음	응답 수
전체	20.0	80.0	60
일용근로자	10.7	89.3	28
임시근로자	66.7	33.3	6
상용근로자	19.2	80.8	26

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한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집계한 수치임.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사업주에게 과거에 고용보험 가입을 요청한 경험이 없으면서 앞으로도 고용보험 가입을 요청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사

업주에게 고용보험 가입 요청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일용근로자는 사업주와 관계가 불편해지거나(36.0%) 고용보험 가입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36.0%)이 주된 이유로 조사됨.
- 임시근로자는 고용보험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가입 요청 의향이 없다고 밝힘.
- 상용근로자는 주로 사업주와 관계가 불편해질 것(57.1%)을 우려하여 고용보험 가입 요청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남.

〈표 4-129〉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가입 요청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구분	사업주와 관계가 불편해 질까봐	고용보험 가입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현재 일자리를 잃을까봐	일하는 사업체가 고용보험을 가입할 형편이 못 되는 것을 알고 있기에	자신도 보험료를 내야하기에 보험료가 부담되어서	기타	응답 수
전체	43.8	31.3	8.3	8.3	6.3	2.1	48
일용근로자	36.0	36.0	4.0	16.0	8.0	0.0	25
임시근로자	0.0	100.0	0.0	0.0	0.0	0.0	2
상용근로자	57.1	19.0	14.3	0.0	4.8	4.8	21

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사업주에게 과거에 고용보험 가입을 요청한 경험이 없으면서 앞으로도 고용보험 가입을 요청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집계한 수치임.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향후 고용보험 적용을 희망하는지 조사한 결과, 일용근로자 중 희망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40.6%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으며, 임시 및 상용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희망 비중은 각각 94.4%, 87.3%임.

- 농가 고용 근로자와는 상반된 결과를 나타냄.

〈표 4-130〉 향후 고용보험 적용 희망 여부

단위: %, 명

구분	희망함	희망하지 않음	응답 수
전체	80.5	19.5	200
일용근로자	40.6	59.4	32
임시근로자	94.4	5.6	18
상용근로자	87.3	12.7	150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 향후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임금근로자의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일용근로자는 ‘보험료 대비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이 좋지 않음’ 47.4%, ‘본인 부담

보험료를 내는 것이 부담스러움' 42.1%로 조사됨.

- 임시근로자는 '소득세 등 고용보험료 이외에 추가적 비용이 발생할 것 같아서'라고 응답함.
- 상용근로자의 경우, 여러 이유가 고른 비중으로 제시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험료 대비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이 좋지 않음' 31.6%, '본인 부담 보험료를 내는 것이 부담스러움' 26.3, '희망해도 사업주가 원하지 않을 것 같음' 26.3%, '소득세 등 고용보험료 이외에 추가적 비용이 발생할 것 같아서' 15.8%로 조사됨.

〈표 4-131〉 향후 고용보험 적용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구분	보험료 대비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이 좋지 않음	본인 부담 보험료를 내는 것이 부담스러움	희망해도 사업주가 원하지 않을 것 같음	소득세 등 고용보험료 이외에 추가적 비용이 발생할 것 같아서	응답 수
전체	38.5	33.3	17.9	10.3	39
일용근로자	47.4	42.1	10.5	0.0	19
임시근로자	0.0	0.0	0.0	100.0	1
상용근로자	31.6	26.3	26.3	15.8	19

주: 향후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집계한 수치임.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 기타 고용 조건이 동일한 경우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 대한 선호 여부를 조사한 결과, 임시 및 상용근로자의 선호도가 각각 94.4%, 88.0%로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에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됨(50.0%).

〈표 4-132〉 기타 고용 조건이 동일한 경우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선호 여부

단위: %, 명

구분	선호함	선호하지 않음	응답 수
전체	82.5	17.5	200
일용근로자	50.0	50.0	32
임시근로자	94.4	5.6	18
상용근로자	88.0	12.0	150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농업 부문 사업체의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 설문한 결과, '보험료 일부 지원'(30.4%)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사업주/인사담당자 및 근로자 대상 홍보 강화'(26.9%), '행정처리 간소화'(23.9%), '고용보험 가입 혜택 확대'(18.8%) 순임.

〈표 4-133〉 농업 부문 사업체의 고용보험 적용 확대 시 필요 정책

단위: %, 명

구분	보험료 일부 지원	고용보험 가입 방법, 내용 등에 대한 사업체 사업주/인사담당자 및 근로자 대상 홍보 강화	신청절차 등 행정 처리 간소화	고용보험 가입 혜택 확대	응답 수
전체	30.4	26.9	23.9	18.8	200
일용근로자	29.7	31.3	21.9	17.2	32
임시근로자	27.8	25.0	30.6	16.7	18
상용근로자	30.9	26.2	23.5	19.5	150

주: 복수 응답(1·2순위 두 가지) 기준임.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3.3. 농업 관련 사업체 고용 임금근로자

3.3.1. 임금과 근로시간

- 휴식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은 평균 근로시간은 일용근로자는 7.1시간, 임시근로자는 7.6시간, 상용근로자는 7.9시간으로 나타나, 대부분 7시간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 평균 근로기간은 일용근로자는 한 달 평균 13.8일로 나타나, 한 달 평균 총 근로시간은 98시간으로 나타남.
- 임금은 일용근로자는 일당 11.5만 원, 임시근로자는 월 210만 원, 상용근로자는 월 223.2만 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임시근로자에 비해 상용근로자의 월급이 높게 나타남.

〈표 4-134〉 농업 관련 사업체 종사상 지위별 평균 근로시간, 평균 임금, 평균 근로 일수

단위: 시간, 만 원, 일, 명

구분	일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상용근로자
평균 근로시간	7.1	7.6	7.9
평균 임금	일당 11.5	월 210만 원	월 223.2만 원
평균 근로기간	13.8일	-	-
응답 수	72	19	110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3.3.2. 근무 내용 및 협의

- 우선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사업체 형태는 민간사업체 유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주산지 전문작업단의 해당 사업체 유형은 민간사업체가 70.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화물운송업자 사업체도 민간사업체가 66.7%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다른 유형은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으로 나타남.
- 농산물 유통업체는 민간사업체 형태가 46.5%, 영농조합법인이 26.3%, 농업회사법인이 19.2%로 나타남.
- 지역 내 농작업팀 또는 인력소개소는 민간사업체 형태가 78.3%로 민간사업체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4-135〉 근로자들의 근무하는 사업체의 주요 형태

단위: %, 명

구분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회사법인	민간사업체	응답 수
주산지전문작업단	8.1	16.2	5.4	70.3	37
화물운송업자	16.7	16.7	0.0	66.7	12
농산물유통업체	19.2	26.3	8.1	46.5	99
지역 내 농작업팀/인력소개소	10.9	8.7	2.2	78.3	46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 근로자들이 작업하는 주요 품목은 채소, 과수 비중이 높게 나타남. 이는 농업 관련 사업체의 사업주 분석 결과와 유사함.
 - 채소 품목은 38%, 과수는 35.6%로 나타남. 다음으로는 식량작물 15.2%, 약용 6.0%, 특용 3.6% 순서로 나타남.

〈표 4-136〉 근로자들이 작업하는 주요 품목

단위: %, 명

채소	과수	식량작물	약용작물	특용작물	기타	응답 수
38.0	35.6	15.2	6.0	3.6	1.6	201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 근로자들의 임금, 근로시간, 업무 내용에 대한 사전 협의는 종사상 지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일용근로자는 주로 일하러 가는 농가 또는 농업회사 경영주와 협의하는 비율이 높고, 임시 및 상용근로자는 현재의 근무처 사업주 또는 반장과 협의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일용근로자는 임금, 근로시간, 업무 내용을 일하러 가는 농가 또는 농업회사 경영주와 구두 및 서류로 협의하는 비율이 69.5%로 나타나고, 현재 근무처의 사업주와 협의하는 근

로자는 8.4%에 지나지 않음.

- 임시근로자는 해당 내용에 있어 현재 근무하는 사업체의 사업주와 협의하는 비율이 94.7%, 상용근로자는 90.9%로 나타남.

○ 임금, 근로시간, 업무 내용 등을 협의할 때, 서류로 작성하는 비율은 일용근로자에서는 매우 낮고, 임시근로자도 42.1%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구두로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로 나타남. 상용근로자는 60.0%로 서류로 작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4-137〉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업무 내용 사전 협의 대상과 방법

단위: %, 명

구분	일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상용근로자
현 근무처 사업체 사업주(반장)과 구두 협의	25.0	52.6	33.6
현 근무처 사업체 사업주(반장)과 서류 작성	5.6	42.1	57.3
일하러 가는 농가/농업회사 경영주와 구두로 협의	66.7	5.3	6.4
일하러 가는 농가/농업회사 경영주와 서류 작성	2.8	0.0	2.7
응답자 수	72	19	110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 일용근로자의 경우, 업무 지휘하는 주체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업체의 사업주 또는 사업체에 속한 관리자가 아닌, 일하러 가는 농가 또는 농업회사 경영주의 업무지휘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이러한 업무지휘 관계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자가 속한 현재의 사업체가 위탁·도급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함.

○ 임시근로자와 상용근로자는 현재 사업체의 사업주 또는 관리자에게 업무지휘를 받는다고 인지하여, 일용근로자와는 다소 다른 결과를 나타냄.

〈표 4-138〉 종사상 지위별 근로자가 인지하는 업무 지휘 주체

단위: %, 명

구분	일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상용근로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업체의 사장/반장	36.2	78.9	93.6
일하러 가는 농가/농업회사 경영주	63.9	21.0	6.3
응답자 수	72	19	110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고용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임시근로자의 경우 고용 기간을 정했다는 비율이 57.8%로 높았으나, 전체 응답자 수가 적어 절대 수치상으로는 많지 않음. 임시근로자 중 고용 기간을 정한 경우, 평균 7.8개월 고용 기간을 설정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일용근로자 중 23.6%만이 고용 기간을 정하였고, 고용 기간을 정한 경우, 평균 한 달 동안 13.7일을 5.2개월간 하는 것으로 정하였음.
- 상용근로자는 고용 기간을 정한 비율이 36.3%로, 고용 기간을 정한 경우 평균 7.05년을 설정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139〉 종사상 지위별 고용기간 정함 여부 및 평균 설정 근로기간

단위: %, 연, 명

구분	일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상용근로자
고용기간 정함	23.6	57.8	36.3
평균 설정 근로기간	한 달 13.7일 5.2개월간	7.8개월	7.05년
응답 수	72	19	110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 고용 기간을 정했을 경우, 고용기간 협의 및 설정은 대부분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업체의 사업주와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용근로자는 상대적으로 일하러 가는 농가 및 농업회사의 경영주와 설정하는 비율이 41.2%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표 4-140〉 종사상 지위별 고용기간 정한 주체

단위: %, 명

구분	일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상용근로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업체의 사장/반장	58.8	81.8	80.0
일하러 가는 농가/농업회사 경영주	41.2	18.2	20.0
응답자 수	17	11	40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 일용근로자 대부분은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음. 임시 및 상용근로자의 경우는 대부분 고용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용근로자와 차이가 나타남.

- 일용근로자는 고용계약서를 작성하는 비율이 13.8%, 임시근로자는 84.2%, 상용근로자는 77.3%로 나타남.

- 이는 농업 관련 사업체에 고용된 임시 및 상용근로자 대부분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업체와 고용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의미함.

〈표 4-141〉 종사상 지위별 고용계약서 작성 여부 및 고용계약서 작성 주체

단위: %, 명

구분	일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상용근로자
고용계약서 작성함	13.8	84.2	77.3
응답자 수	72	19	110
고용계약서 작성 주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업체의 사장/반장	50.0	100	100
일하러 가는 농가/농업회사 경영주	50.0		
응답자 수	10	16	85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 농업 관련 사업체 근로자 중 일용근로자는 일하러 가는 농가, 농업회사 경영주에게 임금을 수령하는 비율이 높았음. 임시근로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업체에서 지급받거나 일하러 가는 사업체(경영체)에서 받는 비율이 비슷하였고, 상용근로자의 경우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업체에서 지급 받는 경우가 많았음.

○ 임금수령 방법은 일용근로자는 현찰로 지급 받는 비율이 76.4%로 대다수를 이룸. 금융계좌로 송금 받는 비율은 23.6%에 지나지 않았음.

- 일용근로자의 경우, 임금 소득 확인 방법이 어려울 수 있음을 의미함.

○ 임시근로자는 모두 금융계좌로 임금을 수령하였고, 상용근로자도 거의 대부분 금융계좌로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142〉 임금 지급 주체 및 임금 수령(현찰, 금융계좌) 형태: 종사상 지위별

단위: %, 명

임금지급 주체	일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상용근로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업체의 사장/반장	26.4	47.3	91.8
일하러 가는 농가/농업회사 경영주	73.6	52.6	8.2
응답자 수	72	19	110
임금 수령 방법	일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상용근로자
현찰로 받음	76.4	0.00	0.9
금융계좌로 받음	23.6	100.0	99.1
응답자 수	72	19	110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 임금을 받을 때 임금대장 또는 임금내역서를 함께 제공받는 경우는 전반적으로 비율이 낮았음. 임시근로자에서 비율이 68.4%로 높았지만, 전체 응답자 수가 적어, 해당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일용근로자는 20.8%만 임금대장 또는 임금내역서를 받았고, 상용근로자의 경우도 42.7%만 임금대장 또는 임금내역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일용근로자의 경우 고용계약서 작성 비율이 낮고, 임금 또한 현찰로 지급받으면서 임금대장 또는 내역서를 받고 있지 않아, 고용보험 가입 확대 시, 고용사실관계 확인 및 고용관계 파악, 소득 파악 모두 용이하지 않음을 의미함.

〈표 4-143〉 종사상 지위별 임금 대장, 내역서 제공 여부

구분	일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상용근로자
임금대장, 내역서 제공 받음	20.8	68.4	42.7
응답자 수	72	19	110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 근로자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 고용 주체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하러 가는 농가 또는 농업회사 경영주로 인식하였고, 임시근로자는 현 사업체의 사업주 또는 일하러 가는 곳의 경영주로 인식하는 비율이 47.4%로 동일하였고, 상용근로자의 경우만 현 사업체의 사업주를 인지하는 비율이 90.0%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4-144〉 고용 주체 인식: 종사상 지위별

구분	일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상용근로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업체의 사장/반장	22.2	47.4	90.0
일하러 가는 농가/농업회사 경영주	76.4	47.4	7.3
모르겠음	1.4	5.3	2.7
응답자 수	72	19	110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3.3.3. 고용보험 가입 여부

- 고용보험 가입률은 일용근로자에서 매우 낮았음. 임시 및 상용근로자의 경우 사회보험 가입률이 일용근로자에 비해 높았지만,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었음.
 -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3.9%이었고, 임시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 39.4%, 상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50.5%로 나타남.

〈표 4-145〉 고용보험 가입 여부

단위: %, 명

구분	고용보험 가입	응답자 수
일용근로자	3.9	72
임시근로자	39.4	19
상용근로자	50.5	110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3.3.4. 고용보험 인지도 및 가입 의향, 필요 정책

○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중, 일용근로자를 제외하고 임시 및 상용근로자 대부분은 근로자 고용보험을 인지함.

-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자 고용보험을 들어본 적이 있는 비율은 55.6%이었고, 임시근로자는 100%, 상용근로자는 98.7%로 높게 나타남.

〈표 4-146〉 종사상 지위별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고용보험 인지도

단위: %, 명

구분	일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상용근로자
근로자 고용보험 들어본 적 있음	55.6	100.0	98.7
응답자 수	72	15	81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 근로자 고용보험에 현재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중, 과거에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경험이 있었던 근로자 비율은 임시 및 상용근로자에서 높게 나타남.

- 근로자 고용보험에 현재 미가입된 일용근로자의 경우, 과거에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적이 있었던 비율은 27.8%, 임시근로자는 60.0%, 상용근로자는 90.1%로 나타남.

〈표 4-147〉 종사상 지위별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고용보험 과거 가입 경험

단위: %, 명

구분	일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상용근로자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경험 있음	27.8	60.0	90.1
응답자 수	72	15	81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 현재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들의 현재 고용되어 있는 사업체의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 인지 여부는 다음과 같음.

- 영농조합법인과 민간사업체에서 당연가입 사업장이라고 알고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음. 특히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법인에 속해 당연가입 사업장임에도,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1.2%, 가입 가능하지 않은 사업장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1.2%로 나타나, 당연가입 대상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민간사업체 경우, 만약 비법인의 사업체인 경우, 1~4인 사업장은 현재 체계에서는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함. 그러나 5인 이상의 사업장은 당연가입 사업장임에도 설문조사 결과는 대략 22.2~26.6% 근로자들은 당연가입 사업장임을 인지하지 못하였음.

〈표 4-148〉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현재 고용보험 현재 사업체 당연가입 대상 인지 여부

단위: %, 명

구분	가입가능하지 않음	가입 가능함	잘 모르겠음	응답자 수
농업회사법인	11.5	69.2	19.2	26
영농조합법인	21.2	57.6	21.2	33
회사법인	16.7	83.3	0.0	6
민간사업체	34.0	49.5	16.5	103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민간사업체 종사상 규모에 따른 당연가입 대상 인지 여부〉

구분	가입가능하지 않음	가입 가능함	잘 모르겠음	응답자 수
1~4인	52.9	25.4	21.5	51
5~9인	20.0	73.3	6.6	30
10인 이상	11.1	77.7	11.1	22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 근로자 고용보험 필요성에 대해 현재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응답자 중, 상용근로자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84.8%로 높게 나타남. 보통은 12.1%, 필요하지 않다는 3.1%로 낮게 나타남.
-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일용근로자 40.3%, 임시근로자 46.7%, 상용근로자 81.5%로 나타남. 반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일용근로자의 경우 47.2%, 임시는 0%, 상용근로자는 8.6%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임시 및 상용근로자에서 근로자 고용보험이 필요하다고 느꼈음.

〈표 4-149〉 종사상 지위별 근로자 고용보험 필요성

단위: %, 명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자

구분	불필요	보통	필요함	응답 수
임시	-	75.0	25.0	4
상용	3.1	12.1	84.8	29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구분	불필요	보통	필요함	응답 수
일용	47.2	12.5	40.3	72
임시	0	53.3	46.7	15
상용	8.6	9.9	81.5	81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 임시근로자와 상용근로자는 향후 근로자 고용보험이 지속적으로 적용되길 희망하는 비율이 높았고,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그 비율이 낮았음.

- 일용근로자 중 38.8%만 향후 근로자 고용보험이 적용되길 희망하였고, 임시근로자는 79.0%, 상용근로자는 86.4%가 희망하였음.

○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는 공통적으로 보험료 부담을 꼽았음. 이외에 실업급여 혜택이 보험료에 비해 좋지 않은 점, 희망해도 사업주가 원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이 주를 이루었음.

- 일용근로자의 경우, 보험료 부담이 45.5%로 가장 높았고, 지불하는 보험료에 비해 실업급여 등의 혜택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20.5%로 나타났음.
- 임시근로자는 희망해도 사업주가 원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과 보험료 부담 문제를 꼽았음.
- 상용근로자는 본인 부담 보험료 지불 부담이 73.3%로 가장 높았고, 희망해도 사업주가 원하지 않을 것 같은 이유와 보험료 대비 실업급여 등의 혜택이 좋지 않은 비율이 13.3%로 동일하게 나타남.

〈표 4-150〉 근로자 고용보험 향후 적용 희망 여부 및 적용 희망하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구분	일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상용근로자
희망함	38.8	79.0	86.4
응답자 수	72	19	110

(계속)

희망하지 않는 이유

구분	일용	임시	상용
희망해도 사업주가 원하지 않을 것 같음	13.6	50.0	13.3
본인 부담 보험료 내는 것이 부담스러움	45.5	50.0	73.3
보험료 대비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이 좋지 않음	20.5	0.0	13.3
소득세 등 고용보험료 이외에 추가적 비용이 발생할 것 같아서	9.1	0.0	0.0
기타	11.4	0.0	0.0
응답자 수	44	4	15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 동일한 조건이라면,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선호 여부에 대해 임시 및 상용근로자는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을 선호하는 비율은 각각 94.7%, 87.2%로 높게 나타남.

〈표 4-151〉 종사상 지위별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선호 여부

단위: %, 명

구분	일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상용근로자
선호함	43.0	94.7	87.2
응답자 수	72	19	110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 근로자 고용보험 확대 시 필요한 정책으로, 현재 가입자들은 일용근로자를 제외하고 고용보험 가입 방법, 내용 등에 대한 사업주 및 근로자 대상 홍보 강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음. 다음으로는 보험료 일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음.

○ 근로자 고용보험에 현재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들도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 방법, 내용 등에 대한 사업주 및 근로자 대상 홍보 강화와 신청 절차 등의 행정처리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음.

〈표 4-152〉 근로자 고용보험 확대 시 필요한 정책

단위: %, 명

가입자

구분	일용	임시	상용
고용보험 가입방법, 내용 등에 대한 사업주 및 근로자 대상 홍보 강화	25.0	58.6	54.6
신청절차 등 행정 처리 간소화	50.0	13.8	18.2
보험료 일부 지원	25.0	27.6	27.3
응답자 수	4	29	33

미가입자

구분	일용	임시	상용
고용보험 가입방법, 내용 등에 대한 사업주 및 근로자 대상 홍보 강화	22.2	40.0	30.9
신청절차 등 행정 처리 간소화	22.2	46.7	28.4
보험료 일부 지원	38.9	13.3	25.9
고용보험 가입 혜택 확대	13.9	0.0	14.8
기타	2.8	0.0	0.0
응답자 수	72	15	81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5

농업부문 고용보험 적용 확대 및 도입 시 쟁점⁵⁴⁾

1.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 및 도입 시 쟁점

1.1. 비법인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가입 제한

- 농업 비법인 사업주의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고용보험법」 제8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임의가입 대상 사업체와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체로 구분됨.
 - 임의가입 대상 사업체의 사업주(경영주)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 농림어업 부문은 타 부문과 달리 비법인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체에는 「고용보험법」 적용을 제외하고 있어 해당 사업체에 속한 근로자와 자영업자는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되어 있음.
-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된 비법인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체의 비중이 높아 현재의 법을 기준으로 적용 가능 범위가 매우 좁음.
 -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적용 제외 대상의 비율은 농가의 경우 76.1%, 농업 관련 사업체의 경우 32.3%임.

⁵⁴⁾ 이 장에서의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제7조2 제1항에 따라 계산함. 즉,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수를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눠 계산함.

〈표 5-1〉 농가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가능 사업체 분류

단위: 호, %

농가 구분		농가수	비율
적용 제외		267	76.1
임의가입 대상	고용보험 미가입	81	23.1
	고용보험 가입	3	0.9
합계		351	100.0

주 1) 전체 응답 농가 351개 중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적용 제외 농가와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을 구분함.

2) 적용 제외 대상에는 근로자4인 이하 농가와 근로자 50인 이상 농가가 포함됨.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표 5-2〉 농업 관련 사업체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가능 사업체 분류

단위: 개소

구분	임의가입 대상 사업장		적용대상 제외 사업장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 고용보험 미가입	
법인	22	98	-
비법인	15	60	93
합계	37	158	93

주: 적용 제외 대상에는 근로자 4인 이하 비법인 사업체와 근로자 50인 이상 비법인 사업체가 포함됨.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1.2.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수용성

○ 적용 대상 제외 사업체의 고용보험 인지도나 필요성에 대한 인식, 향후 가입 의사는 농업 분야 고용보험 확대에 있어서 수용성 측면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적용 범위를 확대하더라도 현재의 적용 제외 사업체의 수용 의사가 제도 개선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제도 개선의 의미가 반감됨.

1.2.1. 인지도 및 필요성 인식

가. 임의가입 대상 중 미가입 사업주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 중,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낮음.

-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농가는 12.4%, 농업법인은 27.7%, 농업관련 사업체는 19.6%임.

-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들어봤으나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비율은 농가 71.6%, 농업법인은 53.5%, 농업 관련 사업체는 43.1%임.
- 대부분의 임의가입 대상 경영주(사업주)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들어보지 못했거나 들어봤어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남.

〈표 5-3〉 자영업자 고용보험 인지도

단위: %, 명

구분	농가	농업법인	농업 관련 사업체
들어본적 없음	16.1	18.8	37.3
들어본적 있으나 자세한 내용 알지 못함	71.6	53.5	43.1
잘 알고 있음	12.4	27.7	19.6
응답 수 (명)	81	170	158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 자영업자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주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농업 관련 사업체, 농업법인, 농가 순서로 나타남.
 - 미가입 농가 경영주 중, 29.6%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으며, 미가입 농업법인 사업주는 33.5%, 미가입 농업 관련 사업체 사업주는 53.2%로 나타남.
 - 농업법인과 농업 관련 사업체 사업주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비율보다 높게 나타남.

〈표 5-4〉 자영업자 고용보험 필요성 인식

단위: %, 명

구분	농가	농업법인	농업 관련 사업체
필요함	29.6	33.5	53.2
보통	33.3	44.1	25.9
필요하지 않음	37.0	22.4	20.9
응답 수 (명)	81	170	158

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나. 임의가입 대상 중 가입 사업주

- 현재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가입한 사업주들은 농업 부문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미가입 사업주와 적용 제외 사업주와 비교할 때 매우 높게 나타남.

〈표 5-5〉 자영업자 고용보험 필요성 인식

단위: %, 명

구분	농업법인	농업 관련 사업체
필요함	63.3	94.6
보통	33.3	2.7
필요하지 않음	3.3	2.7
응답 수 (명)	30	37

주: 임의 가입 대상 농가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는 3명으로, 분석에서 제외함.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다. 적용 제외 사업주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대상 제외 사업주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인지도에서는 상대적으로 농가 경영주의 인지도가 농업 관련 사업체 사업주의 인지도보다 높게 나타남.

-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농가 경영주는 21.7%, 농업 관련 사업체 사업주는 40.9%로 나타남.

○ 농가와 농업 관련 사업체 사업주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들어본 적이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정확하게 아는 비율은 전반적으로 낮았음.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응답률이 높은 것을 고려할 때,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에 대한 설명과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표 5-6〉 자영업자 고용보험 인지도

단위: %, 명

구분	농가	농업 관련 사업체
들어본적 없음	21.7	40.9
들어본적 있으나 자세한 내용 알지 못함	59.9	49.5
잘 알고 있음	18.4	9.6
응답 수 (명)	267	93

주: 농업법인 사업주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자임.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대상 제외 사업주 중, 농업부문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농가 경영주는 33.3%, 농업 관련 사업체 사업주는 38.7%로 나타남.

〈표 5-7〉 자영업자 고용보험 필요성 인식

단위: %, 명

구분	농가	농업 관련 사업체
필요함	33.3	38.7
보통	30.0	20.4
필요하지 않음	36.7	40.9
응답 수 (명)	267	93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1.2.2. 가입 의향과 미가입 이유

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 현황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은 전반적으로 낮고, 법인보다 비법인에서 낮게 나타남.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은 전체 응답자 기준, 농가는 0.9%, 농업법인은 15%, 농업 관련사업체는 법인의 경우 18.2%, 민간사업자(비법인)는 8.9%임.

〈표 5-8〉 고용보험 가입 가능 여부 및 가입 경험에 따른 분류(자영업자 고용보험)

단위: 명, %

구분	농가		농업법인		농업 관련 사업체				
					법인		민간사업자(비법인)		
	명수	비율	명수	비율	명수	비율	명수	비율	
적용대상 제외	267	76.1	4	2.0	1	0.8	93	55.4	
임의가입 대상	고용보험 미가입	81	23.1	166	83.0	98	81.0	60	35.7
	고용보험 가입	3	0.9	30	15.0	22	18.2	15	8.9
응답수 (명)	351	100.0	200	100.0	121	100.0	168	100.0	

주: 적용대상 제외에는 상시근로자 4인 이하 농가/비법인과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체가 포함됨.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나. 임의가입 사업자 중, 미가입자의 미가입 이유

- 자영업자 고용보험 미가입 이유는 농가의 경우, 보험료 부담과 영농 중단 및 폐업 의향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음.
 - 보험료 부담이 27.5%, 영농 중단이나 폐업 의향이 없는 경우가 22.5%로 주요 미가입 이유로 나타남.
- 농업법인 사업주는 가입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과 고용보험 가입 시, 추가적인 세금 납부 및 타 사회보험료의 추가 납부 우려가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남.

○ 농업 관련 사업체 사업주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혜택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과 고용보험료 부담이 미가입의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남.

○ 공통적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사업자 중, 미가입자의 주요 요인은 보험료 부담과 추가적인 사회보험료의 납부 우려로 나타남.

- 매월 납부 보험료에 대한 부담 및 추가적인 사회보험료 납부 우려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저해하는 요소 중 하나로 파악되어, 보험료율과 추가적인 사회보험료 징수 위험 등이 농업 부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확대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농업법인 사업주들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해 필요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농가와 농업 관련 사업체 사업주의 주요 요인과는 차이가 있음.

〈표 5-9〉 자영업자 고용보험 미가입 이유(농가)

단위: %, 명	
미가입 이유	비율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가 부담되므로	27.5
어떤 상황에도 영농중단이나 폐업할 생각이 없으므로	22.5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가 올라갈까 염려되어서	18.8
고용보험에 대해서 잘 몰라서	12.5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절차나 요건이 까다로워서	18.8
응답수(명)	81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표 5-10〉 자영업자 고용보험 미가입 이유(농업법인, 농업 관련 사업체)

구분	농업법인		농업 관련 사업체	
	잘 알고 있음	들어본적 없거나 자세한 내용 모름	잘 알고 있음	들어본적 없거나 자세한 내용 모름
가입 필요성을 느끼지 않음	74.5	38.5	18.6	34.3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세금이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추가적으로 내라고 할 것 같아서	8.5	31.9	22.0	16.2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좋지 못함	8.5	8.8	35.6	7.1
고용보험료가 부담됨	6.4	9.9	13.6	37.4
사업장의 폐업 등의 확률이 낮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낮음	2.1	11.0	10.2	5.1
응답수(명)	47	91	59	99

주 1) 농업법인 미가입자 중 32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한 인지도 설문 문항 또는 미가입 이유 설문 문항에 무응답함.

2) 농업 관련 사업체 미가입자 중 1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한 인지도 설문 문항 또는 미가입 이유 설문 문항에 무응답함.

3) 이 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 가입 대상자 중, 미가입한 응답자들의 미가입 이유를 나타낸 표임.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의향과 미가입 희망 이유

① 임의가입 사업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향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의향은 농가 미가입 경영주 중, 17.3%, 농업법인 사업주는 20.6%, 농업 관련 사업체는 34.2%로 나타남.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최대 50% 및 80%를 보조할 경우, 추가적인 가입 의향은 모든 경영주에서 높아짐.

- 50%를 보조할 경우, 농가는 추가적으로 11.1%, 농업법인은 17.6%, 농업 관련 사업체는 9.4%가 높아짐.

- 80%를 보조할 경우, 추가적으로 농가는 27.2%, 농업법인은 25.3%, 농업 관련 사업체는 25.3%로 나타남.

○ 보험료 지원 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의사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므로 향후 자영업자 고용보험 확대 시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단, 지원 폭을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가 쟁점임.

-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필요함.

〈표 5-1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의향

단위: %, 명

구분	농가(비법인)	농업법인	농업 관련 사업체
①가입 의향 있음	17.3	20.6	34.2
②보험료 최대 50% 보조 시 가입 의향	11.1	17.6	9.4
③보험료 최대 80% 보조 시 가입 의향	27.2	25.3	25.3
① + ② + ③	55.6	63.5	68.9
응답 수 (명)	81	170	158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80%의 지원에도 가입 의사가 없는 미가입 경영주 대상으로 이유를 조사한 결과, 농가는 고용보험료 부담으로, 농업법인과 농업 관련 사업체 사업주는 가입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5-12〉 보험료 보조에도 자영업자 고용보험 미가입 이유(농가)

단위: %, 명	
미가입 이유	비율
보험료 부담	27.9
고용보험에 대해 잘 모름	14.7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추가 인상 우려	19.1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절차나 요건이 까다로움	20.6
어떤 상황에도 영농중단이나 폐업 생각 없음	17.7
응답 수 (명)	45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표 5-13〉 보험료 보조에도 자영업자 고용보험 미가입 이유(농업법인, 농업 관련 사업체)

단위: %, 명		
구분	농업법인	농업관련사업체
가입 필요성을 느끼지 않음	64.5	34.7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세금이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추가적으로 내라고 할 것 같아서	6.5	22.5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좋지 못함	14.5	22.5
고용보험료가 부담됨	9.7	16.3
사업장의 폐업 등의 확률이 낮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낮음	4.8	4.1
응답수 (명)	62	49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② 임의가입 사업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

○ 대부분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들은 향후에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가입하기 희망함. 고용보험료 지원이 없는 경우에도 가입 희망률은 농업법인 93.3%, 농업 관련 사업체 94.5%로 나타남.

- 고용보험 필요성 인식이 높은 만큼 향후 가입률 또한 매우 높게 나타남.

○ 보험료를 50% 지원 시 추가 가입 희망자는 농업법인 사업주의 3.3%로 나타남.

〈표 5-14〉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의향

단위: %, 명		
구분	농업법인	농업 관련 사업체
① (무지원 시) 가입 의향 있음	93.3	94.5
② 보험료 최대 50% 보조 시 가입 의향	3.3	0
③ 보험료 최대 80% 보조 시 가입 의향	0	0
① + ② + ③	96.6	94.5
응답 수 (명)	30	37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 가입률이 높게 나타나는 가운데 보험료 보조에도 가입 의향이 없는 사업주는 농업법인 사업주 1명, 농업 관련 사업체 사업주 2명으로 나타남.

- 농업법인 사업주의 경우 가입 필요성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하였고, 농업관련사업체 사업주는 가입 필요성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과 고용보험 가입 시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인상 우려 때문이라고 응답함.

③ 적용 대상 제외 사업주

○ 적용대상 제외인 농가 경영주의 28.5%, 농업관련사업체의 사업주의 33.3%는 보험료 지원이 없더라도 현재의 고용보험에 가입하기를 희망함.

○ 가입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사업주(경영주)에게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최대 50% 보조할 경우, 추가 가입 의향을 질문한 결과, 농가경영주의 16.1%, 농업 관련 사업체의 사업주의 11.8%는 고용보험 가입 의향이 있다고 응답함. 고용보험료 지원을 최대 80%를 보조할 경우, 추가 의향은 농가 21.3%, 농업 관련 사업체 15.1%로 높아짐.

○ 보험료 최대 80% 보조가 이루어질 경우, 적용대상 제외 농가 경영주의 65.9%와 농업 관련 사업체 사업주의 60.2%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함.

○ <표 5-15>에 응답한 농가경영주와 농업관련 사업체 사업주들은 현재는 고용보험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지만, 가입 의향 조사 결과를 고려할 때, 보험 가입에 있어 개인 선택 범위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현재의 고용보험 적용대상 제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표 5-15>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의향

구분	단위: %, 명	
	농가	농업 관련 사업체
① (무지원 시) 가입 의향 있음	28.5	33.3
② 보험료 최대 50% 보조 시 가입 의향	16.1	11.8
③ 보험료 최대 80% 보조 시 가입 의향	21.3	15.1
① + ② + ③	65.9	60.2
응답 수 (명)	267	93

주: 적용 제외 대상에는 상시근로자 0~4인 경영체 및 사업체와 근로자 50인 이상 경영체 및 사업체가 포함됨.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 가입 의향이 없는 나머지 경영주(사업주) 대상으로 가입을 원치 않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농가 경영주와 농업 관련 사업체의 사업주가 각기 다른 이유로 가입을 원치 않는 것으로 나타남.

- 농가 경영주는 세금이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추가 인상 우려와 여전히 보험료가 부담된다는 것이 주된 이유임.
- 농업 관련 사업체 사업주는 고용보험 가입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이유가 가장 높게 나타남.

〈표 5-16〉 보험료 보조에도 자영업자 고용보험 미가입 이유

단위: %, 명

미가입 이유	농가	농업 관련 사업체
보험료 부담	26.3	10.8
고용보험에 대해 잘 모름·가입 필요성 느끼지 않음	10.5	86.4
세금이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추가 인상 우려	31.6	2.7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절차나 요건이 까다로움	14.0	0.0
어떤 상황에도 영농 중단이나 폐업 생각 없음	14.0	0.0
기타		0.0
응답 수 (명)	57	37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1.2.3.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정책 지원 수요

○ 현재 자영업자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주들이 생각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서는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는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으며, 보험 가입신청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음.

- 보험료 일부 지원 정책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난 것은 앞서 보험료 지원 비율을 50%, 80%로 높일 때, 추가 가입 의향이 양의 증가세를 보이는 것과 일치하는 결과임.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대상 제외 경영주(사업주)도 마찬가지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보험료 일부 지원을 꼽음.

- 보험료 일부 지원 정책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난 것은 적용대상 제외 사업주에게 보험료 지원 비율을 50%, 80%로 높일 때, 추가 가입 의향이 양의 증가세를 보이는 것과 일치하는 결과임.

- 조사 결과는 보험료 지원이 농업 분야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서는 필요한 정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지만, 향후 정책을 고려할 때는 보험료 지원 폭과 재원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음.
- 추후 연구에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필요정책에 <표 5-17> 항목 이외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들이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불이익이 있어 구조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못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못하는 것인지에 대한 조사와 이를 통해 필요한 정책을 제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표 5-17>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확대 위한 필요정책

단위: %, 명

구분	농가		농업법인	농업 관련 사업체	
	미가입	적용제외	미가입	미가입	적용제외
보험료 일부 지원	49.4	42.7	44.7	53.2	46.2
신청절차 간소화	22.2	19.1	29.4	26.3	14.3
고용보험 신청 대행 지원	8.6	7.1	10.0	6.4	12.1
고용보험에 대한 교육·홍보	12.3	11.2	8.8	5.1	7.7
고용보험 가입 혜택 확대	7.4	19.9	7.1	7.1	17.6
기타		0.0		1.9	2.2
응답수	81	267	170	156	91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1.3. 고용보험 적용 기반

1.3.1. 사업자 등록

- 사업장 관리번호 부여 및 폐업 확인을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이 필수적 요건이지만 고용보험 가입 경영주(사업주)의 사업체를 제외하면 사업자 등록율은 낮음.
- 특히, 농가에서 사업자 등록 비율이 낮아 향후 고용보험 확대 적용 시 사업자 등록이 선결과제로 부상할 것임.
 - 농가의 경우, 적용대상 제외 사업체의 사업자 등록율은 21.7%,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이나 현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사업체의 사업자 등록율은 22.2%임.
 - 이는 역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비율이

77.8%, 적용대상 제외 농가는 78.3%라는 것을 의미함.

- 농업 관련 사업체 중 민간사업자 중, 적용대상 제외 사업체의 사업자등록율은 38.7%, 임의가입 대상 중 미가입 사업체의 사업자 등록율은 42.8%임.

〈표 5-18〉 비법인 사업자 등록률

단위: %, 명

구분	농가		농업 관련 사업체 민간사업자		
	사업자등록률	응답수	비율	응답수	
적용 제외	21.7	267	38.7	62	
임의가입 대상	고용보험 미가입	22.2	81	42.8	42
	고용보험 가입	100.0	3	100.0	33
합계	22.2	351	44.6	168	

주 1) 적용 제외 대상에는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경영체 및 사업체와 근로자 50인 이상 경영체 및 사업체가 포함됨.

2) 농업 관련 사업체 민간 사업자의 적용 제외에는 추가적으로 현재 근로자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임.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1.3.2. 농가의 비자발적 폐업 증명서류 기반 사항

-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비자발적 폐업에 대비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는 보험으로, 자영업자의 경우 비자발적 폐업과 관련한 조건에 부합한 서류를 제출해야 함.
 - 그중 매출액 및 소득 감소로 인한 비자발적 폐업의 경우, 생산 관련 증빙자료 및 경영/회계장부 작성이 필요함.
- (미가입 농가) 원칙적으로 임의 가입 가능하지만 고용보험 미가입한 농가⁵⁵⁾의 절반 이상이 생산 관련 증빙자료의 보관 및 기장을 하지 않고 있어, 고용보험 가입에 필요한 서류 작성 및 제출 등 제반 행정처리를 위한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임.
 - 농산물 판매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농가는 45.7%, 농자재 지출 자료를 보관하는 농가는 46.9%,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하는 농가는 50.6%를 차지함.

55) 「고용보험법」에 근거한 적용 범위에 따라 임의가입 농가 중 미가입한 농가를 의미함. 사업자등록 여부는 임의가입 대상자 중, 피보험자 관리 중, 보험 신청에 있어 필수적인 항목임. 「고용보험법」 적용대상에 사업자등록 항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표 5-19〉 생산 관련 자료 보관 및 기장(미가입 농가)

단위: 호, %

구분		농가수	비율
농산물 판매 증빙자료 보관		37	45.7
농자재 지출 자료 보관		38	46.9
경영/회계장부 작성	간편장부	38	46.9
	복식부기	3	3.7
	미작성	38	46.9
	모름	2	2.5
합계		81	100.0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 (적용대상 제외 농가) 고용보험 적용대상 제외 사업장도 마찬가지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인 비자발적 소득 감소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부족함.

- 농산물 판매 자료를 보관하거나 농자재 지출 자료는 보관하는 농가는 36.7%에 불과하며 장부작성 농가도 41.6%로 절반 이하임.

〈표 5-20〉 생산 관련 자료 보관 및 기장(적용 제외 농가)

단위: 호, %

구분		농가수	비율
농산물 판매 증빙자료 보관		98	36.7
농자재 지출 자료 보관		98	36.7
경영/회계장부 작성	간편장부	102	38.2
	복식부기	9	3.4
	미작성	151	56.6
	모름	5	1.9
합계		267	100.0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1.4. 보험료 산정

○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료 산정 및 보험급여 지급액에 사용되는 기준보수는 현재 7단계로 구성되어 있음. 자영업자 소득 파악의 어려움으로 현재 기준보수를 자영업자가 선택하도록 함.

- 1단계 월 1,820,000원~7단계 3,380,000원으로 설정됨.

〈표 5-21〉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 보험료 및 월 실업급여

단위: 호, %

구분	기준보수	월보험료(2.25%)	월 실업급여(60%)
1등급	1,820,000	40,950	1,092,000
2등급	2,080,000	46,800	1,248,000
3등급	2,340,000	52,650	1,404,000
4등급	2,600,000	58,500	1,560,000
5등급	2,860,000	64,350	1,716,000
6등급	3,120,000	70,200	1,872,000
7등급	3,380,000	76,050	2,028,000

자료: 엄진영 외(2021).

○ 해당 기준보수 설정액이 농업 부문에서도 적절한 수준인지 판단하는 것이 필요함.

1.5. 타 경영안정정책과의 중복성 여부

○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밀접하게 연관될 수 있는 농업 부문에서의 경영안정 정책보험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수입보장보험임.

- 그러나 해당 보험의 목적을 고려할 때, 현재의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중복되지 않음.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매출액 및 소득 또는 그 외의 비자발적인 이유로 폐업에 이르렀을 때 생계 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보험임. 즉, 경영체 유지가 아닌 경영체 폐업에 따른 사회보험 정책임. 따라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현재 농업 부문에서 시행되고 있는 보험과 함께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표 5-22〉 농작물 재해보험, 가축 재해보험, 수입보장보험 목적

구분	내용
농작물재해보험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피해를 보상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 도모 - 경영체 유지가 전제됨
가축재해보험	예상하지 못한 각종 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여 농업인(축산인)의 경영안정 도모 - 경영체 유지가 전제됨
수입보장보험	농작물 수확량 감소 및 가격하락으로 인한 손해 보장 - 경영체 유지가 전제됨

○ 특히, 농가가 폐업할 경우, 주요 생계비 조달 방법은 과거의 자금을 사용하거나, 가족 중 다른 사람의 소득에 기대는 방법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남. 폐업 시, 최소한의 생계 마련에 대한 안전망이 없음을 알 수 있음.

- 폐업 시, 생계를 유지에 도움이 되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농업부문에도 최소한의 생계 마련과 재취업 기반을 둔다는 측면에서 자영업자 고용 보험은 차별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음.

〈표 5-23〉 농가 폐업 시, 경영주의 생계비 조달 방법

단위: %, 명

생계비 조달 방법	농가
임시 아르바이트	21.1
가족 중 다른 사람의 소득	26.5
과거 모아놓았던 돈	38.5
재산소득(이자, 집세 등)	5.4
은행이나 개인으로부터 빌린 돈	7.7
기타	0.9
응답수	351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 참고로 농가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70.1%, 가축 재해보험은 18.2%, 수입보장보험은 2.0%로 나타남.

1.6. 농가의 휴·폐업 기준

○ 농업 부문은 타 부문과 달리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신체활동이 어려워 휴업한 경우, 폐업을 하지 않고, 사업체는 유지한 상태로 휴업하는 경우가 발생함.

- 현재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서는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신체활동 및 가족 간병으로 인한 폐업을 수급 요건으로 두고 있으나, 폐업을 하지 않는 이상 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 질병 등으로 인한 휴업이지만, 농지 등 생산기반만 그대로 둔 채 생산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므로 농업 부문에서는 이는 실질적인 폐업 상태라고 할 수 있음.

- 특히, 휴업을 하는 동안에는 생계 안정 및 재취업 기반에 대한 보호 장치가 없는 가운데, 생계를 주로 과거 저축액을 활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음(62.5%).

- 비록 휴업을 경험하는 비율은 낮지만, 휴업을 할 경우 생계를 이어나갈 최소한의 안전망이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음.

○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농업 부문 자영업자 고용보험 수급요건 범위에 포함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표 5-24〉 휴업 기간 및 이유

단위: 호, %

구분		응답 수	비율
휴업 기간	1년 이하	7	29.2
	1~2년	15	62.5
	3~4년	1	4.2
	5년 이상	1	4.2
휴업 이유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	8	33.3
	수익성이 나쁠 것으로 예상되어서	6	25.0
	농사에 흥미가 없어져서	0	0.0
	다른 직업을 찾아보려고	4	16.7
	결혼, 진학 등 신상의 변화로 인해	1	4.2
	고용원을 구할 수 없어 인력 부족으로	1	4.2
	토지를 구할 수 없어서	0	0.0
	농업 경영비를 조달할 수 없어서	2	8.3
	기후 변화로 작물 재배가 힘들어져서	2	8.3
휴업 시 생계비 조달 방법	임시 아르바이트	2	8.3
	가족 중 다른 사람의 소득	7	29.2
	과거 모아놓았던 돈	15	62.5
	재산소득(이자, 집세 등)	2	8.3
	은행이나 개인으로부터 빌린 돈	2	8.3
	기타	0	0.0
응답자 합계		24	100

주: 생계비 조달 방법은 중복응답 허용함.

자료: 설문조사 결과.

2.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 및 도입 시 쟁점

2.1. 비법인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가입 제한

-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근로자 고용보험 당연가입 사업체와 적용대상 제외 사업체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음.
 - 전체 응답 농가 중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대상 제외 농가의 비중은 75.5%이었고⁵⁶⁾, 농업 관련 비법인 사업체의 45.3%로 나타남. 해당 사업체는 현재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적용 대상이 아님.
 - 근로자 고용보험 당연가입 사업체 비율은 농가의 경우 24.5%, 농업 관련 비법인 사업체는 54.7%에 해당함. 농업법인과 농업 관련 사업체 중, 법인 사업체는 근로자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임.
- 농업부문의 법인을 제외한 사업체에서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된 비법인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체의 비율을 고려할 때, 현재의 법 기준으로는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가능 범위가 제한적임.
 -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적용 제외 대상의 비율은 농가의 경우 76.1%, 농업관련 비법인 사업체 중 45.3%에 해당함.

〈표 5-25〉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현황

단위: 명, %

구분	농가(비법인)		농업법인		농업 관련 사업체				
					법인		민간사업자(비법인)		
	명수	비율	명수	비율	명수	비율	명수	비율	
적용대상 제외	265	75.5		-	-		62	45.3	
당연가입 대상	고용보험 미가입	77	21.9	46	23.0	66	55.0	42	30.7
	고용보험 가입	9	2.6	154	77.0	54	45.0	33	24.0
응답 수	351	100.0	200	100.0	120	100.0	137	100	

주: 적용대상 제외는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농가이고, 현재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 수입.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⁵⁶⁾ 적용대상 제외 농가는 일용근로자를 많이 고용해서 적용대상 제외가 된 농가는 아님, 상시근로자 산출 방식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한 뒤,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인 농가를 의미함.

2.2. 근로자 고용보험의 수용성

-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대상 제외 사업체의 적용대상 확대를 검토하려면 해당 정책 당사자들의 수용성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함.
 - 사업체의 사업주와 근로자들의 근로자 고용보험에 대한 인지도나 필요성에 대한 인식, 향후 가입 의사와 가입을 저해하는 요인 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 더불어 근로자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 중, 근로자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사업체에 대해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이유와 향후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의사 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2.2.1. 인지도 및 필요성 인식

가. 적용 대상 제외 사업체

-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대상 제외 사업주의 근로자 고용보험에 대한 인지도는 농가의 경우 들어본 적이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농업관련사업체의 사업주도 들어본 적이 있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지만,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농가 경영주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적용 제외 대상인 농가 경영주와 농업 관련 비법인 사업체 사업주들은 근로자 고용보험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것으로 유추됨.
- 그러나 근로자의 경우, 적용 대상 제외 사업장 농가 취업자 근로자의 54.7%와 농업 관련 비법인 사업체 취업 근로자의 67.1%는 근로자 고용보험을 알고 있는 것으로 응답함.
 - 사업주보다는 근로자들의 인지도가 높게 나타나, 사업주와 근로자 간 인지도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음.

〈표 5-26〉 사업주의 근로자 고용보험 인지도(적용대상 제외)

사업주

단위: %, 명

구분	농가	농업관련 비법인 사업체
들어본 적 없음	17.3	48.4
들어본 적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함	70.1	51.6
잘 알고 있음	12.7	
응답 수	197	62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근로자

단위: %, 명

구분	농가 고용 근로자	농업 관련 사업체
들어본 적 있음	54.7	67.1
응답 수	53	64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 적용 대상 제외 사업체에 취업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자 고용보험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사업주는 농가와 농업 관련 사업체 모두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적용대상 제외 사업체의 농가 경영주는 근로자 고용보험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48.7%로 나타나고, 농업 관련 비법인 사업체의 사업주의 43.6%는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함.
 - 근로자 고용보험에 대한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 등으로 인한 노동비 상승의 우려로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반면에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 고용보험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 사업주와는 차이가 있었음.
 - 농가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경우, 근로자 고용보험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4.7%로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인 34.0%보다는 높게 나타남.
 - 농업 관련 비법인 사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들은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3.1%로 나타남.
-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대상 제외 사업체의 근로자 중, 근로자 고용보험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과반을 넘고 있어, 이를 고려할 때,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대상 제외에 대한 법률 검토

가 필요함. 즉, 실직 시 직접적으로 안전망을 제공받는 정책 대상자인 근로자들의 정책 수요를 고려할 때, 현재의 적용대상 제외는 검토할 필요가 있음.

〈표 5-27〉 근로자 고용보험 필요성 인식(적용대상 제외)

사업주

단위: %, 명

구분	농가(비법인)	농업 관련 비법인 사업체
필요함	17.8	35.5
보통	33.5	20.9
필요하지 않음	48.7	43.6
응답수	197	62

주: 적용 대상 제외에는 상시근로자 0~4인 경영체를 의미함.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근로자

단위: %, 명

구분	필요함	보통	불필요	응답수
농가 고용 근로자	54.7	11.3	34.0	53
농업 관련 비법인 사업체 고용 근로자	53.1	9.4	37.5	64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나. 근로자 고용보험 당연 가입 사업체 중 미가입 사업체

○ 근로자 고용보험 당연 가입 대상임에도 현재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많은 수의 사업주는 근로자 고용보험을 인지하고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남.

- 근로자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임에도 근로자 고용보험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은 농가 10.4%, 농업법인 10.9%, 농업관련 사업체 법인 22.7%, 비법인 35.7%로 나타남.
-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응답은 농가 68.8%, 농업법인 58.7%로 나타남.

○ 당연가입 대상 사업체 중, 미가입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근로자 고용보험을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 사업주(경영주)와는 차이가 있었음.

- 농가 취업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 고용보험을 들어본 적이 있는 비율은 50.7%, 농업관련 사업체 법인 취업 근로자는 70.0%, 비법인 취업 근로자는 87.5%로 나타남.
- 농업법인 취업 근로자의 경우, 당연 가입 대상임을 알고 있는 응답률은 근로자 고용보험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했음에도 모르는 경우가 92.9%로 나타남. 잘 알고 있다고 응답했지만, 근로자들도 고용보험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함.

○ 당연가입 대상이 되는 사업체의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근로자 고용보험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설명·전달하는 것이 필요함.

- 당연가입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있지 않은 사업체 일부는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해당 내용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함.

〈표 5-28〉 사업주의 근로자 고용보험 인지도(미가입)

사업주

단위: %, 명

구분	농가	농업법인	농업관련 사업체	
			법인	비법인
들어본 적 없음	10.4	10.9	22.7	35.7
들어본 적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함	68.8	58.7	77.3	64.3
잘 알고 있음	20.8	30.4		
응답 수	77	46	66	42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근로자

단위: %, 명

구분	농가 취업 근로자	농업관련 사업체	
		법인	비법인
들어본 적 있음	50.7	70.0	87.5
응답 수	73	30	24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단위: %, 명

농업법인 근로자	근로자 고용보험에 대해 잘 알고 있음			근로자 고용보험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함		
	당연적용 사업장으로 알고 있음	당연적용 사업장 인지 잘 모름	응답 수	당연적용 사업장으로 알고 있음	당연적용 사업장 인지 잘 모름	응답 수
고용보험 당연적용 인지 여부	7.1	92.9	14	3.7	96.3	27

주: '당연적용 사업장인지 잘 모름'이라는 응답에는 해당 사업체가 근로자 고용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이 아닌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포함함.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 근로자 고용보험에 대한 설명을 한 후, 근로자 고용보험이 농업부문의 근로자에게도 필요한지 조사한 결과, 법인 사업주들은 비법인 사업주에 비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음.

○ 근로자의 경우에도 법인 근로자가 비법인인 농가 또는 농업관련 민간사업자에게 고용된 근

로자에 비해 근로자 고용보험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사업주에 비해 근로자들의 근로자 고용보험 필요성 인식이 높게 나타남.

- 실질적 대상자인 근로자들의 필요성 인식이 사업주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가입 필요성은 농업법인, 농업 관련 사업체 법인, 농업 관련 사업체 비법인, 농가 순서로 나타남. 또한, 상용근로자들의 필요성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5-29〉 근로자 고용보험 필요성 인식(미가입)

사업주

단위: %, 명

구분	농가(비법인)	농업법인	농업 관련 사업체	
			법인	비법인
필요함	18.2	45.7	48.4	25.7
보통	32.5	41.3	46.8	28.6
필요하지 않음	49.4	13.0	4.8	45.7
응답수	77	46	62	35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근로자

단위: %, 명

구분	필요함	보통	불필요	응답수	
농가 고용 근로자	32.9	30.1	37.0	73	
농업법인	일용근로자	53.6	32.1	14.3	28
	임시근로자	33.3	66.7	0.0	6
	상용근로자	92.3	7.7	0.0	26
농업관련 사업체 법인	일용근로자	43.8	12.5	43.7	16
	임시근로자	75.0	25.0	0.0	4
	상용근로자	85.7	4.8	9.5	21
	전체	68.3	9.8	21.9	41
농업관련 사업체 비법인	일용근로자	53.3	26.7	20.0	15
	임시근로자	0	100	0	2
	상용근로자	77.8	11.1	11.1	9
	전체	57.7	26.9	15.4	26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2.2.2. 가입 의향과 미가입 이유

가. 적용대상 제외 사업체

- 근로자 고용보험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제시한 후, 적용대상 제외 사업주에게 가입 의향을 조사한 결과 농가는 25.4%, 농업 관련 사업체는 35.5%로 나타남.
- 만약에 보험료를 최대 80% 보조할 경우 추가 가입률은 농가의 경우 18.8%, 농업 관련 사업체는 25.0%로 나타남.
 - 전체 가입 의향 비율은 농가의 경우 44.2%, 농업관련 사업체는 51.6%로 나타남. 약 절반 정도의 경영주가 가입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근로자들의 경우, 고용보험이 적용되길 희망하는 비율은 농가 취업 근로자의 54.7%, 농업 관련 사업체 근로자의 44.2%가 희망하였음.
 - 농가 고용 근로자의 경우, 경영주와 비교할 때, 근로자 고용보험이 적용되길 희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실질적인 정책 대상자인 근로자들의 해당 제도에 대한 수요 및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희망 정도와 경영주의 가입 의향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적용 대상 제외로 두고 있는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함. 가입 제한을 완화하여 근로자 고용보험을 희망하는 근로자들에게 사회적 안전망 제공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변경할 경우에는 임의가입 또는 당연가입 방식에 대한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함.

〈표 5-30〉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의향(적용대상 제외)

사업주

단위: %, 명

구분	농가	농업 관련 사업체
①가입 의향	25.4	35.5
② 보험료 최대 80% 보조 시 가입 의향	18.8	25.0
① + ②	44.2	51.6
응답 수	197	62

주: 적용 대상 제외에는 상시 근로자 0~4인 경영체를 의미함.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근로자

단위: %, 명

구분	농가	농업 관련 사업체
고용보험 적용 희망	54.7	44.2
응답 수	53	52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 추가적으로 보험료 보조에도 가입 의향이 없는 이유는 농가 경영주 및 농업 관련 사업체 사업주 모두 가입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가입을 희망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필요성과 인지도를 높여 나가는 방안이 필요함.

○ 근로자의 경우에는 농가 및 농업 관련 사업체 모두에서 본인이 지불해야 하는 보험료를 내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5-31〉 보험료 보조에도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의향 없는 이유(적용 제외 사업주)

단위: %, 명

구분	농가	농업 관련 사업체
근로자 대상 고용보험에 대해 잘 알지 못함	16.5	6.6
고용보험료가 부담됨	10.6	6.7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세금이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추가적으로 내라고 할 것 같아서	22.4	6.7
가입 필요성을 느끼지 않음	35.3	53.3
보험료 대비 보험 혜택이 좋지 않아서	1.2	0.0
일시적으로 일하는 근로자이기에 보험 대상 파악이 쉽지 않음	12.9	10.0
주로 일하는 근로자가 65세 이상 고령자임		10.0
직접 고용하는 근로자수 적음	1.2	6.7
합계	87	30

주: 적용 대상 제외에는 상시 근로자 0~4인 경영체를 의미함.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적용 희망하지 않는 이유(적용 제외 근로자)

단위: %, 명

구분	농가근로자	농업관련 사업체 근로자
희망해도 경영주(사업주)가 원하지 않을 것 같음	7.8	6.9
본인 부담 보험료를 내는 것이 부담스러움	50.0	55.2
보험료 대비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이 좋지 않음	8.3	10.3
소득세 등 고용보험료 이외에 추가적 비용이 발생할 것 같아서	16.7	10.3
기타	8.3	17.2
합계	24	58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나. 근로자 고용보험 당연가입 사업체 중 미가입 사업체

-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은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의 보험 관계 성립신고를 해야 함. 당연가입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현재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로는 다음과 같음.
 - 농가는 일시적으로 일하는 근로자이기에 보험 대상 파악이 쉽지 않음과 가입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고용보험료가 부담된다는 응답이 가장 크게 나타남.
 - 농업관련 사업체는 가입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과 고용보험 가입 시 세금이나 타 사회보험료 추가 납부 우려가 미가입 이유로 높게 나타남.
 - 농업법인은 고용보험료가 부담된다는 응답과 일시적으로 일하는 근로자이기에 보험 대상 파악이 쉽지 않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당연가입 사업장임에도 근로자 고용보험료 부담을 인건비 부담으로 인식하거나, 세금 등의 추가 납부 우려 등으로 이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음을 의미함.

〈표 5-32〉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가입하지 않은 이유(사업주)

단위: %, 명

구분	농가	농업법인	농업 관련 사업체		
			법인	비법인	전체
근로자 대상 고용보험에 대해 잘 알지 못함	7.8	4.3	18.2	9.5	14.8
고용보험료가 부담됨	22.1	41.3	16.7	14.3	15.7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세금이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추가적으로 내라고 할 것 같아서	9.1	10.9	24.2	16.7	21.3
가입 필요성을 느끼지 않음	23.4	13.1	19.7	35.7	25.9
보험료 대비 보험 혜택이 좋지 않아서	2.6	0.0	3.0	0.0	1.9
일시적으로 일하는 근로자이기에 보험 대상 파악이 쉽지 않음	31.2	28.3	15.2	16.7	15.7
주로 일하는 근로자가 65세 이상 고령자임	2.6	0.0	1.5	2.4	1.9
직접 고용하는 근로자 수가 적음	0.0	0.0	1.5	4.8	2.8
기타	1.3	2.1			
응답 수	77	46	66	42	108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 당연가입 대상임에도 향후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의향은 보험료 지원이 없는 경우, 농가는 3.9%, 농업법인은 28.3%, 농업관련 법인 사업체는 60.6%, 농업 관련 비법인 사업체는 11.9%로 나타남.
- 그러나 보험료를 최대 80% 보조할 경우, 추가 가입 의향은 농가의 경우, 23.4%, 농업법인은 23.9%, 농업 관련 법인 사업체는 12.7%, 농업 관련 비법인 사업체는 11.9%로 나타남.

- 보험료 지원이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률을 확대하는데 주요하게 작용할 것을 의미함. 현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에 근로자 월평균 보수가 230만 원 미만인 신규 가입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월 보험료 80%를 지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농업 관련 사업체에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음.

○ 당연 가입 대상임에도 근로자 고용보험이 미가입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 고용보험이 적용되길 희망하는 비율은 사업주의 가입 의향보다 높게 나타남.

- 당연가입 대상임에도 미가입 된 농가 취업 근로자의 30.1%는 근로자 고용보험이 적용되길 희망함. 농업법인의 경우, 전체 미가입 근로자의 65.4%, 농업 관련 법인 사업체의 경우는 미가입 근로자의 70.2%, 농업 관련 비법인 사업체의 미가입 근로자의 78.5%가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함.

〈표 5-33〉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의향(미가입)

사업주

단위: %, 명

구분	농가	농업법인	농업 관련 사업체	
			법인	비법인
① 가입 의향	3.9	28.3	60.6	11.9
② 보험료 최대 80% 보조 시 가입 의향	23.4	23.9	12.7	11.9
① + ②	27.3	52.2	73.3	23.8
응답 수	77	46	66	42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근로자

단위: %, 명

구분	농가	미가입 농업법인			미가입 농업관련사업체							
		일용	임시	상용	미가입 법인				미가입 비법인			
					일용	임시	상용	전체	일용	임시	상용	전체
적용 희망	30.1	32.1	83.3	80.8	50.0	75.0	85.7	70.2	46.7	100	88.9	78.5
응답 수	51	28	6	26	16	4	21	41	15	2	9	26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 보험료 보조에도 가입 의향이 없는 미가입 사업주의 이유는 다음과 같음.

- 농가 경영주의 경우, 일시적으로 일하는 근로자여서 보험 대상 파악이 쉽지 않다는 응답과, 농업법인 사업주의 경우도 고용보험료 부담과 일시적으로 일하는 근로자여서 보험 대상 파악이 쉽지 않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그러나 앞서 언급되었듯이, 2004년부터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도 원칙적으로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므로, 일시적으로 일하는 근로자여서 보험 대상 파악이 쉽지 않다는 것은 해당 사업주가 고용보험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농업 관련 사업체 법인 사업주의 경우는 고용보험 가입 시 세금이나 타 사회보험료 등의 추가 납부 우려 이유가 가장 높았음.

○ 근로자의 경우 가입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음.

- 농가 취업 근로자의 경우는 본인 부담 보험료를 내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우세하였음.
- 농업 법인 취업 근로자의 경우, 보험료 대비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이 좋지 않다는 의견이, 농업 관련 사업체 취업 근로자의 경우, 희망해도 경영주(사업주)가 원하지 않을 것 같음과 본인 부담 보험료를 내는 것이 부담스러워 가입을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표 5-34〉 보험료 보조에도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의향 없는 이유(미가입 사업주)

단위: %, 명

구분	농가	농업법인	농업 관련 사업체	
			법인	비법인
근로자 대상 고용보험에 대해 잘 알지 못함	6.1	17.4	0.0	3.1
고용보험료가 부담됨	17.1	30.4	9.1	15.6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세금이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추가적으로 내라고 할 것 같아서	14.6		50.0	31.3
가입 필요성을 느끼지 않음	28.1	13.0	13.6	18.8
보험료 대비 보험 혜택이 좋지 않아서			0.0	9.4
일시적으로 일하는 근로자이기에 보험 대상 파악이 쉽지 않음	32.9	30.4	22.7	18.8
주로 일하는 근로자가 65세 이상 고령자임	1.2		4.6	0.0
기타(근로자 고용하지 않을 예정, 직접 고용 근로자 수 적음)		8.7	0.0	3.1
합계	77	23	22	32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표 5-35〉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미희망 이유(미가입 근로자)

단위: %, 명

구분	농가	농업법인			농업 관련 사업체							
		일용	임시	상용	미가입 법인				미가입 비법인			
					일용	임시	상용	전체	일용	임시	상용	전체
희망해도 경영주(사업주)가 원하지 않을 것 같음	21.6	10.5	0.0	0.0	50.0	0.0	33.3	41.7	12.5	-	0	11.1
본인 부담 보험료를 내는 것이 부담스러움	54.9	42.1	0.0	20.0	12.5	100	66.7	33.3	37.5	-	100	44.4

(계속)

구분	농가	농업법인			농업 관련 사업체							
		일용	임시	상용	미가입 법인				미가입 비법인			
					일용	임시	상용	전체	일용	임시	상용	전체
보험료 대비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이 좋지 않음	13.7	47.4	0.0	60.0	37.5	0.0	0.0	25.0	37.5	-	0	33.3
소득세 등 고용보험료 이외에 추가적 비용이 발생할 것 같아서	9.8	0.0	100	20.0	0	0	0	0	12.5	-	0	11.1
합계	51	19	1	5	8	1	3	12	8	-	1	9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다.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사업체

○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의향은 보험료 지원이 없는 경우, 농가의 경우 64.2%, 농업관련 사업체 법인은 98.2%, 비법인은 100%로 나타나,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의향 비율은 매우 높게 나타남.

-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법인, 법인일수록 앞으로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함.

○ 근로자의 경우, 앞으로도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비율은 농가 취업 근로자의 경우 90.9%, 농업법인 취업 근로자의 경우 88.7~100%, 농업 관련 사업체 취업 근로자의 경우 법인은 71.4~79.2%, 비법인은 93.6~100%로 나타남.

〈표 5-36〉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의향(가입자)

사업주

단위: %, 명

구분	농가	농업 관련 사업체	
		법인	비법인
① 가입 의향	64.2	98.2	100
② 보험료 최대 80% 보조 시 가입 의향	22.2	1.8	
① + ②	64.4	100	100
응답 수	9	54	33

주: 가입 불가 대상에는 상시 근로자 0~4인 경영체 및 사업체와 근로자 50인 이상 경영체 및 사업체가 포함됨.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계속)

근로자

단위: %, 명

구분	농가	농업법인			농업관련 사업체							
		일용	임시	상용	법인				비법인			
					일용	임시	상용	전체	일용	임시	상용	전체
적용 희망	90.9	100	100	88.7	-	71.4	80.4	79.2	100.0	100.0	93.6	94.3
응답 수	11	4	12	124	-	7	46	53	3	3	47	53

주: 가입 불가 대상에는 상시 근로자 0~4인 경영체 및 사업체와 근로자 50인 이상 경영체 및 사업체가 포함됨.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 참고로, 보험료 보조에도 가입 의향이 없는 이유는 농가경영주의 경우, 고용보험료 부담, 고용보험 가입 시, 세금이나 타 사회보험 납부 우려와 가입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 각각 1명씩 나타남. 농업 관련 사업체의 경우 고용보험료 부담으로 향후 가입 의향이 없는 사업주가 1명임.

○ 근로자의 경우, 농가 취업 근로자의 경우는 소득세 등 추가적 비용 우려가 1명으로 나타나고, 농업법인 취업 상용근로자의 경우, 희망해도 사업주가 원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이유가 농업 관련 사업체는 본인이 지불해야 하는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는 의견이었음.

〈표 5-37〉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미희망 이유(근로자 가입자)

단위: %, 명

구분	농가	농업법인			농업 관련 사업체							
		일용	임시	상용	미가입 법인				미가입 비법인			
					일용	임시	상용	전체	일용	임시	상용	전체
희망해도 경영주(사업주)가 원하지 않을 것 같음	0.0	-	-	35.7	-	50.0	11.1	18.1	-	-	33.3	33.3
본인 부담 보험료를 내는 것이 부담스러움	0.0	-	-	28.6	-	50.0	66.7	63.6	-	-	66.7	66.7
보험료 대비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이 좋지 않음	0.0	-	-	21.4	-	-	22.2	18.1	-	-	-	-
소득세 등 고용보험료 이외에 추가적 비용이 발생할 것 같아서	100	-	-	14.3	-	-	-	-	-	-	-	-
합계	1	-	-	14	-	2	9	11	-	-	3	3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2.2.3. 근로자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정책 지원 수요

○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미가입 농가, 미가입 농업법인, 미가입 농업 관련 사업체 경영주는 모두 보험료 일부 지원과 보험 가입과 관련된 근로자 노무관리에 대한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특히, 농가 경영주와 농업 관련 사업체 법인 경영주의 보험료 지원 정책 수요가 높게 나타남.

○ 보험료 일부 지원 이외에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주들은 고용보험 신청 대행 지원 정책 수요가 높게 나타남.

〈표 5-38〉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정책 수요(미가입)

단위: %, 명

구분	농가	농업법인	농업 관련 사업체		
			법인	비법인	전체
보험료 일부 지원	54.5	37.0	48.5	21.4	38.0
고용보험 신청 대행 지원	26.0	18.5	33.3	21.4	28.7
신청절차 간소화	0.0	22.8	0.0	0.0	0.0
보험 가입과 관련된 근로자 노무관리 사전 교육	10.4	3.3	9.1	40.5	21.3
고용보험에 대한 홍보	1.3		3.0	2.4	2.8
고용보험 가입 혜택 확대	6.5	14.1	3.0	9.5	5.6
고용보험 대상이 되는 근로자 범주 명확화	0.0	4.3	0.0	0.0	0.0
기타	1.3	0.0	3.0	4.8	3.7
응답 수	77	92	66	42	108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 현재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대상 제외 사업체의 사업주(경영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농가와 농업 관련 사업체 사업주(경영주) 모두 보험료 일부 지원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음.

- 근로자 고용보험료에 따른 비용 부담이 경영주에게는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을 저해하는 요인이 됨을 알 수 있음.

〈표 5-39〉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정책 수요(적용 제외)

단위: %, 명

구분	농가	농업 관련 사업체
보험료 일부 지원	47.7	56.6
고용보험 신청 대행 지원	11.7	3.3

(계속)

구분	농가	농업 관련 사업체
보험 가입과 관련된 근로자 노무관리 사전 교육	12.2	16.7
고용보험에 대한 홍보	9.1	5.0
고용보험 가입 혜택 확대	19.3	13.3
기타	0.0	5.0
응답 수	197	60

주: 적용대상 제외 사업체는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체를 의미함.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 현재 근로자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사업주(경영주)는 향후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농가 경영주는 고용보험 가입 혜택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농업법인과 농업 관련 사업체의 경우 보험료 일부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음.
- 추가적으로 농가는 보험료 일부 지원 이외에 고용보험에 대한 홍보, 농업법인과 농업 관련 사업체는 고용보험 신청 대행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음.

〈표 5-40〉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정책 수요(가입자)

단위: %, 명

구분	농가	농업법인	농업 관련 사업체
보험료 일부 지원	28.6	36.7	53.7
고용보험 신청 대행 지원	7.1	21.8	25.9
보험 가입과 관련된 근로자 노무관리 사전 교육		21.1	16.7
고용보험에 대한 홍보	21.4	12.0	1.9
고용보험 가입 혜택 확대	42.9	6.5	1.9
기타		1.9	
응답 수	9	154	87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 대부분의 농업부문의 사업주(경영주)들은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서는 보험료 일부 지원을 원하였음. 이러한 결과는 앞서 가입 의향에서 보험료 일부 지원 시,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률이 상승하는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라 할 수 있음.

2.3.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기반

2.3.1. 사업자 등록

○ 근로자 고용보험도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마찬가지로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보험관계 성립 신고서를 작성 및 접수할 수 있음.

○ 비법인 사업자 등록율은 농가는 전체 22.2%, 농업관련 사업체 민간사업자는 44.6%로 나타남.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농가 및 농업관련 민간 사업자는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해도 현재로서는 가입이 불가능함.

〈표 5-41〉 비법인 사업자 등록률

단위: %, 명

구분	농가		농업 관련 사업체 민간사업자		
	비율	응답 수	비율	응답 수	
적용대상 제외	21.5	265	38.7	62	
임의가입 대상	고용보험 미가입	16.9	77	42.8	42
	고용보험 가입	100.0	9	100.0	33
합계	22.2	351	44.6	168	

주 1) 적용 대상 제외에는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경영체와 근로자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업체임.

2) 〈표 5-41〉은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대상별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로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대상별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와 다름. 즉, 〈표 5-41〉에서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적용대상 제외 농가가 265농가, 근로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 농가 중 미가입 농가가 77농가, 고용보험 가입 농가가 9 농가라는 것을 의미함.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 가입 대상 농가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농가는 3농가였음.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가입했다고 해서 근로자 고용보험을 모두 가입하거나 반대로 근로자 고용보험을 가입했다고 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아님.

3) 참고로 근로자 고용보험을 가입한 농가는 모두 양돈 농가임. 양돈 농가의 경우, 개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매출/매입을 잡고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데 사업자등록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알고 있거나, 4대 보험을 해줘야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고 응답함(2022년 3월 25일 전화통화 결과).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2.3.2. 고용계약 확인 서류

○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려면 고용 여부 확인, 고용기간, 급여(일당 또는 월급) 지급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갖춰져야 함.

가. 농가

① 당연가입 사업장 중 미가입 농가

○ 가장 기초적인 고용계약서 작성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남.

-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 농가 중 고용계약서 작성 비율은 일용근로자 1.5%, 임시 및 상용근로자 16.7%로서 매우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
- 근로자 응답에서도 일용근로자는 고용계약서 작성 비율이 0%였으며 임시 및 상용근로자의 경우에도 12.5%로 매우 낮음.

〈표 5-42〉 고용계약서 작성 비율(미가입 농가)

단위: 호, 명, %

구분		응답 수	고용계약서 작성 비율
경영주	일용근로자	67	1.5
	임시 및 상용근로자	24	16.7
근로자	일용근로자	57	0.0
	임시 및 상용근로자	16	12.5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면서 미가입인 농가의 임금 대장 작성 및 제공 비율은 높지 않음.

- 근로자 명부와 임금대장을 모두 작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영주는 55.8%이며 임금대장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도 94.8%임.
- 근로자 중에서도 일용근로자는 임금대장 또는 내역서를 받은 사례가 없었고 임시 및 상용근로자도 수령한 응답자가 1명에 불과하였음.

〈표 5-43〉 근로자 명부 및 임금대장 작성/제공(미가입 농가)

단위: 호, %

구분		응답 수	비율	
근로자명부 및 임금대장 작성 여부 (경영주)	근로자 명부만 작성	4	5.2	
	임금대장만 작성	1	1.3	
	근로자명부와 임금대장 통합 작성	29	37.7	
	모두 작성하지 않음	43	55.8	
임금대장 제공(경영주)	제공	4	5.2	
	미제공	73	94.8	
합계		77	100.0	
임금대장 수령(근로자)	일용근로자	수령	0	0
		미수령	57	100.0
	임시 및 상용근로자	수령	1	6.3
		미수령	15	93.8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② 적용 대상 제외 농가

○ 미가입 농가와 마찬가지로 고용보험 적용대상 제외 사업장의 고용 및 임금 관련 서류 작성은 미비함. 따라서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이 허용되더라도, 실제적으로 적용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됨.

○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적용이 제외된 농가의 경우 고용계약서 작성 비율은 매우 낮으나 임시 및 상용근로자의 경우 일부는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음.

- 일용근로자와 고용계약서를 작성한다고 응답한 농가는 0.8%에 불과하였으며 고용계약서를 작성한다고 응답한 근로자는 0명이었음.
- 임시 및 상용근로자와 고용계약을 맺는 농가 경영주는 95명 중 33.7%였으며 응답한 임시 및 상용근로자 중 25.0%가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였음.

〈표 5-44〉 고용계약서 작성 비율(적용대상 제외 농가)

단위: 호, %

응답자		표본수	고용계약서 작성 비율
경영주	일용근로자	124	0.8
	임시 및 상용근로자	95	33.7
근로자	일용근로자	41	0.0
	임시 및 상용근로자	12	25.0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 임금 지급의 근거 서류인 근로자 명부와 임금대장 작성 및 제공비율은 낮음.

- 근로자 명부와 임금대장 모두 작성하지 않는다는 경영주는 전체 182명 중 59.3%로 절반을 넘고, 임금 대장 제공 비율도 19.2%에 불과함.
- 임금 명세서를 수령하였다는 근로자의 비율도 각각 7.0%, 12.5%에 불과하였음.

〈표 5-45〉 근로자 명부 및 임금대장 작성/제공(적용대상 제외 농가)

단위: 호, %

구분		응답 수	비율
근로자명부 및 임금대장 작성 여부 (경영주)	근로자 명부만 작성	9	4.9
	임금대장만 작성	31	17.0
	근로자명부와 임금대장 통합 작성	34	18.7
	모두 작성하지 않음	108	59.3
임금대장 제공(경영주)	제공	35	19.2
	미제공	147	80.8

(계속)

구분		응답 수	비율
합계		182	100.0
임금내역서 수령(근로자)	일용근로자	수령	4 7.0
		미수령	37 64.9
	임시 및 상용근로자	수령	2 12.5
		미수령	10 62.5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나. 농업법인

① 당연가입 사업장 중, 미가입 사업자

○ 고용보험 미가입 농업법인에서 사업주와 근로자 간 고용계약서 작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농업법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고용계약서를 작성한 사업체는 없었고, 임시 및 상용근로자는 고용보험 미가입 농업법인의 43.6%가 고용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남.

○ 농업법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상용근로자의 고용계약서 작성률은 73.1%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임시근로자 50.0%, 일용근로자 21.4% 순임.

- 농가와 농업 관련 사업체와 비교할 때 일용근로자의 고용계약서 작성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5-46〉 농업법인: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종사상 지위별 고용계약서 작성 여부

단위: %, 명

구분	농업법인 사업주 설문조사		농업법인 근로자 설문조사		
	일용근로자	임시 및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상용근로자
작성률	0.0	43.6	21.4	50.0	73.1
응답 수	25	39	28	6	26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 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로 고용보험 미가입 농업법인 사업주의 근로자 명부 및 임금대장 작성 여부와 고용보험 미가입 농업법인 근로자의 임금대장 수령 여부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고용보험 미가입 농업법인의 근로자 명부 작성률은 상용근로자 88.9%, 임시근로자 75.0%, 일용근로자 44.0%로 조사됨.

- 고용보험 미가입 농업법인의 임금대장 사업주 작성률과 근로자 수령률을 비교해 보면 각

각 일용근로자 52.0%/3.6%(사업주 작성/근로자 수령), 임시근로자 69.4%/33.3%, 상용근로자 72.2%/19.2%로 나타남.

- 고용보험 미가입 농업법인에서 고용주 보관용으로 임금 대장을 작성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에, 고용보험 미가입 농업법인에 고용된 임금근로자가 임금을 받을 때 임금대장이나 임금내역서를 함께 수령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됨.

〈표 5-47〉 농업법인: 고용법인 미가입 사업장의 종사상 지위별 근로자 명부 작성, 임금대장 작성/수령 비율
단위: %, 명

구분	농업법인 사업주 설문조사			농업법인 근로자 설문조사		
	일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상용근로자
근로자 명부 작성률	44.0	75.0	88.9	-	-	-
임금대장 작성/수령률	52.0	69.4	72.2	3.6	33.3	19.2
응답 수	25	36	18	28	6	26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다. 농업 관련 사업체

① 당연가입 사업체 중, 미가입 사업체

- 고용보험 적용 대상 사업체 중 미가입 사업체의 고용계약서 작성 비율은 법인은 21.1%, 비법인은 21.4%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고용계약서 작성 비율은 낮게 나타남.
- 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로는 일용근로자만 고용하는 법인·비법인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일용·임시·상용근로자를 고용하는 법인에서의 작성 비율이 높게 나타남.
 -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체 중, 일용근로자만 고용하는 미가입 법인의 고용계약서 작성은 6.6%, 비법인은 0%로 나타남.
 - 임시 및 상용근로자를 고용하는 미가입 법인의 고용계약서 작성 비율은 20.5%, 비법인은 37.5%로 나타남.
 - 일용+임시, 일용+상용, 일용+임시, 상용근로자를 고용하는 법인의 고용계약서 작성 비율은 41.6%, 비법인은 46.1%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5-48〉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체 고용계약서 작성 여부

단위: 호, %

고용 형태	미가입 사업장 사업주					
	법인			비법인		
	일용	임시, 상용	일용, 임시, 상용	일용	임시, 상용	일용, 임시, 상용
작성함	6.6	20.5	41.6	0	37.5	46.1
응답 수	15	39	12	21	8	13

주: 복수응답을 허용함.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 고용계약서와 함께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자 명부 및 임금대장의 작성과 관련하여, 미가입 사업체의 해당 서류 작성 비율은 법인의 경우 각각 71.5%, 79.0%로 높게 나타나지만, 비법인은 각각 22.0%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낮음.

- 비법인의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체의 경우, 법인보다 근로자의 고용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기반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음.

○ 근로자 종사상 지위로 구분하면, 미가입 사업체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관계 및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작성 비율이 임시 및 상용근로자에 비해 낮게 나타남.

-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는 미가입 법인 사업체는 37.0%, 미가입 비법인 사업체는 0%로 나타남. 임금대장 작성 비율은 미가입 법인에서는 51.9%, 미가입 비법인에서는 0%로 나타남.

- 임시근로자에 대한 근로자 명부 작성 비율은 미가입 법인에서는 89.5%, 미가입 비법인에서는 37.5%로 나타남. 임금대장 작성 비율은 각각 91.7%, 37.5%로 나타남.

- 상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자 작성 명부는 법인에서는 83.3%, 비법인에서는 58.8%로 나타남. 임금대장 작성 비율은 각각 100%, 58.8%로 나타남.

○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 중 미가입 사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법인에서, 임시 및 상용근로자를 고용할수록 근로자명부 및 임금대장 작성 비율이 높음.

〈표 5-49〉 농업관련 사업체 미가입 사업체의 종사상 지위별 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작성 여부

단위: %, 명

구분	미가입 법인				미가입 비법인			
	일용	임시	상용	전체	일용	임시	상용	전체
근로자명부 작성함	37.0	89.5	83.3	71.5	0.0	37.5	58.8	22.0

(계속)

구분	미가입 법인				미가입 비법인			
	일용	임시	상용	전체	일용	임시	상용	전체
임금대장 작성함	51.9	91.7	100	79.0	0.0	37.5	58.8	22.0
응답 수	27	48	6	81	34	8	17	59

주: 복수응답을 허용함.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 작성한 임금대장 또는 임금내역서를 근로자에게 제공(또는 수령)하는 비율은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는 낮았고, 임시 및 상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는 해당 비율이 높게 나타남. 비법인보다 법인에서 임금대장을 제공하는 비율이 높음.

〈표 5-50〉 농업관련 사업체 미가입 사업체의 임금대장 제공 및 수령 여부

단위: %, 명

구분	미가입 사업장						미가입 사업장 근로자 응답					
	법인			비법인			법인			비법인		
	일용	임시, 상용	일용, 임시, 상용	일용	임시, 상용	일용, 임시, 상용	일용	임시	상용	일용	임시	상용
제공(수령)	6.7	35.9	66.7	9.5	50.0	46.1	37.5	75.0	76.2	26.7	100	33.3
응답 수	15	39	12	21	8	13	16	4	21	15	2	9

자료: 설문조사 결과.

② 적용대상 제외 사업체

○ 고용보험 적용대상 제외 농업 관련 사업체에서의 고용계약서 작성 비율은 일용근로자에서 낮고, 임시 및 상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체에서는 높게 나타남.

- 일용근로자만 고용하는 사업체에서의 고용계약서 작성 비율은 3.5%, 임시 및 상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체의 72.0%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서를 작성함. 일용, 임시 및 상용근로자를 모두 고용하는 사업체의 44.4%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서를 작성함.

〈표 5-51〉 고용보험 적용 대상 제외 사업체 고용계약서 작성 여부

단위: %, 명

구분	일용	임시, 상용	일용, 임시, 상용
작성함	3.5	72.0	44.4
응답 수	28	25	18

주: 복수응답을 허용함.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 근로자명부와 임금대장 작성의 경우,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남.

-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는 사업체 비율은 5.4%, 임금대장을 작성하는 사업체 비율은 8.1%로 나타남.
- 임시근로자에 대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는 사업체 비율은 14.8%, 임금대장을 작성하는 사업체 비율은 18.5%임.
- 상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는 비율은 11.1%, 임금대장을 작성하는 비율은 16.6%로 나타남.
- 일용근로자의 경우, 고용계약서 작성 비율과 함께 고려할 때, 근로자의 고용관계 및 확인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표 5-52〉 농업관련 사업체 적용 대상 제외 사업장의 종사상 지위별 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작성 여부

단위: %, 명

구분	일용	임시	상용
근로자명부 작성함	5.4	14.8	11.1
임금대장 작성함	8.1	18.5	16.6
응답 수	37	27	18

주: 복수응답을 허용함.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2.3.3. 고용계약 확인과 보험 가입 사업주 식별 문제

○ 「고용보험법」 적용을 받는 사업주를 분별하는 데 있어 고용관계 파악이 기초가 되어야 함. 특히 농가의 경우, 지인의 소개 및 지역 내 농작업팀, 인력회사 등을 통해 근로자를 알선·소개·파견 받거나, 농작업 업무 위탁·도급 형태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있어, 이의 관계 파악이 중요함.

○ 사전 업무, 임금 협의 방법 및 업무 지휘관계, 임금 지급 관계를 통해 현재 농가에서 고용되는 근로자의 고용관계를 파악하면 다음과 같음.

- 농가에서 일하는 일용근로자의 11.4%, 임시 및 상용근로자의 2.0%의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도급 형태의 고용관계를 맺음. 도급 형태는 사전 고용 조건 협의 및 업무 지휘, 임금 지급을 모두 해당 업체 또는 사업주에게 받는 형태임. 이의 경우의 원수급인인 도급업체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적용을 받는 사업주임.

- 농가에서 일하는 일용근로자의 7.4%, 임시 및 상용근로자의 17.6%의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불법)파견 고용 형태의 고용관계를 맺음. 파견 고용은 사전 고용 조건 협의는 해당 사업주와 업무 지휘는 농가에게, 임금 지급은 해당 사업주에게 지급 받는 형태임. 해당 경우에 있어서는 파견사업자가 고용보험법 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됨.
- 농가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일용근로자의 56.4%, 임시 및 상용근로자의 68.6%의 근로자는 농가와 직접 고용관계가 성립하여, 농가 경영주가 고용보험법 가입 주체가 됨. 농가와 의 직접 고용 관계는 사전 고용 조건 협의 및 업무 지휘, 임금 지급 관계가 모두 농가와 근로자 간 성립하는 경우임.
- 엄밀한 의미에서 도급, (불법)파견, 직접 고용을 벗어난 모호한 고용관계도 존재하는데 일용근로자의 24.8%, 임시 및 상용근로자의 17.6%의 근로자가 이에 해당함. 이의 경우는 각 항목이 서로 섞여 있어 어느 한 고용관계로 명시할 수 없는 관계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유지되어 왔던 방식이기 때문임.

○ 농가에서 고용되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해당 농가와 직접 고용관계를 맺고, 고용보험법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농가임을 알 수 있음. 그러나, 이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엄밀한 의미에서의 고용관계를 파악하고 고용보험법 적용을 받는 사업주를 분별할 수 있도록 관련 노무 관련 교육 등을 통해 상세한 정보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표 5-53〉 농가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고용 관계(근로자 설문)

단위: 호, %

구분	일용		임시 및 상용	
	응답 수	비율	응답 수	비율
농가의 직접 고용 관계	84	56.4	35	68.6
도급 형태로 고용	17	11.4	1	2.0
(불법)파견 형태로 고용	11	7.4	6	11.8
모호한 고용관계	37	24.8	9	17.6
합계	149	100.0	51	100.0

자료: 설문조사 결과.

○ 더불어 원수급인과 하도급인 간의 보험인수계약이 성립될 경우, 고용보험법 적용을 받는 대상은 하도급인이 됨. 단, 이때 허용된 산업에서만 이의 관계가 성립됨. 농업 부문에서도 고용관계에 있어 일부 도급 관계가 성립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논의가 필요함.

○ 즉, 현재 농업 관련 적용 대상 사업체 중,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체에서 하도급·위탁을 하는 비율이 전체 10.2%를 차지하고 있고, 농가에서 일하는 일용근로자의 11.4%, 임시 및 상용근로자의 2.0%가 도급 형태의 고용관계라는 것을 고려할 때, 도급사업의 일괄 적용에서 농업 부문의 허용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음.

〈표 5-54〉 농업관련 사업체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유형별 하도급, 위탁 비율

단위: %, 명

구분	발때기(포전매매)	계약재배	농작업위탁, 도급	파견계약	기타
하도급, 위탁함	10.5	7.5	27.7	0	0
응답자	19	53	18	3	2
구분	발때기+계약재배	발때기+농작업 위탁, 도급	발때기+파견계약	계약재배+농작업 위탁, 도급	농작업 위탁, 도급+ 파견계약
하도급, 위탁함	0	12.5	0	0	0
응답자	8	4	0	4	1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2.3.4. 사업주의 고용 관련 교육 경험

○ 근로자 고용보험을 가입하려면 기초적인 고용 관련 서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고용관계 파악을 해야 함. 그러나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고용계약서 등 고용 관련 서류 작성을 위한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농업경영주는 매우 드물었으며(7.5%, 3.4%), 40세 미만을 제외하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미수강 비율이 높아짐.

- 많은 수의 농가 경영주가 근로자 노무관리 관련 교육에 노출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 고용 관계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갖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함.

〈표 5-55〉 농가 경영주의 고용 관련 교육 경험

단위: 호, %

연령대	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고용계약서 작성 교육				근로자 노무관리 관련 교육 수강				연령 합계	
	수강		미수강		수강		미수강			
	응답 수	비율	응답 수	비율	응답 수	비율	응답 수	비율	응답 수	비율
20~39세	1	9.1	10	90.9	1	9.1	10	90.9	11	100.0
40~49세	6	15.8	32	84.2	4	10.5	28	73.7	38	100.0
50~59세	10	8.1	114	91.9	2	1.6	110	88.7	124	100.0
60~64세	3	3.2	92	96.8	2	2.1	75	78.9	95	100.0
합계	20	7.5	248	92.5	9	3.4	223	83.2	268	100.0

자료: 설문조사 결과.

○ 관련 교육 경험이 없는 농업 경영주에게 노무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기를 희망하는가를 조사한 결과, 교육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2.2%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특히 60~64세 경영주의 미희망 비율이 82.7%로 높았음.

- 교육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로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47.8%) 그다음으로는 시간 부족이 꼽히고 있음(27.3%).
-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에 앞서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경영주 대상으로 노무관리의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하고, 필요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표 5-56〉 노무 관련 교육 희망 여부 및 미희망 사유

단위: 호, %

구분		경영주 연령									
		2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합계	
		응답 수	비율	응답 수	비율	응답 수	비율	응답 수	비율	응답 수	비율
노무관리 교육 수강 희망 여부	예	3	30.0	10	35.7	36	32.7	13	17.3	62	27.8
	아니오	7	70.0	18	64.3	74	67.3	62	82.7	161	72.2
합계		10	100.0	28	100.0	110	100.0	75	100.0	223	100.0
교육 미희망 사유	시간 부족	1	14.3	4	22.2	23	31.1	16	25.8	44	27.3
	교육 장소의 접근성 부족	2	28.6	1	5.6	6	8.1	5	8.1	14	8.7
	필요성 체감하지 않음	4	57.1	12	66.7	33	44.6	28	45.2	77	47.8
	이미 관련 내용 숙지	0	0.0	1	5.6	12	16.2	13	21.0	26	16.1
합계		7	100.0	18	100.0	74	100.0	62	100.0	161	100.0

자료: 설문조사 결과.

○ 농업 관련 사업체의 사업주(경영주) 중, 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작성, 고용계약서 작성과 관련한 근로자 노무관리 교육 등을 수강한 경험이 있는 사업주(경영주)는 18%에 지나지 않아, 대부분의 사업주(경영주)는 관련 교육을 수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전반적으로 해당 교육에 대해 노출되어 있는 정도는 낮은 것으로 분석됨.

○ 관련 교육을 수강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주)를 대상으로 향후 교육 수강 의향을 조사한 결과, 관련 교육이 무료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교육을 수강할 의향은 수강하지 않은 사람 중 27.2%에 지나지 않음.

〈표 5-57〉 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작성, 고용계약서 작성 교육 수강 여부

단위: %, 명

구분	근로자 노무관리 교육 수강 경험 있음	수강 하지 않은 경우, 향후 의향 있음
해당함	18.0	27.2
응답 수	300	246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 관련 교육을 수강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주) 중 향후에도 교육 수강 의향이 없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비율이 41.9%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는 업무가 바빠서 시간을 내기 어렵다는 비율이 31.8%로 나타남. 이미 관련 내용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11.7%에 지나지 않음.

- 앞서 농가 조사 결과에서도 언급했듯이 고용계약서 및 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작성 등과 관련한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사업주(경영주)가 준수해야 하는 항목임에도 실질적으로 작성 비율도 크게 높지 않음.
- 이의 비율을 높이려면 정책 홍보도 중요하지만, 해당 사업주(경영주)의 인식 전환을 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비율이 높음을 고려할 때, 해당 내용에 대한 교육과 교육 필요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인식을 전환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함.

〈표 5-58〉 향후 교육을 수강하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구분	비율
업무가 바빠서 시간 내기 어려움	31.8
교육 받는 곳이 집에서 멀리 있음	14.5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41.9
이미 관련 내용을 알고 있음	11.7
응답 수(명)	179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2.4. 보험급여 수급 요건 적절성

○ 농가 고용 일용근로자는 3~5월과 9~11월에 집중적으로 고용되고, 일평균 근로시간은 9.6시간, 월평균 14.6일동안 일하는 것으로 조사됨.

〈표 5-59〉 농가 고용 일용근로자의 일 평균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품목	평균 근로시간(시간/일)	평균 근로일수(일/월)
농가 고용 일용근로자	9.6	14.6

자료: 설문조사 결과.

○ 농업법인 임금근로자의 하루 평균 근로 시간, 한 달 평균 근로 일수, 일년 평균 근로 월수, 연 중 주요 고용 월을 조사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 일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상용근로자의 하루 평균 근로 시간은 각각 8.6시간, 8.4시간, 9.1시간임.
- 일용근로자의 한 달 평균 근로 일수는 19.6일임. 일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상용근로자의 연중 평균 근로 월수는 각각 4.6개월, 9.2개월, 11.1개월임.

〈표 5-60〉 농업법인 임금근로자의 하루 평균 근로 시간, 한 달 평균 근로 일수, 일년 평균 근로 월수

단위: 시간/일, 일/월, 개월/년, %

구분	하루 평균 근로 시간 (시간/일)	한 달 평균 근로 일수 (일/월)	일년 평균 근로 월수 (개월/년)
일용근로자 (N=32)	8.6	19.6	4.6
임시근로자 (N=18)	8.4	-	9.2
상용근로자 (N=150)	9.1	-	11.1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 농업 관련 사업체 근로자의 휴식시간을 제외한 평균 근로시간은 일용근로자는 7.1시간, 임시근로자는 7.6시간, 상용근로자는 7.9시간으로 나타남.

○ 평균 근로기간은 일용근로자는 한 달 평균 13.8일로 나타나, 한 달 평균 총 근로시간은 98시간으로 나타남.

〈표 5-61〉 농업 관련 사업체 종사상 지위별 평균 근로시간, 평균 임금, 평균 근로 일수

단위: 시간, 만 원, 일, 명

구분	일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상용근로자
평균 근로시간	7.1	7.6	7.9
평균 임금	일당 11.5	월 210만 원	월 223.2만 원
평균 근로기간	13.8일	-	-
응답 수	72	19	110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 일용근로자의 수급 요건에 영향을 미치는 평균 근로일수는 농가는 14.6일, 농업법인은 19.6일, 농업 관련 사업체는 13.8일로 나타남. 이의 근로일수에 비취 현재의 고용보험 일용 근로자 수급 요건이 농업 부문에도 적합한 기준인지 판단하는 것이 필요함.⁵⁷⁾

57) 자세한 내용 설명은 6장에서 이어짐.

6

농업부문 고용보험 적용 대상과 관리 방안

1. 농업부문의 고용보험 적용 대상

1.1. 현행 법률에서의 적용 대상

○ 현행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농업부문의 현재 고용보험 적용대상은 아래 <표 6-1>과 같음.

<표 6-1> 현행 농업 부문 고용보험 적용 현황

구분	법인	비법인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피보험자:	내국인	당연가입 대상	당연가입 대상	적용대상 제외*
근로자	외국인(고용허가제)	가입 대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희망 시 가입 가능(임의가입)		
피보험자: 자영업자(경영주) (근로자 50인 미만 고용)		임의가입 대상 (사업자등록증 필수)	임의가입 대상 (사업자등록증 필수)	적용대상 제외**

주: * 4인 이하 상시 고용 비법인 사업장은 근로자 과반수 이상 동의가 있고, 이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 4인 이하 상시 고용 비법인 사업장의 경영주는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고용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어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하여 근로자 고용보험이 적용된 사업장의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이 가능하다.

자료: 김미복 외(2021); 엄진영 외(2021: 128).

○ 고용보험 가입 대상 사업장에서의 가입 대상자에 따른 적용대상과 적용 제외 조건은 다음 표와 같음.

〈표 6-2〉 현행 농업부문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

가입 대상자	적용대상	적용 제외
자영업자 (임의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경영주) 비법인(민간사업자, 농가): 상시근로자 4인 이상~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경영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65세 이상 신규 계약자 비법인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 경영주
일용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개월 미만 고용되는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 비법인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 고용 근로자
임시 및 상용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1개월 이상 고용되는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도 포함) 단, 60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과 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함. 비법인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 고용 근로자

자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신규 적용 대상(안)

○ 적용 대상 설정 원칙은 현행 법률에서 정한 적용 대상을 최대한 준수하되 농업부문 특성 및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적용대상(안)을 제시함.

-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현행 법률에서 정한 적용대상을 유지하되 비법인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을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임의가입 가능하도록 변경함. 타 부문과의 형평성 및 해당 정책을 희망하는 정책 대상자에게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필요함. 또한 사회보험 중 하나인 산재보험의 경우, 농업경영주를 적용대상 제외에서 임의가입으로 전환하였음. 고용보험도 이와 같은 전환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근로자 고용보험의 경우도 자영업자 고용보험 변경과 마찬가지로 현행 적용 대상을 유지하되 비법인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 가입을 추진함. 1단계는 임의가입 방식, 2단계는 당연 가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더불어 65세 이상의 농업 경영주의 비율이 타 부문에 비해 높고, 현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또 다른 안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대상 연령을 80세(또는 70세) 이상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함.

〈표 6-3〉 농업부문 고용보험 적용 대상(안)

가입 대상자	적용대상		적용 제외	변경	필요사항	
자영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경영주) 비법인(민간사업자, 농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경영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안) 현행 유지: 65세 이후 자영업자 제외 2안) 80세 이상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법인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 경영주 임의가입 가능 변경 		
임금근로자	일용근로자	1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개월 미만 고용되는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법인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 임의가입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통: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1 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2 수정 필요 자영업자 2안: 농업부문 65세 이상 특례 적용, 고용규모 기준 완화
		2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개월 미만 고용되는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법인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 당연가입 	
	임시 및 상용근로자	1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1개월 이상 고용되는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도 포함)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과 1개월 미만 고용 일용근로자는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법인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 임의가입 변경 	
		2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1개월 이상 고용되는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도 포함)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과 1개월 미만 고용 일용근로자는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법인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 당연가입 	

자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 근거

1.3.1. 자영업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현행 비법인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영주를 제외하는 것에서 임의가입 가능으로 변경·확대를 고려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의향이 있는 경영주 대부분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이지만, 현재의 「고용보험법」에서는 가입을 할 수 없음(〈표 6-2〉).⁵⁸⁾

⁵⁸⁾ 물론, 근로자 과반수 동의서와 고용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으면 근로자 고용보험 및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이 임의가입으로 가능함. 그러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서 제출 전제 조건이 필요함.

- 특히 40세 미만의 경우,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1~4인 규모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청년 농업인들에게 영농 폐업 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고 재취업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표 6-4〉 향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의향 있는 비법인 상시근로자 규모

단위: %, 명

구분		상시근로자 수			
		0인	1~4인	5인 이상	응답 수
경영주 연령	40세 미만	1.0	87.5	11.5	8
	40~59세	0.9	33.9	65.1	168
	60~64세	0.8	35.2	64.0	71

주: 향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의향이 있는 경영주를 상시근로자 수와 연령으로 구분한 결과임. 예를 들어 설명하면, 향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의향이 있는 40~59세는 전체 168명인데, 이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경영주는 0.9%, 상시 근로자 1~4인 사업체 경영주의 비율은 33.9%, 5인 이상인 사업체 경영주 비율은 65.1%라는 것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 농업 부문이 적용받는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은 고용보험법 적용을 제외한다는 해당 법률이 타 부문에는 적용되지 않음.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상시 4인 이하를 고용하는 비법인이어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타 부문과의 형평성 및 해당 정책을 희망하는 정책 대상자에게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단, 현행 제도의 임의가입 형태로 두고, 경영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자영업자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대상 중 현행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제한인 65세 이상 제외를 유지하도록 함. 이는 65세 이상 연령 집단에서의 폐업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현행 국내경영이양 관련 지원제도 연령이 65세 이상으로 설정된 것을 고려함.
- 2006~2020년 기간에 농림어업 사업체 존속기간에 따른 폐업은 면세사업자의 경우 5년 이상~10년 미만 구간에서 주로 발생함.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는 6개월 미만, 1년 이상~2년 미만의 구간에서 주로 발생함(국세청 국세 통계. 각 연도).
 - 65세 이상의 농업인 중 영농경력이 해당 구간(6개월 미만, 1년 이상~2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에 속하는 비율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고, 평균 영농경력이 30년~45년 임을 고려하면, 폐업 확률이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됨(〈표 6-5〉).

〈표 6-5〉 농업경영주 연령별 영농경력

단위: %, 명, 년

구분	5년 미만	5~10년	10~15년	15~20년	20년 이상	합계(명)	평균 영농경력
40대 미만	35.7	31.6	21.0	6.9	4.7	12,426	5
40대	18.2	22.3	22.1	10.5	26.9	61,974	12
50대	11.7	15.9	16.3	8.0	48.1	202,331	18
60~64세	8.9	12.3	12.6	6.1	60.0	179,143	24
65~69세	5.1	9.8	11.6	5.6	67.9	168,571	30
70세 이상	1.6	3.2	5.3	3.3	86.7	410,748	45

자료: 통계청. 농업총조사. 2020년.

- 더불어 경영주 대상 경영이양 관련 지원제도인 경영이양직불제, 농지연금은 영농경력 10년, 5년 이상의 만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음. 농업 정책 내의 경영주 은퇴 시점을 만 65세로 설정하고 있는 것과 부합하도록 자영업자 고용보험도 65세로 설정함.

〈표 6-6〉 농업경영주 대상 경영이양 관련 지원제도

지원제도	내용
경영이양직불제	• 영농경력 10년 이상의 65~74세 농업인이 소유 농지를 농어촌공사 또는 전업농에게 매도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농지연금	• 만 65세 이상(영농경력 5년 이상)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 식으로 지급받는 농지형 역모기지론

자료: 임소영 외(2019:10).

○ 자영업자 2안: 현행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65세 이상을 제외하고 있으나 농업 부문에서는 65세 이상 농업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특례 조항을 만들 필요가 있음.

- 타 산업에 비해 농업에 종사하는 고령자 비율이 매우 높아 농업 부문에 한해서는 고령자라고 하더라도 경제활동인구에서 제외하기 어려움.
- 이는 농업인이 농지를 확보하고 있는 한 농사를 지속하려는 의사가 강하기 때문인데 그 결과, 농림어업 분야의 65~79세 취업자는 40%를 넘어 타 산업에 비해 월등히 높은 고령자 비율을 보이고 있음(〈표 6-7〉).

〈표 6-7〉 산업별 고령 취업자(65~79세) 비율

단위: %

산업 구분	2019	2020	2021
농림어업(A)	40.4	40.4	42.8
광·제조업(B,C)	3.3	3.6	3.7

(계속)

산업 구분	2019	2020	2021
제조업(C)	3.3	3.6	3.7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D~U)	7.7	8.3	9.2
건설업(F)	4.5	5.6	6.7
도소매·음식숙박업(G, I)	5.8	6.3	6.8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E, L~U)	10.0	10.6	11.6
전기·운수·통신·금융업(D, H, J, K)	5.6	6.3	7.0

주: 매년 5월 기준.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1.3.2. 임금근로자

- 현행 고용보험에서 일용근로자의 적용대상 범위는 1개월 미만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음. 농업 부문 일용근로자의 의미도 1개월 미만 고용되는 근로자이므로 현행 적용 대상 범위는 유지함.
- 임시 및 상용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은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가입이 제한됨. 하지만 60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고용근로자와 1개월 미만 고용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함.
 - 임시근로자 중,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으로 1개월~2개월 이하 근무한 근로자는 설문조사 대상에서 0%(농가 고용 근로자),⁵⁹⁾ 0%(법인 고용 근로자),⁶⁰⁾ 0%(농업 관련 사업체 고용 근로자)임.⁶¹⁾
 - 해당 항목에 해당해서 근로자 고용보험에 제외되는 임시 및 상용근로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따라서 해당 조건은 농업 부문을 포괄하고 있으므로 유지함.
- 그러나 적용대상 제외 조건에서 비법인 상시근로자 1~4인 고용 사업장은 「고용보험법」 적용대상이 아님.
- 비법인 상시근로자 1~4인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경영주와 근로자의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의향을 고려하면, 「고용보험법」 제 8조 적용 범위에서 적용대상 제외 조건을 완화하되 1단계로 임의가입에서 2단계 의무가입 형태로 변경하는 것을 논의할 수 있음.⁶²⁾

59) 농가 고용 임시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 최저는 104시간임.

60) 법인 고용 임시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 최저는 100시간임.

61) 농업 관련 사업체 고용 임시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 최저는 123.7시간임.

- 비법인 상시근로자 1~4인 사업장에 고용된 절반 정도의 근로자는 현재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체가 근로자 고용보험이 적용되길 희망하였음. 농가 경영주의 경우, 44.2%는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농업 관련 사업체에서는 35.5%의 경영주가 가입 의향이 있다고 응답함.

〈표 6-8〉 비법인 상시근로자 1~4인 사업주와 근로자의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의향(희망)

구분	경영주	근로자
농가	44.2%(197명)	54.7%(53명)
농업 관련사업체	35.5%(62명)	44.2%(52명)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 산재보험의 경우, 고용보험과 동일하게 농림어업 상시근로자 5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을 제외하였지만, 현재 1인 자영농, 상시근로자 5인 이하 사업장의 경영주와 근로자 모두 임의가입 대상자로 전환되어 적용되고 있음.⁶²⁾
- 고용보험도 이와 마찬가지로 상시근로자 5인 이하 사업장을 임의가입 대상자로 전환하고, 이후 논의 및 협의를 통해 의무가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2. 농업부문 고용보험 관리 개선 방안

2.1. 피보험자관리

2.1.1. 현황과 한계

가. 현황

- 피보험자관리는 보험관계 신고와 피보험자격 신고로 구성됨. 보험관계 신고와 피보험자격 신고는 일정 서류를 갖춰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접수함.

6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현재는 상시근로자 4인 이하 고용 사업장에서 「고용보험법」 적용이 제한되지만,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서와 함께 고용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등을 제출하면 임의가입이 가능함.

63) 2021년 12월 20일 근로복지공단 문의 결과.

- 보험관계 성립 및 소멸 신고는 자영업자 가입과 근로자 가입으로 구분됨.
 - 공통적으로 보험관계 신고는 사업주가 사업장성립신고를 통해 고유 사업장관리번호를 부여 받고,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으로 구분됨. 사업장성립신고 이후 피보험자격신고를 하게 됨.
 - 사업장성립신고는 온라인/오프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해당 신고서에는 사업장의 기본 정보를 기입하도록 하고 있음.
 - 자영업자의 보험관계 신고 및 피보험자격신고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를 제출함. 가입신청서 항목에는 신청인 사업체의 기초적 정보를 포함하며, 자영업자가 보험료산정 기준보수액을 선택하여 기입하도록 하고 있음. 자영업자 고용보험관계 소멸을 원하는 경우는 보험관계소멸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보험관계소멸서에는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폐업 사유 등을 기입함.
 - 근로자 보험관계 신고는 고용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함으로써 신고가 되며, 사업의 폐업 종료 등으로 인한 보험관계 소멸은 14일 이내 보험관계 소멸 신고를 함. 고용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항목에는 사업장 정보, 사업자 정보, 사업장의 고용보험과 관계된 사항(상시근로자 수, 피보험자 수 등)을 기입함.

-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신고(취득·상실)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자영업자와 달리 사업체가 영속하는 상태에서 사업장에 고용되는 근로자들의 피보험자격은 고용상태에 따라 취득, 상실되기 때문임.

-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은 일용근로자, 임시 및 상용근로자에 따라 달라짐. 일용근로자의 경우 피보험자격 취득과 상실이 일일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임시 및 상용근로자와 차이가 발생함.

- 이를 고려하여 피보험자격 신고는 일용근로자와 임시 및 상용근로자를 구분하여 적용함.
 - 일용근로자를 고용할 때 일일 단위로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신고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제출함. 근로내역확인신고서는 매월 다음달 15일까지 제출하며 사업장 정보, 근로자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근로일수, 일평균 근로시간, 임금총액 등을 기입함. 근로내역확인신고서는 공통의 항목을 담고 있지만,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고용관리 책임자에 대한 정보 및 근무지에 대한 정보를 기입하도록 하고 있음.

- 임시 및 상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및 상실은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를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함.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에는 사업장 정보, 근로자 개인정보, 근로 확인 항목 등을 기입함.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에는 사업장정보, 근로자 개인정보, 상실연월일, 상실사유, 당해연도 보수총액 등을 기입함.

〈표 6-9〉 현행 고용보험 보험 신고·자격 관리

구분	내용	
보험관계 신고	자영업자 (임의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등록증 보유 [신규가입] • 사업장성립신고 - 사업장명, 소재지, 형태, 전화번호, 업종, 사업자등록번호, 상시근로자 수, 피보험자 수, 우선지원 대상기업 여부 → 사업장관리번호 생성 • (신고)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을 신고함.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제출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항목: 상호(법인명), 소재지, 근로자 수,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개시일, 업태, 종목,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보험료산정 기준보수액, 사업 내용 - 사업자등록증명, 주민등록표 등 초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은 담당공무원이 확인함(가입자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소멸) 사업주가 보험관계소멸서 작성 - 보험관계소멸서 항목: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폐업사유 등
	일용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가입] • 사업장성립신고 - 사업장명, 소재지, 형태, 전화번호, 업종, 사업자등록번호, 상시근로자 수, 피보험자 수, 우선지원 대상기업 여부 → 사업장관리번호 생성
	임시 및 상용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관계 신고] • (성립) 고용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 고용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항목: 사업장 정보(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사업자 정보, 보험료자동이체 신청 여부, 상시근로자 수, 피보험자 수, 주된사업장 있는 경우 해당 내용 기입 - 임의적용 가입신청의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 제출 • (소멸) 사업주가 사업의 폐업 종료 등 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 보험관계 소멸신고
피보험자격 신고 (취득, 상실)	일용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사, 퇴사) 사업주가 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 신고 • 재하도급이 여러단계로 이루어질 경우, 피보험자격 신고는 원수급인에게 있지만, 하도급인에게 서면계약을 통해 보험인수 가능 - 단, 대통령령으로 허용된 산업(건설사업자, 주택건설사업자,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업자)에서만 가능
	임시 및 상용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내역확인신고서 - 매월 다음달 15일까지 제출 - 사업장정보(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갈음하고자 할 때 필요 기재), 소재지, 전화번호, 공사업명 등), 근로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직종, 근로일수, 일 평균 근로시간, 임금총액, 이직사유 등) •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 사업장정보(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등), 근로자 주민등록번호, 월소득액, 자격취득일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 사업장정보(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등), 근로자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상실연월일, 상실사유, 당해연도 보수총액

자료: 저자 작성.

나. 한계

-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사업자등록증 보유가 필수임. 이는 사업장성립신고 뿐만 아니라 향후 사업장 폐업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필수 요건으로 설정되어 있음.
- 그러나 농업부문에서 법인을 제외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비율은 매우 낮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더라도 가입할 수 없는 상황임.
 - 설문조사 결과, 농가 중 사업자등록을 한 비율은 22.2%, 농업 관련 사업체 중 민간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비율은 44.6%로 나타남. 즉, 현재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요건인 사업자등록증을 갖추고 있지 못한 농가는 77.8%, 농업 관련 사업체 중, 민간사업자는 55.4%임.
 - 해당 대상자들은 자영업자 임의가입이 가능하고 원하더라도 서류 미비로 가입이 불가능한 상황임.
- 근로자 고용보험 관계 신고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관계를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장관리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사업장관리번호는 사업장성립신고로 부여받게 되는데,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와 농업 관련 사업체 중 민간사업자에 고용된 근로자들은 고용보험 관계 신고에서부터 어려움이 발생함.
- 근로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달리 사업장의 폐업에 따라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닌, 근로자들의 입사·퇴사에 따른 것이므로 사업장관리번호 부여 가능 여부가 중요함.
 - 즉, 사업장관리번호만 각 사업장에 부여된다면 원론적으로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더라도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에 문제가 없음.
 - 현재의 사업장성립신고 시 활용되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완하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 근로자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신고는 사업주가 고용하는 근로자에 대해 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만약 사업주가 이를 회피할 경우,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음. 그러나 근로자 고용 시 서면계약을 하지 않고, 구두계약을 하는 비율이 높아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가 현실적으로 낮은 상황에 놓이게 됨. 또한 임금 지급 시 임금내역서 등을 받는 근로자 비율이 낮아 고용관계 확인이 어려움.
 - 서면계약을 하지 않고 만약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을 요청할 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함.
 - 설문조사 결과 농가에 고용된 일용근로자의 96%, 임시 및 상용근로자의 88.2%는 구두로 고용계약함. 농업법인은 일용근로자의 59.4%, 임시근로자는 38.9%, 상용근로자는 47.3%가 구두로 계약함. 농업 관련 사업체의 일용근로자는 91.7%, 임시근로자는 57.9%, 상용근로자는 40%가 구두로 계약함.
 - 설문조사 결과 농가에 고용된 일용근로자 중 97.3%, 임시 및 상용근로자의 86.3%는 임금내역서를 받지 못함. 농업법인 고용 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자의 87.5%, 임시근로자의 50%, 상용근로자의 50.7%는 임금내역서를 받지 못함. 농업 관련 사업체의 경우는 일용근로자의 79.2%, 임시근로자의 31.6%, 상용근로자의 57.3%는 임금내역서를 받지 못함.
-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사업주-근로자 간 서면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 고용보험 관리 방안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음. 즉, 서면계약 관행을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특히, 일용근로자에 대한 서면계약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더불어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역확인신고서 양식 항목에 대한 고민도 필요함.
 - 일용근로자는 일일 단위 또는 30일 미만의 초단기 기간에만 고용되기 때문에 현재의 임시 및 상용근로자 고용에서 사용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활용하기 어려움.
 - 건설업의 일용근로자 근로내역확인신고서의 고용관리 책임자 항목과 같은 추가적인 항목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것이 필요함.
- 근로자 고용보험 관계가 성립하려면 고용주와 근로자 간 고용계약이 이루어지고 고용관계가 발생한 후 고용주가 피보험자격 취득을 신고해야 함. 그러나 농가 고용 근로자의 경우, 고용관계에 있어 하도급 형태 및 (불법)파견계약 형태, 모호한 고용관계가 존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인식과 정리가 필요함.

- 설문조사 결과, 농가에서 고용된 근로자의 고용 관계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농가의 직접 고용이 56.4%, 도급형태 고용이 11.4%, (불법)파견형태 고용이 7.4%, 법률적으로 사업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모호한 고용 형태가 24.8%임. 임시 및 상용근로자는 농가의 직접 고용이 68.6%, (불법)파견형태가 11.8%, 모호한 고용관계가 17.6%, 도급 형태가 2.0%로 나타남.
 - 도급의 경우 사전 고용 조건 협의 및 업무 지휘, 임금 지급을 모두 해당 업체 또는 사업주에게 받는 형태임. 이의 경우 도급을 받는 사업자가 고용보험법 적용을 받게 됨.
 - 파견 고용은 사전 고용 조건 협의는 해당 사업주와 업무 지휘는 농가에게, 임금 지급은 해당 사업주에게 지급 받는 형태임. 해당 경우에 있어서는 파견사업자가 「고용보험법」 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됨.
 - 모호한 고용 형태는 법률적으로 엄밀한 의미에서 도급, (불법)파견, 직접 고용을 벗어난 고용 관계를 의미함. 모호한 고용 형태는 각 항목이 서로 섞여 있어 어느 한 고용관계로 명시할 수 없는 관계임. 예를 들면, 사전 고용 조건 협의는 인력업체(도급, (불법)파견)가, 업무지휘 및 임금 지급은 농가에게 받는 형태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유지되어 왔던 방식이기 때문임. 이의 경우는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합리적임.
- 농업부문에서 농작업위탁·도급하는 업체의 경우, 작업을 다시 재하도급하는 경우가 발생함. 재하도급 시 피보험자격 신고 및 가입 의무는 원수급인에게 있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에서는 원수급인과 재하도급인 간 서면계약에 따라 보험을 인수할 수 있음. 그러나 현재 농업부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설문조사 결과, 농작업위탁·도급업체의 재하도급·위탁 비율은 26.9%임. 그러나 현행 법률상으로 서면계약을 통한 보험인수가 불가능한 상황임.
 - 원수급인과 재하도급인 간 보험 인수 조항을 둔 이유는 여러 단계의 도급이 이루어질 경우, 원수급인들이 하도급 업체에 속한 근로자 정보를 모두 파악하기 어렵고, 보험관계 신고가 용이하지 않은 현실을 반영한 것임.

2.1.2. 개선 방안

- 자영업자 고용보험 관계 신고를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명시된 농업인으로 인정될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을 때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자영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는 사업장 신고 및 폐업 확인 시 필요한 사항임. 사업자등록번호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을 위한 것으로, 등록번호는 개인 및 법인 여부,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법인사업자 여부를 식별함.
 - 농업경영체등록정보는 농업정책 사업과 재정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마련한 장치로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법적 근거를 가진. 등록대상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서 정의한 농업인 대상이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서를 제출함. 농업경영체등록정보는 개별 농가를 식별할 수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번호를 포함함.
 - 참고로 농가는 농업경영체등록 후에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는 경영주의 정보 외에 농지(임야) 면적 등 경영정보가 수록되어 있으며, 농업경영체 증명서는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및 경영주의 정보가 수록됨.
 - 타 사회보험인 농어업인 국민연금 가입 시 보험료의 50% 지원 사업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미적용자에 대한 지원 시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활용하고 있음. 따라서 농업인의 사업장 식별에 있어,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함.
 - 그러나 현재 농업경영체 등록제도에는 사업자등록제도에서의 폐업에 대응한 절차나 정의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함. 농업경영체등록제도상 폐업 절차를 마련하여 농업인이 스스로 신고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농업경영체등록제도와는 별개로 사업자등록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데,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신고를 하는 농업인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또는 특정 사업의 수혜 대상에서 제외하는 페널티 부여 방안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음. 예를 들면, 사업자등록을 한 농업인에게는 정책용자 시 금리, 한도 등 대출조건을 우대하는 방안이 인센티브 부여 방식의 사례가 될 수 있음. 반대로 청년창업농에게 사업자등록을 전제 조건으로 하여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방법이 페널티 부여 사례임.
 - 농업 관련 사업체 중 농업인이 아닌 민간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사업자등록을 통해 사회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과 사회보험으로 얻을 수 있는 편익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농업 관련 사업체 중 민간사업자 중 사업자등록 비

율은 74.6%로 사업자등록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하지만 현재 고용노동부는 내부적으로 비법인 4인 이하 사업체만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활용할 계획을 담고 있어 이 부분은 추후 고용노동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협력이 필요함.
 - 이 경우에는 비법인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앞서 언급한 농업경영체 등록제도에 폐업에 대응한 절차나 정의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고, 농업경영체등록제도상 폐업 절차를 마련하여 농업인이 스스로 신고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앞서 언급한 대로 사업자등록을 유도하도록 함. 예를 들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신고를 하는 농업인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또는 특정 사업의 수혜 대상에서 제외하는 페널티 부여 방안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음.

- 재하도급이 여러 단계로 이루어질 경우, 일부 산업에서는 서면계약을 통해 원수급인의 근로자 고용보험을 하수급인이 인수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농업부문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농업부문에서도 재하도급 업체의 보험 인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농산물유통법인의 경우 재하도급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으나 현재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시, 재하도급 업체 소속의 근로자를 모두 파악하지 못해 재하도급 업체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만 고용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발생함.⁶⁴⁾
 - 농업부문의 재하도급 업체의 보험 인수 가능성을 열어둔다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제7조에 농업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함.

-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관리에 있어 서면고용계약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함.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농업부문 표준근로계약서 마련과 이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일용근로자의 고용형태를 반영할 수 있는 일용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만들어 배포하는 것이 필요함. 임시 및 상용근로자의 고용과는 달리 일일 단위 또는 한 달 이내의 정해진 기간에만 근무하므로 현행 월급근로자에게 적합하게 만들어진 농업 표준근로계약서

64)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면담조사 결과임.

에서 필요하지 않은 항목들이 발생함.

- 농업표준근로계약서에서 일용근로자에게 필요하지 않은 항목은 농번기, 농한기 근로시간, 월 단위 휴일, 임금지급일, 숙식 제공 등임.

○ 구체적인 방안으로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표준근로계약서처럼 시급 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한 달 이내의 정해진 기간에 근무하는 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마련하는 방안임.

- 시급 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일, 근로장소, 시급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을 기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주일간 계속 근무 시 유급 휴가 범위, 근로계약 해지사유 등을 포함하고 있음.
- 기간제 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에는 1일 8시간 근로 기준으로, 근로계약 기간, 근로장소, 일급, 일급 지급일, 근로시간, 휴게시간을 기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휴일 및 근로계약 해지사유를 포함하고 있음.

〈그림 6-1〉 건설현장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시급 일용근로자〉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건설현장 표준근로 계약서 </div> <p>주40시간제 : 일용근로자(시급)</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r> <td style="width: 15%;">사용자(2)</td> <td style="width: 25%;">상 호</td> <td style="width: 25%;">대 표 자</td> <td style="width: 35%;"></td> </tr> <tr> <td></td> <td>주 소</td> <td>전화번호</td> <td></td> </tr> <tr> <td rowspan="2">근로자(을)</td> <td>성 명</td> <td>주민번호</td> <td>전화번호</td> </tr> <tr> <td>주 소</td> <td>휴 태 폰</td> <td></td> </tr> </table> <p><small>“갑”과 “을”은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다.</small></p> <p style="text-align: center;">— 아 래 —</p> <p>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 <small>다만, 당일 근무 종료시 동일한 근로계약으로 갱신할 수 있다.</small></p> <p>2. 근로장소 및 작업공종 : 현장 공종</p> <p>3. 임금 (1) “을”의 임금은 시급 원으로 하고, 연장·야간근로시(22:00-06:00)에는 시급의 50%를 과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임금은 매일 근로종료 후 당일지급하며, 다만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 하에 특정 요일 또는 월의 특정일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3) 일급지급시 근로소득세 및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월 이상 근로시), 국민연금(월 이상</p>	사용자(2)	상 호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근로자(을)	성 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 소	휴 태 폰		<p>6. 근로계약의 해지사유 (1)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이행함으로써 사고나 손실을 야기시킨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나 손실을 야기시킨 때 (3) 신체·정신상 장애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4) 불법채용자로 밝혀진 때 (5) 그 외 “갑”의 「원장계약의 취업규칙」상의 해고기준에 해당될 때</p> <p>7. 기타 (1) 본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2) 퇴직공제 가입대상 여부(가입대상, 가입대상 아님), 가입 여부(가입, 미가입)</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r> <td style="width: 50%;">사용자 :</td> <td style="width: 50%;">근로자 :</td> </tr> <tr> <td>현장관리인 : (인)</td> <td>성 명 (인)</td> </tr> </table>	사용자 :	근로자 :	현장관리인 : (인)	성 명 (인)
사용자(2)	상 호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근로자(을)	성 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 소	휴 태 폰																		
사용자 :	근로자 :																			
현장관리인 : (인)	성 명 (인)																			

〈기간제 일용근로자〉

건설현장 표준근로계약서

주40시간제 : 기간제 근로자(일급, 1일 8시간 근로 기준)

사용자(갑)	상 호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근로자(을)	성 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 소		휴 대 폰	

“갑”과 “을”은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아 래 —

1. 근로계약기간 : _____년 _____월 _____일부터 (_____공종, _____현장) 종료일까지
다만, 근로계약기간 중이라도 천재·사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발주처의 공사중단·실계명경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을”이 수행하던 공종의 종료된 경우에는 그 때를 계약만료일로 한다.
2. 근로장소 및 작업공종 : _____현장 _____공종
3. 임금
(1) “을”의 임금은 일급 _____원으로 하며, 연장·야간(22:00~06:00)·휴일근로시에는 시급의 80%를 각 가산하여 지급하고, 연차휴가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요건에 따라 별도로 지급한다.
(2) “갑”은 “을”의 업무수행실적에 따라 별도로 성과급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성과급 지급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3) 임금은 매월 _____일(지급일이 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하며, 일급지급시 근로소득세 및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본인부담금 내지 기여금을 원천징수하여 “을”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____년 _____월 _____일

사용자 :	근로자 :
현장대표인 : (인)	성 명 (인)

5. 휴일 및 휴가
(1) 토요일은 무급휴일, 주휴일은 매주 1회 일요일로 하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갑”은 “을”이 1년간 8할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을 주며, 계속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이 경우 매월 사용한 휴가일수는 전단의 15일의 유급휴가일수 계산에서 뺀다.
6. 근로계약의 해지사유
(1)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이행함으로써 사고나 손실을 야기시킨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나 손실을 야기시킨 때
(3) 신체·정신상 장애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4) 불법채용자로 밝혀진 때
(5) 그 외 “갑”의 「원장계약직 취업규칙」상의 해고기준에 해당될 때
7. 기타
(1)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2) 퇴직공제 가입대상 여부(가입대상, 가입대상 아님), 가입 여부(가입, 미가입)

○ 예술업 부문에서 문화예술계의 서면 근로계약 체결 문화 정착을 위해 근로계약 문서 전자 전송 및 전자서명 시스템을 제공하는 업체 이용비를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을 함. 그러나 해당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근로계약 문서는 오프라인에서 사용하는 근로계약 문서와 동일함. 해당 서비스는 근로계약 문서의 전달 방법을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임.

- 구체적으로 2020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문화예술사업자 대상으로 (주)모두싸인의 전자계약 체결 서비스를 1년간 이용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함. (주)모두싸인 전자계약 체결 서비스는 지원에 선정된 문화예술용역사업자는 계약문서를 (주)모두싸인 업체를 이용하여 계약 당사자(을)의 카카오톡 또는 이메일로 전송하여 계약 당사자(을)가 인증 후 전자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문화예술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신청할 수 없으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이 운영됨.

○ 농업 부문에서도 서면 고용 계약 전달 방식 용이성 및 정착을 위해 예술업에서 시행하는 전자계약 서비스업체 이용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현재로서는 서면계약을 통해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음. 그럼에도 서면 고용계약이 현장에서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여 구두계약을 한 경우, 문자나 통장 입금 입금 내역 등을 토대로 가입 여부 판단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또한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의 미가입에 대해 자진 신고를 유도하고, 사업주와 노동자에게 두루누리 사업을 지원을 안내하고 지원함으로써 가입률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
 -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을 농업부문에 적극적으로 유도할 경우, 농가 대부분이 근로자 고용보험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을 고려하여 적용 대상 사업장임에도 피보험 자격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부과는 일정 기간 계도 및 홍보 기간을 두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위의 서술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서로 간에 근로 내용을 확인하고,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청할 때 또는 사업주와 근로자 간 분쟁이 있을 경우,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서면계약서이기 때문에 피보험자격 관리 측면에서 제시한 것임.
 - 참고로 전국민고용보험 로드맵에서도 서면고용계약 기반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그러나 만약 임금대장에 근로내역확인서의 기재사항을 적게 한다면, 일용근로자의 임금대장을 따로 마련해야 함.
 - 근로내역확인서에는 피보험자자격 취득, 상실, 이직 등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각 근로자별로 근로자들이 근무한 날(일)을 체크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의 임금대장 형식에서는 이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
 - 결국 현재의 임금대장에 근로확인 내역서를 기재해야 한다면,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역확인서를 포함한 임금대장을 따로 만드는 것이 필요함.
 - 참고로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역확인서를 포함한 임금대장을 따로 만들거나 기존의 임금대장으로 일용근로자 근로내역확인서를 포함한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를 변경해야 함.

- 농업부문의 일용근로자의 경우 농가, 농업법인, 농업관련 사업체의 직접 고용 형태가 다수이므로 현재의 일용근로자 근로내역확인신고서 양식을 이용할 수 있음. 더불어 농업부문에서도 재하도급의 경우 보험 인수가 가능해진다면, 현재의 근로내역확인신고서에는 사업장 정보에 미승인 하습급인의 하수급인관리번호도 포함하고 있어 현재의 양식을 이용할 수 있음.

〈표 6-10〉 농업부문 고용보험 보험 신고·자격 관리 개선(안)

구분		개선(안)	
보험관계 신고 (성립·소멸)	자영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 사업자등록번호→농업경영체등록정보활용 보완 - 가입시 사업장 식별 기능 - 농업경영체등록정보활용 시, 폐업에 따른 신고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폐업신청항목 추가 필요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 사업장성립신고시, 농업경영체등록정보활용 	
피보험자격 신고 (취득, 상실)	일용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급이 여러단계로 이루어진 경우 보험관계 인수 성립 및 소멸 규정 필요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제7조에 농업 추가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면계약 정착 필요: 일용근로자(시급), 기간제 근로자(일급) 표준근로계약서 마련
	임시 및 상용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면계약 정착 필요

2.2. 보험료 산정

2.2.1. 현황과 한계

가. 현황

○ 고용보험료 산정은 월평균보수 또는 기준보수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함.

- 자영업자는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로 인해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기준보수를 7 단계로 설정한 뒤 자영업자가 기준보수를 선택하여 고용보험료를 납입함.
- 일용근로자는 사업주가 제출하는 피보험자격 신고 시 제출하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상의 근무일을 기준으로 일당을 곱해 보수총액 산정함. 산정된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월 보험료를 산정함.
- 임시 및 상용근로자는 월평균보수에 (근무일수/월의 총일수)와 보험료율을 곱해 월 보험료를 산정함.

○ 보험료율은 자영업자는 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를 부담함. 임금근로자는 실업급여로 1.6%, 사업체 규모에 따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0.85%를 부담함.

- 임금근로자의 실업급여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0.8%씩 부담하며, 임금근로자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주가 부담함.

〈표 6-11〉 현행 고용보험 보험료 산정

구분	내용	
월보험료 산정	자영업자	• 기준보수×보험료율 - 기준보수는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임.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 • 그 달에 지급받은 보수총액 × 보험료율 - 그 달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은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작성된 그달의 보수총액을 의미함.
	임시 및 상용근로자	• 월평균보수×(근무일수/월의 총 일수) × 보험료율
보험료율	자영업자	• 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일용근로자	• 실업급여: 1.6%(사업주, 근로자 각각 1/2부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0.85%(사업주 부담)
	임시 및 상용근로자	

나. 한계

-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는 현재 7단계로 구성되어 있음. 자영업자 소득 파악의 어려움으로 현재 기준보수를 자영업자가 선택하도록 함.
 - 1단계 월 1,820,000원~7단계 3,380,000원으로 설정됨.

〈표 6-12〉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 보험료 및 월 실업급여

단위: 호, %

구분	기준보수	월보험료(2.25%)	월 실업급여(60%)
1등급	1,820,000	40,950	1,092,000
2등급	2,080,000	46,800	1,248,000
3등급	2,340,000	52,650	1,404,000
4등급	2,600,000	58,500	1,560,000
5등급	2,860,000	64,350	1,716,000
6등급	3,120,000	70,200	1,872,000
7등급	3,380,000	76,050	2,028,000

자료: 엽진영 외(2021).

- 그러나 농가 월소득을 5분위로 구분하면, 하위 단계에서는 기준보수보다 낮은 소득이, 상위 단계에서는 기준보수보다는 소득이 높게 나타남.
 - 특히, 보험료 80% 지원에도 농가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가 보험료 부담인 것을 고려할 때, 현재 자영업자 기준보수 1등급보다 낮은 등급을 두고 가입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표 6-13〉 5분위 농가 월소득(2020)에 따른 월보험료와 월 실업급여액

단위: 원

구분	농가소득	월 보험료(2.25%)	월 실업급여(60%)
1분위	1,160,333	29,008	696,200
2분위	2,008,583	50,215	1,205,150
3분위	2,982,917	74,573	1,789,750
4분위	4,380,500	109,513	2,628,300
5분위	8,862,750	221,569	5,317,650

자료: 농가경제조사 및 저자 계산.

2.2.2. 개선 방안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보험 가입 선택 범위를 확대함. 구체적으로 농업 분야의 기준보수 고시를 별도로 마련하고, 공통된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를 유지하되, 1등급보다 한 단계 낮은 등급을 마련하는 방안임.
 - 1등급보다 낮은 0등급(가칭)을 신설하고, 해당 등급의 기준보수를 농가소득 1분위 금액인 116만 3백 원으로 설정하는 방안임.

〈표 6-14〉 농업부문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 보험료 및 월 실업급여 개선 방안

단위: 호, %

구분	기준보수	월보험료(2.25%)	월 실업급여(60%)
0등급(신설)	1,160,333	29,008	696,200
1등급	1,820,000	40,950	1,092,000
2등급	2,080,000	46,800	1,248,000
3등급	2,340,000	52,650	1,404,000
4등급	2,600,000	58,500	1,560,000
5등급	2,860,000	64,350	1,716,000
6등급	3,120,000	70,200	1,872,000
7등급	3,380,000	76,050	2,028,000

- 임금근로자의 월보험료 산정은 그대로 유지함.
 - 월평균소득 파악이 어려울 수 있는 일용근로자의 월보험료 산정은 현행 고용보험에서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상의 근무일을 기준으로 수령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을 유지함.

〈표 6-15〉 농업부문 고용보험 보험료 산정 개선(안)

구분		개선(안)
월보험료 산정	자영업자	•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월소득 기준보수를 유지하되, 농업인 소득 5분위를 고려하여, 최저 단계 기준 보수 설정
	근로자	• 현행 유지
보험요율	자영업자	• 현행 유지
	임금근로자	• 현행 유지

2.3. 보험 급여

2.3.1. 현황과 한계

가. 현황

- 현행 농업 부문 수급 요건은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임금근로자는 일용근로자와 임시 및 상용근로자로 구분할 수 있음.
 - 자영업자의 수급 요건은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을 한 뒤, 적극적 재취업의 노력이 있는 경우 수급이 인정됨. 실업급여 신청은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 신청서, 폐업신고서, 폐업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매출액 또는 비용 증빙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확정됨.
 - 임금근로자는 공통적으로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이직일 경우 수급 자격이 됨.
 - 일용근로자는 수급 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경우 신청이 가능함. 건설업의 경우 추가적으로 수급 자격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근로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음.
 -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로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모두 합산한 기간으로, 유급휴가, 유급휴일(연차, 월차) 등은 포함되며, 무급휴일,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결근일은 제외함. 그러나 통상적으로 무급휴일로 여겨지더라도 근로계약서상에 유급휴일로 명시된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함.
 - 일용근로자의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 형태의 특성상 유급휴일이 있는 상용근로자와 달리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만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됨.

- 실업급여 지급 수준은 공통적으로 폐업 또는 퇴직 전 소득(기준보수, 평균임금)의 60%를 120일에서 210일(자영업자), 270일(임금근로자) 동안 지급함.
 -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간 임금총액을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간의 총 근무 일수로 나눔.

- 임금근로자에게는 출산전후휴가급여가 도입되는데,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종료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충족하며,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성립이 되는 근로자 대상임.
 - 따라서 자영업자와 일용근로자는 해당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음.

- 이에 그동안 출산전후휴가급여에서 배제됐던 여성들에 대한 모성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정책이 도입됨.
 - 소득 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가 출산했을 경우 출산 급여를 지원하여 출산 후 소득감소 및 단절에 따른 생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임.
 - 지원 정책에는 비임금근로자인 자영업자 및 고용보험 적용이 되지 않았던 여성 중,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을 했거나 출산 전, 1개월간 10일 이상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면 출산 급여를 지원함.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지원 수급 요건은 자영업자, 임금근로자, 미적용자로 구분되며, 임금근로자 요건은 일용근로자와 임시 및 상용근로자로 구분됨.
 - 자영업자는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이 발생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수급 자격이 됨. 대부분 면세사업자인 농업 분야의 경우, 카드매출영수증, 매출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됨.
 - 일용근로자는 출산 전 1개월간 10일 이상 근로를 입증하기 위한 노무 제공 입증자료 및 소득 발생 입증자료(재직증명, 근로계약서, 급여임금내역 등)를 제출하면 됨.
 - 임시 및 상용근로자는 18개월 중, 90일 이상 소득 활동한 증빙자료를 제출함.
 - 고용보험 미적용자는 출산 전 1개월간 10일 이상 근로를 입증하기 위해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와 노무 제공 입증자료 및 소득 발생 입증자료(재직증명, 근로계약서, 급여임금내역 등)를 제출함.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지원으로 소득 활동이 있는 여성근로자 및 여성자영농업인은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모두 지원받게 됨.

〈표 6-16〉 현행 고용보험 보험 급여

구분	내용		
실업 급여	수급 요건 (기여 요건)	자영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 •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자 지속, 매출액 감소 등으로 인한 폐업, 대규모 자연재해로 인한 폐업, 본인의 질병, 부상 및 가족 간호로 인한 폐업 • 적극적 재취업 노력 [실업급여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 신청서(신청인 정보, 최종폐업사업장 정보, 구직관련항목), 폐업 신고서(인적사항, 폐업관련 내용), 부가가치세신고서, 기타 매출액이나 비용 증빙 등의 폐업 사유 입증하기 위한 자료 제출
		일용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
		임시 및 상용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자발적 이직
	지급 수준	자영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보수 × 60%
		일용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 전 평균임금 × 60% - 평균임금 =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 제외한 3개월간 임금 총액/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 제외한 3개월간의 총 근무 일수)
		임시 및 상용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 전 평균임금 × 60%
	지급 기간	자영업자	120일~210일
		일용근로자	120일~270일
		임시 및 상용근로자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수급 요건	자영업자
일용근로자			해당없음 - 근로기준법 제 74조 제1항 ⁶⁵⁾ 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성립이 어려움.
임시 및 상용근로자			휴가종료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 근로기준법 제 7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근로자
지급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가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100% 	
지급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전후 90일 휴가기간 내 지급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9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은 사업주,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신규) 출산 급여 미적용자 지원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활동 하지만,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출산, 유산, 사산 후 지원 -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180일 수급 요건 미충족자 - 고용보험법상 적용제외 사업 근로자 및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인 경우 -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미가입 근로자 	
	지원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월분 급여 150만 원(월 50만 원, 3개월) 	

65)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는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

(계속)

구분	내용		
(신규) 출산 급여 미적용자 지원	수급요건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4월 2일 이후 출산, 유산, 사산이 있었을 것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유산, 사산 급여 신청서 • 출산 전 18개월 중 90일 이상 소득 활동한 증빙자료 - 사업 또는 노무제공 입증자료 및 소득발생 입증자료 * 일용근로자 및 적용제외자 : 출산전 1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한 사실 입증 - 적용제외자는 적용제외 사업 입증시 사업자등록증,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축산업허가증,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활용
		자영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등록증 •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발생 증빙자료 - 면세사업자: 카드매출영수증, 매출세금계산서 - 세금사실신고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시 및 상용근로자: 출산 전 18개월 중 90일 이상 소득 활동한 증빙자료(사업 또는 노무 제공 입증자료 및 소득발생 입증자료) - 재직증명, 근로계약서, 급여입금내역 • 일용근로자 : 출산전 1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한 사실 입증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전 1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한 사실 입증 •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사업주 작성), 재직증명서, 급여이체내역(통장사본)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전 1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한 사실 입증 •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사업주 작성), 재직증명서, 급여이체내역(통장사본)

나. 한계

○ 자영업자의 수급 요건은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비자발적 폐업에 해당하는 경우임.

- 비자발적 폐업은 적자 지속, 매출액 감소 등으로 인한 폐업과 기타 사유로 인한 폐업으로 구분됨.

〈표 6-17〉 자영업자의 비자발적 폐업 사유

적자지속, 매출액 감소	기타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업 이전 6개월 동안 연속 적자 발생 • 폐업 이전 3개월 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 이상 감소 • 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마트 등 대기업 입점 및 확장 등으로 피해를 입을 게 우려돼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을 신청한 경우 • FTA로 피해를 입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되었거나 폐업 지원금 지급 결정을 받은 농어업인 • 예상하기 어려운 대규모 자연재해(태풍, 홍수, 대설 등) 입은 경우 • 부모 또는 동거하는 친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30일 이상 직접 간호해야 해 폐업한 경우 • 의사소견서 등에 따라 본인의 질병, 부상으로 인한 폐업 •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해 출퇴근에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자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5조의 3.

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적자 지속 및 매출액 감소 등 비자발적 폐업 사유 증명은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해당 사항을 심사하여 확정함. 해당 증빙 서류는 <표 6-18>과 같음.

<표 6-18> 자영업자의 비자발적 폐업 사유 증빙 서류

사유	증빙서류
매출액 감소, 적자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 표준손익계산서 •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월별손익계산서 또는 매출총계정원장 등
FTA로 피해를 입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되었거나 폐업 지원금 지급 결정을 받은 농어업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통지서 또는 폐업지원금 지급 결정서 사본
예상하기 어려운 대규모 자연재해로 폐업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부모 또는 동거 친족 질병, 부상으로 인한 폐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진단서, 의사소견서
본인의 질병, 부상으로 인한 폐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단서, 의사소견서
배우자 등과의 동거를 위해 거주지 이전 (출퇴근 3시간 이상 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 등·초본, 배우자 재직증명서, 본인이 친족 부양해야 하는 사유서

자료: 자영업자 고용보험 핸드북(2020). 고용노동부

- 자영업자의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농가의 경우, 매출액 감소 증빙 관련 서류를 작성·보관하는 비율은 매우 낮은 상황임.
- 설문조사 대상 농가 중 농산물판매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농가는 전체 농가 중 39.0%, 농자재 지출 자료는 39.6%이었음. 농업경영 회계장부 작성은 전체 농가 중 54.1%가 작성하지 않았고, 모른다고 응답한 농가는 2.0%이었고,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농가는 40.5%, 복식부기를 작성하는 농가는 3.4%이었음.
- 기타 사유 중 FTA로 피해를 입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되었거나 폐업 지원금 지급 결정 사유에 해당하는 농업부문의 FTA 피해보전 폐업지원제도가 사실상 2020년에 제도가 끝났고, 사후관리기간이 남아있는 지급 품목은 이행점검 등을 통해 2025년까지만 관리를 지속할 예정으로 되어 있음.
- 현행 고용보험제도에서는 FTA 피해 보전 폐업지원금을 받은 농가는 기타 사유에 해당되어 비자발적 폐업을 인정받았음. 하지만 2025년에 해당 제도가 소멸될 예정으로, 2025년 이후에는 해당 사항으로 폐업했다 하더라도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움.
- 또한 대규모 자연재해로 폐업한 경우, 현행 자영업자 고용보험에서는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재해중소기업확인증은 농업 부문에 해당하지 않아 농업 부문에서 인정되는 확인증은 현재 없는 상황임. 농업인의 경우, 대규모 자연재해로 폐업

업을 한다고 해도 이를 서류상으로 입증하기 어려움.

- 임금근로자의 공통적인 수급 요건은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유지해야 함. 그러나 농업 부문 일용근로자의 평균 고용 기간을 고려하면, 피보험단위기간을 평균적으로 충족하지 못함.
 - 설문조사 결과, 농가 고용 일용근로자의 평균 고용 기간은 11.8일, 농업법인 고용 일용근로자는 16.8일, 농업 관련 사업체 고용 일용근로자는 14.4일임.
 - 평균 고용 기간을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려면, 18개월 동안 농가 고용 일용근로자는 15.2개월, 농업법인 고용 일용근로자는 10.7개월, 농업 관련사업체 고용 일용근로자는 12.5개월 고용되어야 함.
 - 작물재배업의 경우 평균적으로 일용근로자가 가장 많이 투입되는 농번기의 시기가 4-6월, 9-11월⁶⁶⁾임을 감안하면, 18개월 동안 평균 약 9개월간 고용됨. 이는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개월 수에 미치지 못해, 농업 부문 일용근로자 대부분은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 농업 부문 일용근로자의 고용상황을 고려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표 6-19〉 농업 일용근로자 평균 고용기간

구분	농가	농업법인	농업 관련사업체
일용근로자	11.8일	16.8일	14.4일
수급요건 충족 고용 필요 개월 수 (18개월간)	15.2개월	10.7개월	12.5개월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저자 계산

2.3.2. 개선 방안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들이 수급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특히 매출액 증빙과 관련한 서류를 작성·보관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함.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안내 및 홍보를 할 때 매출 기록을 작성·보관할 수 있는 농업인을 위한 농업회계 프로그램을 함께 안내하는 것이 필요함. 농업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써 농업인이 보다 정확하게 자신의 매출 현황 파악을 할 수 있음.

66)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수, 농가경제조사 노동력투입시간, 설문조사 노동력 수요월 조사 및 분석 결과임.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안내 및 홍보는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것보다 시·군에서 농작물재해보험 등 농업 관련 보험을 홍보할 때 함께 안내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표 6-20〉 농업회계프로그램 현황

명칭	기관	구축기반	부기형태	영농일지 포함여부
더존	더존	PC	복식	미포함
회계박사	농촌진흥청	PC	복식	포함
농업경영체기록분석시스템	경북농업기술원	웹	복식	포함
바로바로	충북농업기술원	웹	복식	포함
옥답 4.0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웹	단식	포함
알차니	농협	PC	단식	미포함
태극회계	송도부기연구소	웹	복식	포함

자료: 정재원 외(2020).

○ 자영업자 고용보험 비자발적 폐업에 해당하는 사유 중 일부 사유에 대한 증빙 서류를 농업 부문에 적합하도록 증빙 인정 서류 목록에 추가할 필요가 있음.

- FTA폐업 지원제도의 2025년 소멸 이후 FTA 피해에 따른 폐업을 농업인들이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지게 됨. 현재 농업 부문은 FTA 피해에 따른 상황을 농가 개별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을 확정·고시함.⁶⁷⁾
- FTA폐업 지원제도가 소멸될 경우 해당 품목을 확정할 수 없고, 개별 농업인이 이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임.
- 따라서 농가의 품목이 FTA에 따른 폐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역할을 농식품부 내 또는 산하 공공기관에 두고 증명서를 발급하고, 이를 자영업자 고용보험 수급 요건 인정 서류에 추가하는 것이 필요함.
- 예상하기 어려운 대규모 자연재해 사유의 경우, 현재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농업 부문에 해당하지 않음.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신고·접수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

67) 품목 선정은 수입피해 모니터링 대상 품목과 농업인·생산자 단체가 신청한 품목에 대해 20년 연간 가격과 수입량 등 지급기준 충족 여부를 분석하여 행정예고 및 이의신청 접수 절차를 거쳐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됨. 이는 무역조정지원제도와 접근방식이 다름. 무역조정지원제도는 FTA체결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제조업, 서비스업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제도임.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지원대상 기업 선정은 신청 기간 2년 또는 1년 이내 6개월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년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10%이상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임.

지를 확인한 후 피해 상황을 적고,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함.

- 농업 부문의 경우 자연재해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부문임. 그러나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활용할 수 없으므로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증명서를 마련하고, 해당 증명서를 폐업 사유 증빙 서류로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함.
- 현재 농업 부문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이 실시되고 있음.⁶⁸⁾ 농작물 재해보험과 가축재해보험에서 피해 사실 확인 및 손해평가를 시행하고 검증조사를 하는 체계가 갖춰져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즉,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 정도가 심각하여 폐업할 경우, 농업재해보험의 손해평가사가 인정하는 서류로 증빙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농업 분야의 생산주기가 길다는 점을 고려하여 매출이 아닌 생산비 손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도 폐업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과수, 특작 등 다년생 작물의 경우 매출이 실현되기 전에 자연재해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매출이 실현되더라도 생산비를 밀도는 수준의 매출액이 나와 폐업에 이를 수 있음.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매출액 감소를 증빙해야 하는데, 이때 다년생 작물을 생산하는 경우 수확에 이르기 전 매출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전년 매출액 자체가 없음.
- 따라서 통상적인 방식으로 매출 감소를 증빙하기 어려우므로, 농업인이 매출 감소만으로는 폐업을 증명할 수 없을 때 과거의 매출액이 아닌 총 생산비를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폐업을 판정하도록 판정 기준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 더불어 질병, 부상에 따른 휴업 시 농가 경영주가 해당 사업체를 폐업하지 않고 휴업 상태로 유지하는 특성을 고려한 수급 요건이 추가될 필요가 있음.

- 현재 질병, 부상에 따른 폐업 시 고용보험 수급 요건이 성립되지만, 휴업은 해당 조건에 들어가지 않음. 다른 부문의 자영업자 폐업 환경과 달리 농업의 경우, 질병 및 부상에 따라 일을 일시적으로 하지 못할 때 사업체를 완전히 폐업하기보다 휴업을 하게 됨.
-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질병 및 부상에 따라 사업체의 폐업이 아니라도 휴업을

⁶⁸⁾ 해당 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것으로 경영체의 폐업을 전제하지 않음.

할 경우, 판정 기준을 두고 수급 요건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 농업 부문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및 수급 자격 요건 등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 피보험단위기간을 18개월 동안 180일에서 농업 부문 고용 현실에 부합하도록 일용근로자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축소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농업 부문 일용근로자의 평균 고용 기간이 14.3일이고, 일용근로자가 주로 투입되는 고용 개월 수가 18개월간 평균 9개월임을 고려하여 129일로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더불어 수급 요건에서 수급 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 항목 이외에 농업 부문 일용근로자의 평균 고용 기간이 14일임을 고려할 때 건설업과 마찬가지로 수급 자격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근로가 없는 경우에도 수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수급 요건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함.

○ 보험급여 지급 수준과 지급 기간은 현행 적용방안을 유지함. 출산 급여의 경우도 고용보험 과 출산 급여 미적용자 지원 출산 급여가 소득 활동이 있는 여성농업인을 포괄하고 있으므로 현행 적용 방안을 유지함.

〈표 6-21〉 농업부문 고용보험 보험급여 개선(안)

구분		개선(안)
수급요건	자영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업 사유 확인 관련 서류 작성 능가 교육 및 제고 방안 마련 • 농업부문 FTA폐업 지원제도가 2025년에 소멸되는 것을 고려하여, 대비 방안 마련 • 예상하기 어려운 대규모 자연재해 사유의 경우, 확인증 교부 방안 마련 필요 -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사 인정 서류로 증빙 • 농업부문 폐업 사유 추가: 생산비 손실 증명 시 폐업 인정 • 농업 특성 반영하여 농업부문 질병, 부상 등에 따른 휴업 인정 추가
	일용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보험 단위기간 조정 - 기존 180일에서 129일로 설정하는 방안 • 기본 틀은 유지하되, 건설업과 동일하게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4일 간 연속 근로 없어도 신청 가능 추가
	임시 및 상용근로자	• 유지
지급수준	• 유지	
지급기간	• 유지	
출산급여	고용보험 미가입자, 적용제외자	• 출산급여 미적용자 지원 출산급여 적용(현행 유지)
	고용보험 수급요건 미충족 근로자	• 출산급여미적용자 지원 출산급여 적용(현행 유지)
	수급요건 충족 근로자	• 출산전후휴가급여 적용(현행 유지)
	자영업자	• 출산급여미적용자 지원 출산급여 적용(현행 유지)

자료: 저자 작성

○ 1절과 2절에서 언급한 농업부문 고용보험 적용 확대 및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정리해서 요약하면 아래 <표 6-22>와 같음.

<표 6-22> 농업부문 고용보험 적용 확대 및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사항 정리·요약

구분	현황	제도개선 방안
적용대상 확대	농림어업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은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1 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1 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2 조항 수정 - 〈농업·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부분에서 농업부문 삭제 - 임업 및 어업부문도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조항 삭제 ■ 농업부문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 연령을 70세, 또는 80세로 조정하는 방안 - 이의 경우, 「고용보험법」 제10조의 5, 2항 일부 수정 필요
피보험자 관리	낮은 사업자 등록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영업자 고용보험 관계 신고 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명시된 농업인으로 인정될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활용 -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활용 시, 자영업자 고용보험 수급 요건 확인을 위한 농업경영체 폐업신청서 마련 및 이의 확인 과정 추가 필요 ■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시에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명시된 농업인으로 인정될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활용하여 사업자 신고 ■ 농업경영체등록 정보 활용과 별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 신고를 하는 농업인에게 인센티브 제공 등의 방식 고려 필요 ■ 농업 관련 사업체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명시된 농업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민간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 유도 필요
	서면 고용계약 기반 낮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마련 - 현행 농업 표준근로계약서는 일용근로자에게 필요하지 않는 항목이 포함 - 방안) 시급 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기간제 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마련 ■ 임시 및 상용근로자: 농업 표준근로계약서 배포 및 작성 유도 ■ 서면계약서를 전자로 전달하는 전자계약 서비스업체 이용비 등을 지원 ■ 서면 고용계약이 정착하기 전까지, 구두 계약 시 문자 또는 통장 입금 내역 등을 토대로 가입 여부 판단 기준 마련
	재하도급 시, 보험 인수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하도급 업체 보험 인수 선택 가능하도록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시행령」 제2장 제7조에 농업 부문 추가
적용대상 사업장의 미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대상 사업장의 미가입 자진 신고 유도 ■ 사업주와 노동자에게 두루누리 사업 지원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지원 - 보험료 일부 지원이 가장 높은 정책수요 임을 감안 ■ 과태료 부과는 일정 기간 계도 및 홍보 기간을 두고 시행하는 것이 필요 - 특히 비법인(농가, 민간사업자)의 미가입 사업주는 고용보험 적용대상 등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을 고려 	

구분	현황	제도개선 방안
보험료 산정	농가소득 고려한 자영업자 기준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부문의 소득 고려하여 현행 자영업자 기준보수보다 낮은 단계의 기준 보수 마련. -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수정 필요
보험 급여	매출액 감소 증빙 서류 작성, 보관 비율 낮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급여 요건이 되도록 매출액 증빙 관련 서류 작성 및 보관 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안내 및 홍보 시 함께 안내 및 설명 - 가입 안내 및 홍보는 개별 시행보다 시군에서 농작물재해보험 등 농업 관련 보험 홍보 시 함께 홍보 - 해당 교육 시, 관련 회계 프로그램 이용방법 안내 및 교육 필요
	매출액 감소 이외의 인정 서류 농업부문 특성 반영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폐업지원제도 소멸로 농업부문 인정 어려움 ■ 대규모 자연재해로 인한 폐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인정서류 농업부문 없음 ■ 질병, 부상 등에 따른 휴업 인정의 수급 요건 허용 여부 논의 필요 ■ 생산비 손실 증명시 폐업으로 인정하는 방안 논의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에 따른 폐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역할을 농식품부 내 또는 산하 공공기관에 두고 증명서 발급 방안, 고용보험 업무지침에 인정서류로 해당 서류 추가 ■ 재해로 인한 폐업임을 확인하는 증명서 마련, 인정서류로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 피해 검증조사 체계 활용하여 서류 발급 체계 구축 ■ 농업 특성 상, 농업경영주가 질병 및 부상에 따른 휴업 시, 수급 요건 기준을 두고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 및 부상이 발생한 경우, 농가 경영주는 경영체 폐업을 하지 않음. ■ 과수, 특작 등 다년생 작물의 경우 매출이 실현되기 전에 자연재해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매출이 실현되더라도 생산비를 밀도는 수준의 매출액으로 인한 폐업 인정 요건 추가
	일용근로자 수급 요건 농업 부문 특성 고려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시 및 상용근로자는 현행 근로자 고용보험 보험 급여 조건 부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용근로자: 18개월 동안 180일에서 18개월 동안 129일로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보험법 제 40조에 농업부문 일용근로자 구직급여 수급요건 신설 ■ 일용근로자: 건설업 일용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수급 자격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 근로가 없는 경우 수급 신청 가능하도록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보험법」 제 40조 5 나에 농업부문 일용근로자 추가

자료: 저자 작성.

3. 농업부문 고용보험료 지원 시, 필요 예산 규모 추계

3.1. 농업 부문 고용보험 가입대상 및 미가입 규모 추계

3.1.1. 고용보험 가입 대상 규모 추계

○ 농업부문의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규모 등을 파악하려면 먼저 현재 농업부문 고용보험 가입 대상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재의 고용보험 가입 대상 규모를 파악하려면 농업 전체 취업자 수와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체 취업자 수, 65세 이상 취업자 수, 고용보험 가입률에 대한 정보를 모두 아는 것이 필요함.
- 해당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자료는 현재로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부가조사가 활용 가능한 유일한 자료임.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 65세 이상 취업자 수, 근로자 근무 업체의 종사자 규모를,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부가조사에서는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파악할 수 있음. 그러나 법인과 비법인을 구분할 수 없고, 농업 부문만 분리가 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더불어 상시근로자 규모가 아닌 종사자 규모로 되어 있어, 엄밀한 의미의 상시근로자 기준이 아님.
- 농업총조사는 농가 경영주 수와 농가 경영주의 연령을 알 수 있음. 그러나 개별 경영체의 종사자 규모 또는 상시근로자 수에 대한 정보가 없으므로,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체 규모를 알 수 없음.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농업총조사를 활용하여 현재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규모와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규모를 추산할 수 없음.⁶⁹⁾ 더불어 근로자의 경우, 각 근로자별 연령에 대한 정보가 없어,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적용 대상 제외 요건이 허용으로 변경되더라도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규모를 추계하기 어려움.
- 농업법인조사는 농업법인 사업주의 연령, 사업체의 종사자 규모를 알 수 있어, 농업법인 사업주에 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규모를 추계할 수 있음. 그러나 고용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 연령 변수가 구간변수로 주어져, 정확한 규모를 추산하기에는 한계가 따름. 더불어 농업법인을 통해 추계하는 고용보험 가입 규모는 농업법인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농업 전체 규모 중 일부분에 해당함.

○ 본 보고서에서는 비법인 상시근로자 4인 이하 고용보험 적용대상 제외 요건이 허용 가능으로 변경되는 것을 가정(1안) 하여, 농업총조사와 농업법인조사를 활용하여 고용보험 가입대상 규모를 파악함.⁷⁰⁾ 참고로 1안은 65세 이상 자를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그대로 유지함.

- 따라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규모는 비법인 상시근로자 4인 이하 고용보험 적용 대상 제외 요건이 허용 가능으로 변경된 것을 전제로 하고 추산함.

⁶⁹⁾ 농업부문에서 비법인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농업총조사 자료로 각 사업체별로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체로 분류할 수 없어, 현재 체계에서는 가입 규모 대상을 추산할 수 없음. 다만, 4인 이하가

⁷⁰⁾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해당 자료를 사용함.

-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규모는 농업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결과로, 전체 농업 부문의 근로자 가입대상 규모 대상은 아님.

○ 1안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 중 미가입 규모는 다음과 같음.

- 농업법인 상시근로자 중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 규모는 109,334명으로 추산됨.
- 농업법인 사업주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 미가입 규모는 20,956명으로 추산됨.
- 근로자를 고용한 농업 경영주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 미가입 규모는 91,438명임.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농업 경영주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 미가입 규모는 356,669명으로 추산됨.

〈표 6-23〉 1안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 미가입 규모 추산

단위: 명, %

구분	농업법인 상시근로자	자영업자		
		농업법인	농가	
			근로자 고용	근로자 고용 안 함
전체 취업자 수(A)	169,951	24,499	184,663	850,530
65세 이상(B)	28,817	3,284	92,701	491,816
근로자 50인 이상 고용 사업체(C)	해당하지 않음	120	N/A	해당하지 않음
고용보험 가입자(D)	31,800	139	524	2,045
미가입 규모(E)	109,334	20,956	91,438	356,669

주 1) 농업법인 상시근로자는 농업법인조사 조사 항목 정의에 따라, 상근출자자+상용근로자를 의미함. 임시 및 일용근로자는 포함된 개념은 아님.

2) 농업법인 상시근로자 65세 이상은 60-69세 상시근로자 수/2 + 70대 상시근로자 수로 계산함.

3) 농업법인 상시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자(D)는 2021년 고용보험통계의 농림수산 분야 가입 피보험 근로자 수입.

4)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규모는 현재 관련 통계가 없어, 2020년 8월 기준 전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인 0.57%*를 활용하여 계산함. (근거: <https://www.h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63109>)

5) 미가입 규모(E)는 A-B-C-D임. 농업법인 임금근로자의 미가입 규모 산출에서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고용 사업주(C)는 해당하지 않음.

자료: 농업법인실태조사 2020. 농업총조사 2020 원자료 분석.

○ (2안)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적용대상 제외 연령 기준을 70세 이상과 비법인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체의 사업주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허용으로 변경할 경우,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대상 규모는 다음과 같음.

- 농업법인 사업주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 미가입 규모는 22,960명으로 추산됨.
-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 경영주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 미가입 규모는 122,736명으로 추산됨.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농가 경영주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 미가입 규모는 492,922명으로 추산됨.

〈표 6-24〉 2안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 미가입 규모 추산

단위: 명, %

구분	자영업자		
	농업법인	농가	
		근로자 고용	근로자 고용 안 함
전체 취업자 수(A)	24,499	184,663	850,530
70세 이상(B)	1,287	61,223	354,782
근로자 50인 이상 고용 사업체(C)	120	N/A	해당하지 않음
고용보험 가입자(D)	132	704	2,826
미가입 규모(E)	22,960	122,736	492,922

주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규모는 현재 관련 통계가 없어, 2020년 8월 기준 전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인 0.57%*를 활용하여 계산함. (근거: <https://www.h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63109>)

2) 미가입 규모(E)는 A-B-C-D임.

자료: 농업법인실태조사 2020. 농업총조사 2020 원자료 분석.

○ (3안)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적용대상 제외 연령 기준을 80세 이상과 비법인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체의 사업주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허용으로 변경할 경우,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대상 규모는 다음과 같음.

- 농업법인 사업주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 미가입 규모는 24,104명으로 추산됨.
-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 경영주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 미가입 규모는 168,194명으로 추산됨.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농가 경영주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 미가입 규모는 738,840명으로 추산됨.

〈표 6-25〉 3안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 미가입 규모 추산

단위: 명, %

구분	자영업자		
	농업법인	농가	
		근로자 고용	근로자 고용 안 함
전체 취업자 수(A)	24,499	184,663	850,530
80세 이상(B)	137	15,505	107,454
근로자 50인 이상 고용 사업체(C)	120	N/A	해당하지 않음
고용보험 가입자(D)	138	964	4,236
미가입 규모(E)	24,104	168,194	738,840

주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규모는 현재 관련 통계가 없어, 2020년 8월 기준 전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인 0.57%*를 활용하여 계산함. (근거: <https://www.h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63109>)

2) 미가입 규모(E)는 A-B-C-D임.

자료: 농업법인실태조사 2020. 농업총조사 2020 원자료 분석.

3.2. 농업 부문 고용보험료 지원 시 필요 예산 규모 추계

- 현재 고용보험료 지원은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과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건설·별목업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이 있음.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신규 가입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보험료 일부(20~50%)를 최대 5년간 지원하는 사업임. 해당 사업은 예산(3,692백만 원) 소진 시까지 지원함.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및 건설·별목업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3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근로자 고용보험료의 80%를 최대 3년간 지원함.
 -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이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월평균보수가 230만 원 미만인 예술인과 사업주에 대해 예술인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최대 3년간 지원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은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의 월 보수액 23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그 사업주를 대상으로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각 80%를 최대 3년간 지원함.

- 농업 부문 미가입자들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한 수단으로 현재의 고용보험료 지원제도 기준으로 농업 부문에도 지원한다고 가정할 경우의 소요되는 연간 예산을 추계함.
 - 현재 지원제도와 동일하게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체에 고용된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 고용보험료의 80%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지원할 경우의 연간 예산 규모를 추계함. 참고로 현재의 통계에서는 개개인의 고용보험 신규 가입에 대한 정보 및 월평균보수를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이에 대한 가정이 필요함. 본 연구에서는 지원 규모를 추산하기 위해, 근로자의 월평균보수액을 월 200만 원을 가정함. 또한, 농업법인조사에서는 법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중,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체의 고용 여부를 근로자 측면에서 식별할 수 없음. 이에 미가입 근로자들이 모두 신규 가입자에 해당한다고 가정함. 따라서 이러한 가정에서 계산된 근로자 고용보험료 지원 예산 규모는 최대 규모이므로, 실제 지원 규모는 이보다는 낮을 것임.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은 1인 자영업자에 대해 고용보험료의 최대 30%(4등급 기준)를

지원할 경우의 연간 예산 규모를 추계함. 연간 예산 규모는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를 모두 지원한다고 가정할 때의 금액으로 지원 예산 최대 규모임.

○ 1안에 대한 최대 필요 예산 규모액은 다음과 같음.

- 근로자 고용보험료를 최대 80%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지원하고, 미가입자들이 모두 가입한다고 가정할 때, 연간 필요 예산 규모는 총 38,835백만 원임.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시, 기준보수 4등급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 30%를 지원하고, 미가입자들이 모두 가입한다고 가정할 때 연간 필요 예산 규모는 총 75,114백만 원임.

〈표 6-26〉 1안에 따른 고용보험 지원 대상 규모와 지원 예산 최대 규모

단위: 명, %

구분	농업법인 상시근로자	자영업자		
		농업법인	농가	
			근로자 고용	근로자 고용 안 함
미가입 규모(E)	109,334	20,956	91,438	356,669
1인당 보험료 지원액(연간)	355,200원 (월평균보수 200만 원 가정)	해당 안함	해당안함	210,600원
지원 예산 규모(연간)	38,835백만 원	-	-	75,114백만 원

자료: 저자 작성

○ 2안에 대한 최대 필요 예산 규모액은 다음과 같음.

- 근로자 고용보험료를 최대 80%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지원하고, 미가입자들이 모두 가입한다고 가정할 때, 연간 필요 예산 규모는 총 38,835백만 원임.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시, 기준보수 4등급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 30%를 지원하고, 미가입자들이 모두 가입한다고 가정할 때 연간 필요 예산 규모는 총 103,809백만 원임.

〈표 6-27〉 2안에 따른 고용보험 지원 대상 규모와 지원 예산 최대 규모

단위: 명, %

구분	농업법인 상시근로자	자영업자		
		농업법인	농가	
			근로자 고용	근로자 고용 안 함
미가입 규모(E)	109,334	22,960	122,736	492,922
1인당 보험료 지원액(연간)	355,200원 (월평균보수 200만 원 가정)	해당 안함	해당안함	210,600원
지원 예산 규모(연간)	38,835백만 원	-	-	103,809백만 원

자료: 저자 작성.

○ 3안에 대한 최대 필요 예산 규모액은 다음과 같음.

- 근로자 고용보험료를 최대 80%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지원하고, 미가입자들이 모두 가입한다고 가정할 때, 연간 필요 예산 규모는 총 38,835백만 원임.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시, 기준보수 4등급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 30%를 지원하고, 미가입자들이 모두 가입한다고 가정할 때 연간 필요 예산 규모는 총 155,599백만 원임.

〈표 6-28〉 3안에 따른 고용보험 지원 대상 규모와 지원 예산 최대 규모

단위: 명, %

구분	농업법인 상시근로자	자영업자		
		농업법인	농가	
			근로자 고용	근로자 고용 안 함
미가입 규모(E)	109,334	24,104	168,194	738,840
1인당 보험료 지원액(연간)	355,200원 (월평균보수 200만 원 가정)	해당 안함	해당안함	210,600원
지원 예산 규모(연간)	38,835백만 원	-	-	155,599백만 원

자료: 저자 작성.

부록 1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

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청고시 제2000-2호)	대 상 업 무	비 고
120	컴퓨터관련 전문가의 업무	
16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의 업무	행정 전문가(161)의 업무는 제외한다.
17131	특허 전문가의 업무	
181	기록 보관원, 사서 및 관련 전문가의 업무	사서(18120)의 업무는 제외한다.
1822	번역가 및 통역가의 업무	
183	창작 및 공연예술가의 업무	
184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의 업무	
220	컴퓨터관련 준전문가의 업무	
23219	기타 전기공학 기술공의 업무	
23221	통신 기술공의 업무	
234	제도 기술 종사자, 캐드 포함의 업무	
235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의 업무	보조업무에 한정한다. 임상병리사(23531), 방사선사(23532), 기타 의료장비 기사(23539)의 업무는 제외한다.
252	정규교육이외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253	기타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28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의 업무	
291	관리 준전문가의 업무	
317	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	
318	도서, 우편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3213	수금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3222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가 해당 사업의 핵심 업무인 경우는 제외한다.
323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411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의 업무	
421	음식 조리 종사자의 업무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 숙박업에서의 조리사 업무는 제외한다.
432	여행안내 종사자의 업무	
51206	주유원의 업무	
51209	기타 소매업체 판매원의 업무	
521	전화통신 판매 종사자의 업무	
842	자동차 운전 종사자의 업무	
9112	건물 청소 종사자의 업무	
91221	수위 및 경비원의 업무	「경비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비업무는 제외한다.
91225	주차장 관리원의 업무	
913	배달, 운반 및 검침 관련 종사자의 업무	

해외 농업 부문 고용보험 제도

1. 미국

- 미국의 실업보험은 각각의 주정부에서 미국 노동부의 감독하에 개별적으로 운영함. 주정부에서 실업보험체제 기획, 자격기준 심사 및 설정, 실업급여 신청 및 지급을 담당함. 실업급여 적용 대상 사업장은 전년도 또는 올해 최소 20주 동안 매주 하루 이상씩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했거나 한 분기당 1,500달러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고용주임. 각 주는 이와 다르게 사용자 기준을 정의할 수 있음.
- 실업보험 적용 대상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실업보험료를 납부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임. 노무도급자(independent contractor)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실업보험을 적용받지 않음. 통상적으로 보험모집인, 부동산 중개인, 임시근로자에 실업보험을 적용하지 않으나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에서는 적용하는 경우가 있음.
- 농업근로자는 고용주가 최근 2년 이내에 20주 동안 매주 하루 이상 10명씩 고용했거나 매 분기 2만 달러 이상의 임금을 지불하는 경우에 실업보험을 적용할 수 있음. 캘리포니아, 컬럼비아 특별구, 플로리다, 미네소타, 뉴욕, 푸에르토리코, 로드아일랜드, 텍사스, 버지니아, 와싱턴은 이보다 완화된 조건에서 농업근로자에 대한 실업보험을 적용함. 한편 각주는 농업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제외할 수 있음.
- 농업인을 포함한 자영업자는 미국의 실업보험 대상이 아니었으나 미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020년 3월 27일 CARES(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법을 통과시켜 '실업수당 대상자 확대(Pandemic Unemployment Assistance: PUA)'라는 한시적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79주간 지속, 2021년 9월 4일 종료)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무도급자 등으로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함.
 - 농업인은 자영업자에 해당하며 PUA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실직, 부분 실직,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임을 증명해야 함. 즉, 자영업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영업이 주소득원이며 코로나19 영향으로 실직 상태이거나 수입이 급격히 감소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함.

2. 캐나다

- 캐나다의 고용보험은 실업자의 구직 또는 능력 향상을 위해 한시적으로 소득을 지원함. 근로자는 전년도에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수급 조건을 만족시켜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자영업자도 임의가입이 가능함.
- 일반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 고용되었다가 본인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실직해야 함. 최근 52주 내에 최소 7일 연속 일이 없거나 급료가 없고, 최근 52주 내에 또는 실업급여를 신청한 날로부터 충분한 근로시간을 채워야 함. 또한 일할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나 직장을 구하지 못한 상태여야 함.
- 농업인의 경우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첫째, 캐나다에서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면서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농업인이 자영업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근로시간을 채워야 하며 신청하는 급여 종류에 맞는 수급 조건을 충족해야 함. 또한 고용보험 급여를 신청하는 매주 본인의 잘못이 아닌 사유로 실직했음을 증명해야 함. 영농활동으로 인한 소득은 생계를 유지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함.
- 해당 직종의 다른 상시근로자들이 일하는 시간만큼 일을 하고 있다면, 즉 전일 근무를 하고 있다면 고용보험 급여의 대상이 아님. 농업인의 주 수입원이 농업을 포함한 자영업 경영에서 나오고 농업인의 자영업 또는 영농활동이 생계를 유지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면 전일 근무로 판단되어 실직 상태가 아님.
- 둘째, 농장 경영으로부터 수입을 얻고 있는 농업인의 경우에 자영업자를 위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 자영농은 4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의 기간에는 전일 근무를 하고 있는 것

을 간주함. 그러나 10월 1일이 속한 주부터 3월 31일의 다음주까지의 기간에는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고용주를 위해 충분한 근로시간을 쌓고 해당 기간에 본인의 농장에서 영농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너무 작아서 주요 생계원이 될 수 없다면 고용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음.

3. 프랑스

- 프랑스의 실업급여제도는 전국 단위의 노사단체들이 3년마다 갱신하고 정부가 승인하는 실업보험협약에 의해 규율되는 실업보험제도(régime d'assurance chômage)와 공공부조 제도로서 운영되는 연대제도(régime de solidarité)로 구성됨.
 - 전국상공업고용연합인 위네딕(Unédic)과 국가의 관리 위임을 받은 고용센터(Pôle emploi)에서 실업보험제도와 연대제도의 운영을 담당함.
- 실업보험협약은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강제적으로 적용되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주요 재원으로 하여 비자발적 실업에 처한 근로자에게 재취업촉진수당(allocation d'aide au retour à l'emploi) 등 실업급여를 지급함. 장기 실업에 처한 사람 또는 실업급여 수급권이 없는 사람들은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연대제도를 통해 특별연대수당(allocation de solidarité spécifique: ASS), 대기일시수당(allocation temporaire d'attente: ATA) 등을 지급함.
- 민간 부문의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는 실업보험제도의 적용 대상임. 자유직업인, 상인, 수공업자, 회사의 임원 등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실업보험제도의 가입 대상이 아님. 다만, 12개의 부속협약을 통해 상선의 선원과 어부, 재택 노동자, 공연예술인 등 실업으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직종의 비임금노동자에 대해 실업보험제도를 당연적용함. 이러한 부속협약에는 일부 자영업자 외에 특수 형태의 임금노동자를 포함함. 한편, 공무원, 군인 등 공공 부문은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독자적으로 실업수당제도를 운영해야 하나, 고용센터와 계약을 통해 실업수당제도를 위탁 운영하거나 민간 부문의 근로자와 같은 요건으로 민간 부문의 실업보험제도에 가입할 수 있음.
- 프랑스는 2019년 11월 1일에 시행된 고용보험 개정("직업의 미래를 선택할 자유를 위한

2018년 9월 5일의 법률(제2018-771호)을 통해 자영업자와 자발적 퇴사자를 대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함. 해당 법률 제51조 I.의 L.5424-24조는 농업 부문의 비임금 노동자와 사업주를 자영업자로 명시함.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 전 최소 2년간 동일한 자영업에 종사하고 해당 자영업이 파산하거나 법원의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어야 함. 또한 소득 요건으로 해당 자영업으로는 실업 전 2년간 연평균 1만 유로 이상의 개인과세소득이 있어야 하며, 해당 자영업 이외의 개인과세소득은 기초생활보장수당에 해당하는 월 565유로 미만이어야 함.

- 2018년 10월 1일부터 실업보험제도의 보험료율은 사업주만 부담하며, 필요한 경우에 공연예술인과 해외 근로자에게 기여금을 징수하도록 함. 또한 자영업자 실업급여의 재정으로 조세가 투입됨.

2021년 산업별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률

단위: %, 명

산업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률	전체 응답 수
농업, 임업 및 어업	23.3	215
광업	92.9	28
제조업	90.6	4,513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94.1	85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88.3	179
건설업	61.1	2,119
도매 및 소매업	72.9	2,270
운수 및 창고업	85.6	977
숙박 및 음식점업	47.3	1,521
정보통신업	91.6	690
금융 및 보험업	86.6	863
부동산업	65.7	50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92.0	1,034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71.3	1,576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46.7	762
교육 서비스업	60.6	1,17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66.4	3,57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60.4	34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55.4	802
국제 및 외국기관	92.3	13

자료: 2021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분석.

- 김수환·김형규. 2017.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에 관한 연구.” 『전문경영인연구』 20(1): 69-87.
- 관계부처 합동. 2020.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 노성준. 2020.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의 현황과 과제.” 『NARS 현안분석』 137. 국회입법조사처.
- 박소민. 2021. “간접고용의 상태에서 사용자 확정을 위한 판례법리. 상.” 『노동법률』 통권358호(2021년 3월): 120-124. 서울: 중앙경제.
- 박제성·양승엽·신수정. 2018. 『외국의 자영업자 사회법제 연구: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한국노동연구원.
- 박충렬. 2020. “저소득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도입과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이슈와 논점』 1664: 1-4. 국회입법조사처.
- 방하남. 2008. “일용근로자 실업급여제도: 건설업을 중심으로.” 『노동리뷰』 41: 3-18. 한국노동연구원.
- 서우석·이경원. 2019.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의 정책적 이해: 예술인 복지정책과 고용보험 정책을 중심으로.” 『문화정책논총』 33(1): 213-241.
- 신수정. 2019. “이탈리아의 고용보험제도: 독립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중심으로.” 『노동법논총』 45: 281-311. 한국비교노동법학회.
- 안주엽·황준욱. 2014.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양혜원·차민경·박경신·윤지연·이정희·배성희. 2018.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문화예술용역 범위 설정 방안 기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엄진영·박대식·조승연·김윤진·이창원·최서리·신예진·이상지. 2020. 『농업 고용환경 변화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활용 정책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엄진영·윤종열·박기환·마상진·김부영. 2021. 『포용사회를 위한 농업부문 일자리 확장 및 안정화 방안 (1/3차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엄진영·김부영. 2021. 『고용보험제도의 농업부문 적용 가능성과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오상호. 2019. “독일 고용보험법상 자영업자의 실업 보호.” 『노동법연구』 47: 287-331. 서울대노동법연구회.
- 윤애림. 2019. “특수형태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의 쟁점: 기업의 경계변화에 조응하는 종속노동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노동법학』 70: 293-321. 한국노동법학회.
- 윤조덕·이지은. 2008.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수요도 및 적용방안.” 『노동리뷰』 44: 28-47. 한국노동연구원.
- 이경희. 2018a.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에 관한 법제현안분석 1: 독일』. 한국법제연구원.
- _____. 2018b.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에 관한 법제현안분석 2: 오스트리아』. 한국법제연구원.
- 이병희. 2018.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의 단계적 적용 방안.” 『노동리뷰』 160: 29-39. 한국노동연구원.
- 이성균. 2010. “건설업 일용직의 고용보험가입.” 세미나토론회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이승렬·박찬임. 2008. 『자영업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방안』. 노동부.
- 이주하. 2018. “특수고용노동자를 위한 고용보험과 실업부조.” 『복지동향』 242: 20-27. 참여연대 사회

복지위원회.

이호근. 2008.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방안.” 『노동보험포럼』 1(2): 78-103.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연구센터.

전병유·박찬임·김종숙·김진·이재경·오선영. 2019. 『예술인 고용보험 세부 적용 방안 연구』.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전순옥. 2014.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를 중심으로』. 전순옥 의원실.

정미경. 2020. 『콘텐츠 분야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고려사항과 방향』. 한국콘텐츠진흥원.

정재원·김윤호·소남호·박지인·김근아·서상택·하지희·정선화·박계원·문성진·성경은·민병익·최현정·주경남. 2020. 『농업회계 활성화를 위한 현장 실용화에 관한 연구』. 농촌진흥청.

최영준. 2009. “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영국의 실업부조제도.” 『국제노동브리프』 3:16-21. 한국노동연구원.

통계청. KOSIS.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2018년.

<참고 인터넷 사이트>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각 연도 <https://www.ei.go.kr/ei/eih/st/retrieveHoOfferList.do> 검색
일: 2021.9.1